연구보고 2016-31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Ⅱ)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배윤진 김아름 송신영 권지성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최근 우리나라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건강한 육아환경 제공과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한 다면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육아지원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의 수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2년차 과제인 본 연구에서는 입양아동을 위한 육아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입양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고 입양아동의 입양 후 적응을 위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는 등 입양절차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제도적 변화가 추진되었으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입양가정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어왔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입양가정은 출산이 아닌 입양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맺은 가정이므로 자녀양육에 있어 비입양가정과 공통점을 갖는 동시에 입양가정만의 고유한 고민과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고찰을 통해 육아지원 정책으로의 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양가정에서의 다양한 양육경험과 지원 요구를 수렴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제도 전반에 관한 주요 쟁점,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입양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위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입양가족들의 조사 참여와 입양기관 및 자조모임 등 관련 단체의 협조 덕분에 진행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문에 응해주신 학계 교수님들과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에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건강한 입양문화가 확산되고 모든 아동이 구별 없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차 례

요약 ····· 1

Ⅰ. 서론 ·····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2. 연구내용 ····· 21
3. 연구방법 ····· 22
4. 연구범위 ····· 27

Ⅱ. 입양 관련 현황 ····· 29
1. 입양 현황 ····· 29
2. 입양기관 및 사업 현황 ····· 39
3. 선행연구 고찰 ····· 52

Ⅲ. 입양 및 입양가정 지원 제도 동향 ····· 63
1.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변화와 주요 내용 ····· 63
2.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 80
3. 국외 입양제도 현황 ····· 87

Ⅳ. 입양아동 양육 실태 및 지원 요구 ····· 102
1. 응답자 및 자녀 특성 ····· 102
2. 입양 절차 ····· 107
3. 입양자녀 양육 ····· 114
4. 입양가정 지원 제도 ····· 133
5. 입양에 대한 인식 ····· 164
6. 소결 ····· 171

Ⅴ. 입양부모의 입양아동 양육경험 ····· 174
1. 사례 분석 개관 ····· 174
2. 입양자녀 연령별 분석 ····· 176
3. 입양자녀 특성별 분석 ····· 212
4. 소결 ····· 225

Ⅵ. 정책 제언 ····· 234
1. 입양 전 아동 보호 제도 ····· 234
2. 입양가정 지원 제도 ····· 240
3.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 251

참고문헌 ····· 256

Abstract ····· 268

부록 ····· 271
부록1.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표 ····· 273
부록2. 입양부모 대상 심층면담 분석결과표 ····· 301
부록3.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질문지 ····· 334
부록4. 입양부모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 345

표 차례

〈표 Ⅰ-3- 1〉 설문조사 대상 수 ····· 23
〈표 Ⅰ-3- 2〉 입양부모 설문조사 내용 ····· 23
〈표 Ⅰ-3- 3〉 심층면담 참여자 수 ····· 24
〈표 Ⅰ-3- 4〉 입양부모 심층면담 내용 ····· 25
〈표 Ⅰ-3- 5〉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 25
〈표 Ⅰ-4- 1〉 「민법」상 입양제도와 「입양특례법」상 입양제도 구분 ····· 27
〈표 Ⅱ-1- 1〉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2007-2015 ····· 29
〈표 Ⅱ-1- 2〉 요보호아동 조치 현황: 2007-2015 ····· 30
〈표 Ⅱ-1- 3〉 시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대비 입양조치 비율: 2015 ····· 31
〈표 Ⅱ-1- 4〉 입양 신청자 및 입양아동 유형: 국내 ····· 32
〈표 Ⅱ-1- 5〉 입양아동 법원 허가 현황 ····· 34
〈표 Ⅱ-1- 6〉 요보호아동 국내외 입양에 관한 법원 통계 ····· 35
〈표 Ⅱ-1- 7〉 입양아동 특성(성별, 연령, 장애여부): 국내 ····· 36
〈표 Ⅱ-1- 8〉 입양아동 특성(성별, 연령, 장애여부): 국외 ····· 36
〈표 Ⅱ-1- 9〉 입양부모 특성(친자유무, 소득) ····· 37
〈표 Ⅱ-1-10〉 입양에 대한 견해(19세 이상 인구) ····· 38
〈표 Ⅱ-1-11〉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 38
〈표 Ⅱ-1-12〉 입양자녀에 대한 기혼여성, 미혼남녀의 태도 ····· 39
〈표 Ⅱ-1-13〉 가족 형태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중복응답) ····· 39
〈표 Ⅱ-2- 1〉 중앙입양원에 제공하는 정보 ····· 40
〈표 Ⅱ-2- 2〉 중앙입양원 발간 연구물의 주요 내용 ····· 41
〈표 Ⅱ-2- 3〉 중앙입양원 사후관리사업 운영현황 ····· 43
〈표 Ⅱ-2- 4〉 국내입양인 대상 사후관리(서비스) 사업 ····· 44
〈표 Ⅱ-2- 5〉 부모교육 사례: 찾아가는 입양부모학교 ····· 44
〈표 Ⅱ-2- 6〉 입양기관 유형 및 분포 ····· 47
〈표 Ⅱ-2- 7〉 입양대상아동 보호 사례: 영아일시보호소 17개월반 하루일과 ··· 48
〈표 Ⅱ-2- 8〉 예비입양부모교육의 주요 내용 ····· 49
〈표 Ⅱ-2- 9〉 예비입양부모교육 사례 ····· 50

〈표 Ⅱ-2-10〉 입양기관 주요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 51
〈표 Ⅱ-3- 1〉 자녀 발달시기별 입양부모의 과제 ····· 57
〈표 Ⅲ-1- 1〉 「입양특례법」 상 양자가 될 자격 ····· 68
〈표 Ⅲ-1- 2〉 양부모 사전교육의 내용 ····· 71
〈표 Ⅲ-1- 3〉 가정법원 입양허가에 필요한 서류 ····· 72
〈표 Ⅲ-1- 4〉 입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보수교육의 내용 ····· 74
〈표 Ⅲ-1- 5〉 입양가정 지원 ····· 75
〈표 Ⅲ-3- 1〉 독일 민법상 입양에 관한 규정 ····· 89
〈표 Ⅲ-3- 2〉 미국 입양기관의 예비입양부모 가정조사 절차 ····· 94
〈표 Ⅲ-3- 3〉 영국의 예비입양부모교육(“Preparing to Adopt”, BAAF, 2014) · 97
〈표 Ⅳ-1- 1〉 가구 특성 ····· 102
〈표 Ⅳ-1- 2〉 부모 특성 ····· 103
〈표 Ⅳ-1- 3〉 입양자녀 특성 ····· 104
〈표 Ⅳ-1- 4〉 입양자녀의 입양 과정 ····· 105
〈표 Ⅳ-1- 5〉 향후 추가 입양 계획 ····· 106
〈표 Ⅳ-1- 6〉 향후 추가 출산 계획 ····· 107
〈표 Ⅳ-2- 1〉 입양 결정 이유(1순위) ····· 108
〈표 Ⅳ-2- 2〉 입양 결정 시 가장 큰 어려움 ····· 109
〈표 Ⅳ-2- 3〉 입양 진행시 가장 큰 어려움 ····· 110
〈표 Ⅳ-2- 4〉 입양 진행시 도움 받은 사람/곳 ····· 111
〈표 Ⅳ-2- 5〉 입양 시 확인 가능한 자녀정보(중복응답) ····· 111
〈표 Ⅳ-2- 6〉 입양 시 자녀 발달_신체발달 및 성장 ····· 112
〈표 Ⅳ-2- 7〉 입양 시 자녀 발달_언어발달 ····· 113
〈표 Ⅳ-2- 8〉 입양 시 자녀 발달_인지발달 ····· 113
〈표 Ⅳ-2- 9〉 입양 시 자녀 발달_사회·정서발달 ····· 114
〈표 Ⅳ-3- 1〉 입양사실을 공개한 사람(중복응답) ····· 115
〈표 Ⅳ-3- 2〉 자녀에게 입양사실 공개 여부 및 시기 ····· 115
〈표 Ⅳ-3- 3〉 입양사실 접한 후 보인 변화 ····· 116
〈표 Ⅳ-3- 4〉 자녀가 친생부모에 관심 보인 시기(중복응답) ····· 117
〈표 Ⅳ-3- 5〉 입양사실 공개 시기 ····· 118
〈표 Ⅳ-3- 6〉 입양사실 비공개 이유 ····· 118

〈표 Ⅳ-3- 7〉 입양자녀와의 애착 형성 기간 ····· 119
〈표 Ⅳ-3- 8〉 입양자녀의 적응 기간 ····· 120
〈표 Ⅳ-3- 9〉 부모가 지각한 입양자녀의 평소 모습(행복감) ····· 121
〈표 Ⅳ-3-10〉 입양자녀의 적응 어려움(중복응답) ····· 122
〈표 Ⅳ-3-11〉 입양자녀의 적응 어려움(수) ····· 122
〈표 Ⅳ-3-12〉 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_평일 ····· 123
〈표 Ⅳ-3-13〉 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_주말 및 휴일 ····· 124
〈표 Ⅳ-3-14〉 어머니와 함께 한 시간_평일 ····· 125
〈표 Ⅳ-3-15〉 어머니와 함께 한 시간_주말 및 휴일 ····· 126
〈표 Ⅳ-3-16〉 입양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 ····· 127
〈표 Ⅳ-3-17〉 입양자녀 양육 시 느낄 수 있는 부담 ····· 128
〈표 Ⅳ-3-18〉 입양자녀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문항 ····· 129
〈표 Ⅳ-3-19〉 입양자녀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 129
〈표 Ⅳ-3-20〉 육아 정보 및 상담 필요시 주로 도움 받는 사람/곳 ····· 132
〈표 Ⅳ-3-21〉 자녀 양육 시 가장 필요한 정보 ····· 133
〈표 Ⅳ-4- 1〉 입양 전 부모교육 참여 여부 ····· 134
〈표 Ⅳ-4- 2〉 입양 전 부모교육 참여 횟수 ····· 135
〈표 Ⅳ-4- 3〉 입양 전 참여한 부모교육의 유형(중복응답) ····· 135
〈표 Ⅳ-4- 4〉 입양 전 부모교육의 도움정도 ····· 136
〈표 Ⅳ-4- 5〉 예비입양부모교육 참여 시 불편했던 점 ····· 136
〈표 Ⅳ-4- 6〉 예비부모교육 시간의 적정성 ····· 137
〈표 Ⅳ-4- 7〉 입양 전 부모교육에 필요한 내용(1순위) ····· 138
〈표 Ⅳ-4- 8〉 입양 후 부모교육에 필요한 내용(1순위) ····· 139
〈표 Ⅳ-4- 9〉 입양휴가제 실시 인지 여부 ····· 141
〈표 Ⅳ-4-10〉 육아휴직 사용 여부 ····· 143
〈표 Ⅳ-4-11〉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 144
〈표 Ⅳ-4-12〉 입양수수료 지원 인지 여부 ····· 145
〈표 Ⅳ-4-13〉 입양수수료 지원에 대한 만족도 ····· 146
〈표 Ⅳ-4-14〉 입양수수료 지원의 필요성 ····· 146
〈표 Ⅳ-4-15〉 양육수당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 147
〈표 Ⅳ-4-16〉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만족도 ····· 148

〈표 Ⅳ-4-17〉 양육수당 지원의 필요성 ····· 148
〈표 Ⅳ-4-18〉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 149
〈표 Ⅳ-4-19〉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에 대한 만족도 ····· 150
〈표 Ⅳ-4-20〉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의 필요성 ····· 151
〈표 Ⅳ-4-21〉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 151
〈표 Ⅳ-4-22〉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대한 만족도 ····· 152
〈표 Ⅳ-4-23〉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의 필요성 ····· 153
〈표 Ⅳ-4-24〉 입양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 154
〈표 Ⅳ-4-25〉 입양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에 대한 만족도 ····· 155
〈표 Ⅳ-4-26〉 입양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 155
〈표 Ⅳ-4-27〉 입양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 156
〈표 Ⅳ-4-28〉 입양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 ····· 157
〈표 Ⅳ-4-29〉 입양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 ····· 157
〈표 Ⅳ-4-30〉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 158
〈표 Ⅳ-4-31〉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지원에 대한 만족도 ····· 159
〈표 Ⅳ-4-32〉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지원의 필요성 ····· 159
〈표 Ⅳ-4-33〉 입양부모/자녀 대상 모임 및 프로그램 만족도 ····· 163
〈표 Ⅳ-5- 1〉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양부모의 조건(1순위) ····· 165
〈표 Ⅳ-5- 2〉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입양사실 공개 범위 ····· 166
〈표 Ⅳ-5- 3〉 자녀에게 입양사실 공개하는 바람직한 시기 ····· 167
〈표 Ⅳ-5- 4〉 입양 관련 의견 동의 정도 ····· 168
〈표 Ⅳ-5- 5〉 입양아동 지원에 대한 생각 ····· 169
〈표 Ⅳ-5- 6〉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노력(1순위) ····· 170
〈표 Ⅴ-1- 1〉 면담참여자 가구 특성 ····· 174
〈표 Ⅴ-1- 2〉 면담참여자 가구 특성: 부모 ····· 175
〈표 Ⅴ-1- 3〉 면담참여자 가구 특성: 입양자녀 ····· 175
〈표 Ⅴ-2- 1〉 입양자녀 연령별 통합분석 결과 ····· 209

그림 차례

〔그림 Ⅰ-1-1〕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개요(2015-2019) …… 19
〔그림 Ⅰ-4-1〕 연구 범위 …… 28
〔그림 Ⅱ-1-1〕 요보호 아동 발생 및 입양 신청자 수, 국내외 입양아 추이 …… 33
〔그림 Ⅱ-1-2〕 국내외 입양아동 비율 …… 34
〔그림 Ⅱ-2-1〕 상담 사례: 문지방 상담사 워크숍 안내문 …… 46
〔그림 Ⅲ-1-1〕 현행 「입양특례법」 개정 전후 국내입양절차 …… 65
〔그림 Ⅲ-1-2〕 요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 69
〔그림 Ⅲ-1-3〕 국내·외 입양 프로세스 …… 70
〔그림 Ⅲ-1-4〕 입양동의 및 입양성립 과정 …… 73
〔그림 Ⅲ-2-1〕 헤이그 협약에 따른 국가 간 입양절차 …… 85
〔그림 Ⅲ-3-1〕 독일의 입양규모(1991-2010) …… 88
〔그림 Ⅲ-3-2〕 미국 온라인 부모교육 제공 사례 …… 95
〔그림 Ⅳ-2-1〕 입양 결정 이유(1,2순위 중복응답) …… 108
〔그림 Ⅳ-3-1〕 입양자녀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 …… 131
〔그림 Ⅳ-4-1〕 입양 전 부모교육에 필요한 내용(1,2순위 중복응답) …… 139
〔그림 Ⅳ-4-2〕 입양 후 부모교육에 필요한 내용(1,2순위 중복응답) …… 140
〔그림 Ⅳ-4-3〕 직장 내 입양휴가제 유무 및 사용 여부 …… 142
〔그림 Ⅳ-4-4〕 입양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 …… 142
〔그림 Ⅳ-4-5〕 입양가정 지원 정책 만족도 …… 160
〔그림 Ⅳ-4-6〕 입양가정 지원 정책 필요성 …… 161
〔그림 Ⅳ-4-7〕 참여 경험이 있는 입양 관련 모임 및 프로그램(중복응답) …… 162
〔그림 Ⅳ-4-8〕 활성화되길 바라는 입양 관련 모임 및 프로그램(1,2순위 중복응답) · 164
〔그림 Ⅳ-5-1〕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양부모의 조건(1,2순위 중복응답) …… 165
〔그림 Ⅳ-5-2〕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노력(1,2순위 중복응답) …… 171
〔그림 Ⅵ-1-1〕 입양아동 양육 지원 방안 …… 234

부록 표 차례

〈부표 Ⅳ-3- 1〉 양육 시 어려움_입양자녀가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 273
〈부표 Ⅳ-3- 2〉 양육 시 어려움_가족들이 입양자녀와 가까워지지 못함 …… 274
〈부표 Ⅳ-3- 3〉 양육 시 어려움_부모-자녀 간 애착관계 형성이 어려움 …… 275
〈부표 Ⅳ-3- 4〉 양육 시 어려움_친생자녀와 입양자녀를 (역)차별하게 됨 …… 276
〈부표 Ⅳ-3- 5〉 양육 시 어려움_자녀에게 입양사실 공개 시기, 방법에 대해 고민함 … 277
〈부표 Ⅳ-3- 6〉 양육 시 어려움_자녀가 입양사실로 삐뚤어질까봐 두려움 …… 278
〈부표 Ⅳ-3- 7〉 양육 시 어려움_자녀가 크면서 친생부모를 찾을까봐 두려움 279
〈부표 Ⅳ-3- 8〉 양육 시 어려움_주변에서 입양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움 … 280
〈부표 Ⅳ-3- 9〉 양육 시 어려움_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 …… 281
〈부표 Ⅳ-3-10〉 양육 시 어려움_일반적인 자녀들의 문제임에도 입양 때문인 것 같아 걱정함 …… 282
〈부표 Ⅳ-3-11〉 양육 시 어려움_주변사람들과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 어려움 …… 283
〈부표 Ⅳ-4- 1〉 적정한 예비부모교육 시간 …… 284
〈부표 Ⅳ-4- 2〉 직장 내 입양휴가제 유무 …… 284
〈부표 Ⅳ-4- 3〉 입양부모/가정 자조모임 만족도 …… 285
〈부표 Ⅳ-4- 4〉 입양부모교육 만족도 …… 286
〈부표 Ⅳ-4- 5〉 입양부모 상담프로그램 만족도 …… 287
〈부표 Ⅳ-4- 6〉 입양아동 상담프로그램 만족도 …… 288
〈부표 Ⅳ-4- 7〉 입양아동 적응/발달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 289
〈부표 Ⅳ-4- 8〉 입양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만족도 …… 290
〈부표 Ⅳ-4- 9〉 캠프 등 입양가정 대상 행사 만족도 …… 291
〈부표 Ⅳ-4-10〉 합창단 등 입양아동 모임 만족도 …… 292
〈부표 Ⅳ-4-11〉 입양부모/아동 심리치료 프로그램 만족도 …… 293
〈부표 Ⅳ-4-12〉 활성화되길 바라는 입양 관련 모임 및 프로그램(1순위) …… 294
〈부표 Ⅳ-5- 1〉 친생부모는 자녀를 입양 보낸 후 자녀성장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295
〈부표 Ⅳ-5- 2〉 입양아동은 자신을 낳아준 친생부모에 대해 알아야 한다 …… 296

〈부표 Ⅳ-5-3〉 입양아동은 성인이 된 후 원한다면 친생부모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 297
〈부표 Ⅳ-5-4〉 친생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는 개방입양은 바람직하다 ····· 298
〈부표 Ⅳ-5-5〉 아동이 어느 나라에서든 가정에서 양육받기 위해서 해외입양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 299
〈부표 Ⅳ-5-6〉 어떤 이유에서든 해외입양은 금지되어야 한다 ····· 300
〈부표 Ⅴ-2-1〉 영유아기 입양가정의 양육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 301
〈부표 Ⅴ-2-2〉 아동기 입양가정의 양육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 308
〈부표 Ⅴ-2-3〉 청소년기 입양가정의 양육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 315
〈부표 Ⅴ-3-1〉 연장아동 입양가정의 양육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 320
〈부표 Ⅴ-3-2〉 장애아동 입양가정 개별면담 분석결과 ····· 327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우리나라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건강한 육아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해 다면적인 지원을 모색·강화하고 있음.

□ 입양가정은 일반가정과 많은 공통점을 갖는 동시에 입양가정만의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입양부모가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다른 일반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또한 입양 시 자녀의 연령, 입양부모의 친생자녀 유무, 입양공개 여부 등 관련 변인에 따라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지원 요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입양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입양부모의 상황에 적절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입양가정을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여 그들의 경험을 파악하고 지원 요구를 수렴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입양 전반에 걸쳐 현황 및 제도를 파악하고, 입양가정에서의 다양한 입양 및 양육경험을 중심으로 현 지원 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입양아동의 발달 및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해결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국내외 입양 비율, 입양아동 수 추이 등 관련 통계 및 선행연구를 이용하여 입양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입양기관의 현황자료를 수합하여 분석함.

□ 입양 전반에 관한 법률과 제도, 그리고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및 국외 관련 제도의 동향을 알아보고 그 변화를 고찰함.

□ 입양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입양 시 자녀의 연령, 입양자녀 이외의 친생자녀 유무 등의 자녀 특성, 입양결정 및 절차, 입양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 현 지원정책 수혜여부 및 도움 정도 등을 조사하여 국내입양가정의 실태 및 지원 요구를 수렴함.

○ 또한 입양자녀 특성별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부모의 입양자녀 양육 시 어려움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살펴봄.

□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체계화되고 통합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입양 및 입양가정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중앙입양원 및 입양기관의 사업 현황 파악

○ 입양아동의 발달특성 및 입양가정 양육 현황 등을 다룬 선행연구 분석

○ 입양 및 입양가정 지원 관련 제도 분석

□ 입양가정 부모 2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조사 내용은 일반적 특성, 입양결정 및 절차, 입양자녀 양육경험, 입양가정 지원, 입양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함.

□ 입양가정 39사례를 모집하여 심층면담 실시

○ 면담 내용은 입양결정 및 절차, 입양자녀 양육 경험 및 지원에 관한 것이며, 질적 연구방법론의 귀납적 범주화 분석을 실시함.

□ 자문회의 및 간담회

○ 관련 선행연구를 수행한 학계 전문가 및 중앙입양원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개최

○ 입양기관과 사후관리서비스 담당 단체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정책실무자와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총 11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함.

라. 연구범위

□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입양, 즉 「입양특례법」에 근거한 입양을 연구범위로 삼음.

□ 연구대상에서 비밀입양 혹은 공개, 개방입양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례를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연구대상의 특성 상 소수의 비밀입양 사례만 포함됨.

□ 입양아동이 입양대상아동으로서 보호받던 시점 그리고 부모-자녀 매칭이 이루어져서 입양이 된 이후까지의 전 과정이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함.

2. 입양 관련 현황

가. 입양 현황

□ 요보호 아동 및 입양 발생 추이

○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은 2010년에는 8,590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4,503명으로 집계되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 2015년 입양규모는 총 1,057명, 국내입양은 683건(64.6%), 국외입양은 374건(35.4%)임.

□ 입양아동 및 입양부모 특성

○ 2015년 국내입양아동 중 남아 222명, 여아 461명으로 국내입양에 있어 여아 선호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남. 2012년 이후 국내·국외 모두 입양연령이 다소 증가함.

○ 친자가 없는 가정에서 입양하는 비율이 더 높으며, 최근에는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입양에 대한 견해

○ 19세 이상 성인 대상 조사 결과(통계청 사회조사, 2014), 입양하고 싶은 생각 없음 32.6%, 출산이 어려운 경우 적극 고려 21.6% 등으로 나타남.

○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는 문항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은 약 9.0~15.0% 정도이며, 대체로 찬성한다는 비율은 약 43.0~48.0% 정도임(이삼식 외, 2015).

나. 입양기관 및 사업 현황

1) 중앙입양원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를 수행함.

□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 지금까지 입양정책 및 제도의 개발과 개선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가 수행되어 발간됨.

□ 사후관리(서비스)사업 운영

○ 2012년부터 국내입양인 대상의 사후서비스 사업도 예산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6: 64), 2014년부터는 중앙입양원을 통한 민간위탁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

2) 입양기관

□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

□ 입양부모 가정조사 및 교육

○ 예비입양부모가 입양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양친이 될 자격이 있는지 조사하고, 예비입양부모에게 입양 전에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 제공

○ 국내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조모임,

부모교육, 입양아동 치료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함.

□ 기록 관리 및 보고

다. 선행연구 고찰

□ 입양아동의 발달과 적응

○ 입양아동의 어려움은 입양되기 전까지의 양육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데 따른 발달 저하와 입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적응 상의 문제에 따른 것임(변미희·권지성·안재진·최운선, 2006: 1).

– 발달영역에 따라 연구마다 서로 상이한 연구결과가 있으나,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다수의 국내·국외 선행연구에서 입양아동이 비입양아동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함.

○ 입양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입양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입양부모 및 가정 특성, 입양부모의 양육 관련 특성, 입양 관련 경험 등이 있음(안재진·권지성 외, 2015).

□ 입양아동의 발달주기별 양육특성

○ 일반적으로 영아기에 입양된 경우에는 주양육자인 입양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경우 발달상 문제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88; Stams, Juffer, & van IJzendoorn, 2002).

○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는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고 아동이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음.

– 부모가 아동에게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가 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함(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89).

○ 아동기에는 생물학적 관계와 입양관계의 차이를 이해함에 따라 상실감을 경험하며,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해 궁금해 하게 됨.

– 아동의 혼란과 의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의 입양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함(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90).

○ 청소년기에는 입양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사고하게 되면서 자신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양부모와 비교하거나 생물학적 부모로 물려받은 특성에 대해 고민하는 등 복합적인 상태를 보임(이윤로·이미선, 2007: 142).

– 자녀가 입양과 관련된 과업을 잘 다루도록 그들의 정서적 성숙 정도, 알고자 하는 동기, 친생부모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함(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92).

□ 특별한 요구를 지닌 입양아동의 양육

○ 1세 이후 입양된 연장아동들은 입양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갖거나, 발달수준이 낮거나,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함.

○ 입양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장애 관련 제반 복지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이 더해져 장애아동 입양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김가득·유정숙, 2010).

– 장애아동 입양부모는 비공식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정신보건 측면의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함(Kramer, & Houston, 1998).

□ 입양부모 및 아동 대상 중재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

○ 입양부모의 경우 입양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양질의 양육행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입양부모의 양육에 대한 중재와 개입은 입양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3. 입양 및 입양가정 지원 제도 동향

가.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변화와 주요 내용

□ 입양관련 법제의 변화

○ 우리나라 최초의 입양법제라 할 수 있는 「고아입양특례법」은 당시 전쟁으로 생겨난 고아들을 외국에 입양 보내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목적으로 1961년 제정됨.

– 그러나 불우아동의 복리 실현에 미흡하다는 비판과 국내에서의 입양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1976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음.

– 이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2011년 다시 「입양특례법」으로 제명을 변경함.

○ 「입양특례법」에서 따르는 「민법」상 친양자 입양제도는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하며,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하게 됨(민법 제908조의3).

□ 현행 입양특례법의 주요내용 및 의의

○ 현행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아동입양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 방식은 원가정 내에서의 양육이라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함(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법률 제11007호) 개정이유).

– 가정법원 허가제, 원가정 지원 및 입양숙려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입양인에게 입양정보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음. 또한 입양기관의 역할을 제시하여 입양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함.

□ 입양특례법의 개선과제

○ 현행법에서는 입양 전 가정위탁 등 입양 전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태임.

○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입양 전 어떠한 지원서비스를 받았는가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알선수수료가 아닌 좀 더 체계적인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함.

나.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 가입 배경

○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협약”은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1993년 5월 공식 채택된 국제 협약임.

○ 2003년 1월 UN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헤이그협약 가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는 2013년 5월 24일에 네덜란드에서 헤이그협약에 서명하였음.

□ 주요 내용

○ 헤이그협약은 입양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중앙당국과 행정당국, 법원, 입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관련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밝힘.

○ 동 협약은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것을 원칙으로 함을 밝히는 전문과 7개장의 총 48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 향후 과제 및 시사점

○ 우리나라가 헤이그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준비가 필요함. 우선 국내이행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현행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필요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석광현, 2011: 28).

○ 그 밖에도 헤이그협약에서 제시하는 국제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 등을 정비하여, 협약에서 요구하는 국제입양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466호).

다. 국외 입양제도 현황

□ 독일

○ 독일에서 입양에 관련된 법은 「독일민법」과 특별법으로서의 「입양의 알선과 대리의 알선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1993년 5월 29일 헤이그협약의 시행에 따라 제정된 「입양-협약시행법」과 「외국법에 따른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률」이 있음.

○ 익명출산법제는 임신한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비밀출산을 제도화한 것임.

– 동 법은 임신한 여성의 익명성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아동의 알권리 역시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권리 모두를 보장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미국

○ 미국은 2000년 「국제입양법」을 마련함.

– 아동 및 입양부모의 입장에서 서로 친부모 및 친자로 여길 수 있게 하는 법적 보장뿐만 아니라,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전형적인 개방입양의 모델을 갖춰나가고 있음.

○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아동의 신원확인 및 입양체결, 가정조사 이행 및 양부모 조사,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입양알선의 적절성에 관한 비사법적 판단 등에 대한 책임을 짐.

□ 영국

○ 지역 입양복지단체와 입양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국입양협회는 2015년 7월 경제적인 이유로 폐쇄되긴 하였으나, 지난 30년간 입양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입양 담당자들을 위한 세미나 실시, 입양부모교육 등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함.

○ 영국에서의 입양제도는 1926년 「아동입양법」을 제정하면서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이후 1976년 「입양법」 및 1989년 「아동법」을 거쳐 현재는 2002년에 개정된 「입양 및 아동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시사점

○ 우리나라의 입양은 「민법」상의 입양과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반면, 독일은 「독일민법」상의 입양으로 단일화되어 있음. 한편, 독일의 익명출산법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박스 등의 문제와 연결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오랫동안 헤이그협약을 준비하였고 수령국의 지위에 있어서 해외입양아동을 위한 여러 법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방입양의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또한 온라인 부모교육 자료 제공 사례는 주목할 만함.

○ 영국은 입양결연에 관한 위원회(패널)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입양결연에 대해 입양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당국이 함께 책임을 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영국의 예비입양부모교육은 2단계로 나누어져서 입

양아동과 입양절차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심화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음.

4. 입양아동 양육 실태 및 지원요구

가. 응답자 및 자녀 특성

□ 응답자 가구 및 입양부모 특성

○ 응답자 272명 중 53.7%는 친생자녀가 없으며, 입양자녀 수는 1명인 경우가 68.8%이며, 1~4명 범위임.

○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6.7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7세이며, 어머니가 취업한 가정은 42.6%임.

– 종교가 있는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71.3%, 77.6%로 다소 많은 편이어서 입양가정의 특징을 보여줌.

□ 입양자녀 특성

○ 응답자가 답한 모든 입양자녀 특성을 포함하여 살펴본 결과, 남아는 28.3%, 여아는 70.4%이며, 연장입양아동은 12.7%, 장애를 포함하여 건강 이상이 있는 아동은 3.5%임.

○ 입양아동들은 입양 전에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까지 일시보호시설, 위탁 등의 보호형태를 경험함.

– 현재의 가정에서 입양 전 위탁을 경험한 아동은 평균 2.6개월의 위탁기간을 보냈으며, 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 2.8회 정도 부모와 만남.

□ 자녀 계획

○ 향후 추가 입양 계획이 있는 가정은 15.8%이며, 자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

– 추가 입양 의사가 있는 가정에서 계획하는 추가 입양자녀 수는 1명 79.1%, 2명 14.0%, 3명 7.0%임.

나. 입양 절차

□ 입양 결정 및 진행

○ 자녀를 입양한 주된 이유는 부모의 난임·불임이었으며, 종교나 사회적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관심 등 개인의 가치관 때문에 선택하기도 함.

○ 입양 결정 시 사회적 편견이 우려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 2012년도 이후에 입양한 경우 서류준비 등 입양절차가 까다로워서 입양 진행 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음.

□ 입양 시 정보

○ 입양 시 자녀와 관련된 정보 중에서 간단한 기본인적사항은 95.6%,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는 74.6%, 발단진단결과는 65.4%의 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었음.

□ 입양 시 자녀발달 정도

○ 입양 시 자녀 월령이 12개월 이상이었던 부모들은 자녀들이 인지, 언어, 사회·정서발달에 있어 느린 편이었다는 응답이 많음.

다. 입양자녀 양육

□ 입양 공개

○ 대부분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에게는 입양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며, 입양자녀 본인에게 입양사실을 알려주었다는 부모는 76.1%임.

– 일부 응답자는 자녀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가능한 한 미루길 원한다고 응답하였음.

□ 입양자녀 발달 및 적응

○ 자녀가 입양사실을 안 후 대부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응답함.

– 초등 저학년 시기에 친생부모에게 관심을 갖는 비율이 높음.

○ 입양자녀와의 애착 형성 기간은 평균 9.95개월, 입양자녀가 가정에 적응하는 기간은 평균 8.25개월임.

○ 입양자녀가 지금까지 문제행동들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응답은 50.0%이며, 그 외에는 불안, 위축, 수면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경험함.

– 연장입양아동의 경우 좀 더 많은 횟수의 문제행동을 경험함.

□ 양육 특성

○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평일 3.18시간, 주말 평균 9.14시간이며, 어머니는 평일 평균 7.59시간, 주말에는 평균 11.73시간임.

○ 어린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더 온정적이며, 친생자녀가 있는 경우 통제적 양육의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되었음.

–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에서의 경제적 부담은 높아짐.

○ 양육하면서 정보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할 때 입양가정 자조모임에 도움을 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필요로 하는 양육정보는 일반적으로 부모들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연령별 양육방법과 더불어 입양공개방법이나 시기 등 입양가정 고유의 이슈가 있음.

라. 입양가정 지원 제도

□ 입양 전 부모교육

○ 입양 전에 부모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부모는 전체의 87.1%이며, 평균 3.12회 교육에 참여함.

○ 대부분 부모들이 부모교육이 실제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함.

– 예비입양부모교육의 8시간에 대해 61.4%는 적정하다고 평가함.

– 부모교육 시 필요한 내용은 입양 전의 경우 입양사실 공개시기 및 방법, 입양아동의 특성, 연령별 자녀양육 방법 순으로, 입양 후의 경우 입양사실 공개시기 및 방법, 입양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연령별 자녀양육 방법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입양휴가제 및 육아휴직

○ 입양자녀로 인한 입양휴가제 및 육아휴직은 아직 활용 비율이 낮은 편임.

– 휴가나 휴직 제도가 필요가 없어서, 회사 눈치가 보여서, 입양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해당 제도를 사용하지 않음.

□ 입양가정 지원 정책

○ 입양수수료는 69.7%의 인지율을 보이며, 각 지원의 수혜율은 양육수당 96.2%, 의료급여 94.7%, 심리치료지원 38.7%,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16.9%, 입양장애아동 의료비지원 18.2%, 사후관리 81.7%임.

– 현재 입양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만 양육수당에 대한 만족정도가 가장 낮고, 의료급여 지원에 대한 만족정도가 가장 높음.

○ 입양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함.

–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며, 입양수수료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음.

□ 입양 관련 모임 및 프로그램

○ 입양가정 자조모임이나 사후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자조모임 참여율이 가장 높고(84.2%),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음.

– 많이 참여하고 있는 자조모임(3.45점)과 입양가정 대상 행사(3.37점), 입양부모교육(3.30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임.

마. 입양에 대한 인식

□ 입양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모의 가치관이라고 응답함.

□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입양사실 공개 범위는 과반수가 친인척과 가까운 지인들까지라고 응답함.

○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는 응답은 24.6%, 부부만 알고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5%임.

□ 입양아동 지원에 대해 일반아동과 동일한 수준보다는 요보호아동으로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음.

○ 특히 2011년도 이전에 입양한 경우 요보호아동으로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많음.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에 대한 필요성과 긍정적 인식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8.4%임.

5. 입양부모의 입양아동 양육경험

가. 입양자녀 연령별 분석

□ 영유아기(만 0-5세)

○ 입양아동의 입양 전 보호형태는 입양기관에서 바로 입양하는 경우, 가정위탁 상태에서 보호되다가 입양하는 경우, 생활시설에 거주하다가 입양하는 경우로 나누어짐.

– 생활시설에 있었던 경우, 시설생활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입양가정으로 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입양사실을 자녀에게 공개할 생각이 없는 가정도 있고, 매우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가정도 있음.

○ 친생자녀가 없는 경우, 신생아를 돌보는 것이 어렵거나 자녀 또래의 부모들과 어울리기 어렵거나 잘 키워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등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함.

○ 입양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외에도 입양부모 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원함.

○ 입양가정 지원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 제도 보완에 대한 의견도 있음.

□ 아동기(초등학생)

○ 입양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입양이슈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고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불안이나 상실감을 나타내 보이기도 함.

– 부모들은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 교사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할지를 고민하게 됨.

– 또래에게 입양사실 공개 후 또래의 반응 때문에 위축되거나 따돌림 받은 경우도 있음.

○ 입양아동의 특정 행동에 대해 입양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입양아동의 발달이 느리거나,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사춘기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 함.

○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기싸움을 벌였다가 안정화되고 결국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을 경험하기도 함.

○ 입양아동 심리치료, 입양부모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요구를 보임.

□ 청소년기(중고등학생)

○ 청소년기 입양자녀를 둔 경우 입양 시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가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입양시기가 비교적 이전이기 때문으로 여겨짐.

○ 입양아동은 입양이슈에 대해 질문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거나, 입양가족모임에 가지 않으려고 하기도 함.

○ 입양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 자신과 다름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녀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시기가 됨. 고등학교 의무교육이나 대학등록금 지원 등의 이슈에 민감하게 됨.

○ 자조모임에 참여하였음에도 입양아동 간의 자조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음.

□ 통합분석

○ 입양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입양절차가 까다롭다고 느끼고 있으며, 출산과는 달리 입양준비 및 진행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입양부모가 자녀양육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 있을 수 있음.

○ 입양아동 양육 경험은 입양부모에 대한 개입이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줌.

– 입양이슈 다루기, 뿌리찾기, 입양사실의 외부 공개 등의 주제는 영유아기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아동기에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청소년기에 다시 사라짐.

– 입양아동의 학령이 높아지면서 아동이 적응에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입양부모 입장에서도 양육의 어려움이 고조됨.

○ 사회적 편견은 어느 연령대이든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아동기부터는 학교 교사와 또래들의 반응이 입양아동과 부모에게 영향을 미침.

나. 입양자녀 특성별 분석

□ 연장아동

○ 연장아동을 입양한 이유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연장아동들을 살펴보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고 예뻐 보여서, 신생아를 키울 자신은 없고 오히려 이미 나이 든 아동을 키우는 것이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서 등이 있었으며, 근본적인 입양 동기는 앞서 살펴본 연령별 집단과 다르지 않음.

○ 연장아동들은 이미 아동복지체계에서 1년 이상 생활하였기 때문에 친생부모와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많은 편임.

○ 입양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입양아동의 특성도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입양부모들도 더 역동적인 경험을 하게 됨.

– 양육에서도 적절한 훈육방법을 모르겠다거나, 형제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복잡한 양상의 어려움을 보임.

– 입양아동은 부모의 개념을 잡아가는 과정을 보이기도 하고, 시설생활의 영향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함.

○ 부모교육에 있어 입양사실 공개방법과 입양이슈 대처방법, 의사소통 방법, 연장아 입양사례,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 등을 필요로 함. 또한 연장입양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지원이 더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장애아동

○ 장애아동 사례의 경우 초기 적응 기간 동안 아동이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정을 요구하는 행동을 보임.

○ 입양부모들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였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양육과정에서 시각이 달라지고 성장하는 것을 느낌.

○ 장애와 관련된 어려움으로는 정보 부족, 치료시설 부족, 경제적 부담 등이 있으며, 장애를 가진 입양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개입은 경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여러 사건으로 입양에 대한 편견이 강화되지 않을까 걱정하거나, 장애인이든 아니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사회가 되길 바라고 있음.

6. 정책 제언

가. 입양 전 아동 보호 제도

□ 분리 경험 및 급격한 변화의 최소화

□ 발달에 적합한 환경 제공

○ 아동이 어느 곳에서 보호받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질적으로 보장된 수준의 돌봄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극을 받고 과업을 수행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입양대상아동 보호시설에서 보육사와 아동의 비율 관리 및 아동 중심의 보육사 배치, 그들만의 특징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입양 전 위탁의 제도화

□ 입양 전 입양부모와의 만남 및 위탁

○ 아동의 애착 형성 및 안정된 보호를 위해서는 입양 전 예비입양가정으로의 위탁은 바람직함.

○ 부모-아동 결연 이후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아동이 가정을 방문하는 등의 형태로 적응 시간을 보낸 후에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입양실무 규정에 포함되기를 제안함.

□ 입양부모-아동 결연위원회

○ 친생부모, 입양대상아동, 입양부모 삼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해당 아동의 개별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입양기관의 실무자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필요 있음.

나. 입양가정 지원 제도

□ 입양사업의 개선

○ 입양기관에 대해 단순한 알선 수수료 형태가 아닌 좀 더 체계적인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입양서비스 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재정적 지원의 장기적인 방향

○ 장기적으로는 아동 및 가구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축하금 형태의 지원으로의 변화를 제안함.

□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모교육 구성 및 확대

□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지속성 및 접근성 강화

○ 육아종합지원센터 혹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자원 이용

○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전문적 개입

□ 중재가 필요한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 실무자의 입양실무역량 강화

다.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 편견에 대한 입양가정에서의 건강한 대처

□ 언어 사용에서의 편견 해소

□ 반편견 입양교육 및 건강한 입양문화 확산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건강한 육아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해 다면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 미혼부모, 재혼 및 입양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성은 여전히 높지 않아(대한민국정부, 2016: 72) 이들을 포용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총 5차년도의 연속과제로 기획된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에서는 정책 사각지대의 해소와 정책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차년도 과제로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Ⅰ-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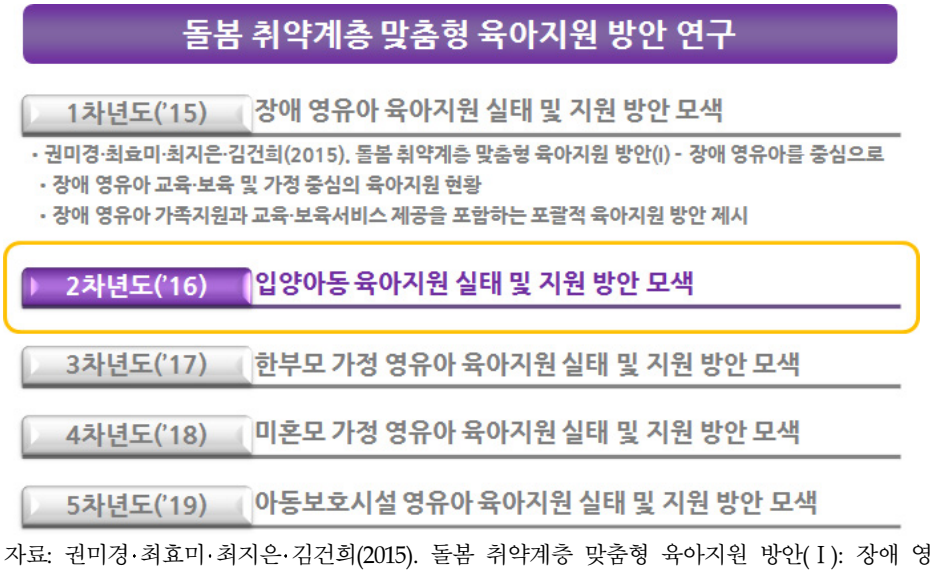

자료: 권미경·최효미·최지은·김건희(2015).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Ⅰ): 장애 영유아를 중심으로. p.11 [그림 Ⅰ-1-1] 수정.

〔그림 Ⅰ-1-1〕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개요(2015-2019)

입양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가정입양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6b: 15).

과거에는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국내입양우선추진제의 도입(‘07년) 등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는 제도적 노력으로 인해 2005년 이전 30.1%이었던 국내입양의 비율이 2014년 54.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5.8). 이와 더불어 2012년 이후 법원 허가제 및 입양 숙려제 도입, 출생신고 의무화, 입양부모 자격기준 강화, 사후서비스 기간 연장, 입양정보 공개 청구권 보장 등 입양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의 대상을 2012년도 만12세 미만에서 2016년도 만16세 미만으로 매해 확대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입양 이후 입양아동이 새로운 가정에 잘 정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에 역점”을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5.8). 하지만 이처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을 자녀로 삼고 양육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의 형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입양가정은 일반가정과 많은 공통점을 갖는 동시에 입양가정만의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안재진·최운선·김세원·장지연, 2013: 1). 즉, 입양가정에서 부모가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은 그렇지 않은 가정과는 다른 점이 있으며, 다른 일반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입양아동 역시 입양 전에는 ‘요보호아동’으로 사회적 보호를 받았으나 입양 후에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으므로 일반아동과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입양아동은 생애출발경험이 일반아동과 다르고, 입양부모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입양으로 대체하였다는 점에서 그들은 일반가정과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입양가정 내에서도 입양 시 자녀의 연령, 입양부모의 친생자녀 유무, 입양공개 여부 등 관련 변인에 따라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지원 요구는 편차가 커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입양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입양부모의 상황에 적절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입양가정을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여 그들의 경험을

파악하고 지원 요구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정책이 입양가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식·실행되고 있는지를 진단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한편 입양 현황 추이와 입양 관련 법제도의 변동은 당대 사회적 이슈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고찰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비록 소수이지만 입양 제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특정 입양 제도와 그 운용 자체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며 연구시점이 관련법 개정 이전인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제도의 동향과 입양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제도에 대한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지원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입양 전반에 걸쳐 현황 및 제도를 파악하고 입양가정에서의 다양한 입양 및 양육경험을 살펴본 후 주요 쟁점, 문제점 및 요구 등을 중심으로 현 지원 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입양아동의 발달 및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해결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입양아동 양육 지원 요구에 부합하는 육아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입양문화를 확산하고 입양아동이 일반아동과 구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내용

첫째, 국내외 입양 비율, 입양아동 수 추이 등의 관련 통계 및 선행연구를 이용하여 입양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입양기관의 현황자료를 수합하여 분석한다. 이 때 「입양특례법」 시행 등의 사회적 이슈로 인한 변화를 함께 고찰한다.

둘째, 입양자격, 절차, 입양가정 지원 등 입양 전반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알아보고 그 변화를 고찰한다. 또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및 국외의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동향을 파악한다.

셋째, 입양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입양 시 자녀의 연령, 자녀의 성별, 입양자녀 이외의 친생자녀 유무 등의 자녀 특성, 입양결정 및 절차, 입양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 현 지원정책 수혜여부 및 도움 정도 등을 조사하여 국내입양가정의 실태 및 지원 요구를 수렴한다. 또한 입양가정을 통해 입양자녀 특성별로 다

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입양자녀 양육 시 어려움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그 외에도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전 아동보호, 입양부모-자녀 매칭, 입양가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과정 및 내용에 대해 검토한다.

넷째,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체계화되고 통합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입양아동의 특성에 따른 지원 요구의 차이를 반영하고, 입양가정, 입양기관 및 지자체 중심의 지원 간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 지원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 연구

첫째, 입양 및 입양가정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제공하는 국내외 입양통계 자료, 통계청의 입양 관련 지표 등을 활용하였다.

둘째, 중앙입양원의 역할 및 입양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양사업과 입양가정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입양기관 및 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셋째, 입양아동의 발달특성 및 입양가정 양육 현황 등을 다룬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입양홍보회와 중앙입양원을 통해 수행되어 온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를 비롯한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를 통해 입양가정 중재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를 살펴보았다.

넷째, 입양 및 입양가정 지원 관련 제도를 분석하였다. 현재 입양사업의 근거가 되는 「입양특례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과 정책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국외의 입양 관련 법제도와 입양가정 지원 정책에 관한 사례를 수합하여 동향을 파악하였다.

나. 입양부모 설문조사[1)]

입양가정 부모 2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1) 입양부모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에 대한 IRB 승인을 받음(KICCEIRB-2016-제08호).

입양기관 혹은 국내입양부모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자조모임을 통해 모집하며, 입양부모 모임 시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집하는 지필조사와 자조모임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웹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대상의 범위는 영유아 입양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하되 자녀 연령별 적응 과정 및 양육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부모까지 확장하였다. 각 자녀 연령대별 비교를 위해 <표Ⅰ-3-1>과 같이 300명을 목표로 표집을 설계하였으며, 총 27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다.

〈표 Ⅰ-3-1〉 설문조사 대상 수

자녀 연령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표본 수(계획)	75	75	75	75
조사 완료	91	68	89	24

조사 내용은 일반적 특성, 입양결정 및 절차, 입양자녀 양육경험, 입양가정 지원, 입양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한다.

〈표 Ⅰ-3-2〉 입양부모 설문조사 내용[2)]

구분	내용
일반적 특성	부모: 연령, 결혼상태, 학력, 취업상태, 종교유무, 가구소득 자녀: 형제순위, 입양여부, 연령, 성별, 장애유무, 입양 시 자녀 연령, 입양 전 보호기관, 향후 자녀 입양 및 출생 계획
입양결정 및 절차	입양경로, 입양진행기간, 입양결정요인, 입양방해요인, 입양진행 시 어려움, 입양진행 시 도움 받은 곳, 입양당시 자녀발달정도 등
입양자녀 양육	입양사실 공개여부 및 범위, 공개시기 및 이유, 입양사실로 인한 자녀의 어려움, 애착형성기간, 자녀의 행동 특성에 대한 인식, 양육행동, 양육부담, 힘들었던 점, 기뻤던 점, 자녀양육 정보 얻는 곳, 필요한 육아정보 등
입양가정 지원	입양 전 부모교육 여부, 유형, 도움정도, 부모교육 시 원하는 내용, 입양휴가 및 육아휴직 인식 및 수혜여부, 입양가정 지원 제도(양육수당, 의료급여, 심리치료지원, 장애아동보조금 및 의료비, 사후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혜여부, 만족정도, 필요성 정도, 사후서비스 참여 여부 및 만족정도 등

2) 선행연구와의 조사결과 비교를 위해 양육행동, 행복감은 이정림 외(2015)에서, 양육부담은 권미경 외(2015)에서, 육아정보 얻는 경로는 김은설 외(2016)에서, 입양부모 조건,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 등은 김유경·변미희·임성은(2010)에서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거나 참고하였음.

(표 Ⅰ-3-2 계속)

구분	내용
입양에 대한 인식	입양부모 조건, 적절한 입양사실 공개정도 및 공개시기, 친생부모와의 관계 및 해외입양에 대한 인식, 입양아동 지원에 대한 인식,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다. 입양부모 심층면담

입양기관 혹은 국내입양부모 자조모임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입양가정 39사례를 모집하여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3] 한 가구(사례) 당 부·모가 모두가 참여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참여하였다. 대상 모집 시 가능하면 서로 다른 입양기관이나 자조모임에서,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면담 참여자의 유형별 참여자 수는 <표Ⅰ-3-3>과 같다.

〈표 Ⅰ-3-3〉 심층면담 참여자 수

구분	입양자녀 특성		참여자 수(계획)		참여자 수(완료)	
			개별	집단	개별	집단
자녀 연령별	영유아기(만0-5세)	친생자녀 유	3	6	7	2
		친생자녀 무	3		2	
	아동기(초등학생)	친생자녀 유	3	6	5	6
		친생자녀 무	3		2	
	청소년기(중고등학생)	친생자녀 유	3	6	2	6
		친생자녀 무	3		-	
자녀 특성별	연장아동	1세 이상 입양	3	-	2	-
		3세 이상 입양	3		3	
	장애아동		6	-	2	-
합계			30명	18명	25명	14명

심층면담을 통한 조사 내용은 입양결정 및 절차, 입양자녀 양육 경험 및 지원에 관한 것이다(표 Ⅰ-3-4 참조). 자료 분석의 경우, 질적 연구방법론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귀납적 범주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면담을 실시한 뒤 녹취록을 작성하고, 면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반복하여 듣고 읽으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였다. 또한 녹취록을 가지고 의미단위-개념-하위범주-상위범주로 이어지는 범주화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수준에서 추상적인 수준

3) 심층면담은 연구진과 연구협력진(이현주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이 함께 실시하였음.

으로 입양부모들의 양육경험을 개념화하였다.

〈표 Ⅰ-3-4〉 입양부모 심층면담 내용

구분	내용
일반적 특성	자녀수, 연령, 성별, 입양여부, 입양 시 연령(월령) 등 가족구성원, 연령, 학력, 하는 일 등
입양결정 및 절차	입양동기 및 결정, 입양절차 진행, 입양 전 부모됨 준비, 입양 전 입양아동과의 관계, 친생부모 및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
입양자녀 양육	입양 후 가정의 변화, 입양사실 공개 여부, 입양자녀와 입양사실 다루기, 자녀양육 경험, 자녀양육과 관련된 도움 경험, 입양자녀의 적응, 친생부모와의 관계
입양가정 지원	가입한 자조모임이나 단체, 입양아동 지원 제도에 대한 의견, 입양에 대한 주변의 오해나 사회적 편견

라. 자문회의 및 간담회

첫째, 관련 선행연구를 수행한 학계 전문가 및 중앙입양원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면담 및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함으로써 입양아동 중심의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둘째, 입양기관과 사후관리서비스 담당 단체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입양사업이나 입양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파악하였다. 또한 입양절차 및 입양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양기관에서의 입양아동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정책실무자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입양정책의 현안을 다루고 정책 제언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표 Ⅰ-3-5〉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일시	참석자	자문 및 논의 내용
2016. 4	중앙입양원 실무진 2인	중앙입양원 역할 및 기능 입양절차 및 관련 제도
2016. 4	학계 전문가 2인	연구범위 및 방향 연구방법

(표 Ⅰ-3-5 계속)

일시	참석자	자문 및 논의 내용
2016. 4	현장 전문가 1인 (사후서비스 담당)	입양부모 자조모임 역할 및 기능 입양가정 지원
2016. 5	학계 전문가 1인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론 적용
2016. 5	입양기관 실무자 1인	입양기관 사업 개요 입양 진행 및 사후프로그램 입양제도 및 입양아동 지원
2016. 5	현장 전문가 1인 (사후서비스 담당)	센터 사업 개요 및 사후프로그램 입양제도 및 입양아동 지원
2016. 5	입양홍보회 실무진 1인 입양부모 2인	단체 사업 개요 및 프로그램 입양부모 자조모임 역할 및 기능 입양제도 및 입양아동 지원
2016. 6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2인	입양정책의 방향 및 현안 논의 연구방향 및 조사내용 의견 수렴
2016. 6	학계 전문가 2인 현장 전문가 4인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내용 (서면 검토)
2016. 7~8	입양기관 실무자 3인 (3회)	입양기관 사업 개요 입양 진행 및 사후프로그램 입양제도 및 입양아동 지원
2016. 7	입양가정 자조모임 대표 3인	입양부모 자조모임 역할 및 기능 입양제도 및 입양아동 지원
2016. 10	학계 전문가 2인	조사결과 시사점 향후 진행방향
2016. 10	입양기관 실무자 1인	입양기관 사업 개요 입양대상아동 보호 현장
2016. 10	입양가정 자조모임 대표 2인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2016. 12	학계 전문가 3인 (2회)	정책방안 및 연구결과확산

마. 결과보고 및 정책방안 마련 간담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총 11인(서면검토자 포함)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중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양아동을 위한 입양절차 및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4. 연구범위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Kadushin, 1980).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보장시설이나 입양기관에 의뢰된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입양, 즉 「입양특례법」에 근거한 입양을 연구범위로 삼았으며, 이에 「민법」상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따라 성립하는 입양은 제외한다.

〈표 Ⅰ-4-1〉 「민법」상 입양제도와 「입양특례법」상 입양제도 구분

구분	「민법」상 일반입양	「민법」상 친양자입양	「입양특례법」상 기관입양
근거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입양특례법」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단, 미성년자는 재판으로 성립)	재판으로 성립	가정법원의 허가
양자의 성·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종료
입양의 효력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외에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

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n.d.).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 표를 수정함.
자료: http://oneclick.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25&onhunqueSeq=2881에서 2016년 7월 1일 인출.

입양은 공개 여부 및 범위에 따라 비밀입양, 공개입양 그리고 개방입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밀입양은 입양부모가 입양된 자녀와 타인에게 입양사실을 숨기는 경우를 의미하며, 공개입양은 일차적으로는 입양된 자녀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입양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나 연락을 주고받거나, 정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국외의 경우 공개입양은 완전개방형의 입양을 의미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개입양이 단순히 입양사실을 외부에 알린다는 소극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정옥분·정순화·손화의·김경은, 2016: 285).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서 비밀, 공개 혹은 개방입양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례를 포함하여 입양가정의 특성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가능한 한 비밀입양 가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연구대상의 특성 상 소수의 비밀입양 사례만이 포함되었고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이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는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입양 후 입양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양육경험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와 더불어 입양 전에 입양아동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으며, 제도 및 절차상 입양아동의 발달을 돕거나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따라서 입양아동이 요보호아동으로서 입양대상아동이 된 시점[4] 그리고 입양부모가 입양을 결정하여 신청한 시점부터 부모-자녀 매칭이 이루어져서 입양이 된 이후까지의 전 과정이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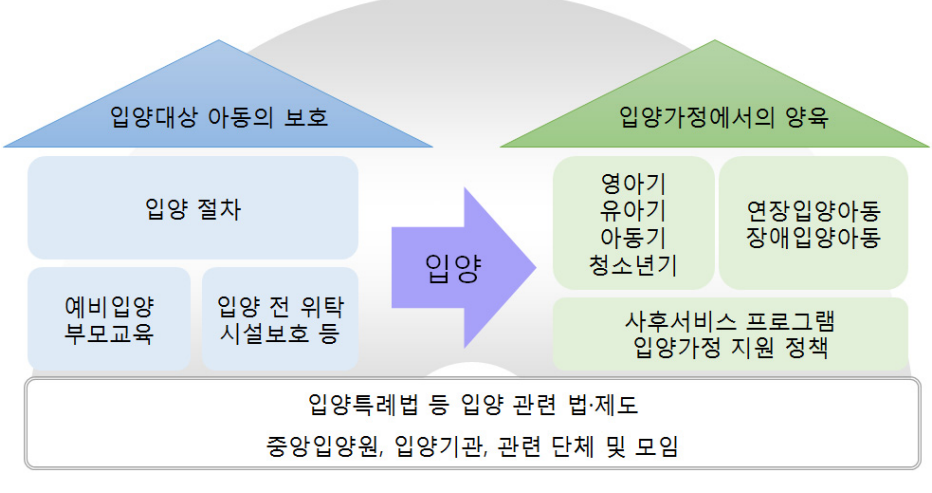

〔그림 Ⅰ-4-1〕 연구 범위

4) 단, 입양대상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은 출생신고, Baby Box 등 미혼모(부)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는 향후 4차년도 과제(그림 Ⅰ-1-1 참조)에서 다루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음.

Ⅱ. 입양 관련 현황

1. 입양 현황

가. 요보호아동 및 입양 발생 추이

1) 요보호아동 발생 추이

입양 현황에 앞서 입양대상아동이 되는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8,590명이었으나 그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을 알 수 있으며, 2015년에는 4,503명으로 집계되었다. 그 중 학대, 부모이혼, 빈곤, 실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요보호아동이 2,866명으로 가장 많고, 미혼모 아동 930명, 기아 321명 등이다. 또한 여아보다 남아의 수가 더 많다.

〈표 Ⅱ-1-1〉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2007-2015

단위: 명

구분	전체[1]	발생원인					성별	
		기아	미혼모(부) 아동	미아	비행가출 부랑아	학대, 부모이혼, 빈곤 등[2]	남	여
2007	8,861	305	2,417	37	748	5,354	4,786	4,075
2008	9,284	202	2,349	151	706	5,876	5,038	4,246
2009	9,028	222	3,070	35	707	4,994	4,999	4,029
2010	8,590	191	2,804	210	772	4,613	4,431	4,159
2011	7,483	218	2,515	81	741	3,928	4,043	3,440
2012	6,926	235	1,989	50	708	3,944	3,859	3,067
2013	6,020	285	1,534	21	512	3,668	3,257	2,763
2014	4,994	282	1,226	13	508	2,965	2,696	2,298
2015	4,503	321	930	26	360	2,866	2,374	2,129

주: 1) 총 요보호아동 발생 수에서 귀가 및 연고자 인도한 경우를 제외한 수임.
2) 학대, 부모빈곤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을 포함하는 수임.

자료: 1)통계청(2016. 5).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 내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3에서 2016년 5월 30일 인출; 2)보건복지부(2016c).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연도별).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에서 2016년 5월 30일 인출.

요보호아동은 원가정 복귀 이 외에 크게 시설 입소와 가정 보호로 구분되어 보호 조치된다. 매년 양육시설 등의 시설보호와 가정위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입양으로 조치된 아동은 2015년의 경우 239명이었다. 한편 입양 전 위탁 중인 아동은 376명으로(2015년 기준) 이는 입양 대기 중인 아동의 규모를 대략 알 수 있게 한다.[5)]

〈표 Ⅱ-1-2〉 요보호아동 조치 현황: 2007-2015

단위: 명

구분	시설 입소					가정 보호					계
	양육시설 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소계	소년소녀가장	입양	가정위탁	입양전위탁	소계	
2007		3,189	39	17	3,245	247	1,991	3,378		5,616	8,861
2008	2,997	1,261	39	667	4,964	178	1,304	2,838		4,320	9,284
2009	2,406	1,640	35	686	4,767	213	1,314	2,734		4,261	9,028
2010	2,445	1,751	23	623	4,842	231	1,393	2,124		3,748	8,590
2011	2,246	862	32	612	3,752	128	1,253	2,350		3,731	7,483
2012	2,272	676	25	775	3,748	117	772	2,289		3,178	6,926
2013	1,731	801	39	686	3,257	20	478	1,749	516	2,763	6,020
2014	1,818	566	10	506	2,900	13	393	1,300	388	2,094	4,994
2015	1,412	799	13	458	2,682	-	239	1,206	376	1,821	4,503

자료: 통계청(2016. 5).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 내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3에서 2016년 5월 30일 인출.

요보호아동 발생 대비 입양 조치 비율은 2015년 기준 현재 5.3%이나 2007년 23.0%, 2008년 14.1%, 2012년 11.1%, 그리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7.9% 정도로 최근 요보호아동의 수도 감소하였지만 입양 조치 비율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년 한 해 동안 입양조치가 1건도 일어나지 않은 지역도 있으며, 서울과 경기지역은 입양조치 비율이 4.9% 정도이지만 대구는 15.8%, 부산은 14.2%로 요보호아동의 발생이나 입양 수는 시도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표 Ⅱ-1-3 참조).

물론 입양대상아동은 부모가 동의하여 입양기관에 입양을 의뢰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거나,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5) 입양절차 진행 중에는 대상 아동의 약 80%를 입양 전 가정위탁의 형태로 보호하며, 특히 법원에 국내입양 허가 신청 후에는 예비입양부모와의 조기 애착형성을 위하여 예비입양부모가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5.7).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하므로(입양특례법 제9조) 요보호아동 전체가 입양대상아동은 아니다. 따라서 요보호아동 발생과 입양 조치 현황을 비교하여 입양 비율이 낮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 등 가정 보호 조치 비율이 시설 보호에 비해 낮은 현상은 "지역사회현장의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가정보호확대 종합지침 부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사업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현주, 2014: 60)이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입양은 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방법 중 원가정 보호 다음으로 최적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아동 보호에 있어 입양 비율이 낮은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표 II-1-3〉 시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대비 입양조치 비율: 2015

단위: 명, %

구분	요보호아동 발생 수	입양 수	비율
전국	4,503	239	5.3
서울	1,438	70	4.9
부산	254	36	14.2
대구	139	22	15.8
인천	230	31	13.5
광주	124	12	9.7
대전	99	3	3.0
울산	104	0	0.0
세종	9	0	0.0
경기	625	19	3.0
강원	260	9	3.5
충북	178	15	8.4
충남	177	6	3.4
전북	241	4	1.7
전남	245	3	1.2
경북	130	6	4.6
경남	200	1	0.5

주: 요보호아동 발생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입양 수로 집계되는 경우도 있어 지역에 따라 요보호아동 발생 수 대비 입양 수가 아닐 수 있음.

자료: 통계청(2016. 5).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 내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3에서 2016년 5월 30일 인출.

2) 입양 발생 추이

입양아동 중에는 미혼모(부)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5년 국내입양아동 683명 중에서 90.5%에 해당하는 618명이 미혼모(부) 아동이었으며, 유기 아동은 7.9%(54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1-4〉 입양 신청자 및 입양아동 유형: 국내

단위: 명

구분	입양 신청자	입양아동 유형					
		계	미혼모(부) 아동 (혼외자포함)	유기아동	빈곤가정 아동	한부모 가정	기타
2007	2,119	1,388	1,045	118	67	60	98
2008	1,897	1,306	1,056	86	97	34	33
2009	1,760	1,314	1,116	70	82	27	19
2010	1,733	1,462	1,290	26	73	27	26
2011	1,947	1,548	1,452	34	46	9	7
2012	1,599	1,125	1,048	19	34	7	17
2013	971	686	641	24	5	8	8
2014	991	637	578	28		31	
2015	-	683	618	54		11	

주: 1) 각해년도 1.1 ~ 12.31 기준임. 2) 2010년부터 분류명이 미혼모 아동에서 미혼모(부) 아동(혼외자포함), 시설아동에서 유기아동, 저소득층 가정에서 빈곤가정 아동, 결손가정에서 한부모 가정으로 변경되었음.

자료: 보건복지부(2008~2016a). 2007~2015 각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SEARCHKEY=TITLE&SEARCHVALUE=입양현황&page=1에서 2016년 3월 9일 인출, 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list.jsp?bcode=06_1에서 2016년 5월 30일 인출.

국내외 입양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입양신청자 수는 2007년에는 2,119명, 2010년에는 1,733명, 2013년에는 971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4년에는 991명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다(표 II-1-4 참조).

국내외 입양아동 수와 비율에 있어서 2008년에는 국내입양아는 1,306명(51.1%), 국외입양아는 1,250(48.9%)이었으며, 2014년에는 국내입양아 637명(54.4%), 국외입양아 535명(45.6%)으로 전반적으로 입양아동 수는 줄어들었고, 국내외 입양 비율은 국내입양이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에 국외입양 비율이 줄고 2014년에 다시 증가한 것은 '13년 하반기에서

야 법원의 국외입양허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일부 2014년으로 이월되어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5.8). 이를 감안하면 2006년까지는 국외입양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2007년부터는 국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의 비율이 더 높아지기 시작(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5.8)하였으며, 2011년 이후로는 국내입양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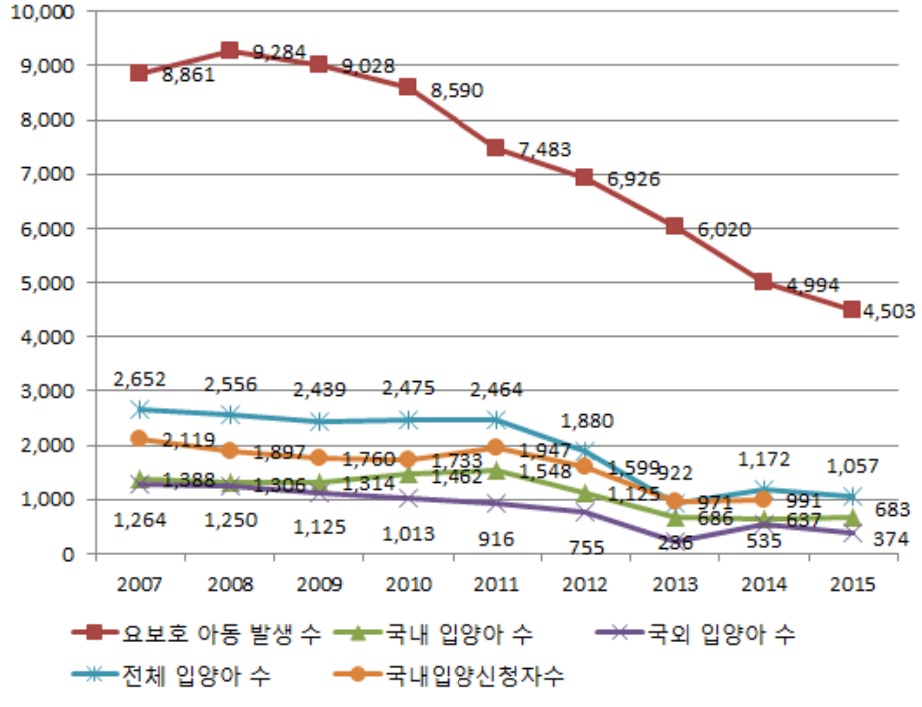

자료: 1)통계청(2016. 5).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 내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3에서 2016년 5월 30일 인출; 2)통계청(2015. 5). 국내 입양아 수 및 입양 비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8에서 2016년 2월 26일 인출; 3)보건복지부(2016a). 2015년 국내외 입양현황. 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list.jsp?bcode=06_1에서 2016년 5월 30일 인출.

〔그림 II-1-1〕 요보호 아동 발생 및 입양 신청자 수, 국내외 입양아 추이

한편 2015년 입양규모는 총 1,057명, 국내입양은 64.6%, 국외입양은 35.4%로 국내입양비율이 2014년(54.4%)에 비해서는 10% 가량 높아졌지만, 최근 3년(2012

년~2014년)의 평균(63.7%)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정도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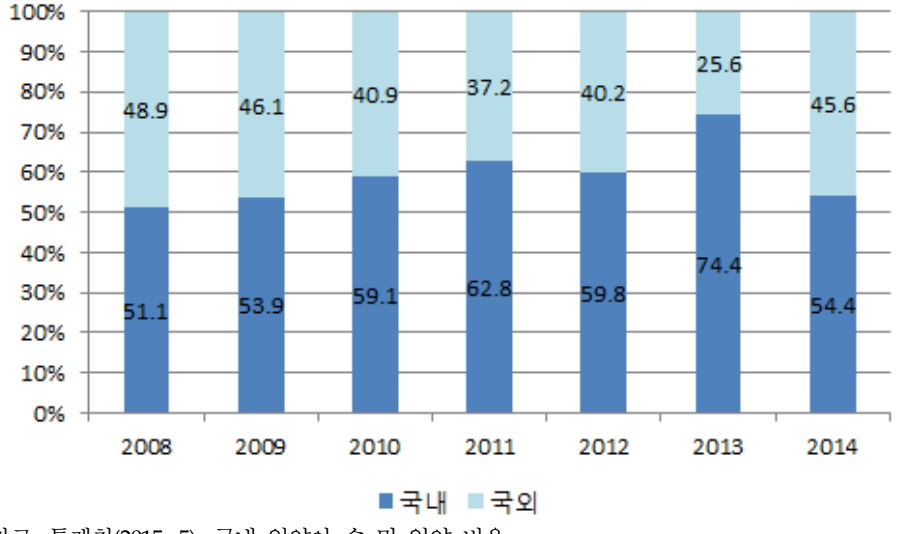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5. 5). 국내 입양아 수 및 입양 비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8에서 2016년 2월 26일 인출.

〔그림 Ⅱ-1-2〕 국내외 입양아동 비율

또한 법원허가제 도입 이후 입양신청 건수와 허가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신청자 수는 1,078명이며, 허가는 1,057명이다. 2013년 이후 전체 입양 신청 대비 법원 허가 비율은 약 92.8%이며, 국내입양은 94.4%이다. 이를 법원 통계로 살펴보면, <표 Ⅱ-1-6>과 같다.

〈표 Ⅱ-1-5〉 입양아동 법원 허가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국내		국외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13	1,185	922	768	686	417	236
2014	1,134	1,172	729	637	405	535
2015	1,078	1,057	629	683	449	374

주: 전년도 신청 건이 다음 해에 허가받기도 함. 연도별 신청건수 대비 허가건수는 아님.
자료: 보건복지부(2016a). 2015년 국내외 입양현황.
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list.jsp?bcode=06_1에서 2016년 5월 30일 인출.

〈표 II-1-6〉 요보호아동 국내외 입양에 관한 법원 통계

단위: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합계	112	33	1079	840	938	986	892	855
서울	45		770		646		603	
경기	23		41		75		97	
강원	8		24		9		5	
충청	6		34		18		24	
경상	22		140		119		103	
전라	7		59		55		56	
제주	1		11		16		4	

주: 통계자료에 입양에 관해서는 '미성년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건'과 '요보호아동 국내외 입양'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으며, 그 중 요보호아동 건수만 제시하였음.

자료: 법원행정처(2013). 사법연감(2012. 1 ~ 2012. 12), 제5장 통계 pp.848-845.
법원행정처(2014). 사법연감(2013. 1 ~ 2013. 12), 제5장 통계 pp.876-877.
법원행정처(2015). 사법연감(2014. 1 ~ 2014. 12), 제5장 통계 pp.862-864.
법원행정처(2016). 사법연감(2015. 1 ~ 2015. 12), 제5장 통계 pp.870-872.

나. 입양아동 및 입양부모 특성

먼저 국내입양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표 Ⅱ-1-7), 요보호아동 현황에서는 남아의 비율이 높았으나(표 Ⅱ-1-1 참조), 국내입양에 있어 여아 선호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2007년 남아 541명, 여아 847명, 2015년 남아 222명, 여아 461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2012년도 이후 입양아동의 연령은 점차 증가하였다.

국외입양 아동은 국내입양과 달리 남아의 수가 더 많다(표 Ⅱ-1-8). 2007년 남아 722명, 여아 542명이었으며, 2015년 남아 287명, 여아 87명이었다. 연령에 있어서는 2011년부터 1세~3세미만 아동의 비율이 더 높아져 2013년에는 대부분이 연령에 해당하였다. 최근 1세 미만 아동은 거의 국외입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약 5개월)동안 국내입양을 먼저 추진한 후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만 국외입양을 추진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국외입양에서 장애아동 수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59명으로 국내입양에서의 장애아동 수(2012년도 52명)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2007년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더 많은 수의 장애아동이 국외로 입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외입양에서 장애아동의 비율(2015년의 경우 26.5%)이 국내입양(3.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7〉 입양아동 특성(성별, 연령, 장애여부): 국내

단위: 명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남	여	3개월 미만	3개월~1세미만	1세~3세 미만	3세 이상	비장애	장애
2007	1,388	541	847	923	211	154	100	1,348	40
2008	1,306	469	837	920	184	102	100	1,277	29
2009	1,314	459	855	943	194	94	83	1,278	36
2010	1,462	479	983	1,063	287	57	55	1,415	47
2011	1,548	482	1,066	1,036	396	76	40	1,483	65
2012	1,125	410	715	749	260	94	22	1,073	52
2013	686	203	483	39	548	72	27	657	29
2014	637	223	414	20	398	167	52	614	23
2015	683	222	461	29	394	215	45	659	24

주: 각해년도 1.1 ~ 12.31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2008~2016a). 2007~2015 각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SEARCHKEY=TITLE&SEARCHVALUE=입양현황&page=1에서 2016년 3월 9일 인출, 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list.jsp?bcode=06_1에서 2016년 5월 30일 인출.

〈표 Ⅱ-1-8〉 입양아동 특성(성별, 연령, 장애여부): 국외

단위: 명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남	여	1세미만	1세~3세 미만	3세 이상	비장애	장애
2007	1,264	722	542	-	-	-	764	500
2008	1,250	773	477	-	-	-	1,126	124
2009	1,125	722	403	-	-	-	1,028	97
2010	1,013	675	338	713	295	5	808	205
2011	916	629	287	298	606	12	706	210
2012	755	590	165	33	713	9	398	59
2013	236	194	42	0	229	7	177	59
2014	535	438	97	2	464	69	368	167
2015	374	287	87	0	338	36	275	99

주: 각해년도 1.1 ~ 12.31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2008~2016a). 2007~2015 각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SEARCHKEY=TITLE&SEARCHVALUE=입양현황&page=1에서 2016년 3월 9일 인출, 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list.jsp?bcode=06_1에서 2016년 5월 30일 인출.

다음으로 입양부모 특성을 살펴보았다.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외에 친자가 있는 경우는 2013년에 223명, 없는 경우는 463명으로 친자가 없는 가정에서 입양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소득수준에 있어서 2010년도까지는 월평균 소득 이하 집단이 가장 많은 경향을 보였으나 2011년부터는 감소하여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부터는 월평균 소득 120% 초과 집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Ⅱ-1-9〉 입양부모 특성(친자유무, 소득)

단위: 명

구분	전체	친자유무		소득				
		유	무	최저 생계비 이하	차상위 120% 이하	월평균 소득 이하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월평균 소득 120% 초과
2007	1,388	557	831	20	308	446	369	245
2008	1,306	471	835	6	102	410	304	484
2009	1,314	453	861	10	72	481	298	453
2010	1,462	553	909	13	88	544	322	495
2011	1,548	665	883	10	66	556	270	646
2012	1,125	427	698	1	23	296	195	613
2013	686	223	463	8	9	172	101	396

주: 1) 각해년도 1.1 ~ 12.31 기준임.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2008~2014). 2007~2013 각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SEARCHKEY=TITLE&SEARCHVALUE=입양현황&page=1에서 2016년 3월 9일 인출.

다. 입양에 대한 견해

19세 이상 성인 대상 조사에서 입양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입양 의사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잘 모르겠음, 출산이 어려운 경우 적극 고려 예정, 여건 허락 시 입양하고 싶음 순으로 나타났다.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2010년에 비해 2012년도부터 다소 감소했으나, 2014년 조사결과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0.2%로 증가하고, 여건 허락 시 입양하겠단 응답은 15.6%로 감소했다.

〈표 II-1-10〉 입양에 대한 견해(19세 이상 인구)

단위: %

내용	출산이 어려운 경우 적극 고려해보겠음	자녀유무 상관없이 여건 허락 시 입양하고 싶음	입양하고 싶은 생각 없음	잘 모르겠음	계
2006	20.0	16.7	35.3	27.9	100.0
2008	17.4	15.3	35.1	32.3	100.0
2010	17.0	16.3	35.2	31.5	100.0
2012	23.6	18.9	32.5	25.0	100.0
2014	21.6	15.6	32.6	30.2	100.0

주: 19세 이상
자료: 통계청(2006, 2008, 2010, 2012, 2014). 보건·사회·복지-사회-사회조사-가족.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jsClick에서 2016년 3월 9일 인출.

위 질문에서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이 과반수이다. 그 외에는 경제적 부담이 약 20% 정도이었으며, 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다는 응답도 7~9% 정도로 나타났다.

〈표 II-1-11〉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내용	입양 필요성 못 느낌	경제적 부담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으므로	입양자녀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기타	계
2006	58.1	24.6	4.6	7.4	4.3	1.0	100.0
2008	62.1	20.1	5.8	8.0	3.0	1.0	100.0
2010	57.9	22.7	5.6	7.5	4.6	1.7	100.0
2012	56.8	21.3	5.7	8.2	6.6	1.4	100.0
2014	57.2	19.3	6.3	9.0	6.3	2.0	100.0

주: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 대상임.
자료: 통계청(2006, 2008, 2010, 2012, 2014). 보건·사회·복지-사회-사회조사-가족.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jsClick에서 2016년 3월 9일 인출.

한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이삼식 외, 2015)에 따르면,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는 문항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은 9.0~15.0% 정도이며, 대체로 찬성한다는 비율은 43.0~48.0% 정도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비율이 기혼여성보다는 미혼남성·여성에

게서 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1-12〉 입양자녀에 대한 기혼여성, 미혼남녀의 태도

단위: %(명)

내용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기혼여성	9.9	43.2	36.8	10.2	100.0(11,006)
미혼남성	13.1	46.8	30.8	9.2	100.0(1,096)
미혼여성	14.6	47.9	30.1	7.5	100.0(1,287)

주: 1) 기혼여성은 15~49세, 미혼남성·여성은 20~44세에 해당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p.84 <표 4-12>, pp.379-380 <표 10-26> 중 해당 내용으로 구성함.

가족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가구형태에 대한 미혼남녀 대상 조사에서 결혼한 부부와 입양자녀로 이루어진 가구형태가 가족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95.4%, 여성 97.9%로 대부분이었다.

〈표 II-1-13〉 가족 형태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중복응답)

단위: %(명)

내용	결혼한 부부+ 입양자녀	동거 커플	동거커플 +자녀	미혼부/ 모+자녀	동성 부부	동성부부 +입양 자녀	비혈연 가구	(수)
미혼남성	95.4	31.5	59.8	62.0	16.6	23.4	7.1	(1,096)
미혼여성	97.9	26.3	57.7	71.0	32.8	40.4	9.6	(1,287)

주: 1) 미혼남성·여성은 20~44세에 해당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pp.363-364 <표 10-17> 중 해당 내용으로 구성함.

2. 입양기관 및 사업 현황

중앙입양원은 「입양특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6년도 기준 전국 10곳의 입양기관에서는 입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입양을 알선하고 있다. 이에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의 기능 및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중앙입양원

중앙입양원은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관련 업무를 지원·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2009년 중앙입양정보원으로 개원한 후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시행으로 현재의 중앙입양원으로 설립되었다(중앙입양원, n.d.b). 중앙입양원의 주요 업무(입양특례법 제26조 제4항)는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다.

1)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6)]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중앙입양원의 주요 업무 중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에 해당한다.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2009년 구축 이후 2011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입양기관에 흩어져 있던 입양에 관한 정보들을 중앙에서 통합·관리하여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수행하며, 입양대상아동과 예비양부모 정보를 공유하여 입양아동과 가정의 매칭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One-Stop 통계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입양업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입양업무를 체계화·전문화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입양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중앙입양원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표 Ⅱ-2-1>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Ⅱ-2-1〉 중앙입양원에 제공하는 정보

구분	내용
입양아동 정보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출생일시 및 장소, 성별, 장애 또는 질환의 유무와 종류
친생부모 정보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입양 사유와 입양의 동의에 관한 사항 및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6) 중앙입양원(n.d.c).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https://www.kadoption.or.kr/system/system_guide.jsp에서 2016년 6월 16일 인출.

(표 Ⅱ-2-1 계속)

구분	내용
입양부모 정보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의 성명·생년월일·국적·주소 및 연락처
입양일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확정된 시기 및 입양신고일(국외입양의 경우 출국일)
기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자료: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www.law.go.kr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2)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입양원에서는 지금까지 입양정책 및 제도의 개발과 개선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가 수행되어 발간되었다. 발간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입양 활성화 및 사후관리서비스 도입과 확대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예비입양부모교육의 개선을 위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서 현 입양가정 지원제도와 이슈들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종단연구를 통해 입양아동 및 가정의 적응과 발달을 살펴봄으로써 입양가정 지원에 있어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Ⅱ-2-2〉 중앙입양원 발간 연구물의 주요 내용

제목	발간연도	주요 내용
입양사후서비스 체계화 방안 연구	2011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후서비스의 체계화를 위해 사후서비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함.
해외입양 줄이기 종합대책 연구	2011	국내에서 요보호여성 및 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아동의 가정 중심 보호를 강화하여 최선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함.
국내입양 사후관리 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	2013	국내 입양가정 대상 사후서비스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후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서비스 모형을 개발함.
위기 입양인을 위한 정신심리치료 접근방안	2014	위기 국외입양인을 위한 정신심리치료 모형을 개발하고 이들을 관리감독하고 사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함.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 개발 연구	2015	법적의무사항으로 각 입양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예비입양부모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함.

(표 Ⅱ-2-2 계속)

제목	발간연도	주요 내용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2012년 4차 양적 조사 결과 보고서	2012~2015	- 입양아동의 성장과 발달수준을 파악하고, 그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 - 입양가정 내 형제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지침을 제시함. - 발달지체 및 임상범주에 속한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특별한 욕구가 있는 입양아동과 가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제안함.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입양가정 내 형제관계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발달지체 및 입상범주 입양아동에 대한 사례연구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2015년 5차 양적 조사 결과 보고서		

자료: 1)박미정·이미선·고혜연·유선정(2011). 입양사후서비스 체계화 방안 연구.
2)김유경·임성은(2011). 해외입양 줄이기 종합대책 연구.
3)변미희·최운선·안재진·권지성(2012).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2012년 4차 양적 조사 결과 보고서; 4)권지성·안재진·최운선(2013).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입양가정 내 형제관계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5)안재진 외(2013). 국내입양 사후관리 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
6)박영수·김향은·정애리(2014). 위기입양인을 위한 정신심리치료 접근방안.
7)변미희·안재진·권지성·최운선(2014).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발달지체 및 임상범주 입양아동에 대한 사례연구; 8)안재진·권지성·변미희·최운선(2015).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2015년 5차 양적 조사 결과 보고서.
9)변미희·안재진·강지현(2015a). 예비입양부모 교육 교재 개발 연구.

중앙입양원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입양부모 조사방법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입양부모 조사방법의 실태를 파악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국외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헤이그 협약 비준 이후 국내입양 및 국제입양(수령국)을 위한 입양부모 조사방법 매뉴얼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중앙입양원, 2016.5.30.).

3) 사후관리(서비스)사업 운영

입양인 사후서비스 사업은 처음에는 국외입양인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과거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사업은 4개 부처(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관광부 및 행정안전부)가 추진해 왔으며,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진행해 왔다(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6: 64). 그러다가 2012년부터 국내외 입양인 사

후서비스 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내입양인 대상의 사후서비스 사업도 예산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6: 64). 2014년부터는 중앙입양원을 통한 민간위탁 사업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표 Ⅱ-2-3>과 같다.

〈표 Ⅱ-2-3〉 중앙입양원 사후관리사업 운영현황

단위: 개소, 개, 명

구분	국내입양인 사후관리사업				국외입양인 사후관리사업						계
	정서심리지원	입양가족지원	행사지원	기타	모국방문	모국어연수	모국생활지원	행사지원방문	방문입양인일시거주시설	기타	
참가기관수	6	4	3	0	7	3	3	2	2	2	14
프로그램수	8	7	3	0	8	3	3	2	2	4	40
참가자수	554	695	295	0	370	136	-	214	540	84	2,888

주: 2014년 현황임.
자료: 중앙입양원(n.d.a). 사후관리사업 운영현황.
https://www.kadoption.or.kr/after/after_mean_3.jsp에서 2016년 6월 16일 인출.

사후서비스 위탁사업은 국내외 입양인 지원 단체, 입양기관 등 입양인 대상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민간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준에 의해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6: 64). 선정 방향은 사업 수혜 대상 및 목적이 명확한 사업, 체계화, 특성화 및 전문화된 사업, 그리고 사업비 책정이 합리적이고 집행계획이 적정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6: 66). 특히 국내입양인 대상 사업의 경우,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선정하며(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6: 66), 입양가족 정서심리 지원, 입양가족 교육, 행사지원 등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표 Ⅱ-2-4〉 국내입양인 대상 사후관리(서비스)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입양가족 정서심리 지원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에게 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 입양아동이 생애주기별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고, 입양가정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움 - 입양부모가 자녀와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모로서 역량을 강화하도로 지원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입양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입양가족 교육	- 입양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입양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 - 가족교육을 통해,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 - 입양과 관련된 정보나 의견 교류 - 입양아동 또한 자신의 입양 사실을 건강하게 인지하고,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에 도움 - 양육정보·공개입양 여부·입양 관련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로 가족교육 실시
행사지원	- 입양부모 및 입양아동이 공통의 활동을 통해 단합할 수 있는 사업 - 입양가족의 단합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며 입양가족캠프, 가족운동회, 송년의 밤, 체험활동 등으로 진행 - 입양가족은 행사를 참여함으로서 함께 만나고 활동할 수 있으며, 입양가족 간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활용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2016). 2016 입양실무매뉴얼. p.69 내용 재구성

국내 입양가정 대상 사후서비스의 사례로 ○○센터의 '찾아가는 입양부모학교'와 ◇◇센터의 '문지방 상담' 안내문을 <표 Ⅱ-2-5>, <그림 Ⅱ-2-1>에 제시하였다. 찾아가는 입양부모학교의 경우 각 지역의 자조모임에서 원하는 경우 강사가 찾아가는 형태로 2016년 하반기에 대전, 부산, 밀양 등지에서 진행되었다.

〈표 Ⅱ-2-5〉 부모교육 사례: 찾아가는 입양부모학교

시간	순서	내용
10:00~10:30 (30분)	환영합니다!	편안한 Tea 타임 참여가정 인사나누기
10:30~11:10 (40분)	1교시	주제 강의: 공개입양 키워드 (정체성/입양삼자/상실과 애도)

(표 Ⅱ-2-5 계속)

시간	순서	내용
11:10~12:00 (50분)	2교시	소그룹 토의(40분) 및 발표(10분)
12:00~1:00 (60분)	쉬는 시간	소그룹 원끼리 친해지는 시간
1:00~1:45 (45분)	3교시	주제 강의: 입양, 약점에서 강점으로
1:45~2:00 (15분)	쉬는 시간	졸지 않도록 커피한잔!
2:00~2:40 (40분)	4교시	우리 아이의 뿌리 찾기 영화<비밀과 거짓말> 감상(10분) 후 소그룹 토의(30분)
2:40~3:10 (30분)	5교시	주제 강의: 입양말하기 (부모자신/이웃/가족/입양자녀에게)
3:10~3:25 (15분)	쉬는 시간	교제와 나눔
3:25~4:10 (45분)	6교시	주제 강의: 입양자녀의 속마음
4:10~5:00 (50분)	7교시	입양말하기 실전 소그룹토의, 역할극, 질문카드에 답해보기
5:00~5:20 (20분)	마무리	소감나누기 & 입양마주이야기 노트 증정

자료: 건강한 입양가정 지원센터(2016.9.5). 찾아가는 입양부모 학교. http://cafe.naver.com/guncen.cafe?iframe_url=%2FCafeApplyCheck.nhn%3Fclubid%3D28021795%26email%3D%26alreadyMemberPopup%3Dfalse에서 2016년 10월 28일 인출.

문지방 상담의 경우 입양가정 대상 전문상담사인 문지방 상담사를 양성하고, 상담을 신청한 입양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문지방 상담사 양성은 일반 심리상담 전문가에게는 입양가정에 대한 지식을, 입양부모 등 입양 관련자에게는 심리상담 전문 지식을 교육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 상담 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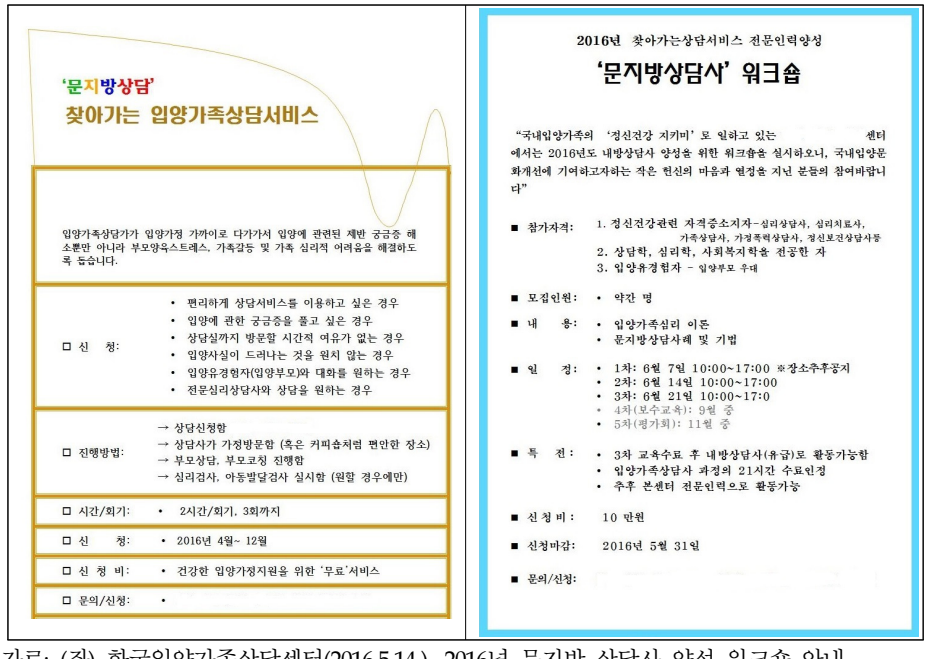

'문지방상담'
찾아가는 입양가족상담서비스

입양가족상담가가 입양가정 가까이로 다가가서 입양에 관련된 제반 궁금증 해소뿐만 아니라 부모양육스트레스, 가족갈등 및 가족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 신 청:	• 편리하게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 입양에 관한 궁금증을 풀고 싶은 경우 • 상담실까지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입양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 입양유경험자(입양부모)와 대화를 원하는 경우 • 전문심리상담사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 진행방법:	→ 상담신청함 → 상담사가 가정방문함 (혹은 커피숍처럼 편안한 장소) → 부모상담, 부모코칭 진행함 → 심리검사, 아동발달검사 실시함 (원할 경우에만)
□ 시간/회기:	• 2시간/회기, 3회까지
□ 신 청:	• 2016년 4월~ 12월
□ 신 청 비:	• 건강한 입양가정지원을 위한 '무료'서비스
□ 문의/신청:	•

2016년 찾아가는상담서비스 전문인력양성

'문지방상담사' 워크숍

"국내입양가족의 '정신건강 지키미'로 일하고 있는 센터에서는 2016년도 내방상담사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오니, 국내입양문화개선에 기여하고자하는 작은 헌신의 마음과 열정을 지닌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참가자격:	1. 정신건강관련 자격증소지자-심리상담사, 심리치료사, 가족상담사, 가정폭력상담사, 정신보건상담사등 2. 상담학, 심리학,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자 3. 입양유경험자 - 입양부모 우대
■ 모집인원:	• 약간 명
■ 내 용:	• 입양가족심리 이론 • 문지방상담사례 및 기법
■ 일 정:	• 1차: 6월 7일 10:00~17:00 ※장소추후공지 • 2차: 6월 14일 10:00~17:00 • 3차: 6월 21일 10:00~17:0 • 4차(보수교육): 9월 중 • 5차(평가회): 11월 중
■ 특 전:	• 3차 교육수료 후 내방상담사(유급)로 활동가능함 • 입양가족상담사 과정의 21시간 수료인정 • 추후 본센터 전문인력으로 활동가능
■ 신 청 비:	10 만원
■ 신청마감:	2016년 5월 31일
■ 문의/신청:	

자료: (좌)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2016.5.14.). 2016년 문지방 상담사 양성 워크숍 안내. http://www.kccaf1.org/index.php?document_srl=19660에서 2016년 11월 2일 인출.
(우)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2016.5.13.). 2016년 문지방 상담사 양성 워크숍 안내. http://www.kccaf1.org/index.php?document_srl=19639에서 2016년 11월 2일 인출.

〔그림 II-2-1〕 상담 사례: 문지방 상담사 워크숍 안내문

나. 입양기관[7)]

입양기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기관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5개 기관과 시도 허가를 받은 5개 기관이 있다. 그 중 국외입양기관은 3개 기관만 해당한다.

7) 입양기관의 역할은 입양특례법 제20조~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시행규칙 제16조~제25조와 입양실무매뉴얼(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6: 93-94), 변화하는 입양환경에서 입양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변미희·안재진·신혜령, 2015b: 32-34)의 내용으로 재구성함.

〈표 II-2-6〉 입양기관 유형 및 분포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시도 허가기관
전국	10(19)	5(19)	5
서울	5	5	-
부산	(3)	(3)	-
대구	(3)	(3)	-
인천	(2)	(2)	-
광주	1(2)	(2)	1
대전	(2)	(2)	-
울산	-	-	-
세종	-	-	-
경기	(3)	(3)	-
강원	1(1)	(1)	1
충북	1	-	1
충남	1	-	1
전북	(1)	(1)	-
제주	1	-	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지부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중 3개 기관(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전국 각지에 지부를 운영 중에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2016). 2016 입양실무매뉴얼. p.231.

입양기관은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입양신청 절차, 입양부모(가정) 조사, 예비입양부모 교육 실시, 입양부모와 아동 매칭, 입양 전 아동 보호, 입양 후 사후서비스 실시 등을 모두 입양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입양특례법」을 근거로 하여 입양실무매뉴얼(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6: 93-94)과 변미희·안재진·신혜령(2015b: 32-34)이 제시하고 있는 입양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현재 입양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 측면에서 입양기관의 역할은 첫째, 입양 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입양특례법 제21조 제1항).

둘째,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대상 아동의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로 인해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며, 친권자가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

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2조).

셋째, 양자가 될 아동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동을 인계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이 필요한 아동이므로 그 아동의 가족관계를 등록·창설하여야 한다(제23조).

넷째,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 입양기관은 이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4조).

다섯째, 입양대상 아동은 입양 전에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며, 위탁가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제공한다.

이처럼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해 주요 입양기관에서는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위탁모(입양 전 위탁가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Ⅱ-2-7>에서 △△입양기관 보호시설의 평균 17개월 아이들의 하루일과를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 보호소에서는 생후 36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으며, 생후 6개월 이후에는 요일별로 신체·감각운동, 음악, 책 읽기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표 Ⅱ-2-7〉 입양대상아동 보호 사례: 영아일시보호소 17개월반 하루일과

시간	일과
08:30-10:00	샤워 / 옷 갈아입기
10:00-10:30	엄마와 인사하기
11:00-12:30	동요 들으면서 자유놀이
12:30-13:00	점심
13:00-13:30	세수 및 양치
13:30-15:00	장난감 탐색
15:00-15:30	간식
15:30-16:30	목욕시간
16:30-17:30	동요 들으면서 율동
17:30-18:00	저녁
19:00-20:00	신체마사지 / 그림책보기 & 동화 구연 듣기
21:30 이후	꿈나라

자료: △△입양기관(영아보호시설) 내부 자료임.

2) 입양부모 가정조사 및 교육

첫째, 입양기관은 「입양특례법」 제10조를 기준으로 예비입양부모가 양친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입양특례법 제21조 제2항).

둘째, 예비입양부모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양친이 될 자에게 1)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2)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3) 자녀의 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요 입양기관에서 격월 혹은 분기별로 1회 8시간의 예비입양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Ⅱ-2-8>과 같다. 또한 <표 Ⅱ-2-9>에서 ○○입양기관의 부모교육 하루일정표를 사례로 제시하였다.

〈표 Ⅱ-2-8〉 예비입양부모교육의 주요 내용

구분	교육 내용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입양의 이해 및 효력, 입양특례법의 이해, 입양과정 및 절차, 입양진행절차 및 구비서류, 입양동의의 철회, 입양 취소 및 파양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의료급여(1종) 지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의료비 지원, 출산·입양 추가 소득공제,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기타지원(입양축하금, 입양휴가, 시도별 지원) 안내
자녀의 양육방법	영유아 발달(연령별 아동발달), 부모됨의 의미와 역할, 입양부모됨의 의미와 역할, 부모자녀 애착형성방법,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 입양부모의 심리적 특성, 입양가족과 입양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양한 입양관련 이슈들, 양육시설아동 입양의 이해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입양사후서비스, 입양 직후 적응을 돕는 가정조사, 입양가정 모임(자조집단) 및 행사, 부모-아동 애착증진 프로그램, 내방상담, 입양정보공개제도
기타	입양부모의 입양사례, 유자녀 가정 사례, 불임가정 사례, 입양인(청소년, 성인)의 사례, 입양관련 추천도서, 전국 입양기관 주소록

자료: 변미희 외(2015a).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 개발 연구. p.49 <표 Ⅳ-10> 재구성

〈표 Ⅱ-2-9〉 예비입양부모교육 사례

시 간	제 목	내 용
09:30~09:40	접 수	접수등록(1F 현관)
09:40:09:50	영상물 상영	기관안내 및 입양절차
09:50~10:00	일정안내	기관시설이용 및 일정안내
10:00~10:10	인 사	기관대표 인사
10:10~10:50	입양의 요건과 절차 (강의)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입양가족 지원 정보 입양후서비스 지원안내
10:50~11:00	휴식	
11:00~11:40	생부모 정보 (강의)	생부모 정보 제공
11:40~12:00	휴식	
12:00~12:30	사례 발표	입양가족사례 1
12:30~13:00		입양가족사례 2
13:00~13:40	점심시간	
13:40~14:00	영상물 상영	다큐멘터리 '입양'
14:00~14:50	자녀양육방법 (강의)	부모-아동 애착형성
14:50~15:00	휴식	
15:00~15:30	사례 발표	입양인 사례 1
15:30~16:00		입양인 사례 2
16:00~16:50	소그룹활동	그룹 별 토론
16:50~17:00	휴식	
17:00~17:40	입양부모준비 (강의)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 발달 입양가족 생활주기 및 부모 준비
17:40~18:00	질의응답	소그룹활동에 대한 Q & A
18:00~18:30	설문지 작성 교육수료 배부	설문지 작성, 교육수료증 배부

자료: 성가정입양원(2016. 8. 17.). 제86회 입양 전 부모교육 안내. http://www.holyfcac.or.kr/ 공지사항 218번에서 2016년 8월 31일 인출.

3)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 제공

입양기관은 국내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며, 국외입양인 경우에도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적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후관리는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입양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가 포함된다(보건복지

부, 2016b: 23). 이러한 사후관리는 입양 후 1년 동안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하여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입양가정에의 적응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6: 42).

또한 입양 후 1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각 입양기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16 입양실무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양기관 주요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은 <표 Ⅱ-2-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입양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나누어지며, 자조모임 등 입양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표 Ⅱ-2-10〉 입양기관 주요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구분	내용
입양부모교육	- 자녀양육에 대한 주제별 강의 - 부모참여형 교육 - 라이프 및 셀프 코칭 - 집단교육 및 상담
입양아동 치료 지원	- 심리치료 검사 - 집단상담 - 심리·신체발달 치료비 지원
입양아동 자아성장 및 발달 지원	- 집단 예술치료 - 미술·놀이치료 - 연기, 노래 등을 통한 자기감정 표현 - 공연 - 유리드믹스(음악을 통한 영아의 사물인지와 오감발달, 부모-자녀 간 정서적 교류, 애착관계 극대화)
자조모임	- 입양가족 간 친목 도모 및 정보 교류 - 지역별 자조모임 운영 - 멘토, 멘티 형성으로 현실적인 지지관계 형성 - 가족캠프, 청소년캠프, 야유회 등
사후상담 및 사후방문	- 입양 삼자간의 내·외적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입양 후 가족과 아동의 애착형성 및 아동의 신체, 심리, 정서적 적응 상태 파악 등을 위한 가정방문 실시
사례관리	- 문제를 가진 국내입양인 및 입양가족을 위해 사례관리 실시
친생부모 찾기 및 기타 사후서비스	- 친생부모 찾기 및 입양확인서 등의 서류업무 - 입양배경정보상담 등 사후상담서비스
친생부모 관리	- 입양 후 친생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복귀 지원 - 개별상담, 전문상담, 수시전화상담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2016). 2016 입양실무매뉴얼. p.45 <표 11>

4) 기록 관리 및 보고

입양기관은 기록 관리 및 보고의 역할을 지닌다. 첫째, 입양이 성립된 후에 입양기관은 입양아동과 관련한 기록 등을 입양부모에게 건네주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입양특례법 제21조 제3항). 둘째,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3. 선행연구 고찰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특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입양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있어 비입양아동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들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고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과 같이 특수한 요구를 가진 입양아동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입양부모나 입양아동 대상 중재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그 효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가. 입양아동의 발달과 적응

일반적으로 입양아동은 비입양아동에 비해 성장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입양되기 전까지의 양육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데 따른 발달 저하와 입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적응 상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 나누어진다(변미희·권지성·안재진·최운선, 2006: 1).

그렇지만 입양아동이 비입양아동에 비해 여러 발달영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겪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서로 상이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안재진·권지성·변미희·최운선, 2009). 입양아동이 비입양아동에 비해 발달상의 문제를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발달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종단연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국내 연구로는 한국입양홍보회와 중앙입양원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수행 중인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달주기별로 발달과 적응

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아발달,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 등은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거나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 반면 문제행동 중 외현화 문제행동, 주의 집중, 규칙위반, 반항행동, 품행문제 등에 있어서는 입양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안재진·권지성 외, 2015).

이와 유사한 국외에서 수행된 몇몇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입양아동과 비입양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결과를 메타분석한 연구에서는 입양아동과 비입양아동간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Juffer, & van IJzendoorn, 2007), 입양아동의 자아정체성이나 인지, 사회성에 있어서는 일반아동과 발달상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Benson, Sharma, & Roehlkepartain, 1994; Castle, 2000; Zill, 1985). 그러나 국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입양아동이 비입양아동보다 행동문제, 성격문제, 비행, 학교적응, 약물문제, 외현화문제 등에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였다(Brodzinsky, Schechter, Braff, & Singer, 1984; Brodzinsky, Hitt & Smith, 1993).

이에 따라 학자들은 입양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이는 입양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입양부모 및 가정 특성, 입양부모의 양육 관련 특성, 입양 관련 경험으로 정리할 수 있다(안재진·권지성 외, 2015). 우선 입양아동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 입양 시 나이, 입양 전 어떠한 환경에서 지냈는지 등으로, 성별은 발달 영역이나 문제행동 유형별로 남녀아에 있어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안재진·권지성 외, 2015), 입양 당시의 연령이 높을수록 적응 상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입양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종교, 지역사회 특성 등 입양가정의 특성 역시 입양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양육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입양아동에게서 역시 적응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부모의 기대수준이 입양아동에게 부담을 줘 입양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McDonald, Propp, & Murphy, 2001)도 보고되고 있다(안재진·권지성 외, 2015: 16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입양아동의 심리상담 및 정신과적 임상치료

등의 비율이 높은 것을 입양에 적극적인 부모의 직업이나 교육수준 특성으로 설명하기도 해(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83), 이러한 변인을 다룰 때에는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부모의 연령이나 종교는 부모됨에 대한 태도나 양육 기술, 문제해결능력과 관련되며, 종교나 지역사회 특성 등은 가용 가능한 인적 지원 체계와 관련되어 입양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관여한다.

일반아동 양육과 마찬가지로 입양부모의 양육행동, 입양부모와 입양아동 간 의사소통 등 입양부모의 양육관련 특성 역시 입양아동의 발달과 적응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입양아동의 경우 입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입양 관련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아동 적응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박미정, 2009; Stein, & Hoopes, 1985)은 주목할 만하다. 공개 혹은 개방입양인지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아동의 입양관련 경험 역시 입양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안재진·권지성 외, 2015).

한편 입양가족의 적응에는 입양아동과 가족의 특성과 같은 미시적 체계 외에 입양기관, 정부 정책, 사회 등 거시적 차원에서의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Rycus, Freundlich, Hughes, Keefer와 Oakes(2006)은 입양을 방해하는 사회적 요인을 밝힌 바 있다(변미희 외, 2014: 4에서 재인용). 첫 번째는 기관 체계 차원에서의 방해물로, 정부의 사법체계와 입양기관에 대한 것을 의미하며, 비일관적·비효과적 정책 또는 정책 부재, 입양기관의 인력 부족, 기관 간 연계체계 부족 등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전문화된 서비스 및 재원 부족으로, 사후 관리 차원에서의 지원과 서비스 체계가 부족해 입양 가족이 적응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전문적 지식 부족으로, 입양가족이 갖는 특수한 욕구를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입양 역량'(Luckock & Hart, 2005)을 가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태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입양부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체계가 갖춰지지 못함을 의미한다(변미희 외, 2014: 4-5에서 재인용).

나. 입양아동의 발달주기별 양육특성

입양아동이 12개월 이전에 입양되었다 하더라도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입양됨'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입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아동은 발달상의 위기를 겪게 된다. 6세를 전후하여 자신이 주변의 또래들과 다르게 출

산이 아닌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가족이 되었고 지금의 부모가 아닌 다른 생부모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지위에 대해 혼란과 불안을 표현하게 된다(권지성·변미희·안재진·최운선, 2008). 또한 사회관계가 확장됨에 따라 입양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편견을 경험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생물학적 부모를 비롯한 근원에 대한 궁금증 등이 더해져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아동의 생애주기별 발달특성과 이에 대한 부모의 양육 특성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입양아동의 적응과 발달은 입양아동의 성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주기에서 달성하는 발달과업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영아기에 입양된 경우에는 주양육자인 입양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경우 발달상 문제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88, Stams, Juffer, & van IJzendoorn, 2002). 아직 입양아동의 인지능력이 부모가 입양 사실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 의미에 대해 이해할 만큼 발달하지 못하고, 자신이 다른 아동들과 달리 다른 방식으로 부모-자녀관계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일반아동과의 양육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입양부모의 경우 일반부모에 비해 연령이 높고 결혼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 안정적이고 스트레스 대처에 뛰어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우가 많으며, 자녀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경험한 심리적 고통과 교육 등이 부모 역할 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아동이 상징적 사고가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는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고 아동이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게 된다. 우리 가족이 다른 가족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이루었으며, 아동 본인에게는 현재의 부모 외에 생물학적 부모가 있는 등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때 부모가 아동에게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가 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89). 그러나 이 시기 아동이 자신의 입양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피상적인 경우가 다수여서 단순히 가족을 이루는 방법에는 출산과 입양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 의미는 잘 알지 못해 자신의 입양사실을 말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후 성장에 따라 입양에 대한 의미를 확대하므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Brodzinsky,

Schechter, & Henig, 1992).

입양아동이 학령기에 이르면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고 사회인지, 문제해결력 등이 발달함에 따라 출산과 번식 등의 의미를 알게 되고 생물학적 관계와 입양 관계의 차이를 이해한다. 또한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입양으로 지금의 가족을 얻었지만 동시에 다른 가족을 잃었다는 사실, 즉 상실감을 갖게 된다(안재진 역, 2004, 권지성 외, 2008: 78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실에는 생물학적 가족의 상실, 입양이라는 낙인으로 인한 지위 상실, 유전적 연계성의 상실, 입양 가족 내에서 안정감의 상실, 정체성의 상실 등이 포함된다(안재진 역, 2004, 권지성 외, 2008: 78에서 재인용).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은 자신의 근원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가 자신을 포기했다는 사실에 지금의 입양부모도 자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반항을 하기도 한다(변미희 외, 2015a). 더욱이 사회관계의 확대로 입양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편견에 부딪히기도 하는 등 이 시기 입양아동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보이는 아동의 혼란과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의문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의 입양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90).

청소년기의 입양아동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입양으로 형성된 자신의 가족의 지위를 생물학적, 성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법적인 면 등 다양한 면에서 복합적으로 사고하게 된다(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91).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은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인 특성을 양부모와 다른 가족구성원과 비교하기도 하고 생물학적 부모에게 물려받은 특성을 닮고 싶어하거나 닮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기도 하는 등 개별화의 과정에서 복합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이윤로·이미선 역, 2007: 142).

이러한 과정에서 입양청소년은 입양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발달과업에 당면하게 된다. Grotevant, Dunbar, Kohler와 Esau(2000)은 입양인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입양아 자신의 심리내적 측면, 가족체계 내에서의 의미,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의 내면화로 구성된다고 정리하였으며, 이는 곧 여러 주변상황과 입양아동 자신과의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형성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부모는 입양자녀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혼란을 이해하고, 입양과 관련된 과업을 잘 다루도록 아동의 입장에서 그들의 정서적 성숙 정도와 알고자 하는 동기, 친생부모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92).

입양자녀 발달시기별 입양부모가 갖게 되는 고민과 과제들을 종합하면 <표 Ⅱ-3-1>과 같다.

〈표 Ⅱ-3-1〉 자녀 발달시기별 입양부모의 과제

시기	내용
영아기 (만0-2세)	- 입양부모는 자녀양육을 위한 역할모델 찾기가 힘들다. - 부모로서의 자격 및 적절성에 자신감이 결여된다. - 가족과 사회의 지지가 부족하다. - 입양자녀와 임신 중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 입양자녀를 빼앗기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다.
유아기 (만3-5세)	- 자녀에게 입양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 입양사실을 자녀에게 전하는 시기와 이야기할 때의 태도가 중요하다. - 입양아동은 입양의 복합성을 학령기가 되어서 이해한다. - 입양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아동기 (만6-12세)	- 입양자녀가 입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상실을 느낄 때, 그의 애도를 돕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 입양자녀가 애도하는 것은 대처노력이며, 문제행동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 입양자녀에게 입양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한 사전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 - 입양자녀와 입양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한 걸림돌을 극복해야 한다.
청소년기 (만13-19세)	- 청소년기는 정체감 형성, 성적 호기심 증가, 타인관계 관계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 사춘기 자녀의 독립성 증가는 입양부모에게 상실감을 준다. - 입양부모는 입양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가정환경을 창출할 수 있다. - 입양부모는 입양자녀와 입양에 대한 이야기 상대가 되어줄 수 있다.
성인기 (만19세 이상)	- 성인이 된 입양자녀는 다시 거부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다. - 성인 입양자녀는 친생부모를 찾으려 한다. - 성인자녀의 친생부모 찾기에 대한 노력은 입양부모에 대한 거부가 아니다.

자료: 배태순(2013). 입양 성공의 요건. pp.116-177 내용으로 재구성함.

다. 특별한 요구를 지닌 입양아동의 양육

앞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입양 당시의 연령이 입양 이후 아동의 발달과 적응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1세[8] 이후의 연장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장애아동 역시 장애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뿐 아니라 장애가 유기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입양한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 양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부터는 연장입양아동과 입양장애아동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연장입양아동과 양육

1세 이후 입양된 연장아동들은 그 이전에 입양된 아동에 비해 애착 형성 등 입양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갖거나, 발달수준이 낮거나,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Brodzinsky, & Brodzinsky, 1991; Jones, 1997; Levy & Orlans, 2000; Tommie & Pauline, 2001; Smith & Brodzinsky, 2002; 최운선·안재진·변미희·권지성, 2008; 안재진 외, 2009; 정익중·권지성·민성혜·신혜원, 2010: 57에서 재인용).

최운선 등(2008)은 생후 12개월을 기점으로 이전에 입양된 아동과 이후 입양된 아동 간의 적응상의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했으며, Barth와 Berry(1988)의 연구에서는 입양 당시 연령이 높은 아동에게서 파양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입양 전의 환경은 방임이나 학대, 파양 경험 등으로, 이전 시설 혹은 가정에서 경험한 주양육자와의 부정적인 경험이 입양부모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Berry & Barth, 1989: 222).

변미희 외(2006)의 연구에서는 영아입양아동과 연장입양아동 간에 발달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문제행동의 모든 하위 척도에서 연장입양아동의 평균점수가 영아입양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임상집단 아동의 수도 대부분의 척도에서 연장입양집단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변미희 외,

---

8) 연장입양아동의 연령 기준은 1세 혹은 3세 등으로 학자나 나라마다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행연구(권지성·정익중·민성혜·신혜원, 2012)를 따라 1세를 기준으로 함.

2006).

정익중 외(2010)의 연구에서는 연장입양 가족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적응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예측하지 못한 수준의 어려움과 난관, 문제점을 도출하여 연장입양 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과 실천 지침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연장입양아동의 적응 문제는 입양전의 부적절한 양육환경(변미희 외, 2006)과 애착 상의 문제로 해석되는데(신혜원·정익중·민성혜·권지성, 2011), 부모 또는 주양육자와의 애착이 생후 1년 이내에 형성됨에 따라 그 이후에 입양된 연장입양아동의 경우 안정애착 형성의 기회를 잃어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입양아동 애착에 관한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생후 1년 이전에 입양아동은 애착안정성에 있어 비입양아동과 차이가 없으나, 생후 1년 이후에 입양된 아동은 낮은 수준의 애착 안정성을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van den Dries, Juffer, van IJzendoorn, & Bakermans-Kranenburg, 2009).

한편 권지성 등(2012)은 연장입양아동에 관한 그간의 연구가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계로 보고, 연장입양아동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입양됨의 의미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입양됨의 의미를 어느 순간 정립하는 신생아 입양아동과 달리, 연장입양아동은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그리고 치열하게" 정립하며, 그 과정에서 입양됨의 의미가 변화되기도 한다고 하였다(권지성 외, 2012).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연장입양아동의 경우 입양 후 가정에 적응할 수 있는 완충기제가 필요하고,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입양아동 스스로가 입양과 관련한 어려움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족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권지성 외, 2012).

2) 장애아동 입양과 양육

국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입양이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장애아동 입양은 여전히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입양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장애 관련 제반 복지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이 더해져 장애아동 입양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김가득·유정숙, 2010). 입양 후에도 아동의 장애가 입양 시 연령과 함께 파양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Rosenthal, 1993) 장애가 입양가정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내 장애아동 입양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장애입양아동에 대한 연구 역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내 연구로는 김진선(2007), 김가득·유정숙(2010), 박현정·김순규(2012)의 연구가 전부이다.

먼저, 김진선(2007)은 장애입양아동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 욕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아동양육 지원서비스가 부족하고, 아동발달과 교육의 문제, 건강과 의료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식적, 그리고 다른 입양부모, 장애아동 부모 등 비공식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들이 실제로 받고 있는 지지자원은 배우자와 자녀로 각 가정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필요로 하는 사회적지지 역시 도구적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밝혔다(김진선, 2007).

김가득·유정숙(2010)의 연구는 입양 후에 장애가 드러난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들의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가 나타났을 때의 부모의 당혹스러움과 절망,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장애입양아동 지원에 대한 사회기반제도의 부재, 극복 과정과 조기개입서비스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도출해 이들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밝혔다(김가득·유정숙, 2010).

박현정과 김순규(2012)는 우리나라 장애아동 보호가 가정보다는 시설보호에 집중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장애아동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가정보호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 국가 차원의 지원, 인력충원 및 장애아동 전문교육, 홍보 및 입양·위탁가정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 장애입양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일반아동 입양과 비교하여 장애아동 입양 과정의 어려움(강은숙, 2000)과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정맹진, 2002) 결과 등이 보고되고 있다(박현정·김순규, 2012: 11에서 재인용).

국외에서는 장애입양아동에 대한 연구가 오랜 기간 다양하게 연구되어져 왔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인식이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에서도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함에 있어 적절한 서비스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등(Groze, 1996; McDonald et al., 2001; 김가득·유정숙, 2010: 86에서 재인용) 장애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이 수요와 필요에 비해서는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입양한 부모는 비공식적인 자원을 이용해 도움을 얻고 있으며 의료, 교육, 정신보건 측면

의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Kramer, & Houston,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비해 국외에서는 입양 전·후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Kramer, & Houston, 1998), 입양부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지지가 자녀 양육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밝힌 연구결과(Rosenthal, 1993)도 보고되고 있어 국내 장애아동 입양 지원 제도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라. 입양부모 및 아동 대상 중재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효과

입양으로 형성되는 부모-자녀 관계는 출산으로 형성되는 생물학적 관계와 달라 자녀양육에 있어 입양 가정만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정옥분·정순화, 2016: 218). 이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의 반대로 겪게 되는 갈등과 자신감 저하 등의 심리적 어려움, 주변 입양부모가 적은 데 따른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 부족과 역할모델 부재(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288) 등에 기인한다. 불임 등과 관련된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입양을 할 경우 불안정한 심리상태나 우울 등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양육정보는 각종 서적, 인터넷, 부모나 지인, 또한 자신의 경험 등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 반해 입양부모의 경우 주변에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지인이 없고 입양자녀의 양육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 따라 양질의 양육행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입양관련 단체나 입양기관 등은 입양을 준비하거나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입양부모가 입양 후 어려움이나 걱정거리에 대해 도움을 받는 대상자는 다른 입양부모인 경우가 48.2%로 압도적으로 많게 응답되는 등(김유경 외, 2010), 이러한 중재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입양모의 온정적 양육수준을 높게 인지한 입양아동의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나고(박미정, 2009), 입양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유연성이라는 양육역량을 매개로하여 영향을 주었으며(안재진·변미희·권지성·최운선, 2015), 입양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나는 등(권지성 외, 2008) 입양부모의 양육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보고되는 만큼 양육에 대한 중재와 개입은 입양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지역사회나 학교, 입양단체 등에서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중재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는데, 몇 가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6개월 입양아동을 가진 130 가족을 대상으로 비디오 피드백과 도서 등을 이용한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에서(Juffer, 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2005)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어머니의 민감성이 증가하고 12개월에 애착을 측정한 결과 불안정 애착집단에 더 적게 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Baker, Biringen, Meyer Parsons와 Schneider(2015)의 연구에서 1.5세~5세 영유아와 그들의 주양육자 15쌍을 대상으로 애착에 관한 온라인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문제행동이 낮고 애착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인 3-8세의 입양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강화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비록 문제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양육 유능성이 높게 보고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ker et al, 2015).

Ⅲ. 입양 및 입양가정 지원 제도 동향

1.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변화와 주요 내용

가. 입양 관련 법제의 변화[9)]

1) 입양특례법

우리나라에서 입양에 관하여 최초로 입법화된 법률은 1961년에 제정한 「고아입양특례법」(법률 제731호, 1961.9.30. 제정·시행)이다. 동법은 당시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고아들을 외국에 입양 보내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에서는 양친이 되기 위해 외국인으로서 본국법에 의해 양친이 될 수 있고,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악질이 없어야 하고, 인권유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양자에 대해 교육과 보호에 있어서 그 지역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상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서약과 이에 대한 보증이 있도록 하였다(제3조). 다만, 양친이 이러한 입양자격요건에 위반된 경우에는 파양, 취소 등의 절차가 아닌 양친의 본국에 적절한 다른 가정에서의 입양을 알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그쳤다(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아입양특례법(법률 제731호) 제정이유).

이후 「고아입양특례법」은 입양업무를 담당하는 입양알선기관(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고아입양에 대한 감독사무를 가정법원으로 하는 등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치게 되지만, 불우아동의 복리 실현에 미흡하다는 비판에 따라 1976년에 폐지되고,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양특례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1976년에 제정된 「입양특례법」(법률 제2977호, 1976.12.31. 제정, 1977.1.31. 시행)은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아동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동법에 따라 양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아동복리시설 등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로서 보호

---

9) 관련 법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아동 또는 그 친생부모 등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호시설에 보호를 의뢰한 아동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법률 제2977호) 제정이유). 입양알선기관의 범위도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정하였고, 입양알선기관이 입양을 위해 입양될 아동의 성명, 사진 또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없도록 하여 입양대상인 요보호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법률 제2977호) 제정이유). 반면 국내외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양알선기관이 입양절차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입양절차를 간소화시킨 부분도 있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법률 제2977호) 제정이유).

한편 정부는 한 때 '해외입양금지' 정책과 국내입양 실적에 따라 국외입양을 할당해주는 '해외입양쿼터제'를 실시하였으나, 1981년 '보건복지부분 제5차 계획'에서 이민확대 및 민간외교 차원에서 국외입양을 전면 개방하면서 동 정책들은 철회되었다(이은정, 2014: 12). 그러나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여전히 국외입양을 하는 '고아수출국'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에 정부는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으로 선회하였고, 1996년 이후 장애아와 혼혈아를 제외한 국외입양은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곧 철회하는 등 정부의 국외입양 정책은 혼란을 거듭하였다(박미정, 2014: 23).

1995년 정부는 입양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입양특례법」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4913호, 1995. 1. 5. 전부개정, 1996.1.6. 시행)으로 제명변경과 함께 전부개정하게 된다. 동법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입양아동 대상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모국방문사업 지원 명문화)하고, 양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과 입양 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박미정, 2014: 23). 2000년대 이후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양에 대한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지원,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비용지원과 각종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2005년에는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하고, 입양아동의 파양을 줄이기 위해 입양취소 청구의 소의 제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다. 그러나 동법에 따른 입양은 「민법」상 일반입양과 동일하게 당사자의 합의와 신고만으로 성립하고, 입양의 효과도 일반 양자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김상용, 2009: 219; 장병주,

2013: 503).

이에 정부는 “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하는 국가 입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법률 제11007호, 2011.8.4. 전부개정, 2012.8.5. 시행)으로 변경하고, 전부개정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법률 제11007호) 개정이유). 즉, ‘입양을 촉진하는 정책’보다는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입양은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여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의 출생일부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동 법률은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을 명문화하여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법률 제11007호) 개정이유).

	친생부모 입양동의	양부모 결연	입양의 성립	입양의 효과
종전	제한 없음	입양기관의 양부모에 대한 가정조사	입양신고 (시군구)	명시적 규정 없음
변경	입양숙려제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 한 입양동의만 허용)	양부모 자격심사 강화 (양친될 자에 대한 아동학대·성폭력 등 범죄경력 조회, 입양전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	입양허가 (가정법원) ↓ 가족관계등록 신고	입양아동에게 친양자 지위 부여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3.9). 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 p.5.

〔그림 Ⅲ-1-1〕현행 「입양특례법」 개정 전후 국내입양절차

한편 「입양특례법」은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한 관찰, 입양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정보 제공 등의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입양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이에 2015년 5월에 법을 개정하여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5년 12월 대통령령을 개

정하여 “국외입양 사후관리의 내용에는 입양아동의 신체 발달, 정서 발달 및 양친과의 유대관계 등 입양 후 입양아동에 관한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외입양 사후관리의 방법에는 한국 입양아동에 특화된 사후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45호) 개정이유).

2) 민법

「민법」상 입양제도는 일반입양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로 구분되는데,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민법」상 친양자입양제도를 따르고 있다(입양특례법 제14조). 친양자입양제도는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민법」(법률 제7427호, 2005.3.31. 개정·시행)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즉,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이 성립하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지만, 「민법」상 일반입양제도에 따라 종전(친생부모)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았다(민법 제882조의2). 그러나 「민법」상 친양자제도를 따르는 경우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하며,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하게 되었다(제908조의3).

한편 「민법」상 일반입양의 경우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은 시·읍·면의 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였는데, 이로 인해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는 사람 등도 손쉽게 입양을 할 수 있어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2012년에 법을 개정하여(법률 제11300호, 2012.2.10. 개정, 2013.7.1. 시행) 일반입양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파양은 재판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오랜 공동생활을 통해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된 재혼 가정의 경우 연령 제한으로 인해 친양자 입양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다. 그 밖에도 “부모가 입양동의를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생겨나자 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법률 제11300호) 개정이유).

3) 기타 관련 법률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2005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호주제가 폐지되자,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체할 가족관계 등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 5월에 제정되고, 2008년 1월에 시행되었다. 동법에서는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다만,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제정이유).

그러나 입양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록됨으로써 입양사실이 쉽게 드러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에 다시 법을 개정하여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생부모 및 양부모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여 입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832호) 제정이유).

한편 2016년 5월에는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개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는 한부모가정, 이혼·입양 경력자 등을 위해 "현재의 신분관계만 표시하는 일반증명서와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표시하는 상세증명서로" 구분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5.19). 기존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은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된다(제15조). 그 밖에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여 불법입양을 방지하도록 하였다.[10]

---

10)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4항은 출생신고를 할 때 의사, 조산사 외에도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류를 인정하였고, 그 밖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영아를 매매한 후 친인척 등을 통한 인우보증제도를 통해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영아를 불법 입양하는 사건이 발생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5.19). 이에 동법을 개정하여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서면으로 출생사실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출생신고를 인정하도록 함.

나)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2012년 「입양특례법」의 시행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모든 국내외 입양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양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 규칙은 국내입양 및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사건의 관할에 관한 사항(제2조)과 입양허가 청구사건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제3조)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양육환경조사에 대한 사항(제4조), 파양청구(제6조), 입양기관에 대한 통지사항(제10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나. 현행 입양특례법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양자가 될 자격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법에서 말하는 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하는데(제2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그림 Ⅲ-1-2 참조).

〈표 Ⅲ-1-1〉 「입양특례법」상 양자가 될 자격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
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자료: 입양특례법 제9조, www.law.go.kr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한편 동법에 따라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표 Ⅲ-1-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일반입양제도 또는 친양자입양제도를 따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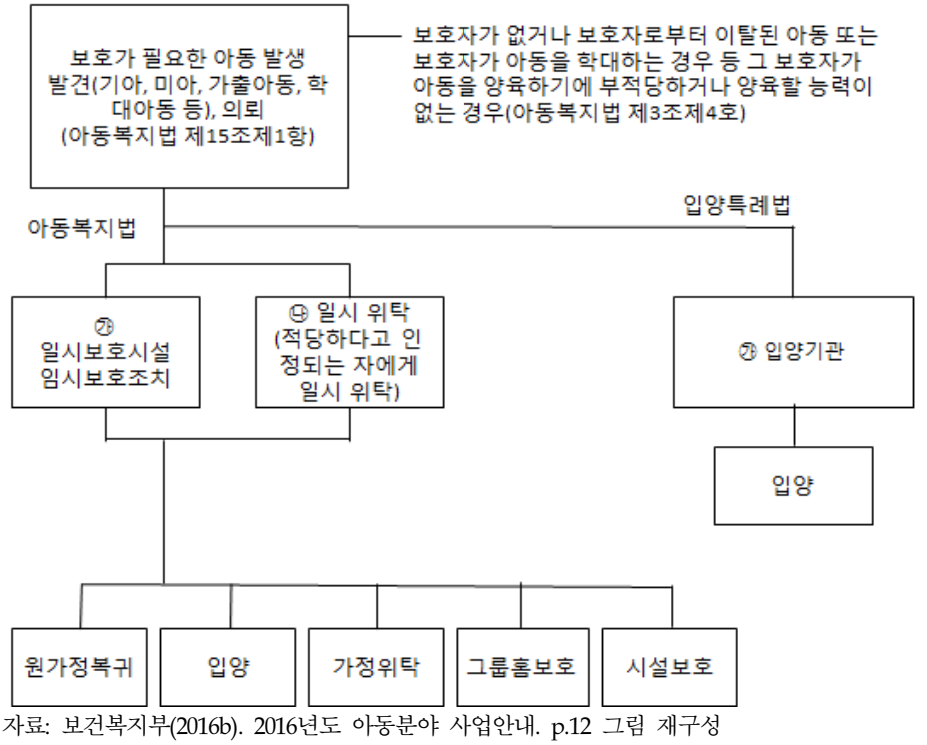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6b). 2016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p.12 그림 재구성

〔그림 Ⅲ-1-2〕 요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2) 국내입양 우선 추진과 국외입양의 감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국내입양을 추진했음에도 국내에서 양친이 될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제7조). 그 밖에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제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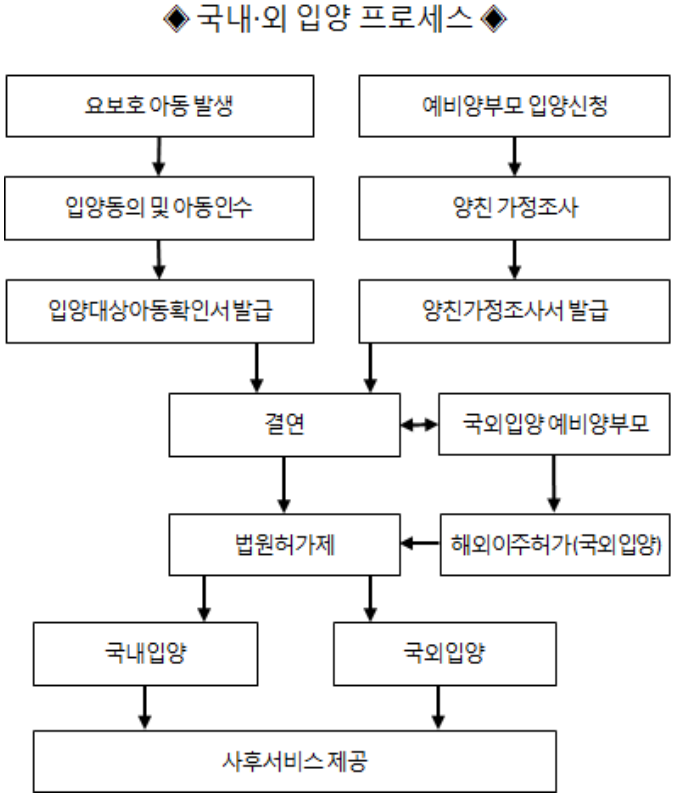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6b). 2016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p.19 그림 재구성

〔그림 III-1-3〕 국내·외 입양 프로세스

3) 양친이 될 자격의 강화

양친이 되기 위해서는 ①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며, ②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고, ③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하며, ④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 ⑤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5세 이

상 45세 미만)이어야 하는 등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요건 중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며 추가된 것이며, 입양 성립 전 교육을 이수할 것도 신설된 내용으로서 전반적으로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양부모의 자격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표 III-1-2〉 양부모 사전교육의 내용

1.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2.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3. 자녀의 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자료: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www.law.go.kr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4) 입양허가제 및 친양자 지위 인정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입양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와 신고에 의해 성립하였고, 국가는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어떠한 후견적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을 입양을 하는 경우 입양동의서, 양친교육이수증명서, 양친가정조사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등의 서류(표 III-1-3 참조)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가정법원에 입양을 청구한 후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입양은 성립한다"(김상용, 2012.7.23).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아동은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되며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제14조, 제15조; 민법 제908조의3). 즉, 입양아동은 친생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는 종전의 법이 일반양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양자는 양친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던 것과 다르다.

〈표 Ⅲ-1-3〉 가정법원 입양허가에 필요한 서류

구분	준비서류	비고
공통	- 입양허가신청서, 신청관련사항목록	
친생부모	- 입양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1통	국외입양과 동일함
입양대상 아동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1통	
입양부모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양친교육이수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양친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기타 가정법원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 양친가정조사서의 경우, 각 기재사항을 입증할 서류(최종 학력증명서, 약물중독·알코올중독 검사내용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신용조회, 재산관계서류, 범죄수사경력 조회, 심리검사서 등) - 양친가정조사서 조사자(사회복지사)의 소속과 자격에 관한 서류 첨부(자격증 등) - 양친될 사람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비공개) - 양친될 사람의 진술서와 그를 뒷받침할 증빙서류 - 친생부모의 의견서(인적사항, 주소지, 연락처) ※ 양부모, 친생부모를 대상으로 한 입양관련 교육 및 상담은 상담자, 상담기간, 방법과 그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그와 관련된 절차안내를 받은 내용, 입양결정의 동기, 경위 등의 자세한 내용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2016). 2016 입양실무매뉴얼. p.40 <표 9>

5) 입양동의 관련: 입양숙려제[11)]

종전의 법에서는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자녀의 출생 전이나 직후에 입양을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출산 전이나 출산 직후의 입양동의는 친생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을 받아 들여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했다(제13조 제1항). 이 일주일동안 입양기관은 친생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

11) 입양특례법 제12조, 제13조, 제22조 및 개정 「입양특례법」의 특징(김상용, 2012.7.23)의 내용으로 재구성함.

여야 한다(동조 제3항). 따라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한 입양동의는 무효가 된다.

한편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할 때 친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로써 친권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친권의 임의포기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법체계와 모순된다"는 문제가 있었다(김상용, 2012.7.23.). 또한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면서 입양기관에 자녀를 맡길 때 친권이 소멸한다면, 부모가 며칠 후 입양결정을 후회하여 자녀를 찾아오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미 친권이 소멸한 상태여서 자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김상용, 2012.7.23.).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여 친생부모가 자녀를 입양기관에 인도한 때에는 친권행사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22조 제2항). 친권의 행사가 정지되면 즉,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을 인도받은 후에는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동조 제1항). 그러나 친생부모는 가정법원의 허가 전까지는 언제든지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제12조 제5항), 이로써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2조 제2항 단서).

"결과적으로 친생부모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입양 결정을 번복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의 기간을 입양숙려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법이 이러한 제도를 새로 도입한 이유는 친생부모의 자기결정권(부모 스스로 자녀 양육 혹은 입양 여부를 숙고한 한 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존중하고 원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김상용, 2012.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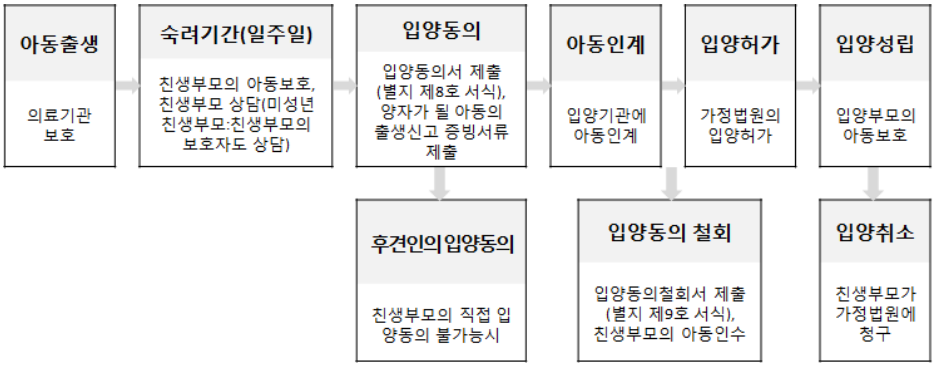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2016). 2016 입양실무매뉴얼. p.26 [그림 2]

〔그림 Ⅲ-1-4〕 입양동의 및 입양성립 과정

6) 입양기관의 의무

입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현행법은 국내외 입양을 하는 입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국내입양만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20조 제1항). 입양기관은 앞서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입양알선 시 입양부모에 대한 조사, 입양부모에게 교육 제공,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입양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보를 중앙입양원에 제공,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해 입양업무 기록 영구보존 등의 의무를 지닌다(제21조).

또한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제20조 제4항). 보수교육의 내용은 <표 Ⅲ-1-4>와 같다.

〈표 Ⅲ-1-4〉 입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보수교육의 내용

1.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2. 입양아동의 현황과 심리적 특성
3.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상담적 접근
4. 입양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동향
5. 입양부모 및 입양가정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 보수교육 시간은 입양기관의 장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함.

자료: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www.law.go.kr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7) 중앙입양원의 설립

2012년 「입양특례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한 중앙입양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제26조 제1항). 이에 따라 중앙입양원은 ①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②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③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④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한다(제26조 제4항).

8) 입양정보의 공개[12)]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상당수는 미혼모라는 점에서 그 동안 입양을 비밀로 하는 경우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있었다. 즉, 친생부모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생부모의 익명성과 입양을 비밀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친생부모의 비밀보장은 자신의 친생부모를 알고 싶어 하는 양자(입양아동)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된다"(김상용, 2012.7.23.). 특히, 국외로 입양된 아동이 성년이 되어 입양기관에 친생부모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은 양자가 된 사람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이러한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제36조 제2항).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동조 제2항 단서), 이는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장(사생활 보호)과 양자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라는 두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김상용, 2012.7.23.).

9) 입양가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이에 따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입양가정 지원의 상세한 내용은 <표 Ⅲ-1-5>와 같다.

〈표 Ⅲ-1-5〉 입양가정 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액
입양알선 비용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가정 ※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입양알선비용 일괄 청구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12) 입양특례법 제36조 및 개정 「입양특례법」의 특징(김상용, 2012.7.23.)의 내용으로 재구성함.

(표 Ⅲ-1-5 계속)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액
양육수당		만16세전까지	월 15만원/월
입양아동 의료급여		만18세전까지	의료급여 1종
입양아동 심리치료지원		만18세전까지	월20만원 한도/월
입양장애아동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만18세 전까지)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장애 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월627천원/인
		2.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월551천원/인
		3.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의료비	만18세전까지	연간 260만원 한도
사후서비스		입양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 및 상담 제공	

주: 입양알선비용은 ①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②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③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④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⑤ 사후관리비를 말함(보건복지부(2016b), 아동분야 사업안내1. pp.28-29).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5. 8).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붙임 4. 입양 관련 통계를 수정·보완하였음.

다. 입양특례법의 의의와 개선과제

2011년 전부개정되고,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은 "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원가정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정책의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법률 제11007호) 개정이유). 이를 위해 가정법원 허가제, 원가정 지원 및 입양숙려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입양인에게 입양정보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입양기관은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한 관찰, 입양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법률 제13322호)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입양아동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입양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입양 전 가정위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이로 인해 입양기관마다 입양아동을 케어하고 있는 시스템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입양기관마다 가정위탁 봉사자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 및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정비하여 국가도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양을 전제로 하는 가정위탁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나기 이전이라도 결연 이후에는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동이 낯을 가리기 이전, 양부모와 빨리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위탁(시험양육, 시험위탁 등)에 대해서도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입양기관에 따라서는 혹시 모를 사고의 우려로 인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나기까지 시설에서 지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입양 전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가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동이 어떠한 입양기관으로 보내지는지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입양기관에 대한 입양수수료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 입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1명이 입양될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로 270만원을 지원받고 있을 뿐, 그 외의 지원은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해당 입양수수료는 입양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로부터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경을 하지 않는 이상 다음연도까지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입양 전 어떠한 지원서비스를 받았는가도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입양기관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알선 수수료뿐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라.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13)]

현재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467호)'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466호)'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첫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467호)은 헤이그협약 이행을 위해 국제입양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정되는 국제입양에 관

13) 2016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개정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해 담음.

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여 국내입양에 대해서는 입양특례법에, 국제입양에 대해서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안 제1조). 또한, 입양절차나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의 신청 및 권한을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안 제8조).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권익을 고려하여 아동과 양부모가 결연될 수 있도록 입양결연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안 제11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이나 사후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고 매년 그 업무수행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한다(안 제25조 및 제26조).

둘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466호)은 현행법상 국제입양에 대해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절차를 통일시키고, 헤이그협약에서 제시하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제입양제도 전반에 대해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주소지가 속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아동의 국제입양을 진행하고, 아동의 가정환경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안 제9조), 외국으로의 입양 시 양부모는 수령국 중앙당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에 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아동과 양부모를 적절하게 결연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3조 및 제14조).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며(안 제34조),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 중 일부가 국제입양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허가는 3년마다 갱신하도록 정하고 있다(안 제35조).

이상의 두 가지 법안은 헤이그협약에 따라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해 입양절차에서의 국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아동의 입양적격성을 지자체에서도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자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467호). 이에 따라 종전에 입양기관에서 수행하던 역할을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입양절차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보다는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에 상당수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의 입양적격성 판정 및 예비 양부모 자격확인은 반드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행하도록 하되, 그 외 세부절차는 입양기관에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는 입양 적격 심사의 기초가 되는 상담,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을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입양 적격성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입양기관에게 일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형식적 결재권자로 남게 하여 입양 절차에 대한 공적 개입을 형해화 한다는 비판이 있다.[14] 하지만 오랜 세월 입양알선 및 사전·사후의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입양기관이 존재한다는 것과 중앙입양원이라는 기관이 이미 설립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입양 실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동 법안에서는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두어 운영경비 및 인건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입양기관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입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비를 수취할 수 있어 정부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고, 정부가 중앙입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입양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입양기관은 실비라고 해봐야 아동 1인 입양 시 27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으며, 입양절차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아동에 대한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연수행을 위해 입양결연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결연은 아동과 양부모를 구체적으로 맺어주는 것이어서 결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하다. 다만, 결연위원회를 국제입양뿐만 아니라 국내입양까지 포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등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뒤의 국외 사례에서 살펴볼 영국의 경우 결연결정과 관련하여 입양기관의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 자체를 각 입양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연이 1~2명의 전문가나 실무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신속하게 이루어 질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 특수한 경우에도 매번 결연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것인지 등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1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화와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입양인연대(TRACK),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 집,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탁틴내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등에서 반대함(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6.10.8)).

2.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 가입 배경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이하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간 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1993년 5월 공식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11.18).

2003년 1월 UN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헤이그협약 가입을 권고한 바 있고, 2005년 4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의 성실한 이행 및 해외입양아동의 보호와 사후관리를 위해 헤이그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다(석광현·이병화, 2010: 8).[15] 이에 따라 제298회, 제311회 국회 본회의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동의안 제출촉구 결의안」의결(2011년 3월, 2012년 9월)하는 등 헤이그협약 가입을 촉구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국제입양을 진행하는 9개국(미국,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덴마크, 룩셈부르크,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 시 입양국가 간의 상호입양을 인증하므로,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입이 필요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11.18).

이에 정부는 2013년 5월 24일에 네덜란드에서 헤이그협약에 서명하였다. 이는 2012년에 「입양특례법」과 「민법」을 개정함으로써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와 입양숙려제를 도입하고 입양부모의 자격을 강화하고 파양요건을 엄격화하면

---

15) 특히, UN아동권리협약 제21조가 문제되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입양촉진법은 부모등의 동의만으로 입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관계기관의 심사 후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한 제21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었다(장복희, 2010: 390).
(제21조: 입양 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고, ①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 당국에 의하여만 허가하며, ② 국제 입양은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 입양의 경우와 등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③ 국제 입양에 있어서 양육 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하며, ④ 아동의 타국 내 양육 지정이 관계 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될 것이 확보되어야 한다)

서 협약 가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5.24).

나. 주요 내용[16)]

헤이그협약은 전문과 7개장의 총 4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문

동 협약은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외입양은 국내에서 적당한 가정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1989년 11월 20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내적·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특별히 언급하는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회적·법적 원칙에 관한 유엔선언」에서 정한 원칙들을 고려하여 공통의 규칙을 정립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제1장: 협약의 범위

동 협약의 목적은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그리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면서 이루어지도록 보호조치를 확립·준수함으로써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도록 체약국 간에 협력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이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입양을 체약국이 승인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제1조).

이 협약은 어느 체약국(출신국)에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둔 아동이, 다른 체약국(수령국)에 상거소를 둔 부부 또는 1인에 의해 출신국에서 입양된 후에 또는 출신국에서 그러한 입양을 하기 위해, 수령국으로 이동했거나 이동하고 있거나 이동을 할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제2조 제1항). 그리고 이 협약은 영구적인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입양만을 대상으로 한다(동조 제2항).

---

16)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주요 내용은 헤이그국제입양아동협약에 관한 연구(석광현·이병화, 2010), 입양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박광동, 2013),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2012. 9)의 19쪽 이하 [첨부1]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영문/국문번역본의 내용으로 재구성함.

3) 제2장: 국제입양의 요건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입양은 출신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a. 아동이 입양가능하다고 인정했고, b. 출신국 내에서의 아동의 위탁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한 후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했으며, c. 협약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사실들을 확보했고,[17] d. 아동의 연령과 성숙정도를 고려하여 네 가지 사실들을 확보했을 경우[18]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제4조).

또한 수령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a. 양친이 될 자가 입양할 자격이 있으며 입양에 적합하다고 결정하고, b. 양친이 될 자가 필요한 상담을 받았다는 것을 확보하며, c. 아동이 수령국에 입국하여 영주할 자격이 있거나 또는 있을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 이루어질 수 있다(제5조).

4) 제3장: 중앙당국과 인가된 단체

체약국은 이 협약이 중앙당국에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앙당국을 지정해야 한다(제6조). 중앙당국은 아동을 보호하고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국내의 권한 있는 당국들 간의 협력을 촉진시켜야 하고, 협약에서 제시한 두 사항을 위해[19]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다(제7조). 이외에도 중앙당국은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이득을 방지하며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모든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제8조), 그리고 일정한 사항을 위해[20] 직접 또는

---

17) (1) 입양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사람·단체 및 기관들이 그에 필요한 상담을 받았고, 동의의 효력, 특히 입양에 의해 아동과 그의 출신가족간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에 대해 적절히 설명을 받았다는 것, (2) 그러한 사람·단체 및 기관들이 자유의사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동의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입증하였다는 것, (3) 이 동의가 어떠한 종류의 금전지급이나 대가에 의해 기인된 것이 아니며 또 철회되지도 않았다는 것, 그리고 (4) 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가 오직 아동의 출생 후에 부여되었다는 것 등(제4조 c호).

18) (1) 아동이 상담을 받았고, 입양의 효력과 아동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효력에 대해 적절히 설명을 받았다는 것, (2) 아동의 희망과 의견이 고려되었다는 것, (3) 입양을 위해 아동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자유의사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리고 서면으로 표시되거나 입증되었다는 것, (4) 그러한 동의는 어떠한 종류의 금전지급이나 대가에 의해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 등(제4조 d호).

19) a. 입양에 관한 국내법 정보 및 통계와 표준서식과 같은 기타 일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b. 이 협약의 운용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가능한 한 그 적용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제7조 제2항).

20) a. 입양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아동과 양친될 자의 상황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교환하기 위해, b. 입양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준수하며 신속하게 하기 위해, c. 국내에서 입양상담과 입양 후의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d. 국제입양의

공적 기관이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단체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

인가는 위임된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능력이 입증된 단체에게만 부여되어야 하며, 인가된 단체는 a. 인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한 조건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제한범위 내에서 비영리 목적만을 추구해야 하며, b. 윤리적 수준과 훈련이나 경험으로 보아 국제입양 분야에서 활동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하고 운영해야 하고, c. 조직·운영 그리고 재정상황에 대해 인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제10조 및 제11조).

5) 제4장: 국제입양의 절차적 요건

어느 체약국에 상거소를 둔 사람이 다른 체약국에 상거소를 둔 아동에 대해 입양을 원하는 경우에 그 자신이 상거소를 둔 국가의 중앙당국에 신청해야 한다(제14조). 수령국의 중앙당국은 신청한 자가 입양할 자격이 있고 입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의 신원, 입양자격과 그 적합성, 배경, 가족사 및 병력, 사회적 환경, 입양이유, 국제입양능력 그리고 그가 양육하기에 적합한 아동의 특징 등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보고서는 수령국의 중앙당국에서 출신국의 중앙당국에게 송부한다(제15조).

출신국의 중앙당국에서 아동이 입양가능하다고 인정하면,[21] 아동의 신원, 입양가능성, 배경 등을 작성한 보고서, 필요한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 그리고 위탁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수령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제16조). 이 경우 부모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이 출신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제16조).

한편 양국의 중앙당국은 아동이 출신국을 떠나 수령국에 입국하여 영주할 수 있는 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8조). 중앙당국은

경험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보고서를 상호 제공하기 위해, e.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특별한 입양상황에 대한 다른 중앙당국이나 공적 기관으로부터의 정당한 정보요청에 응하기 위해(제9조)

21) 아동이 양친될 자에게 위탁되어야 한다는 출신국의 결정은 다음의 경우 가능하다. a. 출신국의 중앙당국이 양친될 자의 동의를 확보했을 것, b. 수령국의 중앙당국이 그러한 결정을 승인했을 것(다만 수령국의 법에 의해 또는 출신국의 중앙당국에 의해 그러한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c. 양국의 중앙당국이 입양이 진행되는 것에 합의했을 것, d. 양친될 자가 입양자격이 있고 입양에 적합하다는 것과 아동이 수령국에 입국하여 영주할 자격이 있거나 있을 것(제17조).

입양과정, 그 완료를 위해 취해진 조치, 그리고 입양 전 시험위탁기간(probationary period)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탁의 진행결과에 대하여 서로 알려주어야 한다(제20조).

수령국으로 아동이 이동한 후 수령국의 중앙당국이 보기에 양친이 될 자에게 아동을 계속 위탁시키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중앙당국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22]를 취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특히 아동의 연령과 성숙정도를 고려하여 아동과 상담하고, 가능하다면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동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동조 제2항).

6) 제5장: 입양의 승인과 효과

이 협약에 의한 입양의 승인은 다음의 승인을 포함하는데, a. 아동과 양친 간의 법적 친자관계, b. 아동에 대한 양친의 부모로서의 책임, c. 입양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입양이 아동과 그의 부모 간에 존재하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 종료에 대한 승인이다(제26조 제1항).

입양이 기존의 법적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 수령국과 그 외의 체약국에 있어서 아동은 그 국가에서 이러한 효과를 갖는 입양으로부터 나오는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동조 제2항).

한편 출신국에서 인정된 입양이 기존의 법적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이 협약에 따라 입양을 승인하는 수령국의 법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그러한 효과를 갖는 입양으로 전환될 수 있다(제27조 제1항).

---

22) a. 아동을 양친될 자로부터 격리시키고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취한다. b. 출신국의 중앙당국과 협의하여 입양을 위해 아동을 지체 없이 새로 위탁시키는 조치 또는 이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대신에 장기적인 보호조치를 취한다. 새로 양친될 자에 관해 출신국의 중앙당국이 적절히 통보받게 될 때까지 입양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c. 최후의 수단으로 그것이 아동의 이익에 합치한다면 아동을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한다(제21조 제1항).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5.24).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p.4 그림을 수정·보완하였음.

〔그림 III-2-1〕 헤이그 협약에 따른 국가 간 입양절차

7) 제6장: 일반조항

협약에서는 입양아동의 정보 보존 및 접근에 관해서도 제시하고 있는데,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지고 있는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 특히 병력과 그 부모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제30조 제1항). 또한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국가의 법이 인정하는 한 적절한 지도에 따라 아동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동조 제2항).

또한 어느 누구도 국제입양에 관한 활동으로부터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제32조 제1항). 입양에 관여한 자의 직업상의 합리적 보수를 포함하여 비용과 지출에 대해서만 청구하거나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동조 제2항). 입양에 관여한 단체의 이사·관리자·직원은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높은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동조 제3항). 체약국의 권한당국은 입양절차에 있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제35조).

이 외에도 일반 조항에서는 입양에 관해 다른 영역단위마다 적용될 둘 혹은 그 이상의 법제를 가진 국가에 대한 조항(제36조) 등을 담고 있으며,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제40조).

다. 향후 과제 및 시사점

헤이그협약은 입양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 중앙당국과 사회복지기관, 법원, 사법기관,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 관련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노충래, 2011: 3).

우리나라가 헤이그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적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국내이행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23], 현행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필요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석광현, 2011: 28). 특히 현행 입양특례법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입양에 있어서 수령국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중앙당국, 공적기관과 인가된 단체의 지정이 필요하다. 헤이그협약 제13조에 따르면, 입양협약 가입 시 “중앙당국, 공적기관, 및 인가된 단체의 지정과

23) 예컨대, 미국처럼 국가 간 입양 적용을 위한 국제입양법(Intercountry Adoption Act)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그들 간의 업무분장에 관한 원칙을 확립해야 하고, 나아가 중앙당국이 어떤 의무를 공적기관과 인가된 단체에 위임할지를 결정해야 한다"(석광현, 2011: 29). 이에 대해서는 중앙당국을 보건복지부로, 공적기관을 중앙입양원으로, 그리고 기존 입양기관들은 입양협약에 따른 인가된 단체로 보자는 견해(석광현, 2011: 29)와 헤이그협약은 복수의 중앙당국 지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앙당국이 보건복지부나 중앙입양원 단독으로 하기에는 업무능력과 인력면에서 보강되어야 할 면이 남아 있으므로, 현재 해외입양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3개 입양기관 모두를 등록하고 이를 중앙입양원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견해도 있다(노충래, 2011: 13).

셋째, 국제입양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시험위탁(probationary placement)기간을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다. 예컨대, 태국은 수령국에서 6개월의 시험위탁을 하도록 하고 6개월의 기간이 종료된 후 최종적인 입양허가를 하고 있다(석광현, 2011: 31).

그 밖에도 헤이그협약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입양 절차 및 요건 등을 정비하여 협약에서 요구하는 국제입양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국외 입양제도 현황

입양 제도 관련 국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 미국, 영국 세 국가의 제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고찰의 의미가 있다. 또한 미국은 일찍부터 헤이그협약을 준비한 국가이고 해외입양에 있어서 수령국의 지위를 예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입양에 대한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국제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이 활성화 되어 있는 국가로서 입양부모교육과 결연절차 등 입양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가. 독일

1) 개요[24)]

독일은 1993년까지는 입양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지난 20여 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2년 기준 전체 3886명의 아동이 입양되었다. 입양 아동의 34%는 3세 미만이었으며, 57%는 의부모(계부모)에게 입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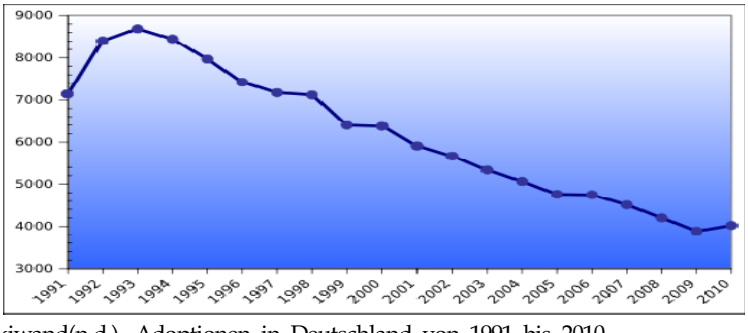

자료: Wikiwand(n.d.). Adoptionen in Deutschland von 1991 bis 2010.
http://www.wikiwand.com/de/Adoption_(Deutschland)에서 2016년 7월 1일 인출.

〔그림 Ⅲ-3-1〕 독일의 입양규모(1991-2010)

2) 입양 관련 법체계

독일에서 입양에 관련된 법은 「독일민법」(Burgerliches Gesetzbuch)과 특별법으로서의 「입양의 알선과 대리모의 알선금지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 n Ersatzmüttern: Adoptionsvermittlungsgesetz-AdVermiG, 이하 '입양알선법'이라 함)이 있으며,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1993년 5월 29일 헤이그협약의 시행에 따라 제정된 「입양-협약시행법」(Gesetz zur Ausführung des Haager Übereink ommens vom 29. Mai 1993 über den Schutz von Kindern und die Zusammen arbeit auf dem Gebiet der internationalen Adoption)과 「외국법에 따른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Wirkungen der Annahme als kind nach a usländischem Recht, 이하 '입양효력법'이라 함)이 있다.

---

24) 독일 통계청 보도자료(2013.7.26). Zahl der Adop-tio-nen im Jahr 2012 wie-der rück-läu-fig,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13/07/PD13_250_225.html에서 2016년 6월 16일 인출.

3) 독일민법[25)]

입양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일반법으로서의 효력은 「독일민법」이 갖고 있다. 「독일민법」 제4권 가족법 특히 제2절 친족관계편에서는 입양제도를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데, 미성년자의 입양에 관하여는 제1741조에서부터 제1766조까지이며, 성년자의 입양에 관하여는 제1767조부터 1772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개별 조문에 대해 살펴보면,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해서는 다음 <표 Ⅲ-3-1>과 같다.

〈표 Ⅲ-3-1〉 독일 민법상 입양에 관한 규정

제1741조 '입양의 허용'	제1757조 '아동의 성명'
제1742조 '공동양자입양'	제1758조 '공개와 탐문금지'
제1743조 '양친의 최소연령'	제1759조 '입양관계의 무효'
제1744조 '평가기간'	제1760조 '잘못된 통지에 의한 무효'
제1745조 '입양의 금지',	제1761조 '무효의 장애'
제1746조 '아동의 사전승인'	제1762조 '청구권한; 청구기간, 형식'
제1747조 '아동부모의 사전승인'	제1763조 '관청에 의한 무효'
제1748조 '한부모의 사전승인의 보완'	제1764조 '무효의 효력'
제1749조 '부부의 사전승인'	제1765조 '무효 이후 아동의 성명'
제1750조 '사전승인의 보고'	제1766조 '입양아동과 친자녀 사이의 혼인'
제1751조 '양육을 위한 양친의 사전승인, 확약의 효과'	제1767조 '입양의 허가, 적용을 위한 규정'
	제1768조 '청구'
제1752조 '가정법원의 결정, 청구'	제1769조 '입양의 금지'
제1753조 '사망 후의 입양'	제1770조 '입양의 효과'
제1754조 '입양의 효력'	제1771조 '입양관계의 무효'
제1755조 '친족관계의 상환'	제1772조 '미성년자입양의 효력과 입양'
제1756조 '친족관계의 지속'	

4) 특별법으로서의 입양알선법

가) 연혁 및 구성[26)]

독일의 「입양알선법」은 1976년 7월 2일 제정되었으며, 지난 2015년 11월 20일 조항 일부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단순히 입양의 알선 외에도 대리모의 알선금지에 관한 사항도 법에 담고 있다.

25) 독일법령정보 사이트 https://www.gesetze-im-internet.de/bgb/에서 2016년 6월 16일 인출.
26) http://www.gesetze-im-internet.de/advermig_1976/BJNR017620976.html에서 2016년 6월 16일 인출.

이 법은 현재 삭제된 조항을 제외하고 4개의 절과 2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법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제1절은 입양의 알선에 관한 사항을, 제2절에서는 대리모, 제3절은 처벌과 벌금규정 그리고 제4절에서는 경과규정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입양에 관한 규정은 제1절 '입양알선(Adoptionsvermittlung)'의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이다.

개별 조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1조(입양의 알선), 제2조(입양알선기관), 제2a조(국제입양의 알선), 제3조(담당자의 인적-전문적 적합성), 제4조(입양알선기관의 승인), 제5조(알선의 금지), 제6조(입양광고), 제7조(알선의 준비), 제8조(입양양육의 개시), 제9조(입양의 안내), 제9a조(입양알선기관의 영역), 제9b조(알선서류), 제9c조(시행규정), 제9d조(정보보호), 제10조(주청소년청의 중앙입양기관의 보고), 제11조(주청소년청의 중앙입양기관의 임무), 제13조(주청소년청의 중앙입양기관의 설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나) 주요 내용

입양알선은 18세 미만의 아동과 입양희망자간에 목적을 갖고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알선은 아동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직 출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대리모 알선은 입양알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27]

입양알선은 청소년청과 주청소년청에서 담당하는데, 청소년청의 경우에는 입양시설기관이 설치된 경우에 입양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주청소년청이 중앙입양기관으로서 기능을 한다. 인접한 공동체(우리 경우 읍·면 등의 소규모 공동체) 혹은 시·군의 청소년청은 주청소년청의 중앙입양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입양알선기관을 설치 할 수 있다. 주청소년청은 공동으로 중앙알선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데, 베를린, 함부르크, 잘란트에서는 주청소년청에게 청소년청의 입양알선기관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28]

입양알선을 위해 기독교 사회사업단체(Diakonisches Werk), 독일 천주교단체(Deutscher Caritasverband), 노동자복지단체와 그 외 독일 내에 소재한 이와 결연된 전문단체들도 입양중재기관으로서 주청소년청의 중앙입양기관의 승인을 통해 입양알선을 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청의 입양알선기관과 주청소년청의 중

27) http://www.gesetze-im-internet.de/advermig_1976/__1.html에서 2016년 6월 16일 인출.
28) http://www.gesetze-im-internet.de/advermig_1976/__2.html에서 2016년 6월 16일 인출.

앙입양기관은 위의 입양중재기관들과 파트너쉽을 통한 협업을 한다.[29)]

국제입양에 대한 이 법의 규정들은 아동과 입양희망자가 통상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거나 입양알선의 개시로부터 2년 내에 독일 내에 체류한 경우도 적용된다. 1993년 5월 29일의 헤이그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아동의 보호와 국제입양영역(BGBI. 2001 II S. 1034)에서 협업은 2001년 9월 5일자 입양협약-시행법(BGBI. I. S. 2950)의 보충된 결정에 효력을 갖는다.[29)]

국제입양은 ① 주청소년청의 중앙입양기관 ② 청소년청의 입양알선기관, 주청소년청의 중앙입양기관이 그 밖에 그들과 개별 혹은 다수의 특정 국가들에서 일반적인 혹은 개별적인 활동이 허락된 경우 ③ 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허용된 승인된 외국의 알선기관 ④ 입양협약에 의거하여 외국에서 허가된 기관, 그 밖에 제4항 1문에서 허가된 연방중앙기관이 개별활동을 허가한 기관 등에게 국제입양이 허가된다.[29)]

국제입양의 협조를 위하여 외국입양을 위한 연방기관으로서 연방법무부와 협업한다.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연방법무부와 합의하고 소모방지를 위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받아 법규정을 통하여, 연방기관이 입양협약을 체결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하여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할 수 있다.[29)]

제3항과 제15조 제2항에 열거된 외국입양에 관련된 기관들은 연방중앙기관에게 개별 입양의 경우에 ① 외국의 입양기관의 첫 협력부터 처리할 수 있는 입양아동의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장소, 국적, 가족관계 그리고 거주지 혹은 일상적 거주지), 입양아동의 친부 그리고 입양희망자 그리고 알선과정의 상태도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그리고 매년 국제입양알선에 있어서 그들 활동의 범위, 절차와 경과에 대해 보고 하여야 하며, ③ 개별 입양사안에 대하여 2001년 9월 5일에 입양협약-시행법 제4항과 제2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고지의무는 알선과정의 종료에 대하여 고지에 의해서만 제한된다.[29)]

중앙기관은 위 ①의 전달된 정보에 관하여 저장한다. 정보의 전달은 기록되어져야 하고, 개별적으로 알선을 위한 정보는 관계된 알선사례의 최후 통지가 도달된 때로부터 30년 후에 삭제한다.[29)]

---

29) http://www.gesetze-im-internet.de/advermig_1976/__2a.html에서 2016년 6월 16일 인출.

5) 기타: 임산부의 지원 확대 및 익명출산의 규정을 위한 법률[30]

독일은 임신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출산 후 아이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산부의 지원 확대 및 익명출산의 규정을 위한 법률」(Gesetzes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을 제정하여 2014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31] "이 법률은 임신한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비밀출산을 제도화한 것이다"(신동현, 2015: 1865-1866). 특히, 익명성을 원하는 임산부의 필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아동의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 권리 역시 보장함으로써 여성과 아동 모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법이 독자적인 규정내용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출생과 관련한 제반 법률의 개정사항을 담고 있는데, 이 법에 따라 「독일민법」 제1674a조와 제1747조 제4항을 신설하였다. 「독일민법」 제1674a조는 익명으로 출산되는 아동을 위해 모(母)의 친권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의 친권은 모가 가정법원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확인받은 경우 부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1747조 제4항은 익명으로 출산되는 아동의 모는 그가 가정법원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확인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소재지가 불명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임형택, 2013: 40). 따라서 입양에는 친생부모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친생부모가 장기간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익명으로 출산된 아동의 경우 입양 시 친생모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모의 친권이 정지되면 모의 친권 자체는 상실되지 않지만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익명으로 출산된 아동을 위한 후견이 개시되게 된다"(신동현, 2015: 1882). 본래 독일에서는 양부모의 익명성은 보장되지만 생부모는 그렇지 않은데(독일민법 제1747조 제2항), 익명출산인 경우에는 친생모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

30) 독일의 입양법제 최근 동향(임형택, 2013) 및 독일에서의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법제(신동현, 2015)의 내용으로 재구성함.

31) 독일 청소년연구소(DJI)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00명의 아이가 익명으로 태어났으며, 이중 대부분의 아이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지거나 익명으로 양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중에는 출생 후 곧바로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아이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임산부의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임산부가 정규 의료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영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에서 이 법은 제정되었다(임형택, 2013: 40).

나. 미국

1) 개요[32)]

미국은 서로 다른 내용의 입양법을 주마다 채택하고 있어서 각 주의 입법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입양관계가 결정되고 있지만 일반규정은 비슷하다. 입양요건으로는 입양부모의 나이는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독신자의 경우에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는 입양대상 아동의 나이는 16세까지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입양될 수 있는 아동은 친부모가 사망했거나, 생사불명인 경우, 또는 친부모가 자녀를 유기하여 친부모로부터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입양방법은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과 당사자 간 임의적인 합의에 의한 직접 입양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2) 국제입양법의 시행[33)]

미국은 헤이그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2000년 국제입양에 있어 자국의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이익을 보장하는 「국제입양법」(Intercountry Adoption Act)을 마련하였다. 또한 같은 해 제정된 "「아동시민권법」은 미국시민에 의해 입양된 아동을 포함하여, 출생 시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게 미국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장복희, 2010: 381). 하지만 이 때 18세 이상 성인들은 제외되었는데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입양인시민권법)이 마련되어 현재 미의회에 계류 중에 있다(손제민, 2016.9.7).

「국제입양법」은 입양아동과 생물학적 부모 간 관계에 대한 법적으로 완전한 분리를 통해 입양아동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입양부모의 입장에서도 입양아동을 친자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입양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전형적인 '개방입양'의 모델을 갖춰나가고 있다.

동법에 의해 입양업무제공자의 인가과정을 마련하고 감독하는 업무는 국무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헤이그협약 업무를 수행하는 인가 기구를 지명하게 된다. 한편, 국무성과 가족부는 헤이그협약이 다루는 국제입양만이 아닌 모든 입양에 대해 사례를 등록하고 있다.

---

32)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과 주요국 입양법에 관한 연구(장복희, 2010: 382)의 내용으로 재구성함.
33)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과 주요국 입양법에 관한 연구(장복희, 2010: 381-382)의 내용으로 재구성함.

3) 입양인가기관의 역할

「국제입양법」상 인가된 입양서비스 제공자는 예비입양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입양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입양을 위한 아동의 신원확인 및 입양체결, ② 부모의 입양권 종료에 대한 필요한 동의 보장, ③ 가정조사 이행 및 장차 양부모가 될 자 혹은 배경조사 보고와 아동에 관한 보고, ④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입양알선의 적절성에 관한 비사법적 판단, ⑤ 아동이 최종 입양 시까지 장차 양부모가 될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 ⑥ 계속 중인 위탁이행의 방해로 인해 필요한 경우 아동의 감호를 예정하고 아동보호 혹은 기타 다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 이상의 여섯 가지 입양서비스를 모두 보장할 책임을 가진다”(석광현·이병화, 2010: 174).

한편 미국 입양기관에서의 예비입양부모 가정조사 절차는 <표 Ⅲ-3-2>와 같다.

〈표 Ⅲ-3-2〉 미국 입양기관의 예비입양부모 가정조사 절차

분류	내용
입양부모의 특성 중 고려사항	• 예비입양부모의 정서적 성숙 • 대인관계의 질(배우자, 가족, 의미있는 타자와의 관계) • 가족 안정성 •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역량 • 무자녀(불임)에 대한 태도 • 입양의 이유 • 아동의 과거 관계에 대한 존중 • 입양에 대한 준비성 •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등
가정조사서 작성 절차	• 최소 3회 이상 입양 가족과 면접 •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의 물리적 환경의 조사 • 부부 공동 면접 / 부부 개별 면접 • 자녀 개별 면접 ↓ • 면접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조사서 작성 ↓ • 가정조사서를 슈퍼바이저에게 제출함 ↓ • 슈퍼바이저 검토 후 가정조사서 승인 ↓ • 입양 결연 진행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2016). 2016 입양실무매뉴얼. p.219 <표 24>

4) 부모교육 제공 사례[34)]

미국 입양기관인 The Cradle Society의 한 사업 부문으로 속해있는 Adoption Learning Partners(ALP)는 웹을 통해 전문가, 입양부모, 입양인, 입양에 관심이 있는 다수에게 시기적절하고 유용한 교육 자료를 온라인 학습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논문, 기사 등 입양 관련 주제의 자료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한다.

ALP의 교육 강의로는 연장아동 입양, 애착 형성, 입양자녀의 불안과 우울 등 주제별 강의뿐만 아니라, 걸음마기, 유아기,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 등 자녀연령에 따른 주제로 구성된 강의도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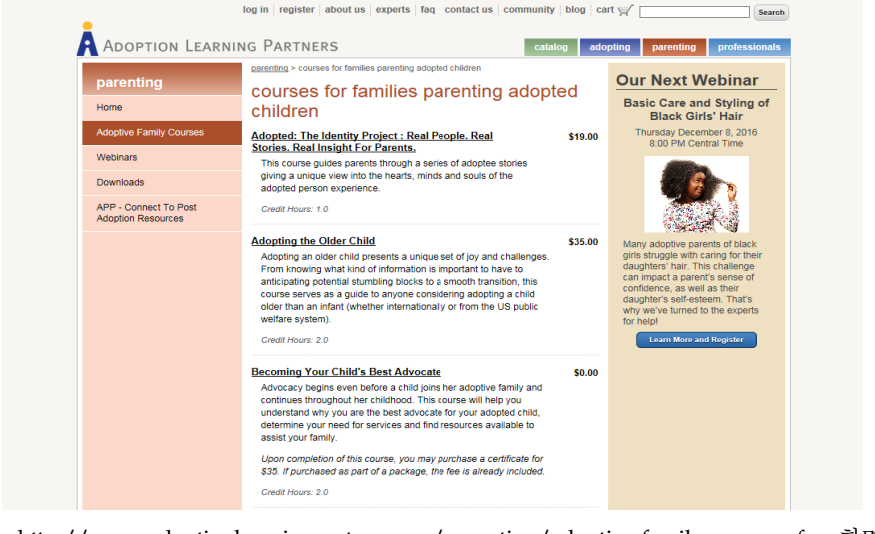

자료: http://www.adoptionlearningpartners.org/parenting/adoptive-family-courses.cfm 화면 캡처, 2016년 11월 22일 인출.

〔그림 III-3-2〕 미국 온라인 부모교육 제공 사례

34) 미국 부모교육 사이트 http://www.adoptionlearningpartners.org에서 2016년 12월 10일 인출.

다. 영국

1) 개요

영국의 입양환경은 정부, 민간단체, 입양부모가 중심이 되는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역 입양복지단체와 입양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국입양협회(The British Association for Adoption and Fostering, BAAF)[35]는 사실상 입양에 관한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정부부처 및 지역단체들과 정기적으로 회의, 토론 등을 개최하여 입양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장복희, 2010: 384). 전국입양협회(BAAF)에서는 입양 홍보 행사를 주관하고, 격월간 신문인 'Be My Parent'에 입양 대기 아동의 사진과 프로필을 실어 입양을 활성화하였으며, 그 외에도 입양부모교육을 개발하거나 입양담당자 대상의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나채준, 2013: 25). 이들의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Ⅲ-3-3>과 같다.

그러나 이처럼 30년 동안 입양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었던 전국입양협회(BAAF)는 2015년 7월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폐쇄되었다. 협회 폐쇄 이후 협회의 기능 일부는 UKColumn으로 넘어갔고, 현재는 'CORAM BAAF Academy' 이름으로 활동 중에 있다.[36]

영국에서의 입양제도는 1926년 「아동입양법」(Adoption of Children Act)을 제정하면서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이후 1976년 「입양법」(Adoption Act)과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을 거쳐 2002년에 개정된 「입양 및 아동법」(Adoption and Children Act)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석광현·이병화, 2010: 195). 한편, 영국은 1994년 헤이그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03년 협약을 비준하였다(장복희, 2010: 384).

---

35) 2013-1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450개 이상의 법인회원과 1400명 이상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법인회원에는 지자체, 입양기관, 법률회사 등이 포함되었으며, 개인회원에는 사회복지사, 보건전문가, 법률전문가, 입양 양부모 및 위탁보호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Wikipedia, n.d.).

36) Khomami(2015.8.7). Leading adoption and fostering charity BAAF closes, citing economic problem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5/aug/07/leading-adoption-fostering-charity-baaf-closes-economic-problems에서 2016년 11월 3일 인출.

〈표 III-3-3〉 영국의 예비입양부모교육(“Preparing to Adopt”, BAAF, 2014)

Stage 1		
소개	총 2개월 동안 3개의 모듈로 진행. 입양신청자가 주도하는 단계로, 이들은 입양에 대해 알게 되고, 준비집단에 참여함	
입양이란 무엇인가?	3시간	- 입양의 의미 - 친생가족이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이유 - 입양에 이르는 세 가지 방법 - 입양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것 · 사정절차(assessment)에 대한 소개 · 입양양육역량(Adoptive parenting capacity)의 의미 - 아동이 입양되기까지의 과정 · 입양아동의 상실 이해하기 · 입양아동에게 안전기지(secure base) 제공하기
입양아동	2시간 30분 ~ 3시간	- 아동들이 입양되는 이유 - 아동에게 입양가족이 필요한 이유 - 입양대상 아동의 특징과 다양한 배경(인종, 장애여부, 형제자매 집단 등) - 입양대상 아동을 찾는 방법(입양아동등록부, 입양부모 찾기 웹사이트, 관련행사 등 소개)
입양절차	2시간 30분	- 입양기관 소개 - 2단계의 입양준비절차 소개 · 사정절차: 왜 필요한가? 어떤 요소들을 사정하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 매칭절차: 어떻게 아동을 발견해서 매칭하는가? - 입양가족에 대한 지지(support) · 입양가족에 대한 지지가 필요한 이유 · 입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지
Stage 2		
소개	총 6개의 모듈로 구성되며, 본격적인 입양절차를 시작한 부모들을 위한 것이므로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다룸	
아동발달과 애착	2시간 30분	- 아동발달의 이해 - 생애초기의 역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유아 및 아동에게 있어 애착의 중요성 - 애착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 애착의 단계 · 애착패턴: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불안/회피/거부애착 - 애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상실과 애도 · 애도의 단계

(표 Ⅲ-3-3 계속)

Stage 2		
학대 및 방임아동의 욕구	3시간 30분	- 학대와 방임의 실질적 의미 · 학대와 방임의 유형과 실제 사례 · 학대와 방임이 아동행동에 미치는 영향 · 가정폭력의 영향 ·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아동의 외상(트라우마)이 애착과 두뇌발달에 미치는 영향 · 외상 스트레스의 의미 · 외상 스트레스에 대한 과다각성과 분리
입양 부모되기	3시간	- 입양을 원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기 · 입양에 대한 기대와 실제 - 입양하려는 아동 또는 아동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생각해보기 - 아동이 처음 가정에 왔을 때 어떻게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 입양이 자신의 생활양식과 가족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기
연결, 매칭, 만남	3시간	- 입양신청자들이 입양대상아동과 어떻게 연결되고 매칭되는지 이해하기 - 아동이 입양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을 이해하기(아동의 연령별 차이 이해) - 아동을 처음 만나서 집으로 데려올 때 어떤 상황을 기대해야 할지 알지
입양사실 이야기하기, 접촉, 사회적 관계망	3시간 30분 ~ 4시간	- 입양이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전생애적 과정임을 이해하기 · 생애주기별 입양부모의 과업 - 입양아동의 삶에 있어 친생가족이 갖는 중요성 이해하기 · 친생부모에 대해 생각해보기 · 입양 후 접촉 · 열린 의사소통의 중요성 - 아동에게 왜 입양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이해하기 · 언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 입양가족들에게 사회적 관계망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입양가족의 삶 : 함께 사는 법 배우기	3시간 ~ 3시간 30분	- 입양아동의 초기 경험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기 · 입양아동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상의 문제들 · 아동의 행동문제를 관리하기 - 아동이 과거 학대와 방임에서 생존하기 위해 개발했을 행동전략들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기 - 지지에 대해 어떻게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알기 - 학교에서 입양아동이 갖게 될 욕구에 대해 생각해보기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2016). 2016 입양실무매뉴얼. pp.224-226.

2) 주요내용[37]

가) 입양요건

영국에서의 입양명령은 법원이 양부모가 될 자의 신청을 받아 아동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양부모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입양이 성립되면, 부모 및 후견인의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는 완전히 소멸된다.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보호자(부모,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입양될 아동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생사불명이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아동의 복지에 해가 되는 아동의 입양에 대한 생모의 동의는 무효로 보기 때문에 6주 미만의 아동에게 생모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6주 이전에 행해진 생모의 동의는 입양에 대한 자유의사 및 관계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입양부모의 자격은 21세 이상의 결혼한 부부이면 가능한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해야 하며, 다만, 상대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입양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방의 신청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고 있는데, 다만, 독신 남성이 여아를 입양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나) 입양결정 위원회(패널)

「입양 및 아동법」 제12조는 입양기관이 입양할 부모의 자격을 결정한 경우, 이를 검토하기 위해 패널(위원회)을 구성하여 그 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는 패널의 직무와 권한, 패널의 관리와 절차, 패널의 임명(자격 등), 패널에 대한 비용지급,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검토와 그에 따른 입양기관의 직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38]

영국에서는 입양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허가를 거부한 결정들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패널을 설립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입양정보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한 입양기관의 결정도 검토 대상이 된다.

---

37) 주요 내용은 영국 가족법 정보 사이트 http://www.familylawweek.co.uk/site.aspx?i=ed340에서 2016년 11월 5일 인출한 내용으로 재구성함.

38) 영국법령정보센터 http://legislation.gov.uk/ukpga/2002/38/section/12에서 2016년 11월 5일 인출.

다) 입양명령

입양명령은 지방당국이 입양을 위해 아동을 선택한 양부모에게 배치하도록 허가하는 명령이다. 동 명령은 아동에게 부모나 후견인이 없거나, 아동과 관련해 이미 보호명령(아동의 보호를 부모가 아닌 지역 기관에 맡기는 조치)이 내려졌거나, 법원이 「아동법」 제31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내리는 한계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할 때 내려질 수 있다. 그리고 생부모가 입양명령에 동의할 때도 가능하며, 제31조의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아동의 생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할 수 도 있고 동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

한편, 입양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양부모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최소 기간에 대해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소 10주를 요하고 있으며, 기관을 통해 신청하지 않은 양부모의 경우 최소 12주를 요하고 있다.

라) 국제입양

영국의 「국제입양법」(The Adoption (Intercountry Aspects) Act 1999)은 대체로 2002년에 개정된 「입양 및 아동법」에 통합되었으며, 일부 규제와 안전장치가 추가되었다.

라. 시사점

우리나라의 민법은 독일민법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양이 민법상의 입양과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반면, 독일은 독일민법상의 입양으로 단일화 되어있고, 단지 입양알선과 관련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및 권한 등에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입양알선법이 있을 뿐이다. 우리의 경우도 민법 개정을 통해 친양자제도를 두는 한편, 아동의 복리를 위해 법원허가제가 도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양특례법에서 친양자제도와 별도로 입양의 실체법적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입양특례법은 독일의 입양알선법과 같이 입양기관의 자격과 권한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것이 입양제도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독일의 익명출산법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박스 등의 문제로 인해 아이들이 유기되는 면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오랫동안 헤이그협약을 준비하였고, 수령국의 지위에 있어서 해외입양아동을 위한 여러 법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입양절차에 있어 결연 이전 단계인 가정조사 단계에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슈퍼바이저의 가정조사서 승인 이후에 결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사례는 온라인 부모교육 강의가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는 점이다. 웹에서의 교육이나 자료 제공은 거주지역이나 시간, 그리고 입양의 공개여부와 상관없이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으므로 접근성이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주제별 혹은 가족생애주기별 교육 자료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자녀연령이나 가족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었다.

영국은 입양결연에 관한 위원회(패널)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결연에 대한 책임을 입양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당국 차원에서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결연위원회가 입양기관 내에 존재하며 입양절차 진행에 있어 입양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유념할만하다. 한편 영국의 예비입양부모교육은 2단계로 나누어져서 1단계는 8시간 이상, 2단계는 18시간 이상 구성되어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보다 한층 더 오랜 시간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알 수 있다. 그 내용 또한 처음에는 입양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하여 입양아동과 입양절차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이지만, 점차 심화되어 입양가족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들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통해 아동의 입장에서 건강한 입양문화가 성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과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Ⅳ. 입양아동 양육 실태 및 지원 요구

이 장에서는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내용은 입양절차, 입양자녀 양육, 입양가정 지원제도 및 입양에 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으며, 처음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입양자녀의 현재 연령(영아기/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입양 시 연령(12개월 기준), 입양시기(2012년도 기준), 그리고 친생자녀 유무, 가구소득, 모취업 여부 등에 따라 살펴보았다.

1. 응답자 및 자녀 특성

가. 입양부모 특성

먼저 응답자 272명의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 90.1%로 대부분이며, 입양자녀 외에 친생자녀가 있는 가정은 응답자의 46.3%이다. 그 외 구체적인 가구 특성은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가구 특성

단위: %(가구)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272)	전체		100.0	(272)
자녀와의 관계	부	18.4	(50)	가족 유형	(한)조부모+부모+자녀	8.1	(22)
	모	81.6	(222)		부모+자녀	90.1	(245)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8.9	(269)		(한)조부모+한부모+자녀	0.4	(1)
	사별	0.7	(2)		한부모+자녀	0.7	(2)
	미혼	0.4	(1)		기타	0.7	(2)
결혼년도	1980년대 이전	8.8	(24)	현재 동거 가구원 수	2명	0.7	(2)
	1990년대	33.8	(92)		3~4명	66.5	(181)
	2000년대	42.3	(115)		5~6명	29.8	(81)
	2010년대	8.1	(22)		7~8명	2.6	(7)
	모름/무응답	7.0	(19)		9명 이상	0.4	(1)

(표 Ⅳ-1-1 계속)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입양 자녀수	1명	68.8	(187)	가구 소득	101~200만원	3.3	(9)
	2명	26.8	(73)		201~300만원	16.9	(46)
	3명	3.7	(10)		301~400만원	18.4	(50)
	4명	0.7	(2)		401~500만원	26.8	(73)
친생 자녀수	1명	21.3	(58)		501~600만원	14.0	(38)
	2명	22.8	(62)		601~700만원	8.8	(24)
	3명	1.8	(5)		701만원 이상	11.8	(32)
	4명	0.4	(1)				
	없음	53.7	(14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표 Ⅳ-1-2〉 부모 특성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비율	(수)	비율	(수)
전체		100.0	(272)	100.0	(272)
연령	30대	13.2	(46)	19.9	(54)
	40대	54.8	(149)	60.7	(165)
	50대 이상	30.1	(82)	18.0	(49)
	모름/무응답	1.8	(5)	1.5	(4)
교육수준	고졸이하	14.0	(38)	19.9	(54)
	대졸	51.1	(139)	64.3	(175)
	대학원 이상	33.5	(91)	14.3	(39)
	모름/무응답	1.5	(4)	1.5	(4)
취업상태	취업 중	92.3	(251)	42.6	(116)
	휴직 중	1.8	(5)	5.9	(16)
	미취업	3.3	(9)	50.4	(137)
	모름/무응답	2.6	(7)	1.1	(3)
종교유무	있음	71.3	(194)	77.6	(211)
	없음	26.1	(71)	18.8	(51)
	모름/무응답	2.6	(7)	3.7	(10)

주: 응답자가 답한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모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6.7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7세이며, 40대가 과반수이다.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약 85%, 어머니의 약 78% 이상이 대학 졸업 이상이며, 어머니가 취업한 가정은 42.6%이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71.3%, 77.6%로 다소 많은 편이어서 입양가정의 특징을 보여준다.

나. 입양자녀 특성

응답자 가정의 입양자녀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는 28.3%, 여아는 70.4%로 여아의 비율이 훨씬 높다. 첫 입양자녀가 성인이 되지 않은 가정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입양자녀는 모두 청소년기 이하에 속하며 영유아기가 약 59.6이다. 또한 입양자녀 중 약 61.2%가 2010년 이후에 입양되었다. 만 1세 이상일 때 입양된 연장아동은 12.7%이며, 장애를 포함하여 건강이상이 있는 아동은 3.5%이다.

〈표 Ⅳ-1-3〉 입양자녀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371)	전체		100.0	(371)
성별	남	28.3	(105)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87.3	(324)
	여	70.4	(261)		12개월 이상	12.7	(47)
	무응답	1.3	(5)	건강이상 여부	건강이상 있음	3.5	(13)
현재 연령	영아기	32.1	(119)		건강이상 없음	96.5	(358)
	유아기	27.5	(102)	현재 이용기관	어린이집	28.0	(104)
	아동기	32.9	(122)		유치원	14.0	(52)
	청소년기	7.5	(28)		초등학교	31.8	(118)
입양년도	1995~1999년	0.5	(2)		중학교	5.1	(19)
	2000~2004년	8.4	(31)		고등학교	1.9	(7)
	2005~2009년	29.9	(111)		대안학교	1.6	(6)
	2010~2014년	45.6	(169)		홈스쿨링	3.0	(11)
	2015년 이후	15.6	(58)		기타(안다님 등)	14.6	(54)

주: 응답자가 답한 모든 입양자녀 특성을 포함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입양자녀 중 현재의 가정에서 입양 전 가정위탁을 경험한 아동은 평균 2.6개월의 위탁기간을 보냈으며, 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 2.8회 만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탁기간은 2011년도 이전에 비하여 2012년도 이후에는 평균 1개월 정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입양 신청 후 결연까지 평균 4.9개월, 결연 후 자녀가 집에 오기까지는 평균 1.9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결연까지의 기간은 여아의 경우 5.6개월로 남아보다 약 2개월 정도 더 오래 걸렸다. 이는 입양아동의 입장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결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입양 전에 아동들은 최소 1회에서 최대 6회까지 보호형태를 경험하여 평균 1.54회 정도이며, 2011년도 이전보다는 2012년도 이후 아동이 경험한 보호형태 수가 더 많았다.

〈표 Ⅳ-1-4〉 입양자녀의 입양 과정

구분	전체				성별				입양시기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수)	구분	평균	(수)	t	구분	평균	(수)	t
입양전 가정위탁 (개월)	2.6 (2.3)	1	20	(163)	남	2.5	(48)	-0.45	’11이전	2.0	(62)	-2.67**
					여	2.7	(114)		’12이후	3.0	(101)	
입양전 만남(회)	2.8 (4.6)	1	30	(155)	남	3.6	(42)	1.29	’11이전	2.1	(59)	-1.44
					여	2.5	(113)		’12이후	3.2	(96)	
결연까지 (개월)	4.9 (4.4)	0	30	(371)	남	3.5	(105)	-4.90***	’11이전	4.6	(212)	-1.47
					여	5.6	(261)		’12이후	5.3	(159)	
집에 오기까지 (개월)	1.9 (2.3)	0	18	(371)	남	1.8	(105)	-0.54	’11이전	1.7	(212)	-1.32
					여	1.9	(261)		’12이후	2.0	(159)	
입양 시 월령 (개월)	6.31 (11.7)	0	88	(371)	남	6.8	(105)	0.46	’11이전	6.8	(212)	-0.92
					여	6.2	(261)		’12이후	6.2	(159)	
경험한 보호형태 (회)	1.54 (.83)	1	6	(371)	남	1.62	(105)	1.02	’11이전	1.28	(212)	-7.03***
					여	1.52	(261)		’12이후	1.89	(159)	

주: 응답자가 답한 모든 입양자녀 특성을 포함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다. 자녀 계획

향후 추가 입양 계획이 있는 가정은 15.8%이다. 하지만 첫 입양자녀의 연령이 영아기인 가정에서는 31.9%가 추가 입양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유아기인 가정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4.1%로 자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가구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가정에서 추가 입양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27.3%로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비교적 많아서 소득수준이 입양결정에 결정적 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 입양 의사가 있는 가정에서 계획하는 추가 입양자녀 수는 1명 79.1%, 2명 14.0%, 3명 7.0%이었다. 추가 입양을 원하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그 이유를 자녀를 더 갖고 싶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51.2%), 가치관 15.6%, 주변 입양가정의 사례를 보고 9.3%로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기타 응답(14.0%)으로 입양자녀에게 다른 입양자녀 형제를 만들어주고 싶어서라는 이유가 있었다.

〈표 Ⅳ-1-5〉 향후 추가 입양 계획

단위: %(명)

구분	입양계획 있음	입양계획 없음	잘 모르겠음	계(수)	$\chi^2(df)$
전체	15.8	54.0	30.1	100.0(272)	
첫 입양자녀 현재 연령					
영아기	31.9	30.8	37.4	100.0(91)	56.24(6)***
유아기	7.4	48.5	44.1	100.0(68)	
아동기	9.0	74.2	16.9	100.0(89)	
청소년기	4.2	83.3	12.5	100.0(24)	
친생자녀 유무					
있음	12.7	57.9	29.4	100.0(126)	2.14(2)
없음	18.5	50.7	30.8	100.0(14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7.3	32.7	40.0	100.0(55)	14.95(6)*
301~500만원	13.0	57.7	29.3	100.0(123)	
501~700만원	12.9	64.5	22.6	100.0(62)	
701만원 이상	12.5	56.3	31.3	100.0(3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15.5	55.2	29.3	100.0(116)	6.41(4)
휴직 중	37.5	43.8	18.8	100.0(16)	
미취업	13.9	53.3	32.8	100.0(137)	

주: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한편 향후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은 1.8%에 불과하였다. 추가 출산을 원하는 응답자(5명)의 80.0%는 1명을 추가로 출산하길 원하였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1-6〉 향후 추가 출산 계획

단위: %(명)

구분	출산계획 있음	출산계획 없음	잘 모르겠음	계(수)	$\chi^2(df)$
전체	1.8	88.6	9.6	100.0(272)	
첫 입양자녀 현재 연령					
영아기	5.5	75.8	18.7	100.0(91)	
유아기	0.0	92.6	7.4	100.0(68)	na
아동기	0.0	96.6	3.4	100.0(89)	
청소년기	0.0	95.8	4.2	100.0(24)	
친생자녀 유무					
있음	0.8	92.1	7.1	100.0(126)	na
없음	2.7	85.6	11.6	100.0(14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8	81.8	16.4	100.0(55)	
301~500만원	1.6	88.6	9.8	100.0(123)	na
501~700만원	1.6	96.8	1.6	100.0(62)	
701만원 이상	3.1	8.4	12.5	100.0(3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0.9	89.7	9.5	100.0(116)	
휴직 중	0.0	75.0	25.0	100.0(16)	na
미취업	2.9	89.1	8.0	100.0(137)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입양 절차[39)]

가. 입양 결정 및 진행

입양을 결정하게 된 이유로는 난임·불임(48.9%), 가치관(27.9%), 자녀를 더 갖고 싶어서(18.0%) 등이 있었다. 2순위 응답 비율을 모두 합치면 요보호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하거나, 좋은 일을 하려고 하거나, 종교적 가치를 따르는 등의 개인의 가치관 때문에 입양을 한 경우도 많으나(55.5%) 입양의 가장 주된 이유는 부

39) 입양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처음 입양한 자녀에 대해 응답한 결과임. 따라서 변인으로 제시된 입양자녀 연령(영아기/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입양 시 월령(12개월 기준), 입양 시기(2012년도 기준)는 처음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함.

모의 난임·불임임을 알 수 있었다. 첫 입양시기가 2012년도 이후이거나 가구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가정에서 난임·불임 응답이, 2011년도 이전이거나 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치관 때문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더 많았다.

〈표 Ⅳ-2-1〉 입양 결정 이유(1순위)

단위: %(명)

구분	난임·불임	자녀 더 갖고 싶어서	가치관	주변 입양 사례를 보고	지인·친인척 권유	봉사 중 정들어서	기타	계(수)	$\chi^2(df)$
전체	48.9	18.0	27.9	1.8	0.4	1.5	1.5	100.0(272)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35.1	20.8	37.0	1.9	0.6	1.9	2.6	100.0(154)	na
2012년도 이후	66.9	14.4	16.1	1.7	0.0	0.8	0.0	100.0(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4.0	35.7	50.8	3.2	0.0	3.2	3.2	100.0(126)	na
없음	87.7	2.7	8.2	0.7	0.7	0.0	0.0	100.0(14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0.0	9.1	30.9	0.0	0.0	0.0	0.0	100.0(55)	
301~500만원	46.3	20.3	25.2	1.6	0.8	3.3	2.4	100.0(123)	na
501~700만원	48.4	21.0	25.8	3.2	0.0	0.0	1.6	100.0(62)	
701만원 이상	40.6	18.8	37.5	3.1	0.0	0.0	0.0	100.0(32)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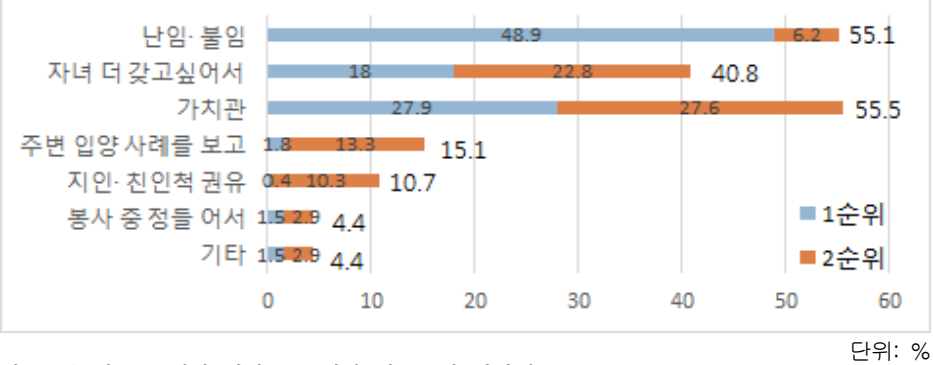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2-1〕 입양 결정 이유(1,2순위 중복응답)

입양 결정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편견이 우려되는 것이었다는 응답이 23.2%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13.2%, 부모님 등 가족의 반대 12.5%, 경제적 이유 10.3% 등의 순이었으며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22.4%이었다. 친생자녀가 있는 경우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25.4%)과 가족의 반대가 있었다는 응답(20.6%)의 비율이 높으나 친생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편견이 우려되었다는 응답(28.8%)의 비율이 높다.

〈표 Ⅳ-2-2〉 입양 결정 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구분	부부간 의견 불일치	가족(부모) 반대	사회적 편견 우려	경제적 이유	잘 키울 자신 없어서	친생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	출생배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우려	기타	전혀 없었음	계(수)	χ^2 (df)
전체	6.6	12.5	23.2	10.3	13.2	2.6	6.3	2.9	22.4	100.0(272)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7.1	16.9	18.2	11.7	16.2	1.9	3.2	1.9	22.7	100.0(154)	na
2012년도 이후	5.9	6.8	29.7	8.5	9.3	3.4	10.2	4.2	22.0	100.0(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8.7	20.6	16.7	11.9	11.9	0.8	1.6	2.4	25.4	100.0(126)	na
없음	4.8	5.5	28.8	8.9	14.4	4.1	10.3	3.4	1.9	100.0(14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7.3	7.3	27.3	10.9	10.9	3.6	5.5	5.5	21.8	100.0(55)	
301~500만원	4.1	16.3	24.4	11.4	13.0	2.4	4.1	2.4	22.0	100.0(123)	na
501~700만원	12.9	4.8	17.7	11.3	14.5	1.6	11.3	3.2	22.6	100.0(62)	
701만원 이상	3.1	21.9	21.9	3.1	15.6	3.1	6.3	0.0	25.0	100.0(32)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입양 진행 시 어려움에 대해 서류준비 등 입양절차가 까다로워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은 37.5%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도 이후에 입양한 경우 그리고 입양 시 자녀가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56.8%, 56.3%이었다. 첫 입양시기가 2011년도 이전인 경우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43.5%이며, 주변에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응답이 15.6%로 2012년도 이후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비율이었다. 또한 친생자

녀가 없는 경우 입양절차나 아동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응답하였다.

〈표 Ⅳ-2-3〉 입양 진행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서류준비 등 입양절차의 까다로움	원하는 조건 아동 기다리는 시간	부모교육 등에 시간을 낼 여건 안 됨	주변에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구하기 어려움	입양부모자격 까다로움	기타	전혀 없었음	계(수)	$\chi^2(df)$
전체	37.5	7.7	2.6	12.9	5.5	4.0	29.8	100.0(272)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35.0	7.5	2.9	14.6	5.8	3.8	30.4	100.0(240)	na
12개월 이상	56.3	9.4	0.0	0.0	3.1	6.3	25.0	100.0(32)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22.7	6.5	3.9	15.6	2.6	5.2	43.5	100.0(154)	na
2012년도 이후	56.8	9.3	0.8	9.3	9.3	2.5	11.9	100.0(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26.2	4.8	5.6	14.3	6.3	4.8	38.1	100.0(126)	25.19
없음	47.3	10.3	0.0	11.6	4.8	3.4	22.6	100.0(146)	(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3.6	3.6	1.8	9.1	9.1	1.8	30.9	100.0(55)	
301~500만원	35.0	8.1	1.6	13.8	4.1	5.7	3.7	100.0(123)	na
501~700만원	35.5	14.5	1.6	16.1	6.5	1.6	24.2	100.0(62)	
701만원 이상	40.6	0.0	9.4	9.4	3.1	6.3	31.3	100.0(32)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입양 진행 시 관련 정보나 상담이 필요할 때 부모의 73.2%가 주로 입양기관 담당자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18.0%는 주변 입양가정이라고 응답하였다. 2012년도 이후 입양기관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은 비율이 높아졌으며, 입양 시 월령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주변 입양가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다.

〈표 Ⅳ-2-4〉 입양 진행시 도움 받은 사람/곳

단위: %(명)

구분	입양기관 담당자	주변 입양가정	입양관련단체, 센터	기타	모름/무응답	계(수)	$\chi^2(df)$
전체	73.2	18.0	6.3	1.5	1.1	100.0(272)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75.4	16.7	5.8	1.3	0.8	100.0(240)	na
12개월 이상	59.3	28.1	9.4	3.1	3.1	100.0(32)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66.9	21.4	8.4	1.3	1.9	100.0(154)	na
2012년도 이후	81.4	13.6	3.4	1.7	0.0	100.0(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69.0	19.0	7.9	2.4	1.6	100.0(126)	na
없음	76.7	17.1	4.8	0.7	0.7	100.0(14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78.2	20.0	1.8	0.0	0.0	100.0(55)	
301~500만원	75.6	17.9	3.3	1.6	1.6	100.0(123)	na
501~700만원	64.5	21.0	14.5	0.0	0.0	100.0(62)	
701만원 이상	71.9	9.4	9.4	6.3	3.1	100.0(32)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나. 입양 시 정보

입양 시 자녀와 관련된 정보 중에서 간단한 기본인적사항은 95.6%,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는 74.6%, 발단진단결과는 65.4%의 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입양 시 월령이 12개월 이상 연장아의 경우 행동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더 많고, 2012년도 이후에는 발달진단결과, 행동특성 등 전반적으로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5〉 입양 시 확인 가능한 자녀정보(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기본인적사항	발달진단결과	신체적특징	생활습관	행동특성	친생부모정보	입양이전생활	기타	(수)
전체	95.6	65.4	48.5	46.0	2.9	74.6	30.5	2.9	(272)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96.3	66.3	48.3	44.2	20.0	77.9	30.0	2.5	(240)
12개월 이상	90.6	59.4	50.0	59.4	53.1	50.0	34.4	6.3	(32)

(표 Ⅳ-2-5 계속)

구분	기본 인적 사항	발달 진단 결과	신체적 특징	생활 습관	행동 특성	친생 부모 정보	입양 이전 생활	기타	(수)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92.9	55.2	43.5	42.2	18.2	70.8	28.6	4.5	(154)
2012년도 이후	99.2	78.8	55.1	50.8	31.4	79.7	33.1	0.8	(1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다. 입양 시 자녀발달 정도

입양 시 자녀의 신체발달 및 성장, 언어발달, 인지발달 및 사회·정서발달 정도는 어떠했는지를 조사하였다. 첫째, 신체발달 및 성장은 보통이었다는 응답이 61.4%이었으며, 느린 편이라는 응답은 입양 시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9.2%이나, 연장아의 경우 15.6%이었다.

〈표 Ⅳ-2-6〉 입양 시 자녀 발달_신체발달 및 성장

단위: %(명)

구분	느린 편	보통	빠른 편	모르겠음	계(수)	$\chi^2(df)$
전체	9.9	61.4	22.8	5.9	100.0(272)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9.2	62.1	23.3	5.4	100.0(240)	na
12개월 이상	15.6	56.3	18.8	9.4	100.0(32)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11.0	57.8	22.1	9.1	100.0(154)	7.49(3)
2012년도 이후	8.5	66.1	23.7	1.7	100.0(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10.3	61.1	22.2	6.3	100.0(126)	0.16(3)
없음	9.6	61.6	23.3	5.5	100.0(146)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둘째, 언어발달은 보통이었다는 응답이 57.7%이었으며, 입양 시 월령이 12개월 이상인 자녀들의 언어발달은 느린 편이었다는 응답이 25.0%로 12개월 미만 입양자녀에 대한 응답해 비해 약 5배정도 많았다. 또한 친생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입양자녀의 발달을 좀 더 느리게 평가하였다.

〈표 Ⅳ-2-7〉 입양 시 자녀 발달_언어발달

단위: %(명)

구분	느린 편	보통	빠른 편	모르겠음	계(수)	$\chi^2(df)$
전체	5.1	57.7	21.0	16.2	100.0(272)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2.5	60.4	20.8	16.3	100.0(240)	30.36(3)***
12개월 이상	25.0	37.5	21.9	15.6	100.0(32)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6.5	53.9	21.4	18.2	100.0(154)	3.07(3)
2012년도 이후	3.4	62.7	20.3	13.6	100.0(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7.9	62.7	14.3	15.1	100.0(126)	9.72(3)*
없음	2.7	53.4	26.7	17.1	100.0(146)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셋째, 지각, 기억, 학습, 지능발달 등의 인지발달은 보통이었다는 응답이 57.0%이었으며, 인지발달 역시 입양 시 월령이 12개월 이상인 자녀들에 대해 느린 편이었다는 응답이 좀 더 많은 편이었다.

〈표 Ⅳ-2-8〉 입양 시 자녀 발달_인지발달

단위: %(명)

구분	느린 편	보통	빠른 편	모르겠음	계(수)	$\chi^2(df)$
전체	3.3	57.0	24.6	15.1	100.0(272)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2.1	59.2	24.2	14.6	100.0(240)	na
12개월 이상	12.5	40.6	28.1	18.8	100.0(32)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4.5	54.5	24.0	16.9	100.0(154)	2.84(3)
2012년도 이후	1.7	60.2	25.4	12.7	100.0(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6.3	58.7	20.6	14.3	100.0(126)	na
없음	0.7	55.5	28.1	15.8	100.0(146)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넷째, 애착, 정서표현·조절, 대인관계 등의 사회·정서발달 역시 보통이었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이며(54.4%), 입양 시 월령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느린 편이었다는 응답이 28.1%로 다른 발달영역에 비해 더 느리게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9〉 입양 시 자녀 발달_사회·정서발달

단위: %(명)

구분	느린 편	보통	빠른 편	모르겠음	계(수)	$\chi^2(df)$
전체	7.7	54.4	23.2	14.7	100.0(272)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5.0	56.3	24.2	14.6	100.0(240)	na
12개월 이상	28.1	40.6	15.6	15.6	100.0(32)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7.8	55.8	19.5	16.9	100.0(154)	3.36(3)
2012년도 이후	7.6	52.5	28.0	11.9	100.0(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9.5	58.7	18.3	13.5	100.0(126)	4.47(3)
없음	6.2	50.7	27.4	15.8	100.0(146)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3. 입양자녀 양육[40)]

입양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입양 공개, 입양자녀의 발달 및 적응,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양육 시 어려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가. 입양 공개

먼저, 입양사실 공개 범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8%는 가까운 친인척, 86.0%는 가까운 지인, 85.7%는 자녀의 조부모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입양자녀 본인에게 알려주었다는 응답은 76.1%이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52.7%만이 공개하고 있으며, 친생자녀가 있는 경우 85.7%가 입양자녀 본인에게 입양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응답하여 친생자녀가 없는 경우(67.8%)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40) 입양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처음 입양한 자녀에 대해 응답한 결과임. 따라서 변인으로 제시된 입양자녀 연령(영아기/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입양 시 월령(12개월 기준), 입양 시기(2012년도 기준)는 처음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함.

〈표 Ⅳ-3-1〉 입양사실을 공개한 사람(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입양 자녀 본인	자녀의 형제자매	자녀의 조부모	가까운 친인척	가까운 지인	자녀의 선생님	자녀의 친구들	대중	기타	공개하지 않음	(수)
전체	76.1	65.8	85.7	90.8	86.0	48.9	29.0	16.9	5.5	1.5	(272)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52.7	47.3	84.6	85.7	82.4	31.9	17.6	13.2	5.5	3.3	(91)
유아기	75.0	61.8	86.8	95.6	83.8	47.1	22.1	13.2	4.4	1.5	(68)
아동기	94.4	82.0	86.5	93.3	91.0	60.7	38.2	16.9	5.6	0.0	(89)
청소년기	100.0	87.5	83.3	87.5	87.5	75.0	58.3	41.7	8.3	0.0	(24)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76.7	65.8	86.3	90.0	85.4	47.5	29.6	16.7	5.4	1.3	(240)
12개월 이상	71.9	65.6	81.3	96.9	90.6	59.4	25.0	18.8	6.3	3.1	(32)
친생자녀 유무											
있음	85.7	90.5	88.9	95.2	88.9	61.9	34.9	25.4	6.3	0.0	(126)
없음	67.8	44.5	82.9	87.0	83.6	37.7	24.0	9.6	4.8	2.7	(14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자녀에게 입양사실을 알려준 경우, 66.2%는 입양 시부터 자연스럽게 알려주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평균 4.43세에 입양사실을 자녀에게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사실 공개 연령은 최소 0세에서 최대 11세이며, 입양 시부터 공개하였다는 비율은 현재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 많았고, 현재 연령이 어릴수록 공개 연령이 더 빨랐다. 이에 입양시기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2011년도 이전인 경우 평균 4.74세, 2012년도 이후는 3.38세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36$, $p<.05$).

〈표 Ⅳ-3-2〉 자녀에게 입양사실 공개 여부 및 시기

단위: %(명), 세

구분	입양 시부터 공개 여부				공개 연령	
	예	아니오	계(수)	$\chi^2(df)$	평균	t/F
전체	66.2	33.8	100.0(207)		4.43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83.3	16.7	100.0(48)		3.13_a	
유아기	60.8	39.2	100.0(51)	$8.32(3)^*$	3.65_a	4.74^{**}
아동기	61.9	38.1	100.0(84)		4.75_{ab}	
청소년기	58.3	41.7	100.0(24)		6.00_b	

(표 Ⅳ-3-2 계속)

구분	입양 시부터 공개 여부				공개 연령	
	예	아니오	계(수)	$\chi^2(df)$	평균	t/F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65.8	34.2	100.0(184)	0.13(1)	4.35	-.95
12개월 이상	69.6	30.4	100.0(23)		5.14	
친생자녀 유무						
있음	64.8	35.2	100.0(108)	0.19(1)	4.71	1.23
없음	67.7	32.3	100.0(99)		4.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한편 자녀들이 입양사실을 접한 후 보인 변화로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응답이 72.9%이었으며, 부적응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3.9%, 기타 응답으로는 아직 어려서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있었다.

부적응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입양사실로 인해 힘들었던 시기는(응답자 총 6명, 중복응답) 유아기와 초등 고학년 시기가 각각 50%, 초등 저학년 시기 33.3%, 중학생 시기 16.7% 순이었다.

〈표 Ⅳ-3-3〉 입양사실 접한 후 보인 변화

단위: %(명)

구분	현재의 가족과 더 친밀해짐	가족 구성원과의 불화, 문제행동 등 부적응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	기타	계(수)	$\chi^2(df)$
전체	0.5	3.9	72.9	22.7	100.0(207)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0.0	0.0	33.3	66.7	100.0(48)	na
유아기	0.0	0.0	82.4	17.6	100.0(51)	
아동기	1.2	7.1	84.5	7.1	100.0(84)	
청소년기	0.0	8.3	91.7	0.0	100.0(24)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0.5	3.3	72.3	23.9	100.0(184)	na
12개월 이상	0.0	8.7	78.3	13.0	100.0(23)	
친생자녀 유무						
있음	0.9	5.6	78.7	14.8	100.0(108)	na
없음	0.0	2.0	66.7	31.3	100.0(99)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자녀가 입양사실을 안 후 친생부모에 관심을 보인 시기에 대해 현재 자녀 연령이 청소년기인 부모의 응답에 따르면, 초등 저학년 시기가 가장 많고(54.2%), 유아기(29.2%), 초등 고학년 시기(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아직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는 응답도 16.7%이었다. 아동기 등 입양자녀 연령별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초등 저학년 시기에 친생부모에 대해 관심을 갖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Ⅳ-3-4〉 자녀가 친생부모에 관심 보인 시기(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영아기 (36개월 미만)	유아기 (36개월~ 취학전)	초등 저학년 시기	초등 고학년 시기	중학생 시기	아직 없음	(수)
전체	1.0	25.1	25.6	2.4	0.5	51.2	(207)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4.2	0.0	0.0	0.0	0.0	95.8	(48)
유아기	0.0	29.4	0.0	0.0	0.0	70.6	(51)
아동기	0.0	35.7	47.6	1.2	0.0	23.8	(84)
청소년기	0.0	29.2	54.2	16.7	4.2	16.7	(24)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1.1	27.2	25.5	1.1	0.0	51.1	(184)
12개월 이상	0.0	8.7	26.1	13.0	4.3	52.2	(23)
친생자녀 유무							
있음	0.0	26.9	32.4	3.7	0.9	44.4	(108)
없음	2.0	23.2	18.2	1.0	0.0	58.6	(9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자녀에게 아직 입양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언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정 연령이 되면 입양사실을 공개하겠다는 응답이 60.0%(39명)이었다.

이들이 공개하고자 하는 연령은 6-7세가 46.2%이었고, 4-5세 23.1%, 2-3세 15.4%, 8-9세와 10세 이상이 각각 7.7%로 대부분 영유아기에 공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응답자의 1/3 이상은 가능한 미루길 원하거나 알려주지 않으려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3-5〉 입양사실 공개 시기

단위: %(명)

구분	특정 연령부터	가능한 한 미루길 원함	알려주지 않으려 함	모름/무응답	계(수)	$\chi^2(df)$
전체	60.0	21.5	16.9	1.5	100.0(65)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58.1	25.6	14.0	2.3	100.0(43)	
유아기	70.6	11.8	17.6	0.0	100.0(17)	na
아동기	40.0	20.0	40.0	0.0	100.0(5)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62.5	17.9	17.9	1.8	100.0(56)	na
12개월 이상	44.4	44.4	11.1	0.0	100.0(9)	
친생자녀 유무						
있음	66.7	22.2	11.1	0.0	100.0(18)	na
없음	57.4	21.3	19.1	2.1	100.0(47)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현재까지 자녀에게 입양사실을 비공개한 이유로는 자녀가 아직 어려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린다는 응답이 63.1%로 앞서 특정 연령이 되면 공개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60.0%)과 유사한 수준이다. 소수이지만 공개시기를 몰라서 미루고 있다는 응답도 3.1%이었으며, 입양사실로 인한 자녀의 부적응을 걱정하는 응답도 9.2%이었다.

〈표 Ⅳ-3-6〉 입양사실 비공개 이유

단위: %(명)

구분	아직 어려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림	가능한 한 비밀을 유지하고 싶음	자녀가 상처 받거나 삐뚤어질까봐	공개시기를 몰라서 미룸	모름/무응답	계(수)	$\chi^2(df)$
전체	63.1	23.1	9.2	3.1	1.5	100.0(65)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65.1	23.3	7.0	2.3	2.3	100.0(43)	
유아기	64.7	17.6	11.8	5.9	0.0	100.0(17)	na
아동기	40.0	40.0	20.0	0.0	0.0	100.0(5)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62.5	23.2	10.7	1.8	1.8	100.0(56)	na
12개월 이상	66.7	22.2	0.0	11.1	0.0	100.0(9)	

(표 Ⅳ-3-6 계속)

구분	아직 어려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림	가능한 한 비밀을 유지하고 싶음	자녀가 상처 받거나 삐뚤어질까봐	공개시기를 몰라서 미룸	모름/무응답	계(수)	$\chi^2(df)$
친생자녀 유무							
있음	77.8	16.7	0.0	5.6	0.0	100.0(18)	na
없음	57.4	25.5	12.8	2.1	2.1	100.0(47)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나. 입양자녀 발달 및 적응

입양자녀의 발달 및 적응과 관련해서는 입양 후 애착 형성 및 적응 기간, 현재의 평소 모습(행복도), 그리고 자녀가 경험한 행동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입양자녀와 애착이 완전히 형성되었다고 느끼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9.95개월이며, 최소 0개월, 최대 96개월로 응답하였다. 현재 입양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애착 형성 기간을 길게 응답한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아동기 자녀를 둔 경우 13.37개월로 보고하였다. 또한 친생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 12.79개월로 친생자녀가 없는 부모들보다 1.7배가량 길게 보고하였다.

〈표 Ⅳ-3-7〉 입양자녀와의 애착 형성 기간

단위: %(명), 개월

구분	6개월 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아직 형성 중	계(수)	평균	t/F
전체	53.7	16.5	6.6	3.3	2.6	17.3	100.0(272)	9.95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53.8	13.2	4.4	0.0	0.0	28.6	100.0(91)	6.05_a	
유아기	60.3	20.6	7.4	4.4	1.5	5.9	100.0(68)	9.64_{ab}	3.07^*
아동기	50.6	14.6	7.9	4.5	6.7	15.7	100.0(89)	13.37_b	
청소년기	45.8	25.0	8.3	8.3	0.0	12.5	100.0(24)	10.76_{ab}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57.1	13.8	6.7	3.3	2.5	16.7	100.0(240)	9.45	-1.48
12개월 이상	28.1	37.5	6.3	3.1	3.1	21.9	100.0(32)	14.00	
친생자녀 유무									
있음	46.0	21.4	9.5	5.6	3.2	14.3	100.0(126)	12.79	2.82^{**}
없음	60.3	12.3	4.1	1.4	2.1	19.9	100.0(146)	7.33	

(표 Ⅳ-3-7 계속)

구분	6개월 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아직 형성 중	계(수)	평균	*t*/*F*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57.8	15.5	6.0	5.2	1.7	13.8	100.0(116)	9.34	
휴직 중	56.3	12.5	6.3	0.0	0.0	25.0	100.0(16)	6.25	.80
미취업	49.6	18.2	7.3	2.2	3.6	19.0	100.0(137)	11.07	

주: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가정에 잘 적응하였다고 느끼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8.25개월이며, 최소 0개월에서 최대 144개월까지 보고되었다. 애착 형성 기간과 마찬가지로 현재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친생자녀가 있는 경우 적응 기간을 더 길게 응답하였다.

〈표 Ⅳ-3-8〉 입양자녀의 적응 기간

단위: %(명)

구분	6개월 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아직 형성 중	계(수)	평균	*t*/*F*
전체	68.0	14.3	4.0	1.5	2.2	9.9	100.0(272)	8.25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71.4	12.1	2.2	0.0	0.0	14.3	100.0(91)	4.83_{a}	
유아기	19.4	16.2	2.9	0.0	0.0	1.5	100.0(68)	5.01_{ab}	4.58^{**}
아동기	59.6	13.5	5.6	3.4	5.6	12.4	100.0(89)	12.68_{b}	
청소년기	54.2	20.8	8.3	4.2	4.2	8.3	100.0(24)	14.50_{ab}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71.7	12.1	3.8	1.3	2.5	8.8	100.0(240)	7.98	-.71
12개월 이상	40.6	31.3	6.3	3.1	0.0	1.8	100.0(32)	10.54	
친생자녀 유무									
있음	61.9	1.8	4.8	1.6	4.0	7.9	100.0(126)	10.66	2.07^{*}
없음	73.3	9.6	3.4	1.4	0.7	11.6	100.0(146)	6.08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70.7	13.8	5.2	1.7	1.7	6.9	100.0(116)	8.33	
휴직 중	68.8	12.5	6.3	0.0	0.0	12.5	100.0(16)	5.71	.17
미취업	65.7	14.6	2.9	1.5	2.9	12.4	100.0(137)	8.57	

주: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부모들은 현재 자녀의 평소 모습에 대해 평균 6.17점으로 아주 행복하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최소 1점에서 최대 7점까지 응답하였다. 영유아기 자녀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비해, 그리고 12개월 미만에 입양된 자녀가 연장아에 비해 좀 더 행복한 모습으로 평가되었다.

〈표 Ⅳ-3-9〉 부모가 지각한 입양자녀의 평소 모습(행복감)

단위: (명), 점

구분	(수)	평균	t/F	구분	(수)	평균	t/F
전체	(271)	6.17					
입양자녀 연령				가구소득			
영아기	(91)	6.46_a	14.83***	300만원 이하	(55)	6.31	1.18
유아기	(68)	6.43_a		301~500만원	(122)	6.07	
아동기	(88)	5.82_b		501~700만원	(62)	6.15	
청소년기	(24)	5.58_b		701만원 이상	(32)	6.31	
입양 시 월령				모 취업 여부			
12개월 미만	(239)	6.23	3.03**	취업 중	(116)	6.11	.41
12개월 이상	(32)	5.72		휴직 중	(16)	6.06	
친생자녀 유무				미취업	(136)	6.22	
있음	(125)	6.06	-1.87				
없음	(146)	6.26					

주: 1) 무응답 1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는 271명임.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3) 행복감은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입양자녀가 보인 적응 어려움 행동들에 대하여(표 Ⅳ-3-10 참조) 입양자녀가 지금까지 문제행동들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응답은 50.0%이며, 불안 20.9%, 위축 16.9%, 수면 문제 16.2%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소리 지르기, 짜증이 많음, 강한 애착, 학습장애 거짓말 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행동을 얼마나 경험하였는지 그 수를 알아보면(표 Ⅳ-3-11 참조), 평균 1.03개이며, 영유아기에 비해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좀 더 나타나고, 입양 시 월령이 12개월 이상인 아동의 경우 좀 더 많이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3-10〉 입양자녀의 적응 어려움(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불안	우울	위축	주의 집중 문제	공격 행동	수면 문제	따돌림	기타	전혀 없음	(수)
전체	23.5	5.9	16.9	15.8	13.6	16.2	4.4	7.0	50.0	(272)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20.9	3.3	5.5	5.5	13.2	22.0	0.0	8.8	62.6	(91)
유아기	17.6	2.9	13.2	13.2	10.3	20.6	0.0	4.4	55.9	(68)
아동기	31.5	6.7	21.3	22.5	13.5	7.9	7.9	7.9	39.3	(89)
청소년기	20.8	20.8	54.2	37.5	25.0	12.5	20.8	4.2	25.0	(24)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21.3	5.8	15.8	12.9	9.2	15.0	4.2	6.7	52.5	(240)
12개월 이상	40.6	6.3	25.0	37.5	46.9	25.0	6.3	9.4	31.3	(32)
친생자녀 유무										
있음	23.0	4.8	21.4	23.0	15.9	16.7	7.1	7.1	42.9	(126)
없음	24.0	6.8	13.0	9.6	11.6	15.8	2.1	6.8	56.2	(14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1.8	10.9	20.0	12.7	16.4	16.4	5.5	7.3	52.7	(55)
301~500만원	25.2	7.3	17.1	15.4	12.2	17.1	4.9	8.9	45.5	(123)
501~700만원	25.8	1.6	16.1	22.6	12.9	16.1	3.2	3.2	51.6	(62)
701만원 이상	15.6	0.0	12.5	9.4	15.6	12.5	3.1	6.3	59.4	(32)

주: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표 Ⅳ-3-11〉 입양자녀의 적응 어려움(수)

단위: %(명)

구분	없음	1가지	2~3가지	4가지 이상	계(수)	평균	t/F
전체	50.7	22.1	19.5	7.7	100.0(272)	1.03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64.8	16.5	12.1	6.6	100.0(91)	$.77_a$	
유아기	55.9	14.7	27.9	1.5	100.0(68)	$.82_a$	5.94^{**}
아동기	39.3	30.3	21.3	9.0	100.0(89)	1.20_a	
청소년기	25.0	33.3	16.7	25.0	100.0(24)	1.96_b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53.3	22.5	18.3	5.8	100.0(240)	.90	-2.95^{**}
12개월 이상	31.2	18.8	28.1	21.9	100.0(32)	1.97	

(표 Ⅳ-3-11 계속)

구분	없음	1가지	2~3가지	4가지 이상	계(수)	평균	*t*/*F*
친생자녀 유무							
있음	42.9	23.8	25.4	7.9	100.0(126)	1.19	1.79
없음	57.5	20.5	14.4	7.5	100.0(146)	.8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2.7	20.0	16.4	10.9	100.0(55)	1.11	.54
301~500만원	47.2	25.2	21.1	6.5	100.0(123)	1.07	
501~700만원	51.6	21.0	17.7	9.7	100.0(62)	1.02	
701만원 이상	59.4	15.6	21.9	3.1	100.0(32)	.75	

주: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다. 양육 특성

양육 특성으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양육행동, 양육 시 어려움 및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다.

1) 부모의 양육시간 및 행동

아버지는 평일 3.18시간, 최소 0시간에서 최대 16시간까지 응답하였다. 영아기는 3.54시간, 유아기는 3.07시간이었는데 이는 2015 보육실태조사결과(김은설 외, 2016)인 영아기 3.1시간, 유아기 2.9시간보다는 약간 많거나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Ⅳ-3-12〉 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_평일

단위: %(명), 시간

구분	0시간	1~3 시간	4~6 시간	7~9 시간	10~12 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4.1	59.8	29.3	3.8	2.3	0.8	100.0(268)	3.18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2.2	59.3	28.6	6.6	2.2	1.1	100.0(91)	3.54
유아기	7.4	57.4	29.5	2.9	2.9	0.0	100.0(68)	3.07
아동기	3.5	60.0	30.6	2.4	2.4	1.2	100.0(85)	3.08
청소년기	4.2	66.7	29.2	0.0	0.0	0.0	100.0(24)	2.46
$\chi^2(df)$ / F			na					1.65

(표 Ⅳ-3-12 계속)

구분	0시간	1~3 시간	4~6 시간	7~9 시간	10~12 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6	61.8	25.5	5.5	3.6	0.0	100.0(55)	3.16
301~500만원	1.7	60.0	31.7	2.5	2.5	1.7	100.0(120)	3.44
501~700만원	8.2	59.0	27.9	4.9	0.0	0.0	100.0(61)	2.80
701만원 이상	6.2	56.2	31.2	3.1	3.1	0.0	100.0(32)	2.94
$\chi^2(df)$ / F				na				1.20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8.8	48.2	34.2	5.3	2.6	0.9	100.0(114)	3.29
휴직 중	0.0	87.5	12.5	0.0	0.0	0.0	100.0(16)	2.38
미취업	0.7	66.2	27.2	2.9	2.2	0.7	100.0(136)	3.18
$\chi^2(df)$ / F				na				1.11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무응답 4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는 268명임.
3)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주말에 아버지는 평균 9.14시간을 자녀와 함께 하는데(최소 0시간, 최대 20시간) 영유아기의 경우 10시간 이상으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보육실태조사결과(김은설 외, 2016)에서 영아기 8.4시간, 유아기 9.0시간인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은 편이었다.

〈표 Ⅳ-3-13〉 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_주말 및 휴일

단위: %(명), 시간

구분	0시간	1~3 시간	4~6 시간	7~9 시간	10~12 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5	11.2	19.8	11.9	29.9	25.7	100.0(268)	9.41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0.0	6.6	9.9	13.2	45.1	25.3	100.0(91)	10.74_{a}
유아기	0.0	7.4	19.1	8.8	32.4	32.4	100.0(68)	10.24_{ab}
아동기	2.4	15.3	28.2	11.8	15.3	27.1	100.0(85)	8.38_{bc}
청소년기	8.3	25.0	29.2	16.7	16.7	4.2	100.0(24)	5.67_{c}
$\chi^2(df)$ / F				na				10.9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6	12.7	23.6	12.7	32.7	14.5	100.0(55)	8.31
301~500만원	0.8	9.2	21.7	10.0	25.8	32.5	100.0(120)	9.84
501~700만원	1.6	14.8	16.4	14.8	29.5	23.0	100.0(61)	8.98
701만원 이상	0.0	9.4	12.5	12.5	40.6	25.0	100.0(32)	10.47
$\chi^2(df)$ / F				na				2.14

(표 Ⅳ-3-13 계속)

구분	0시간	1~3 시간	4~6 시간	7~9 시간	10~12 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2.6	12.3	22.8	14.0	19.3	28.9	100.0(114)	9.04
휴직 중	0.0	12.5	6.2	6.2	56.2	18.8	100.0(16)	10.25
미취업	0.7	10.3	18.4	11.0	35.3	24.3	100.0(136)	9.65
$\chi^2(df)$ / F				na				.82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무응답 4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는 268명임.
3)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표 Ⅳ-3-14〉 어머니와 함께 한 시간_평일

단위: %(명), 시간

구분	0시간	1~3 시간	4~6 시간	7~9 시간	10~12 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0.4	13.6	32.7	21.7	21.3	10.3	100.0(272)	7.59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0.0	9.9	15.4	23.1	38.5	13.2	100.0(91)	9.10_a
유아기	0.0	7.4	36.8	29.4	14.7	11.8	100.0(68)	7.71_{ab}
아동기	1.1	14.6	47.2	14.6	13.5	9.0	100.0(89)	6.71_{bc}
청소년기	0.0	41.7	33.3	20.8	4.2	0.0	100.0(24)	4.83_c
$\chi^2(df)$ / F				na				10.6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8	10.9	25.5	23.6	23.6	14.5	100.0(55)	8.25
301~500만원	0.0	12.2	33.3	21.1	22.8	10.6	100.0(123)	7.88
501~700만원	0.0	19.4	35.5	21.0	16.1	8.1	100.0(62)	6.73
701만원 이상	0.0	12.5	37.5	21.9	21.9	6.2	100.0(32)	7.03
$\chi^2(df)$ / F								1.9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0.9	26.7	48.3	14.7	6.9	2.6	100.0(116)	5.34_a
휴직 중	0.0	12.5	18.8	18.8	37.5	12.5	100.0(16)	8.63_b
미취업	0.0	2.9	21.9	27.7	30.7	16.8	100.0(137)	9.34_b
$\chi^2(df)$ / F				na				41.49***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어머니의 경우 평일에는 평균 7.59시간을 자녀와 함께하며(최소 0시간, 최대 18시간),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평균 9.10시간을 함께 보내지만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4.83시

간을 함께 한다. 또한 취업모는 평균 5.34시간, 미취업모는 평균 9.34시간을 자녀와 함께한다고 응답하였다. 2015년 보육실태조사결과(김은설 외, 2016)에서는 영아기 10.4시간, 유아기 7.7시간이었다.

주말에 어머니는 평균 11.73시간, 최소 0시간에서 최대 20시간까지 함께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8.08시간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길지 않았다. 2015년 보육실태조사결과(김은설 외, 2016)에서는 영아기 12.7시간, 유아기 12.4시간으로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Ⅳ-3-15〉 어머니와 함께 한 시간_주말 및 휴일

단위: %(명), 시간

구분	0시간	1~3 시간	4~6 시간	7~9 시간	10~12 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1	4.1	7.7	8.1	35.1	43.9	100.0(271)	11.73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0.0	1.1	3.3	8.8	48.4	38.5	100.0(91)	12.41
유아기	0.0	4.4	4.4	2.9	30.9	57.4	100.0(68)	12.79
아동기	2.3	4.5	10.2	11.4	26.1	45.5	100.0(88)	11.20
청소년기	4.2	12.5	25.0	8.3	29.2	20.8	100.0(24)	8.08
$\chi^2(df)$ / F			na					10.91***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6	1.8	14.5	5.5	40.0	34.5	100.0(55)	11.04
301~500만원	0.0	4.1	4.9	8.1	32.5	50.4	100.0(123)	12.23
501~700만원	1.6	6.6	4.9	13.1	36.1	37.7	100.0(61)	11.18
701만원 이상	0.0	3.1	12.5	3.1	34.4	46.9	100.0(32)	12.06
$\chi^2(df)$ / F			na					1.69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1.7	6.9	9.5	11.2	27.6	43.1	100.0(116)	11.17
휴직 중	0.0	0.0	6.2	12.5	43.8	37.5	100.0(16)	11.56
미취업	0.7	2.2	6.6	5.1	40.4	44.9	100.0(136)	12.21
$\chi^2(df)$ / F			na					2.15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무응답 1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는 271명임.
3)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양육행동은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온정적 양육은 4.16점, 통제적 양육은 3.38점으로 나타났다. 어린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더 온정적이고, 통제적 양육의 수준은 낮았고, 친생자녀가 있는 경우

통제적 양육의 수준이 다소 높았다. 동일한 척도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한 한국아동패널 연구(최윤경 외, 2014)에 따르면, 평균 만5.2세의 유아기일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 평균 3.69점, 아버지 평균 3.63점이었으며, 통제적 양육행동은 어머니 평균 3.42점, 아버지 평균 3.50점이었다.

〈표 Ⅳ-3-16〉 입양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

단위: %(명)

구분	온정적 양육	t/F	통제적 양육	t/F	계(수)
전체	4.16		3.38		100.0(272)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4.31_{b}		3.21_{a}		100.0(91)
유아기	4.25_{ab}	5.92^{**}	3.53_{b}	3.43^{*}	100.0(68)
아동기	3.98_{ab}		3.43_{ab}		100.0(89)
청소년기	3.96_{a}		3.44_{ab}		100.0(24)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4.18	1.71	3.38	-.40	100.0(240)
12개월 이상	3.98		3.43		100.0(32)
친생자녀 유무					
있음	4.11	-1.06	3.47	2.05^{*}	100.0(126)
없음	4.19		3.30		100.0(146)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4.17		3.35		100.0(116)
휴직 중	4.01	.47	3.20	.90	100.0(16)
미취업	4.16		3.42		100.0(137)

주: 1)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2) 이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혹은 통제적 양육행동을 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2) 양육 시 어려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담에 대해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육체적 피로나 휴식시간이 없는 등의 신체적 부담에 대해서는 평균 2.43점으로 약간 부담스러운 정도로 나타났으며, 다른 영역보다는 비교적 높은 점수였다. 정서적 부담은 1.82점, 사회적 고립은 1.45점, 경제적 부담은 1.95점, 가족관계의 어려움은 1.35점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에 있어서는 자녀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증가할

수록 경제적 부담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Ⅰ) 연구(권미경 외, 2015)에서 장애 영유아 양육부담을 조사한 결과는 전체 평균 2.7점이었다.

〈표 Ⅳ-3-17〉 입양자녀 양육 시 느낄 수 있는 부담

단위: %(명)

구분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의 어려움	계(수)
전체	2.43	1.82	1.45	1.95	1.35	100.0(272)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2.48	1.76	1.43	1.67_{a}	1.23	100.0(91)
유아기	2.54	1.91	1.51	2.04_{ab}	1.35	100.0(68)
아동기	2.30	1.82	1.43	2.05_{ab}	1.39	100.0(89)
청소년기	2.42	1.79	1.42	2.38_{b}	1.58	100.0(24)
F	1.22	0.50	0.30	5.44^{**}	2.40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2.40	1.83	1.46	1.94	1.38	100.0(240)
12개월 이상	2.69	1.78	1.38	2.00	1.30	100.0(32)
t	-1.83	0.29	0.67	-0.34	1.13	
친생자녀 유무						
있음	2.40	1.79	1.47	2.08	1.40	100.0(126)
없음	2.46	1.84	1.43	1.83	1.30	100.0(146)
t	-0.53	-0.51	0.46	2.23	1.2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25	1.71	1.44	2.04	1.42	100.0(55)
301~500만원	2.46	1.93	1.50	2.01	1.37	100.0(123)
501~700만원	2.45	1.73	1.29	1.89	1.29	100.0(62)
701만원 이상	2.59	1.78	1.56	1.68	1.25	100.0(32)
F	1.29	1.43	1.80	1.37	0.70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2.47	1.89	1.50	2.07	1.34	100.0(116)
휴직 중	2.44	1.81	1.69	1.63	1.69	100.0(16)
미취업	2.40	1.78	1.39	1.88	1.32	100.0(137)
F	0.24	0.57	1.97	2.53	2.52	

주: 1)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2) 이 문항은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을 느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다음으로 일반적인 양육 부담 외에 입양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11개의 어려

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입양부모가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Ⅳ-3-18〉 입양자녀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문항

문항	
① 입양자녀가 가족과 잘 어울리지 못함.	⑦ 성장하며 친생부모 찾을까 두려움.
② 가족들이 입양자녀와 가까워지지 못함.	⑧ 주변에서 입양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움.
③ 애착형성 어려움.	⑨ 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주변 오해
④ 친생자녀와 입양자녀 역차별	⑩ 자녀문제가 입양 때문인 것 같아 걱정
⑤ 입양사실 공개 시 방법 고민	⑪ 주변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 어려움.
⑥ 입양사실로 자녀가 삐뚤어질까 두려움.	⑫ 어려움 없음.

그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에 대한 응답이 2.06점으로 어려움 문항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양사실로 자녀가 삐뚤어질까 두려움 1.96점, 입양사실 공개 시 방법에 대한 고민 1.84점 등의 응답을 보였다. 구체적인 응답 빈도는 부록(부표 Ⅳ-3-1~Ⅳ-3-11)에서 제시하였다.

〈표 Ⅳ-3-19〉 입양자녀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전체	1.07	1.06	1.10	1.15	1.84	1.96	1.50	1.43	2.06	1.67	1.51	(272)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1.09	1.07	1.08	1.19	2.45_{b}	2.29_{c}	1.66_{b}	1.57	2.21	1.76	1.54	(91)
유아기	1.01	1.01	1.06	1.12	1.85_{a}	2.10_{bc}	1.60_{b}	1.41	2.22	1.65	1.49	(68)
아동기	1.08	1.07	1.11	1.14	1.34_{a}	1.64_{ab}	1.34_{ab}	1.31	1.85	1.61	1.53	(89)
청소년기	1.17	1.08	1.25	1.23	1.38_{a}	1.50_{a}	1.17_{a}	1.33	1.83	1.67	1.42	(24)
F	1.88	0.86	1.91	0.33	21.46***	10.27***	4.62**	1.97	3.20	0.51	0.20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1.05	1.04	1.05	1.13	1.84	1.98	1.49	1.43	2.09	1.64	1.47	(240)
12개월 이상	1.22	1.19	1.44	1.31	1.84	1.84	1.53	1.38	1.84	1.91	1.84	(32)
t	-1.87	-1.78	-2.94**	-1.48	-0.01	0.73	0.27	0.42	1.36	-1.68	-2.15*	
친생자녀 유무												
있음	1.08	1.08	1.15	1.15	1.61	1.82	1.35	1.27	1.85	1.58	1.51	(126)
없음	1.07	1.03	1.05	-	2.04	2.08	1.62	1.56	2.25	1.75	1.51	(146)
t	0.31	1.47	2.16*	-	-3.38**	-2.31*	-3.02**	-3.35**	-3.37**	-1.74	-0.06	

(표 Ⅳ-3-19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1.03_{a}	1.01_{a}	1.05	1.19	1.71_{a}	1.91	1.49	1.40	2.04	1.72	1.55	(116)
휴직 중	1.19_{b}	1.06_{ab}	1.13	1.40	2.81_{b}	2.50	1.81	1.56	2.13	1.56	1.56	(16)
미취업	1.10_{ab}	1.09_{b}	1.14	1.10	1.86_{a}	1.93	1.45	1.45	2.07	1.64	1.46	(137)
F	3.54*	3.97*	1.91	1.84	7.66**	2.85	1.59	0.39	0.07	0.50	0.51	

주: 1) 친생자녀와 입양자녀 역차별 문항은 친생자녀가 있는 129사례만 응답하였음.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3) 이 문항은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Ⅳ-3-19>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가 영아기 혹은 유아기 때는 입양사실 공개 방법이나 입양사실로 인해 자녀가 삐뚤어지거나 성장하여 친생부모를 찾을까봐 걱정을 하지만 이후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어려움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입양 시 자녀 월령이 12개월 이상이었던 부모는 자녀와의 애착형성 및 주변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것에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친생자녀가 없는 부모는 입양사실 공개나 그것으로 인한 자녀의 반응, 그리고 주변의 편견 등에 어려움을 겪은 정도가 좀 더 높았고, 어머니가 미취업 중이거나 휴직중인 가정에서 입양자녀와 가족들 간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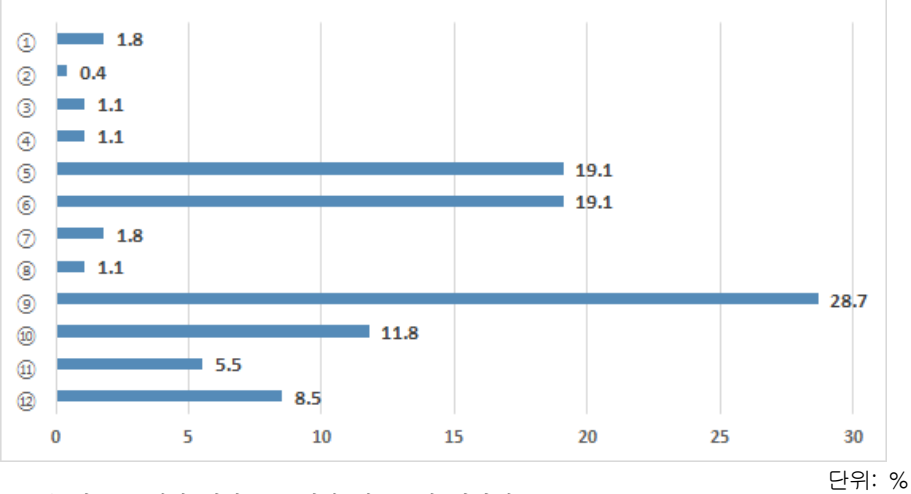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3-1〕 입양자녀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

한편 이러한 어려움 중 부모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가장 큰 어려움 한 가지를 골랐을 때 그 결과는(그림 Ⅳ-3-1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28.7%).

3) 양육 정보

입양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응답자의 40.7%는 자조모임 등을 통해 주변 입양가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특히 아동기나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혹은 입양 시 월령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절반 이상이 자조모임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육아관련사이트나 관련 서적 20.0%, 친구나 동료 13.0%, 입양기관 및 관련 단체 11.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5%에 불과하였다.

2015년 보육실태조사결과(김은설 외, 2016)에서는 육아관련사이트와 관련 서적을 합하면 29.1%, 친구·동료가 37.6%, 집안어른 16.2%, 육아종합지원센터 0.2% 등의 결과였다.

〈표 Ⅳ-3-20〉 육아 정보 및 상담 필요시 주로 도움 받는 사람/곳

단위: %(명)

구분	집안 어른,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육아 관련 사이트, 관련 서적	육아 관련 전문가	육아 종합 지원 센터,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입양 기관 및 관련 단체, 센터	주변 입양 가정 (자조 모임)	기타	계(수)	$\chi^2(df)$
전체	8.1	13.0	20.0	3.0	1.5	11.9	40.7	1.9	100.0(270)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8.8	17.6	30.8	3.3	1.1	12.1	23.1	3.3	100.0(91)	
유아기	10.3	8.8	26.5	0.0	2.9	8.8	39.7	2.9	100.0(68)	na
아동기	6.9	13.8	5.7	4.6	1.1	14.9	52.9	0.0	100.0(87)	
청소년기	4.2	4.2	12.5	4.2	0.0	8.3	66.7	0.0	100.0(24)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8.8	13.9	20.6	2.1	1.7	12.6	39.1	1.3	100.0(238)	na
12개월 이상	3.1	6.2	15.6	9.4	0.0	6.2	53.1	6.2	100.0(32)	
친생자녀 유무										
있음	4.0	7.3	16.9	2.4	0.8	12.1	52.4	4.0	100.0(124)	na
없음	11.6	17.8	22.6	3.4	2.1	11.6	30.8	0.0	100.0(146)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6.1	17.4	19.1	2.6	3.5	14.8	35.7	0.9	100.0(115)	
휴직 중	6.3	6.3	37.5	0.0	0.0	0.0	50.0	0.0	100.0(16)	na
미취업	10.3	10.3	19.1	3.7	0.0	11.0	42.6	2.9	100.0(136)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무응답 2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는 270명임.
3)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한편 현재 입양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한 정보는 연령별 자녀 양육 방법이 29.8%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아동기까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 나타났다. 영아기에는 입양사실 공개 시기 및 방법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으나, 이후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자녀학습 및 학교생활지도 방법, 입양관련 이슈나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표 Ⅳ-3-21〉 자녀 양육 시 가장 필요한 정보

단위: %(명)

구분	연령별 자녀 양육 방법	입양 사실 공개 시기 및 방법	입양 아동 문제 행동에 따른 대처	연령별 아동 발달 특징	자녀 학습 및 학교 생활 지도 방법	입양 관련 이슈 및 정책 등에 관한 정보	입양 아동의 특성	입양 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	이웃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정보	기타	계(수)	$\chi^2(df)$
전체	29.8	17.6	14.0	8.1	8.1	7.7	6.6	4.8	1.8	1.5	100.0(272)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33.0	33.0	7.7	11.0	1.1	1.1	8.8	3.3	1.1	0.0	100.0(91)	na
유아기	38.2	19.1	14.7	2.9	2.9	7.4	7.4	1.5	1.5	4.4	100.0(68)	
아동기	22.5	5.6	16.9	7.9	15.7	13.5	5.6	7.9	3.4	1.1	100.0(89)	
청소년기	20.8	0.0	25.0	12.5	20.8	12.5	0.0	8.3	0.0	0.0	100.0(24)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30.4	18.8	13.8	8.3	7.5	7.1	6.3	4.2	2.1	1.7	100.0(240)	na
12개월 이상	25.0	9.4	15.6	6.3	12.5	12.5	9.4	9.4	0.0	0.0	100.0(32)	
친생자녀 유무												
있음	16.7	9.1	16.9	7.1	13.0	12.3	4.5	6.5	2.6	1.9	100.0(126)	na
없음	34.7	28.8	10.2	9.3	1.7	1.7	9.3	2.5	0.8	0.8	100.0(146)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25.9	18.1	15.5	8.6	6.9	8.6	6.9	6.0	0.9	2.6	100.0(116)	
휴직 중	56.3	31.3	12.5	0.0	0.0	0.0	0.0	0.0	0.0	0.0	100.0(16)	na
미취업	29.9	16.1	12.4	8.8	10.2	7.3	7.3	4.4	2.9	0.7	100.0(137)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4. 입양가정 지원 제도[41)]

입양가정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입양 전 부모교육, 입양휴가제 및 육아휴직, 입양수수료나 양육수당 등의 지원 정책, 그리고 사후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여러 모임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

41) 이 절에서부터 결과표에서 제시하는 '연장아 입양 여부'는 모든 입양자녀 중 한 명이라도 입양시기가 12개월 이상인 부모들을 '있음', 이외의 부모들은 '없음'으로 구분한 것임.

가. 입양 전 부모교육

1) 예비입양부모교육 참여

입양 전에 부모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부모는 전체의 87.1%이며, 2012년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는 8시간 의무교육이 되었으므로 모두가 교육에 참여하였으나 첫 입양시기가 2011년도 이전인 부모는 77.3%만이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이나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친생자녀가 없거나 연장아 입양이 아닌 경우 부모교육 참여 비율이 높았다.

〈표 Ⅳ-4-1〉 입양 전 부모교육 참여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chi^2(df)$
전체	87.1	12.9	100.0(272)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77.3	22.7	100.0(154)	30.78(1)***
2012년도 이후	100.0	0.0	100.0(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81.7	18.3	100.0(126)	6.07(1)*
없음	91.8	8.2	100.0(146)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66.7	33.3	100.0(42)	18.56(1)***
없음	90.9	9.1	100.0(23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81.8	18.2	100.0(55)	
301~500만원	88.6	11.4	100.0(123)	1.77(3)
501~700만원	88.7	11.3	100.0(62)	
701만원 이상	87.5	12.5	100.0(3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86.2	13.8	100.0(116)	
휴직 중	93.8	6.3	100.0(16)	0.74(2)
미취업	87.6	12.4	100.0(137)	

주: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입양 전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우(237명), 그 횟수는 평균 3.12회이며, 대체로 1~2회 정도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75.1%).

〈표 Ⅳ-4-2〉 입양 전 부모교육 참여 횟수

단위: %(명)

구분	1-2회	3-4회	5-6회	7-8회	9회 이상	계(수)	평균
전체	75.1	17.3	3.4	0.4	3.8	100.0(237)	3.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또한 입양 전 참여한 부모교육의 유형은 입양기관에서의 8시간 의무교육 64.6%, 입양기관 자체 교육 41.8%, 관련 단체나 센터의 교육 27.8%이었다. 예비 입양부모교육이 의무화되기 이전(2011년도 이전)에 입양한 경우 입양기관에서의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3〉 입양 전 참여한 부모교육의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입양기관에서의 의무8시간 교육	입양기관에서의 자체적인 교육	입양관련단체, 센터에서의 교육	기타	(수)
전체	64.6	41.8	27.8	3.4	(237)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38.7	65.5	34.5	3.4	(119)
2012년도 이후	90.7	17.8	21.2	3.4	(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57.3	45.6	26.2	4.9	(103)
없음	70.1	38.8	29.1	2.2	(134)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75.0	35.7	28.6	7.1	(28)
없음	63.2	42.6	27.8	2.9	(2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도움정도 및 요구

입양 전에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우 실제 자녀 양육 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약 90%이며(그러함 59.1% + 매우 그러함 30.0%), 평균 3.18점으로 부모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4-4〉 입양 전 부모교육의 도움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평균	t/F
전체	1.3	9.7	59.1	30.0	100.0(237)	3.18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0.8	9.2	63.0	26.9	100.0(119)	3.16	-0.15
2012년도 이후	1.7	10.2	55.1	33.1	100.0(118)	3.19	
친생자녀 유무							
있음	1.9	6.8	60.2	31.1	100.0(103)	3.20	0.56
없음	0.7	11.9	58.2	29.1	100.0(134)	3.16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0.0	14.3	53.6	32.1	100.0(28)	3.18	0.01
없음	1.4	9.1	59.8	29.7	100.0(209)	3.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특히 예비입양부모 대상 8시간 의무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에게 교육 참여 시 불편했던 점을 조사한 결과, 불편한 점이 없다는 응답도 23.2%이었으나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장소가 멀리 있다는 응답은 26.5%이었다. 첫 입양시기가 2011년도 이전이거나 친생자녀가 있는 경우 불편한 점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좀 더 높았으며, 취업모 가정에서는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응답이 53.4%이었다.

〈표 Ⅳ-4-5〉 예비입양부모교육 참여 시 불편했던 점

단위: %(명)

구분	교육 장소가 멀리 있음	시간을 내기 힘듦	교육 일정이 없거나 대기함	기타	없었음	계(수)	$\chi^2(df)$
전체	26.5	43.0	5.3	2.0	23.2	100.0(151)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26.1	34.8	2.2	2.2	34.8	100.0(46)	na
2012년도 이후	26.7	46.7	6.7	1.9	18.1	100.0(105)	
친생자녀 유무							
있음	28.8	32.2	3.4	3.4	32.2	100.0(59)	na
없음	25.0	50.0	6.5	1.1	17.4	100.0(92)	

(표 Ⅳ-4-5 계속)

구분	교육 장소가 멀리 있음	시간을 내기 힘듦	교육 일정이 없거나 대기함	기타	없었음	계(수)	$\chi^2(df)$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20.7	53.4	5.2	1.7	19.0	100.0(58)	
휴직 중	33.3	33.3	8.3	8.3	16.7	100.0(12)	na
미취업	30.4	38.0	5.1	1.3	25.3	100.0(79)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153명 중 무응답 2사례 제외함.
3)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예비입양부모교육의 8시간에 대해 61.4%는 적정하다고 평가하였다. 친생자녀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친생자녀가 없는 경우 25.5%가 길다고 응답한 반면 친생자녀가 있는 경우 짧다는 응답이 28.8%이었다.

〈표 Ⅳ-4-6〉 예비부모교육 시간의 적정성

단위: %(명)

구분	짧다	길다	적정하다	계(수)	$\chi^2(df)$
전체	19.6	19.0	61.4	100.0(153)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21.7	13.0	65.2	100.0(46)	1.52(2)
2012년도 이후	18.7	21.5	59.8	100.0(107)	
친생자녀 유무					
있음	28.8	8.5	62.7	100.0(59)	9.74(2)**
없음	13.8	25.5	60.6	100.0(94)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21.7	18.3	60.0	100.0(60)	
휴직 중	8.3	25.0	66.7	100.0(12)	na
미취업	19.0	17.7	63.3	100.0(79)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예비입양부모교육 시간이 짧거나 길다고 응답한 이들(59명)에게 적정한 시간을 물어본 결과, 8시간 이하 45.8%, 9~16시간 23.7%, 17~24시간 15.3%, 25시간 이상 10.2%로 최소 4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부표 Ⅳ-4-1 참조).

다음으로 입양 전과 후에 실시하는 부모교육에서 어떠한 내용이 가장 필요한지를 조사한 결과(1+2순위), 입양 전의 경우 입양사실 공개시기 및 방법(41.2%), 입양아동의 특성(39.7%), 연령별 자녀양육 방법(30.9%)의 순이었다. 또한 입양자녀의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요구를 보이며, 친생자녀가 있거나 연장아 입양을 한 부모는 입양아동의 특성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필요로 하고, 취업모 가정은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를 교육 내용으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Ⅳ-4-7〉 입양 전 부모교육에 필요한 내용(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타	계(수)	$\chi^2(df)$
전체	25.0	24.3	17.6	13.2	5.5	4.8	4.4	3.3	1.1	0.7	100.0(272)	
첫 입양자녀 현재 연령												
영아기	23.1	26.4	15.4	12.1	3.3	8.8	2.2	6.6	1.1	1.1	100.0(91)	
유아기	26.5	26.5	16.2	11.8	7.4	2.9	5.9	1.5	1.5	0.0	100.0(68)	na
아동기	30.3	20.2	22.5	11.2	7.9	1.1	4.5	1.1	0.0	1.1	100.0(89)	
청소년기	8.3	25.0	12.5	29.2	0.0	8.3	8.3	4.2	4.2	0.0	100.0(24)	
친생자녀 유무												
있음	21.4	31.0	15.1	12.7	7.1	5.6	5.6	0.8	0.0	0.8	100.0(126)	na
없음	28.1	18.5	19.9	13.7	4.1	4.1	3.4	5.5	2.1	0.7	100.0(146)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16.7	38.1	11.9	11.9	7.1	4.8	4.8	2.4	2.4	0.0	100.0(42)	na
없음	26.5	21.7	18.7	13.5	5.2	4.8	4.3	3.5	0.9	0.9	100.0(230)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25.0	21.6	17.2	12.9	6.0	3.4	8.6	2.6	1.7	0.9	100.0(116)	
휴직 중	6.3	37.5	18.8	12.5	6.3	0.0	6.3	12.5	0.0	0.0	100.0(16)	na
미취업	27.0	25.5	17.5	13.9	5.1	5.8	0.7	2.9	0.7	0.7	100.0(137)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3) ① 입양사실 공개시기 및 방법 ② 입양아동의 특성 ③ 연령별 자녀양육 방법 ④ 연령별 아동발달특징 ⑤ 입양가정지원에 대한 정보 ⑥ 입양관련 이슈 및 정책 등에 관한 정보 ⑦ 입양아동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⑧ 주변에 입양사실 알리는 등 이웃 간 관계 ⑨ 자녀학습 학교생활지도 방법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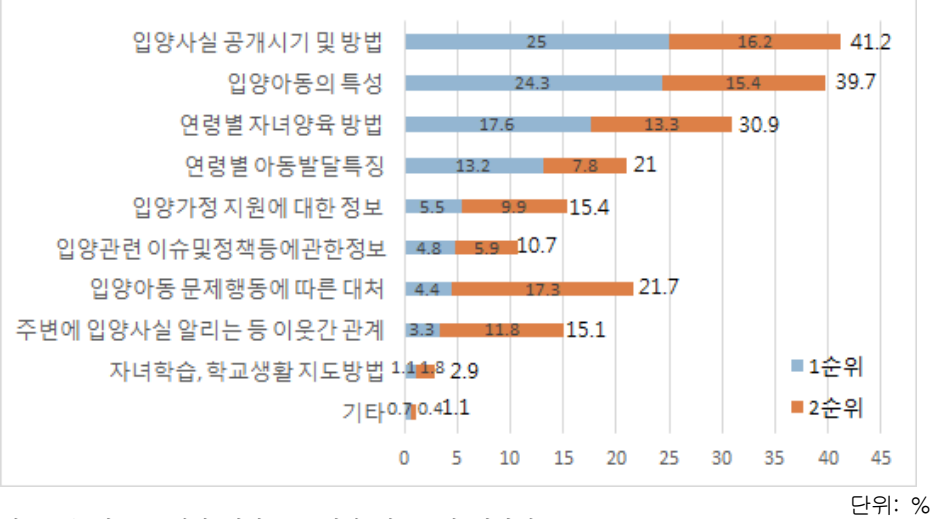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4-1〕 입양 전 부모교육에 필요한 내용(1,2순위 중복응답)

입양 후 부모교육에서 필요한 내용으로는 입양사실 공개시기 및 방법(44.5%), 입양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38.6%), 연령별 자녀양육 방법(3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2순위). <표 Ⅳ-4-8>에서 볼 수 있듯이, 입양 후 부모교육 또한 자녀 연령별로 혹은 가정의 특성별로 서로 다른 내용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4-8〉 입양 후 부모교육에 필요한 내용(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수)	$\chi^2(df)$
전체	26.8	21.7	13.6	12.5	11.8	5.9	2.9	2.6	2.2	100.0(272)	
첫 입양자녀 현재연령											
영아기	29.7	19.8	9.9	15.4	14.3	5.5	1.1	2.2	2.2	100.0(91)	na
유아기	35.3	23.5	16.2	10.3	5.9	2.9	1.5	1.5	2.9	100.0(68)	
아동기	21.3	21.3	14.6	10.1	12.4	10.1	3.4	4.5	2.2	100.0(89)	
청소년기	12.5	25.0	16.7	16.7	16.7	0.0	12.5	0.0	0.0	100.0(24)	
친생자녀 유무											
있음	23.8	17.5	18.3	12.7	12.7	7.1	4.0	1.6	2.4	100.0(126)	na
없음	29.5	25.3	9.6	12.3	11.0	4.8	2.1	3.4	2.1	100.0(146)	

(표 Ⅳ-4-8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수)	$\chi^2(df)$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14.3	9.5	19.0	9.5	26.2	7.1	9.5	2.4	2.4	100.0(42)	na
없음	29.1	23.9	12.6	13.0	9.1	5.7	1.7	2.6	2.2	100.0(230)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21.6	23.3	12.1	16.4	14.7	4.3	2.6	1.7	3.4	100.0(116)	
휴직 중	37.5	31.3	6.3	12.5	12.5	0.0	0.0	0.0	0.0	100.0(16)	na
미취업	30.7	19.0	14.6	9.5	9.5	8.0	3.6	3.6	1.5	100.0(137)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3) ① 입양사실 공개시기 및 방법 ② 연령별 자녀양육 방법 ③ 입양아동의 특성 ④ 입양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⑤ 연령별 아동발달 특징 ⑥ 입양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 ⑦ 자녀학습, 학교생활지도 방법 ⑧ 주변에 입양사실 알리는 등 이웃 간 관계 ⑨ 입양관련이슈 및 정책 등에 관한 정보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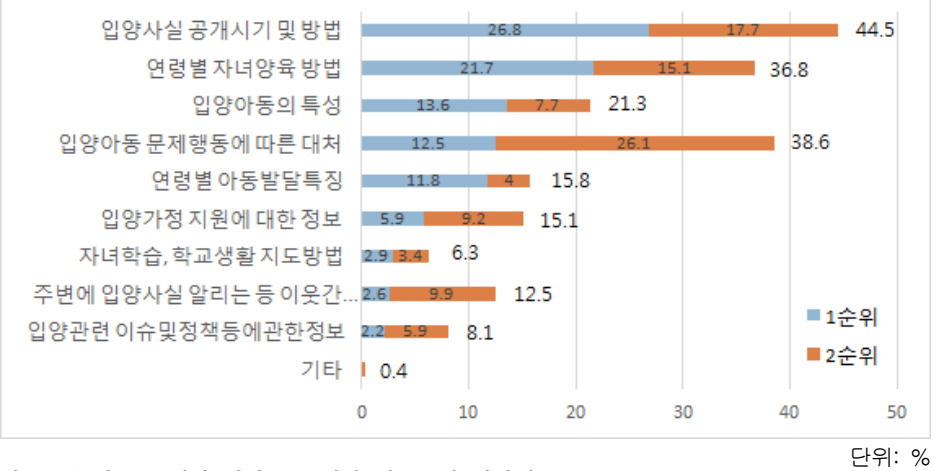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4-2〕 입양 후 부모교육에 필요한 내용(1,2순위 중복응답)

나. 입양휴가제 및 육아휴직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2006년 이후 공무원 등 일부 직장에서 시행중인, 입양 시 최대 20일까지 휴가를 부여하는 입양휴가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2)를 알고 있는 부모는 절반이 넘지 않았다(41.9%). 가구소득이 701만 원 이상인 경우 알고 있다는 응답이 56.3%로, 소득이 높을수록 알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게 나타났다.

〈표 Ⅳ-4-9〉 입양휴가제 실시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chi^2(df)$
전체	41.9	58.1	100.0(272)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39.0	61.0	100.0(154)	1.27(1)
2012년도 이후	45.8	54.2	100.0(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40.5	59.5	100.0(126)	0.20(1)
없음	43.2	56.8	100.0(14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7.3	72.7	100.0(55)	
301~500만원	41.5	58.5	100.0(123)	8.62(3)*
501~700만원	48.4	51.6	100.0(62)	
701만원 이상	56.3	43.8	100.0(3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48.3	51.7	100.0(116)	
휴직 중	50.0	50.0	100.0(16)	4.48(2)
미취업	35.8	64.2	100.0(137)	

주: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입양휴가제를 알고 있는 응답자(114명) 중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은 43.0%이었으며(그림 Ⅳ-4-3), 그들(49명) 중 입양휴가제를 사용한 응답자는 59.2%에 불과하였다.

한편 자신의 직장에서 입양휴가제를 실시한다는 응답은 첫 입양시기가 2011년도 이전인 경우(60명)에는 30.0%, 2012년도 이후인 경우(54명)에는 57.4%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었다(부표 Ⅳ-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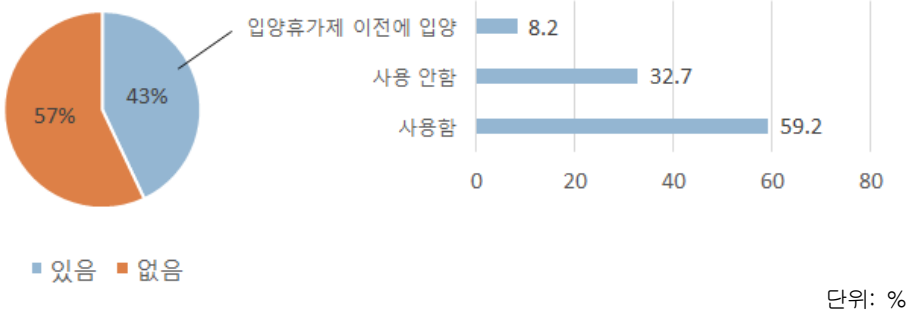

단위: %

주: (좌) n=114, (우) n=4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4-3〕 직장 내 입양휴가제 유무 및 사용 여부

한편 입양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림 Ⅳ-4-4]와 같으며, 원하였으나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기타로는 최근 입양휴가가 신설되었거나, 위탁 중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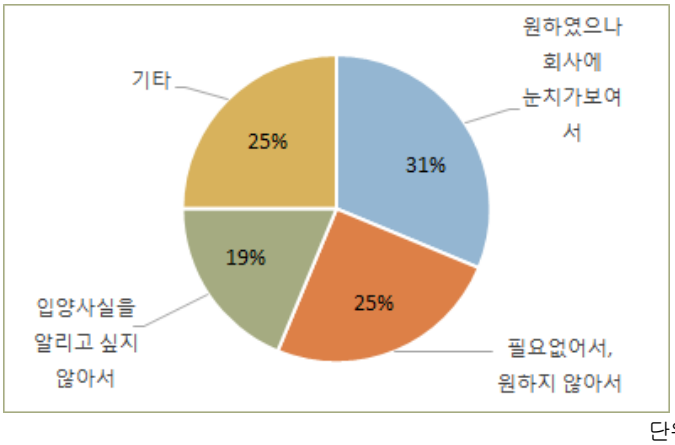

단위: %

주: n=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4-4〕 입양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

다음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당 없는 응답자 36.4% 이외에 12.5%만이 입양자녀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첫 입양시기가 2012년도 이후인 부모인 경우, 그리고 모취업중인 가정에서 더 높았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자들(30명)은 최소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4-10〉 육아휴직 사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계(수)	$\chi^2(df)$
전체	12.5	51.1	36.4	100.0(272)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7.8	54.5	37.7	100.0(154)	7.27(2)*
2012년도 이후	18.6	46.6	34.7	100.0(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11.9	50.8	37.3	100.0(126)	0.12(2)
없음	13.0	51.4	35.6	100.0(146)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7.1	54.8	38.1	100.0(42)	1.31(2)
없음	13.5	50.4	36.1	100.0(23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0.9	45.5	43.6	100.0(55)	
301~500만원	12.2	56.1	31.7	100.0(123)	3.39(6)
501~700만원	12.9	46.8	40.3	100.0(62)	
701만원 이상	15.6	50.0	34.4	100.0(3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20.7	48.3	31.0	100.0(116)	
휴직 중	43.8	25.0	31.3	100.0(16)	35.11(4)***
미취업	2.2	56.2	41.6	100.0(137)	

주: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한편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 없어서 혹은 원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3.3%이며, 원하였으나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혹은 입양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각각 19.0%, 4.4%로 입양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낮은 비율이었다. 하지만 첫 입양시기가 2012년도 이후이거나 친생자녀가 없는 경우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좀 더 많은 편

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몰랐다, 향후 사용예정이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Ⅳ-4-11〉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필요 없어서/ 원하지 않아서	입양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원하였으나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기타	계(수)	$\chi^2(df)$
전체	53.3	4.4	19.0	23.4	100.0(137)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62.2	2.4	13.4	22.0	100.0(82)	na
2012년도 이후	40.0	7.3	27.3	25.5	100.0(55)	
친생자녀 유무						
있음	64.1	3.1	10.9	21.9	100.0(64)	na
없음	43.8	5.5	26.0	24.7	100.0(73)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39.1	4.3	13.0	43.5	100.0(23)	na
없음	56.1	4.4	20.2	19.3	100.0(11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2.5	0.0	12.5	25.0	100.0(24)	
301~500만원	47.1	7.4	20.6	25.0	100.0(68)	na
501~700만원	55.2	0.0	20.7	24.1	100.0(29)	
701만원 이상	62.5	6.3	18.8	12.5	100.0(16)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47.3	1.8	18.2	32.7	100.0(55)	
휴직 중	50.0	50.0	0.0	0.0	100.0(4)	na
미취업	56.6	3.9	21.1	18.4	100.0(76)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139명 중 무응답 2사례 제외함.
3)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다. 입양가정 지원 정책

현재 입양가정 지원은 입양 수수료, 양육수당, 입양아동 의료급여, 입양아동 심리치료지원,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그리고 입양기관의 사후관리가 있으며, 각각에 대한 인식, 수혜 여부, 만족도 및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입양수수료

입양수수료 지원은 입양을 한 가정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과거에는 부모가 직접 지불하였던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69.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첫 입양시기가 2012년 이후인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 300만 원 이하인 가정에서 입양수수료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표 Ⅳ-4-12〉 입양수수료 지원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chi^2(df)$
전체	69.7	30.3	100.0(271)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76.5	23.5	100.0(153)	7.54(1)**
2012년도 이후	61.0	39.0	100.0(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73.6	26.4	100.0(125)	1.64(1)
없음	66.4	33.6	100.0(146)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65.9	34.1	100.0(41)	.35(1)
없음	70.4	29.6	100.0(23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4.5	45.5	100.0(55)	
301~500만원	74.6	25.4	100.0(122)	7.98(3)*
501~700만원	74.2	25.8	100.0(62)	
701만원 이상	68.8	31.2	100.0(32)	

주: 무응답 1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는 271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입양수수료 지원에 대한 만족정도는 평균 3.12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다. 자녀 및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4-13〉 입양수수료 지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t*/*F*
전체	10.1	16.4	24.9	48.1	0.5	100.0(189)	3.12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12.0	19.7	20.5	47.0	0.9	100.0(117)	3.03	-1.46
2012년도 이후	6.9	11.1	31.9	50.0	0.0	100.0(72)	3.25	
친생자녀 유무								
있음	12.0	17.4	22.8	47.8	0.0	100.0(92)	3.07	-0.68
없음	8.2	15.5	26.8	48.5	1.0	100.0(97)	3.17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11.1	33.3	22.2	33.3	0.0	100.0(27)	2.78	-1.88
없음	9.9	13.6	25.3	50.6	0.6	100.0(162)	3.1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0.0	16.7	26.7	46.7	0.0	100.0(30)	3.10	
301~500만원	8.8	14.3	24.2	51.6	1.1	100.0(91)	3.20	0.71
501~700만원	13.0	21.7	23.9	41.3	0.0	100.0(46)	2.93	
701만원 이상	9.1	13.6	27.3	50.0	0.0	100.0(22)	3.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또한 입양수수료 지원의 필요성은 3.52점으로 다수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원임을 알 수 있으며, 친생자녀가 없는 경우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표 Ⅳ-4-14〉 입양수수료 지원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t*/*F*
전체	4.2	8.5	18.0	68.3	1.1	100.0(189)	3.52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5.1	10.3	15.4	67.5	1.7	100.0(117)	3.48	-0.85
2012년도 이후	2.8	5.6	22.2	69.4	0.0	100.0(72)	3.58	
친생자녀 유무								
있음	6.5	12.0	17.4	64.1	0.0	100.0(92)	3.39	-2.09*
없음	2.1	5.2	18.6	72.2	2.1	100.0(97)	3.64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7.4	18.5	14.8	59.3	0.0	100.0(27)	3.26	-1.48
없음	3.7	6.8	18.5	69.8	1.2	100.0(162)	3.56	

(표 Ⅳ-4-14 계속)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t/F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3	10.0	20.0	66.7	0.0	100.0(30)	3.50	0.057
301~500만원	3.3	7.7	19.8	68.1	1.1	100.0(91)	3.54	
501~700만원	6.5	6.5	17.4	67.4	2.2	100.0(46)	3.49	
701만원 이상	4.5	13.6	9.1	72.7	0.0	100.0(22)	3.5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2) 양육수당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97.1%가 알고 있으며, 이들 중 96.2%가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양육수당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10명) 서비스 도입 이전 입양 30.0%,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20.0%, 기타(신청 절차 중에 있음 등) 50.0%의 응답을 보였다.

〈표 Ⅳ-4-15〉 양육수당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인지 여부				지원 받(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계(수)	$\chi^2(df)$	예	아니오	계(수)	$\chi^2(df)$
전체	97.1	2.6	100.0(271)		96.2	3.8	100.0(264)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95.5	3.9	100.0(154)	na	96.6	3.4	100.0(147)	na
2012년도 이후	99.2	0.8	100.0(118)		95.7	4.3	100.0(117)	
친생자녀 유무								
있음	96.0	3.2	100.0(126)	na	95.9	4.1	100.0(121)	na
없음	97.9	2.1	100.0(146)		96.5	3.5	100.0(143)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90.5	7.1	100.0(42)	na	97.4	2.6	100.0(38)	na
없음	98.3	1.7	100.0(230)		96.0	4.0	100.0(22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96.4	3.6	100.0(55)	na	94.3	5.7	100.0(53)	na
301~500만원	96.7	2.4	100.0(123)		95.8	4.2	100.0(119)	
501~700만원	96.8	3.2	100.0(62)		96.7	3.3	100.0(60)	
701만원 이상	100.0	0.0	100.0(32)		100.0	0.0	100.0(32)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인지 여부 무응답 1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는 271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입양아동 1인 당 매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양육수당에 대해 평균 2.62점의 보통 수준의 만족정도를 보인다. 하지만 양육수당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67점으로 대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나 필요성에 있어서는 자녀 및 가구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4-16〉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t*/*F*
전체	13.8	29.9	33.9	20.1	2.4	100.0(254)	2.62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16.2	32.4	31.0	19.7	0.7	100.0(142)	2.55	-1.33
2012년도 이후	10.7	26.8	37.5	20.5	4.5	100.0(112)	2.71	
친생자녀 유무								
있음	15.5	33.6	31.0	19.0	0.9	100.0(116)	2.54	-1.18
없음	12.3	26.8	36.2	21.0	3.6	100.0(138)	2.68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18.9	40.5	24.3	13.5	2.7	100.0(37)	2.33	-1.92
없음	12.9	28.1	35.5	21.2	2.3	100.0(217)	2.6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2.0	36.0	22.0	24.0	6.0	100.0(50)	2.62	
301~500만원	11.4	23.7	42.1	21.9	0.9	100.0(114)	2.75	1.73
501~700만원	17.2	39.7	24.1	17.2	1.7	100.0(58)	2.42	
701만원 이상	18.8	25.0	40.6	12.5	3.1	100.0(32)	2.4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표 Ⅳ-4-17〉 양육수당 지원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t*/*F*
전체	1.9	4.5	17.0	73.5	3.0	100.0(264)	3.67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2.0	4.8	10.2	81.6	1.4	100.0(147)	3.74	1.84
2012년도 이후	1.7	4.3	25.6	63.2	5.1	100.0(117)	3.59	
친생자녀 유무								
있음	0.8	8.3	12.4	76.9	1.7	100.0(121)	3.68	0.20
없음	2.8	1.4	21.0	70.6	4.2	100.0(143)	3.66	

(표 Ⅳ-4-17 계속)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t/F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2.6	2.6	15.8	76.3	2.6	100.0(38)	3.70	0.31
없음	1.8	4.9	17.3	73.0	3.1	100.0(226)	3.6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0	1.9	18.9	71.7	7.5	100.0(53)	3.76	1.31
301~500만원	2.5	5.9	17.6	72.3	1.7	100.0(119)	3.62	
501~700만원	3.3	5.0	18.3	71.7	1.7	100.0(60)	3.61	
701만원 이상	0.0	3.1	9.4	84.4	3.1	100.0(32)	3.8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3)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에 대해 97.4%가 알고 있으며, 이들 중 94.7%는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14명)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28.6%,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21.4%, 입양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14.3%, 서비스 도입 이전 입양 7.1%, 기타 28.6%의 응답을 보였다. 의료기관 이용 시 급여지원 여부가 타인에게 노출되므로 입양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Ⅳ-4-18〉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인지 여부				지원 받(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계(수)	$\chi^2(df)$	예	아니오	계(수)	$\chi^2(df)$
전체	97.4	2.6	100.0(271)		94.7	5.3	100.0(264)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96.7	3.3	100.0(153)	na	95.3	4.7	100.0(148)	0.22(1)
2012년도 이후	98.3	1.7	100.0(118)		94.0	6.0	100.0(116)	
친생자녀 유무								
있음	97.6	2.4	100.0(125)	na	95.9	4.1	100.0(122)	0.66(1)
없음	97.3	2.7	100.0(146)		93.7	6.3	100.0(142)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97.6	2.4	100.0(41)	na	95.0	5.0	100.0(40)	na
없음	97.4	2.6	100.0(230)		94.6	5.4	100.0(224)	

(표 Ⅳ-4-18 계속)

구분	인지 여부				지원 받(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계(수)	$\chi^2(df)$	예	아니오	계(수)	$\chi^2(df)$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98.2	1.8	100.0(55)	na	92.6	7.4	100.0(54)	na
301~500만원	97.5	2.5	100.0(122)		95.8	4.2	100.0(119)	
501~700만원	98.4	1.6	100.0(62)		96.7	3.3	100.0(61)	
701만원 이상	93.8	6.3	100.0(32)		90.0	10.0	100.0(30)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인지 여부 무응답 1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는 271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에 대한 만족정도는 3.27점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3.79점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표 Ⅳ-4-19〉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t/F
전체	4.8	12.8	31.6	48.4	2.4	100.0(250)	3.27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5.0	14.2	34.0	44.7	2.1	100.0(141)	3.21	-1.15
2012년도 이후	4.6	11.0	28.4	53.2	2.8	100.0(109)	3.34	
친생자녀 유무								
있음	6.0	15.4	30.8	47.0	0.9	100.0(117)	3.20	-1.17
없음	3.8	10.5	32.3	49.6	3.8	100.0(133)	3.33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7.9	7.9	26.3	52.6	5.3	100.0(38)	3.31	0.29
없음	4.2	13.7	32.5	47.6	1.9	100.0(212)	3.2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0	10.0	38.0	46.0	2.0	100.0(50)	3.29	1.57
301~500만원	4.4	12.3	25.4	56.1	1.8	100.0(114)	3.36	
501~700만원	3.4	13.6	39.0	40.7	3.4	100.0(59)	3.21	
701만원 이상	11.1	18.5	29.6	37.0	3.7	100.0(27)	2.9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표 Ⅳ-4-20〉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t/F
전체	3.0	14.0	79.9	3.0	100.0(264)	3.79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1.4	12.8	83.1	2.7	100.0(148)	3.84	1.74
2012년도 이후	5.2	15.5	75.9	3.4	100.0(116)	3.73	
친생자녀 유무							
있음	2.5	13.9	81.1	2.5	100.0(122)	3.81	0.43
없음	3.5	14.1	78.9	3.5	100.0(142)	3.78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5.0	10.0	80.0	5.0	100.0(40)	3.79	-0.05
없음	2.7	14.7	79.9	2.7	100.0(224)	3.7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7	11.1	81.5	3.7	100.0(54)	3.81	
301~500만원	1.7	13.4	82.4	2.5	100.0(119)	3.83	0.61
501~700만원	4.9	14.8	77.0	3.3	100.0(61)	3.75	
701만원 이상	3.3	20.0	73.3	3.3	100.0(30)	3.7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4)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68.6%의 부모들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구소득 집단에 따라 응답 비중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지원을 받은 가정은 38.7%로 앞서 살펴본 양육수당이나 의료급여에 비해서는 수혜 비율이 낮은 편이었으며, 2012년도 이후에 입양한 경우, 친생자녀가 없는 경우 그리고 미취업모 가정에서 지원을 받은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표 Ⅳ-4-21〉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인지 여부				지원 받(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계(수)	$\chi^2(df)$	예	아니오	계(수)	$\chi^2(df)$
전체	68.6	31.4	100.0(271)		38.7	61.3	100.0(186)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71.9	28.1	100.0(153)	1.74	52.7	47.3	100.0(110)	22.30(1)***
2012년도 이후	64.4	35.6	100.0(118)		18.4	81.6	100.0(76)	

(표 Ⅳ-4-21 계속)

구분	인지 여부				지원 받(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계(수)	$\chi^2(df)$	예	아니오	계(수)	$\chi^2(df)$
친생자녀 유무								
있음	68.8	31.2	100.0(125)	.00	46.5	53.5	100.0(86)	4.10(1)*
없음	68.5	31.5	100.0(146)		32.0	68.0	100.0(100)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58.5	41.5	100.0(41)	2.29	54.2	45.8	100.0(24)	2.78(1)
없음	70.4	29.6	100.0(230)		36.4	63.6	100.0(16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8.2	41.8	100.0(55)	9.94*	25.0	75.0	100.0(32)	6.08(3)
301~500만원	77.9	22.1	100.0(122)		46.3	53.7	100.0(95)	
501~700만원	59.7	40.3	100.0(62)		37.8	62.2	100.0(37)	
701만원 이상	68.8	31.3	100.0(32)		27.3	72.7	100.0(2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67.2	32.8	100.0(116)	.46	50.0	50.0	100.0(78)	9.14(2)*
휴직 중	62.5	37.5	100.0(16)		10.0	90.0	100.0(10)	
미취업	69.9	30.1	100.0(136)		32.6	67.4	100.0(95)	

주: 1) 인지 여부 무응답 1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는 271명임.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심리치료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112명)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60.0%,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5.4%, 입양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2.7%, 서비스 도입 이전 입양 1.8%, 기타 29.5%의 응답을 보였다.

〈표 Ⅳ-4-22〉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t/F
전체	11.1	23.6	20.8	43.1	1.4	100.0(72)	2.97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12.1	24.1	20.7	41.4	1.7	100.0(58)	2.93	-0.67
2012년도 이후	7.1	21.4	21.4	50.0	0.0	100.0(14)	3.14	
친생자녀 유무								
있음	12.5	27.5	25.0	35.0	0.0	100.0(40)	2.83	-1.32
없음	9.4	18.8	15.6	53.1	3.1	100.0(32)	3.16	

(표 Ⅳ-4-22 계속)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t*/*F*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15.4	23.1	7.7	53.8	0.0	100.0(13)	3.00	0.10
없음	10.2	23.7	23.7	40.7	1.7	100.0(59)	2.9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2.5	25.0	12.5	50.0	0.0	100.0(8)	3.00	0.94
301~500만원	6.8	25.0	27.3	38.6	2.3	100.0(44)	3.00	
501~700만원	21.4	28.6	14.3	35.7	0.0	100.0(14)	2.64	
701만원 이상	16.7	0.0	0.0	83.3	0.0	100.0(6)	3.50	

주: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심리치료 지원에 대한 만족정도는 평균 2.97점으로 보통에서 약간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또한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대해 거의 대부분(필요 7.5% + 매우 필요 88.2%)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평균 3.89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장아를 입양한 부모의 경우 모두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4-23〉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t*/*F*
전체	1.6	7.5	88.2	2.7	100.0(186)	3.89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0.9	8.2	88.2	2.7	100.0(110)	3.90	0.34
2012년도 이후	2.6	6.6	88.2	2.6	100.0(76)	3.88	
친생자녀 유무							
있음	1.2	10.5	84.9	3.5	100.0(86)	3.87	-0.75
없음	2.0	5.0	91.0	2.0	100.0(100)	3.91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0.0	0.0	100.0	0.0	100.0(24)	4.00	4.12***
없음	1.9	8.6	86.4	3.1	100.0(162)	3.8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0	0.0	93.8	6.3	100.0(32)	4.00	1.69
301~500만원	3.2	9.5	84.2	3.2	100.0(95)	3.84	
501~700만원	0.0	8.1	91.9	0.0	100.0(37)	3.92	
701만원 이상	0.0	9.1	90.9	0.0	100.0(22)	3.91	

주: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5) 입양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입양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에 대해 74.2%가 알고 있으며, 이들 중 16.9%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해당 없는 경우는 75.1%이었다. 첫 입양시기가 2011년도 이전인 경우 지원받고 있는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입양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16명)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68.8%,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12.5%, 서비스 도입 이전 입양 6.3%, 기타 12.5%의 응답을 보였다.

〈표 Ⅳ-4-24〉 입양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인지 여부				지원 받(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계(수)	$\chi^2(df)$	예	아니오	해당 없음	계(수)	$\chi^2(df)$
전체	74.2	25.8	100.0(271)		16.9	8.0	75.1	100.0(201)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72.1	27.3	100.0(154)	.48	22.5	9.0	68.5	100.0(111)	6.41(2)*
2012년도 이후	76.3	23.7	100.0(118)		10.0	6.7	83.3	100.0(90)	
친생자녀 유무									
있음	72.8	27.2	100.0(125)	.23	18.7	12.1	69.2	100.0(91)	4.63(2)
없음	75.3	24.7	100.0(146)		15.5	4.5	80.0	100.0(110)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82.9	17.1	100.0(41)	1.93	26.5	5.9	67.6	100.0(34)	2.74(2)
없음	72.6	27.4	100.0(230)		15.0	8.4	76.6	100.0(16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5.5	34.5	100.0(55)	3.57	19.4	5.6	75.0	100.0(36)	na
301~500만원	78.7	21.3	100.0(122)		17.7	8.3	74.0	100.0(96)	
501~700만원	74.2	25.8	100.0(62)		17.4	8.7	73.9	100.0(46)	
701만원 이상	71.9	28.1	100.0(32)		8.7	8.7	82.6	100.0(23)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인지 여부 무응답 1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는 271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입양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에 대해 부모들의 만족정도는 평균 3.06점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입양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은 3.93점으로 많은 입양부모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4-25〉 입양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t/F
전체	11.8	20.6	17.6	50.0	100.0(34)	3.06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8.0	20.0	24.0	48.0	100.0(25)	3.12	0.54
2012년도 이후	22.2	22.2	0.0	55.6	100.0(9)	2.89	
친생자녀 유무							
있음	23.5	17.6	17.6	41.2	100.0(17)	2.76	-1.60
없음	0.0	23.5	17.6	58.8	100.0(17)	3.35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11.1	33.3	11.1	44.4	100.0(9)	2.89	-0.54
없음	12.0	16.0	20.0	52.0	100.0(25)	3.1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4.3	28.6	0.0	57.1	100.0(7)	3.00	
301~500만원	5.9	5.9	29.4	58.8	100.0(17)	3.41	1.73
501~700만원	25.0	25.0	12.5	37.5	100.0(8)	2.63	
701만원 이상	0.0	100.0	0.0	0.0	100.0(2)	2.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표 Ⅳ-4-26〉 입양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t/F
전체	1.5	3.5	92.0	3.0	100.0(200)	3.93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2.7	1.8	93.7	1.8	100.0(111)	3.93	-0.33
2012년도 이후	0.0	5.6	89.9	4.5	100.0(89)	3.94	
친생자녀 유무							
있음	3.3	4.4	87.9	4.4	100.0(91)	3.89	-1.84
없음	0.0	2.8	95.4	1.8	100.0(109)	3.97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0.0	2.9	88.2	8.8	100.0(34)	3.97	0.69
없음	1.8	3.6	92.8	1.8	100.0(166)	3.93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0	2.8	91.7	5.6	100.0(36)	3.97	
301~500만원	1.1	2.1	93.7	3.2	100.0(95)	3.96	1.09
501~700만원	4.3	4.3	89.1	2.2	100.0(46)	3.87	
701만원 이상	0.0	8.7	91.3	0.0	100.0(23)	3.9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6) 입양장애아동 의료비

입양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은 62.6%가 알고 있으며, 이들 중 18.2%는 지원을 받고 있었다. 입양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11명)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81.8%,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9.1%, 기타 9.1%의 응답을 보였다.

〈표 Ⅳ-4-27〉 입양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인지 여부				지원 받(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계(수)	$\chi^2(df)$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계(수)	$\chi^2(df)$
전체	62.6	37.3	100.0(271)		18.2	6.5	75.3	100.0(170)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62.7	37.3	100.0(153)	.00	24.0	7.3	68.8	100.0(96)	5.445(2)
2012년도 이후	62.7	37.3	100.0(118)		10.8	5.4	83.8	100.0(74)	
친생자녀 유무									
있음	64.0	36.0	100.0(125)	.16	20.0	10.0	70.0	100.0(80)	3.730(2)
없음	61.6	38.4	100.0(146)		16.7	3.3	80.0	100.0(90)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73.2	26.8	100.0(41)	2.25	20.0	6.7	73.3	100.0(30)	0.083(2)
없음	60.9	39.1	100.0(230)		17.9	6.4	75.7	100.0(14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0.0	40.0	100.0(55)	4.70	21.2	3.0	75.8	100.0(33)	na
301~500만원	65.6	34.4	100.0(122)		18.8	8.8	72.5	100.0(80)	
501~700만원	67.7	32.3	100.0(62)		19.0	4.8	76.2	100.0(42)	
701만원 이상	46.9	53.1	100.0(32)		6.7	6.7	86.7	100.0(15)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인지 여부 무응답 1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는 271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입양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3.06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입양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은 평균 3.94점으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Ⅳ-4-28〉 입양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평균	*t*/*F*
전체	9.7	22.6	19.4	48.4	100.0(31)	3.06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4.3	21.7	26.1	47.8	100.0(23)	3.17	0.80
2012년도 이후	25.0	25.0	0.0	50.0	100.0(8)	2.75	
친생자녀 유무							
있음	18.8	12.5	31.3	37.5	100.0(16)	2.88	-1.03
없음	0.0	33.3	6.7	60.0	100.0(15)	3.27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0.0	33.3	33.3	33.3	100.0(6)	3.00	-0.16
없음	12.0	20.0	16.0	52.0	100.0(25)	3.0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4.3	14.3	14.3	57.1	100.0(7)	3.14	
301~500만원	6.7	13.3	26.7	53.3	100.0(15)	3.27	0.74
501~700만원	12.5	37.5	12.5	37.5	100.0(8)	2.75	
701만원 이상	0.0	100.0	0.0	0.0	100.0(1)	2.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표 Ⅳ-4-29〉 입양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t*/*F*
전체	0.6	0.6	3.0	93.5	2.4	100.0(169)	3.94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1.0	1.0	2.1	93.8	2.1	100.0(96)	3.93	-0.63
2012년도 이후	0.0	0.0	4.1	93.2	2.7	100.0(73)	3.96	
친생자녀 유무								
있음	0.0	1.3	3.8	91.3	3.8	100.0(80)	3.94	-0.16
없음	1.1	0.0	2.2	95.5	1.1	100.0(89)	3.94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0.0	0.0	0.0	90.0	10.0	100.0(30)	4.00	2.40*
없음	0.7	0.7	3.6	94.2	0.7	100.0(139)	3.93	

(표 Ⅳ-4-29 계속)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t/F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0	0.0	0.0	97.0	3.0	100.0(33)	4.00	2.94*
301~500만원	0.0	0.0	2.5	94.9	2.5	100.0(79)	3.97	
501~700만원	0.0	2.4	4.8	90.5	2.4	100.0(42)	3.90	
701만원 이상	6.7	0.0	6.7	86.7	0.0	100.0(15)	3.7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7)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84.5%가 알고 있으며, 이들 중 81.7%는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사후관리 지원에 대해 첫 입양시기가 2011년도 이전인 부모는 19.6%가 모르고 있어서 입양시기에 따라 인지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표 Ⅳ-4-30〉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인지 여부				지원 받(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계(수)	$\chi^2(df)$	예	아니오	계(수)	$\chi^2(df)$
전체	84.5	19.6	100.0(271)		81.7	18.3	100.0(229)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80.4	19.6	100.0(153)	4.53*	78.9	21.1	100.0(123)	1.389(1)
2012년도 이후	89.8	10.2	100.0(118)		84.9	15.1	100.0(106)	
친생자녀 유무								
있음	80.8	19.2	100.0(125)	2.43	80.2	19.8	100.0(101)	0.258(1)
없음	87.7	12.3	100.0(146)		82.8	17.2	100.0(128)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85.4	14.6	100.0(41)	.03	80.0	20.0	100.0(35)	0.076(1)
없음	84.3	15.7	100.0(230)		82.0	18.0	100.0(19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85.5	14.5	100.0(55)	2.91	80.9	19.1	100.0(47)	1.040(3)
301~500만원	82.8	17.2	100.0(122)		84.2	15.8	100.0(101)	
501~700만원	90.3	9.7	100.0(62)		80.4	19.6	100.0(56)	
701만원 이상	78.1	21.9	100.0(32)		76.0	24.0	100.0(25)	

주: 인지 여부 무응답 1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는 271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지원에 대해 3.00점의 만족정도를 보인다. 가구 특성에 따라 응답에 차이를 보이는데, 첫 입양시기가 2012년도 이후인 경우, 친생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연장아 입양 경험이 없는 경우, 그리고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았다.

〈표 Ⅳ-4-31〉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지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t*/*F*
전체	8.5	18.6	34.0	35.6	3.2	100.0(188)	3.00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10.3	25.8	30.9	30.9	2.1	100.0(97)	2.84	-2.59*
2012년도 이후	6.6	11.0	37.4	40.7	4.4	100.0(91)	3.17	
친생자녀 유무								
있음	8.5	25.6	35.4	28.0	2.4	100.0(82)	2.85	-2.09*
없음	8.5	13.2	33.0	41.5	3.8	100.0(106)	3.12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21.4	17.9	32.1	25.0	3.6	100.0(28)	2.63	-2.18*
없음	6.3	18.8	34.4	37.5	3.1	100.0(160)	3.0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0	15.4	33.3	43.6	7.7	100.0(39)	3.31_{b}	
301~500만원	4.7	21.2	30.6	41.2	2.4	100.0(85)	3.11_{ab}	4.08**
501~700만원	17.8	20.0	35.6	24.4	2.2	100.0(45)	2.68_{a}	
701만원 이상	21.1	10.5	47.4	21.1	0.0	100.0(19)	2.68_{ab}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약 90%이며, 평균 3.61점이었다. 첫 입양시기가 2011년도 이전인 경우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표 Ⅳ-4-32〉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지원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t*/*F*
전체	3.0	4.7	19.5	69.5	3.4	100.0(236)	3.61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2.4	4.8	8.9	80.6	3.2	100.0(124)	3.73	2.75**
2012년도 이후	3.6	4.5	31.3	57.1	3.6	100.0(112)	3.47	

(표 Ⅳ-4-32 계속)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t/F
친생자녀 유무								
있음	2.9	4.9	13.6	74.8	3.9	100.0(103)	3.67	1.05
없음	3.0	4.5	24.1	65.4	3.0	100.0(133)	3.57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0.0	13.9	11.1	69.4	5.6	100.0(36)	3.59	-0.19
없음	3.5	3.0	21.0	69.5	3.0	100.0(200)	3.61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1	2.1	20.8	68.8	6.3	100.0(48)	3.67	0.53
301~500만원	1.9	6.7	16.2	72.4	2.9	100.0(105)	3.64	
501~700만원	3.5	5.3	19.3	68.4	3.5	100.0(57)	3.58	
701만원 이상	7.7	0.0	30.8	61.5	0.0	100.0(26)	3.4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지금까지 살펴본 입양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양육수당에 대한 만족정도(2.62점)가 가장 낮고, 의료급여 지원에 대한 만족정도(3.27점)가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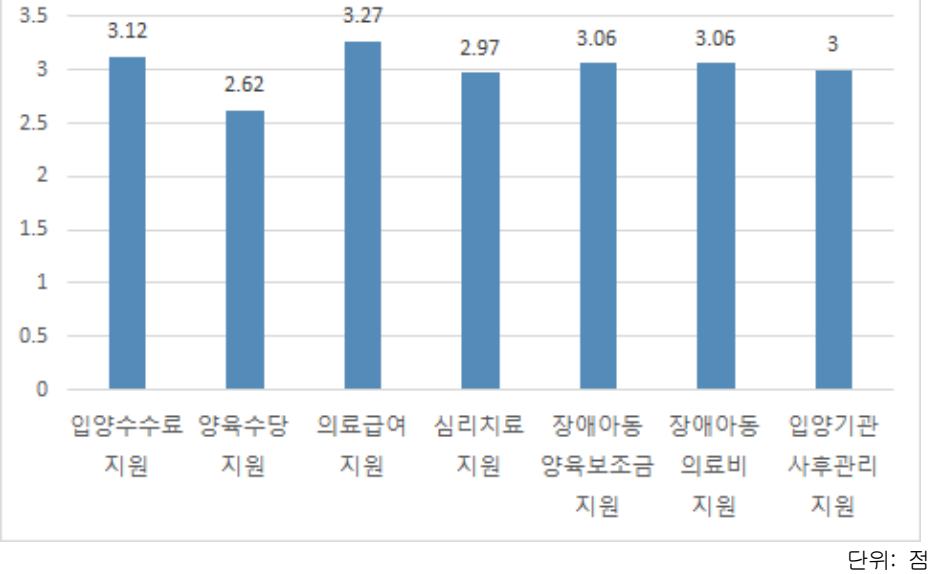

단위: 점

〔그림 Ⅳ-4-5〕 입양가정 지원 정책 만족도

또한 필요성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4점에 가까운 평균 점수를 보이나,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3.93점, 3.94점)을 가장 높게 인식하며, 입양수수료 지원의 필요성(3.52점)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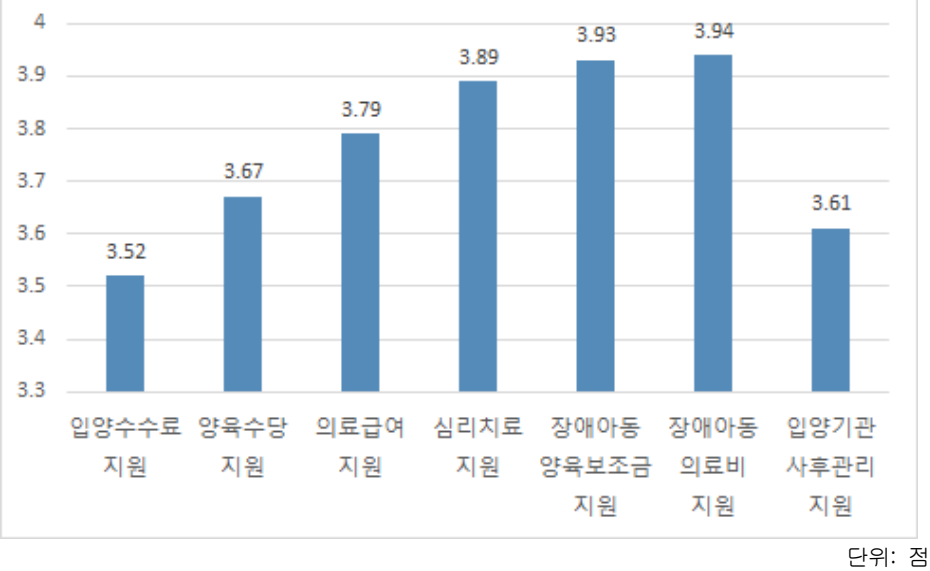

단위: 점

〔그림 Ⅳ-4-6〕 입양가정 지원 정책 필요성

라. 입양 관련 모임 및 프로그램

입양가정 자조모임이나 사후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모임 및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입양가정에서 입양 후부터 지금까지 참여한 적 있는 모임이나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입양부모/가정 자조모임에 대한 참여가 84.2%로 가장 많고, 캠프 등 입양가정 대상 행사(57.7%), 입양부모교육(51.5%)에는 과반수가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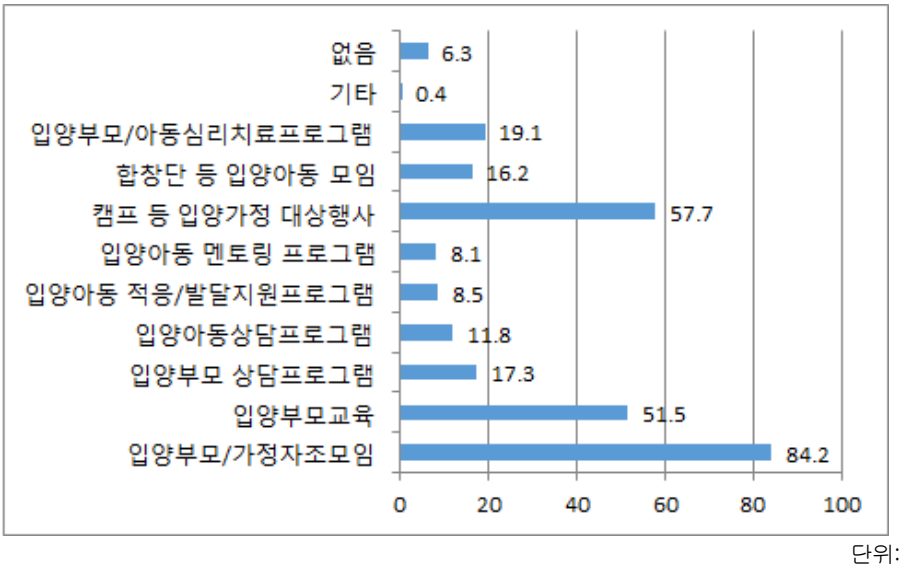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4-7〕 참여 경험이 있는 입양 관련 모임 및 프로그램(중복응답)

이러한 모임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자조모임(3.45점)과 입양가정 대상 행사(3.37점), 입양부모교육(3.30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나 입양아동 적응·발달 지원 프로그램(2.96점)과 입양부모·아동 심리치료프로그램(2.98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가구 특성별로 응답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는데, 입양가정 대상 행사에 대해 청소년기 자녀를 두었거나 연장아 입양을 한 부모는 다소 낮은 만족 수준을 보이며, 2012년도 이후 입양 부모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아주 만족하였다. 취업모 가정의 경우 부모교육, 행사, 입양아동모임 그리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비교적 높은 만족정도를 보였다. 모임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의 구체적인 결과는 부록(부표 Ⅳ-4-3~Ⅳ-4-11)에서 제시하였다.

〈표 Ⅳ-4-33〉 입양부모/자녀 대상 모임 및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점(수)

구분	입양 부모/ 가정 자조 모임	입양 부모 교육	부모 상담 프로 그램	입양 아동 상담 프로 그램	입양 아동 적응/ 발달 지원 프로 그램	입양 아동 멘토링 프로 그램	입양 가정 대상 행사	입양 아동 모임	입양 부모/ 아동 심리 치료 프로 그램
전체	3.45	3.30	3.11	3.13	2.96	2.73	3.37	3.24	2.98
(수)	(228)	(140)	(47)	(32)	(23)	(22)	(157)	(42)	(52)
첫 입양자녀 현재 연령									
영아기	3.51	3.33	3.00	-	4.00	4.00	3.35_{b}	3.00	2.00
유아기	3.32	3.44	3.23	3.67	3.25	3.25	3.49_{ab}	3.20	3.50
아동기	3.49	3.25	3.13	3.06	2.92	2.42	3.35_{ab}	3.38	3.00
청소년기	3.42	3.11	2.90	2.88	2.60	2.80	2.95_{a}	2.71	2.63
F	0.92	1.25	0.36	1.78	1.21	1.62	2.76^{*}	1.12	1.17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3.45	3.30	3.05	3.13	2.89	2.60	3.31	3.24	2.94
2012년도 이후	3.44	3.30	3.50	-	3.25	4.00	3.52	3.00	3.50
t	0.16	-0.06	-1.37	-	-0.84	-7.10^{***}	-1.51	0.27	-1.06
친생자녀 유무									
있음	3.42	3.25	3.04	3.00	2.92	2.67	3.43	3.26	2.96
없음	3.47	3.34	3.19	3.27	3.00	2.77	3.31	3.21	3.00
t	-0.53	-0.81	-0.68	-0.90	-0.26	-0.25	0.99	0.18	-0.14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3.29	3.10	2.63	2.67	3.00	3.00	3.00	3.00	2.70
없음	3.48	3.34	3.21	3.23	2.95	2.65	3.44	3.28	3.05
t	-1.44	-1.57	-2.04	-1.10	0.12	0.73	-2.70^{**}	-0.71	-0.78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3.52	3.41	3.18	3.33	3.00	3.00	3.46_{b}	3.61	3.26
휴직 중	3.13	2.75	2.00	-	-	-	2.67_{a}	-	-
미취업	3.42	3.21	3.10	2.94	2.92	2.33	3.32_{ab}	3.00	2.68
F/*t*	1.93	3.09^{*}	1.14	1.81	0.05	2.96	3.15^{*}	6.31^{*}	4.48^{*}

주: 1) 입양부모/자녀 대상 각 모임 및 프로그램 경험자에 한해 응답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3) 만족도는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부모들은 이러한 모임이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으

로 자조모임을 31.6%로, 2순위와 합친 비율도 40.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캠프 등 입양가정 대상 행사, 심리치료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부표 Ⅳ-4-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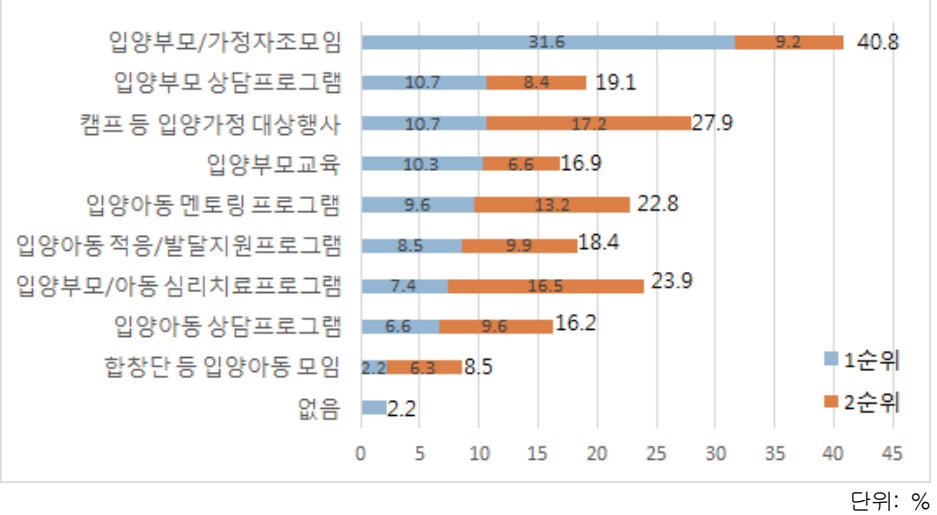

단위: %

〔그림 Ⅳ-4-8〕 활성화되길 바라는 입양 관련 모임 및 프로그램(1,2순위 중복응답)

5. 입양에 대한 인식

입양부모가 가지고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입양부모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양부모의 조건은 부모의 가치관이었으며(57.0%), 부모의 가정환경(16.2%), 건강(15.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 학력, 친인척 관계 등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아주 낮았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경우 부모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25.0%로 많아진다. 김유경 외(2010: 164)의 연구에서는 입양기관 실무자들은 부모의 성격, 부모의 가정환경, 경제수준 등의 순으로 응답한 바 있어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Ⅳ-5-1〉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양부모의 조건(1순위)

단위: %(명)

구분	부모의 연령	부모의 경제수준	부모의 건강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가정환경	부모의 가치관	기타	계(수)	$\chi^2(df)$
전체	3.3	1.8	15.8	5.1	16.2	57.0	0.7	100.0(272)	
첫 입양자녀 현재 연령									
영아기	2.2	2.2	15.4	2.2	17.6	59.3	1.1	100.0(91)	na
유아기	1.5	1.5	11.8	7.4	16.2	61.8	0.0	100.0(68)	
아동기	4.5	1.1	16.9	6.7	15.7	53.9	1.1	100.0(89)	
청소년기	8.3	4.2	25.0	4.2	12.5	45.8	0.0	100.0(24)	
친생자녀 유무									
있음	2.4	1.6	13.5	7.9	15.9	57.9	0.8	100.0(126)	na
없음	4.1	2.1	17.8	2.7	16.4	56.2	0.7	100.0(146)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2.4	4.8	11.9	2.4	14.3	64.3	0.0	100.0(42)	na
없음	3.5	1.3	16.5	5.7	16.5	55.7	0.9	100.0(23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8	5.5	18.2	7.3	20.0	45.5	1.8	100.0(55)	na
301~500만원	4.9	.8	13.0	4.9	15.4	61.0	0.0	100.0(123)	
501~700만원	1.6	0.0	22.6	3.2	19.4	53.2	0.0	100.0(62)	
701만원 이상	3.1	3.1	9.4	6.3	6.3	68.8	3.1	100.0(32)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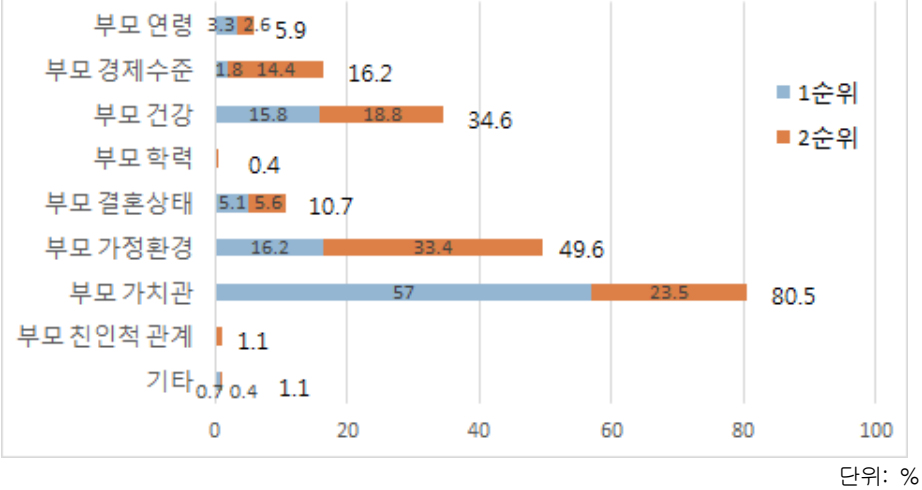

단위: %

〔그림 Ⅳ-5-1〕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양부모의 조건(1,2순위 중복응답)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입양사실 공개 범위는 과반수가 친인척과 가까운 지인들(55.5%)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는 응답도 24.6%이었다. 하지만 부부만 알고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5.5%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겠다,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특별히 공개하지도 숨기지도 않겠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Ⅳ-5-2〉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입양사실 공개 범위

단위: %(명)

구분	부부만 알고 다른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음	친인척들까지만 알고 공개하지 않음	친인척 및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공개함	처음부터 모든사람들에게 공개함	기타	계(수)	$\chi^2(df)$
전체	5.5	4.0	55.5	24.6	10.3	100.0(272)	
첫 입양자녀 현재 연령							
영아기	11.0	5.5	54.9	23.1	5.5	100.0(91)	na
유아기	1.5	4.4	60.3	20.6	13.2	100.0(68)	
아동기	3.4	1.1	56.2	27.0	12.4	100.0(89)	
청소년기	4.2	8.3	41.7	33.3	12.5	100.0(24)	
친생자녀 유무							
있음	3.2	3.2	51.6	31.7	10.3	100.0(126)	8.25(4)
없음	7.5	4.8	58.9	18.5	10.3	100.0(146)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7.1	2.4	61.9	21.4	7.1	100.0(42)	na
없음	5.2	4.3	54.3	25.2	10.9	100.0(230)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자녀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시기에 대해 약 75% 이상이 영유아기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5.1%이었다. 현재 아동기나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경우 신생아기·영아기부터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각각 36.0%, 37.5%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 비해 많았다.

〈표 Ⅳ-5-3〉 자녀에게 입양사실 공개하는 바람직한 시기

단위: %(명)

구분	신생아기·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중학생시기	청년기	결혼 후	공개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계(수)	$\chi^2(df)$
전체	23.9	51.8	15.4	0.4	0.4	1.5	1.1	5.1	0.4	100.0(272)	
첫 입양자녀 현재 연령											
영아기	12.1	58.2	13.2	0.0	0.0	2.2	2.2	11.0	1.1	100.0(91)	na
유아기	19.1	51.5	22.1	0.0	0.0	2.9	0.0	4.4	0.0	100.0(68)	
아동기	36.0	47.2	13.5	1.1	0.0	0.0	1.1	1.1	0.0	100.0(89)	
청소년기	37.5	45.8	12.5	0.0	4.2	0.0	0.0	0.0	0.0	100.0(24)	
친생자녀 유무											
있음	31.0	51.6	13.5	0.8	0.0	0.8	0.8	1.6	0.0	100.0(126)	na
없음	17.8	52.1	17.1	0.0	0.7	2.1	1.4	8.2	0.7	100.0(146)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19.0	59.5	14.3	2.4	0.0	0.0	0.0	4.8	0.0	100.0(42)	na
없음	24.8	50.4	15.7	0.0	0.4	1.7	1.3	5.2	0.4	100.0(230)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몇 가지 입양 관련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알아보았을 때, ‘입양아동이 성인이 된 후 원한다면 친생부모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진술에 3.39점의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그에 반해서 ‘자녀성장에 대한 친생부모의 알 권리’나 ‘친생부모에 대한 입양자녀의 알 권리’ 혹은 ‘개방입양’에 대해서는 3점을 넘지 않아 보통 수준이거나 그 보다 낮은 동의 정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외입양 금지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첫 입양 시기나 친생자녀 유무 그리고 가구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부표 Ⅳ-5-1~Ⅳ-5-6 참조). 특히 친생부모에 대한 태도는 입양부모가 입양자녀를 기르는 시간이 축적되면서 좀 더 수용적 혹은 개방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Ⅳ-5-4〉 입양 관련 의견 동의 정도

단위: 점(명)

구분	자녀성장에 대한 친생부모의 알 권리	친생부모에 대한 입양자녀의 알 권리	성인 입양아동의 친생부모 만날 권리	개방입양 바람직함	해외입양 필요함	어떤 이유이든 해외입양 금지
전체	2.34	2.94	3.39	2.22	2.62	1.78
(수)	(272)	(272)	(272)	(272)	(272)	(272)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2.49	3.04	3.47	2.39	2.54	1.88
2012년도 이후	2.15	2.81	3.27	2.01	2.73	1.67
t	2.54*	1.94	2.16*	3.07**	-1.60	1.79
친생자녀 유무						
있음	2.61	3.14	3.53	2.45	2.74	1.76
없음	2.11	2.77	3.26	2.03	2.52	1.81
t	3.89***	3.30**	2.92**	3.43**	1.80	-0.38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2.14	2.90	3.43	2.21	2.67	1.60
없음	2.38	2.95	3.38	2.23	2.61	1.82
t	-1.29	-0.27	0.39	-0.07	0.33	-1.3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13_{ab}	2.62_{a}	3.31	2.05	2.44	2.00
301~500만원	2.55_{b}	3.11_{b}	3.41	2.37	2.66	1.76
501~700만원	2.35_{ab}	2.95_{ab}	3.44	2.15	2.71	1.65
701만원 이상	1.88_{a}	2.81_{ab}	3.31	2.09	2.59	1.77
F	4.37**	3.75*	0.42	1.67	0.85	1.33

주: 모름/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입양아동 지원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입양아동 지원에 대해 일반아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아야 한다는 의견(31.3%)보다 요보호아동으로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55.5%)이 좀 더 많았다. 2012년도 이후에 처음 입양한 경우 그리고 친생자녀가 없는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각각 21.2%, 17.8%로 비교적 많은 반면 2011년도 이전에 처음 입양한 부모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좀 더 의견이 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표 Ⅳ-5-5〉 입양아동 지원에 대한 생각

단위: %(명)

구분	일반아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보호아동으로서	잘 모르겠음	계(수)	$\chi^2(df)$
전체	31.3	55.5	13.2	100.0(272)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32.5	60.4	7.1	100.0(154)	11.64(2)**
2012년도 이후	29.7	49.2	21.2	100.0(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34.9	57.1	7.9	100.0(126)	6.10(2)*
없음	28.1	54.1	17.8	100.0(146)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40.5	54.8	4.8	100.0(42)	4.05(2)
없음	29.6	55.7	14.8	100.0(23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3.6	61.8	14.5	100.0(55)	
301~500만원	34.1	53.7	12.2	100.0(123)	4.91(6)
501~700만원	32.3	58.1	9.7	100.0(62)	
701만원 이상	31.3	46.9	21.9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에 대한 필요성과 긍정적 인식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아 한다는 응답이 68.4%로 다수가 동의하였으며,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은 16.2%이었다. 1,2순위를 합하여 비율을 살펴보면, 긍정적 인식을 위한 홍보 강화(83.5%), 입양가정 지원 강화(55.1%),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로의 조치 활성화(26.1%) 등의 순이었다. 입양부모에게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조사한 김유경 외(2010: 298)의 연구에서도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나타나 입양부모들은 여전히 긍정적 인식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Ⅳ-5-6〉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노력(1순위)

단위: %(명)

구분	입양 필요성과 긍정적 인식을 위한 홍보강화	입양가정 지원강화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로의 조치 활성화	입양기관의 확대 및 지원강화	입양기관 담당자 및 지자체의 전문성 강화	위탁가정에서의 입양 활성화	기타	계(수)	$\chi^2(df)$
전체	68.4	16.2	7.0	2.9	2.9	1.5	1.1	100.0(272)	
첫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65.6	18.2	7.8	3.9	3.2	1.3	0.0	100.0(154)	na
2012년도 이후	72.0	13.6	5.9	1.7	2.5	1.7	2.5	100.0(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61.9	17.5	11.9	3.2	2.4	2.4	0.8	100.0(126)	na
없음	74.0	15.1	2.7	2.7	3.4	0.7	1.4	100.0(146)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71.4	16.7	4.8	4.8	0.0	0.0	2.4	100.0(42)	na
없음	67.8	16.1	7.4	2.6	3.5	1.7	0.9	100.0(23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5.5	20.0	10.9	0.0	1.8	1.8	0.0	100.0(55)	na
301~500만원	70.7	14.6	8.1	2.4	1.6	0.8	1.6	100.0(123)	
501~700만원	64.5	16.1	1.6	8.1	4.8	3.2	1.6	100.0(62)	
701만원 이상	71.9	15.6	6.3	0.0	6.3	0.0	0.0	100.0(32)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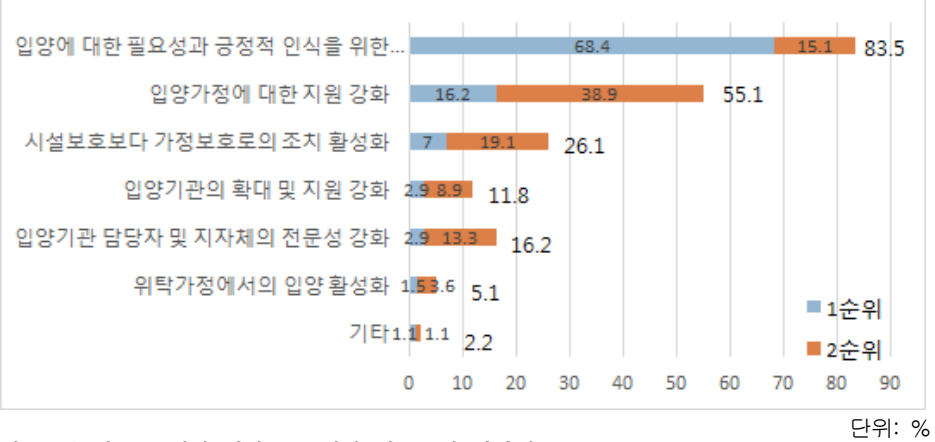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5-2〕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노력(1,2순위 중복응답)

6. 소결

이 장에서는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입양아동의 양육 실태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 결정 및 진행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자녀를 입양한 주된 이유는 부모의 난임·불임이었으며, 종교나 사회적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관심 등 개인의 가치관 때문에 선택하기도 하였다. 입양 결정 시 사회적 편견이 우려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도 이후에 입양한 경우 서류준비 등 입양절차가 까다로워서 입양 진행 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입양 당시 자녀의 발달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는 보통이었다고 응답하였으나, 입양 시 자녀 월령이 12개월 이상이었던 부모들은 자녀들이 인지, 언어, 사회·정서발달에 있어 느린 편이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입양아동들은 입양 전에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까지 시설, 위탁 등의 보호형태를 경험하였다.

둘째, 입양자녀 양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부분 부모들이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에게는 입양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며, 입양자녀 본인에게 입양사실을 알려주

었다는 부모는 76.1%이었다. 최근 입양한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알려주는 시기가 빠르고, 아직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대부분 영유아기에 공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 자녀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가능한 한 미루길 원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공개입양 가정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자녀가 입양사실을 안 후 대부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친생부모에게 관심을 갖는 경우 초등 저학년 시기에 관심을 보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입양자녀와의 애착 형성 기간은 평균 9.95개월, 가정에 적응하는 기간은 평균 8.25개월이었다. 입양자녀가 지금까지 문제행동들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응답은 50.0%이며, 그 외에는 불안, 위축, 수면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는데, 연장입양아동(입양 시 월령 12개월 이상)의 경우 좀 더 많은 횟수를 보고하였다.

부모의 양육 특성은 2015년 보육실태조사 및 한국아동패널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 조사대상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고, 부모들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양육 시 어려움으로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하면서 정보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할 때 입양가정 자조모임에 도움을 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일반가정에서 집안어른, 친구, 동료에게 정보를 구한다면 입양가정에서는 입양이라는 경험을 공유하는 자조모임을 의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필요로 하는 양육정보는 일반적으로 부모들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연령별 양육방법과 더불어 입양공개방법이나 시기 등 입양가정 고유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입양가정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교육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입양 전에 부모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부모는 전체의 87.1%이며, 평균 3.12회 교육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실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의 도움정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의무 8시간인 예비입양부모교육에 참여할 때 시간을 내기 힘들거나 교육장소가 멀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무교육시간 8시간에 대해서 61.4%는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은 최소 4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부모교육 내용으로는 입양사실 공개시기 및 방법, 입양아동의 특성, 연령별 자녀양육 방법, 및 입양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등의 순으로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입양 전 후 시기에 따라, 자녀 연령이나 가정의 특성별로 서로 다른 내용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입양자녀로 인한 입양휴가제 및 육아휴직은 아직 활용 비율이 낮은 편이다. 휴가나 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필요가 없었다는 응답도 있으나 회사 눈치가 보여서, 입양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등의 이유가 있었다. 현재 입양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만 양육수당에 대한 만족정도가 가장 낮고, 의료급여 지원에 대한 만족정도가 가장 높다. 전반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4점에 가까운 평균 점수를 보이나,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며, 입양수수료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입양가정 자조모임이나 사후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자조모임 참여율이 가장 높고,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만족정도도 높다.

넷째, 입양부모가 가지고 있는 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입양부모들이 생각하는 입양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모의 가치관이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입양사실 공개 범위는 과반수가 친인척과 가까운 지인들이라고 응답하였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는 응답도 24.6%으로 본 연구대상의 특징인 공개입양을 지향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입양아동 지원에 대해 일반아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아야 한다는 의견(31.3%)보다 요보호아동으로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55.5%)이 좀 더 많았다. 특히 2011년도 이전에 입양한 경우 요보호아동으로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점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적인 양육 부담이 커지는 것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겠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양에 대한 필요성과 긍정적 인식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8.4%로 다수가 동의하였다.

Ⅴ. 입양부모의 입양아동 양육경험

1. 사례 분석 개관

가. 면담 참여자 특성

총 39사례의 면담 참여자는 입양자녀의 연령 및 연장아, 장애아 여부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서울, 경기, 인천, 춘천, 대전, 광주, 전주, 부산, 대구 및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가구 특성은 <표 Ⅴ-1-1>, 부모와 입양자녀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Ⅴ-1-2>, <표 Ⅴ-1-3>에서 제시하였다. 입양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대부분 사례에서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연령별 집단을 구분하였다. 자녀특성별(연장아, 장애아) 구분은 자녀 연령과 상관없이 해당 특성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Ⅴ-1-1〉 면담참여자 가구 특성

단위: %(가구)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39)	전체		100.0	(3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7.4	(38)	가구 소득	101~200만원	2.6	(1)
	배우자 없음	2.6	(1)		201~300만원	10.3	(4)
첫 입양시기	2011년 이전	74.4	(29)		301~400만원	25.6	(10)
	2011년 이후	35.6	(10)		401~500만원	25.6	(10)
총 자녀수	1명	12.8	(5)		501~600만원	7.7	(3)
	2명	33.3	(13)		601~700만원	5.1	(2)
	3명	23.1	(9)		701만원 이상	20.5	(8)
	4명	25.6	(10)		무응답	2.6	(1)
	5명	5.1	(2)				
친생 자녀수	1명	28.2	(11)	입양 자녀수	1명	61.5	(24)
	2명	25.6	(10)		2명	23.1	(9)
	3명	10.3	(4)		3명	12.8	(5)
	4명	2.6	(1)		4명	2.6	(1)
	없음	33.3	(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표 Ⅴ-1-2〉 면담참여자 가구 특성: 부모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비율	(수)	비율	(수)
전체		100.0	(39)	100.0	(39)
연령	30대	15.4	(6)	15.4	(6)
	40대	35.9	(14)	61.5	(24)
	50대 이상	48.7	(19)	23.1	(9)
교육수준	고졸이하	20.6	(10)	20.5	(8)
	대졸	43.6	(17)	53.8	(21)
	대학원 이상	30.8	(12)	25.6	(10)
취업상태	취업 중	97.4	(38)	56.4	(22)
	휴직 중	2.6	(1)	2.6	(1)
	미취업	0.0	(0)	41.0	(16)
종교유무	있음	74.4	(29)	64.1	(25)
	없음	25.6	(10)	12.8	(5)
	모름/무응답	0.0	(0)	23.1	(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표 Ⅴ-1-3〉 면담참여자 가구 특성: 입양자녀

단위: %(명)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61)	전체		100.0	(61)
성별	남	34.4	(21)	형제순위	첫째	26.6	(16)
	여	65.6	(40)		둘째	29.5	(18)
					셋째	26.2	(16)
연령	영아기	9.8	(6)		넷째	16.4	(10)
	유아기	230	(14)		다섯째	1.6	(1)
	아동기	42.6	(26)	교육기관	어린이집	13.1	(8)
	청소년기 이상	24.6	(15)		유치원	14.8	(9)
입양년도	1995~1999년	3.3	(2)		초등학교	39.3	(24)
	2000~2004년	26.2	(16)		중학교	14.8	(9)
	2005~2009년	31.1	(19)		고등학교	3.3	(2)
	2010~2014년	31.1	(19)		대안학교	4.9	(3)
	2015년 이후	8.2	(5)		홈스쿨링	8.2	(5)
입양 시 연령	0세	63.9	(39)		기타	1.6	(1)
	1세 이상	36.1	(22)				

주: 응답자가 답한 모든 입양자녀 특성을 포함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나. 분석 방법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 입양부모의 입양아동 양육경험은 사례별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을 실시한 모든 사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사례별 분석). 이후 입양아동의 연령(영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과 특성(연장아동과 장애아동)에 따라 구성된 집단 내에서 하위집단별(친생자녀 유무, 입양할 때 연령기준 등)로 분석을 실시하고(사례 간 분석), 다시 집단 전체를 종합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집단별 분석내용의 종합은 집단 내의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한편, 하위집단들의 개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입양아동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구분한 집단 내에서 하위집단(친생자녀가 있는 가정과 친생자녀가 없는 가정)별로 실시한 사례 간 분석을 거쳐서 나온 최종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녀 연령별 및 특성별 상세 분석결과내용은 부록(부표 Ⅴ-2-1~Ⅴ-2-3, Ⅴ3-1~Ⅴ-3-2 참조)으로 담았다.

2. 입양자녀 연령별 분석

이 절에서는 입양자녀의 연령(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별로 면담내용을 분석하여 양육경험을 살펴보았으며, 전체 연령집단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각 연령집단 내에서는 친생자녀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영유아기의 경우에만 집단면담을 따로 분석하였다.

가. 영유아기(만 0-5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면담사례는 총 11사례이며, 분석결과는 친생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개별면담과 친생자녀가 없는 가정에 대한 개별면담, 집단면담 결과를 비교하면서 기술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세 개의 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술된다.

1) 입양 절차

입양절차는 입양동기와 입양을 진행한 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입양

동기는 입양을 결심하게 된 배경과 계기, 직접적인 동기 등을 포함하며, 입양 진행과정은 입양부모의 결정과 정보수집, 입양기관 신청 이후 법원 판결까지 절차를 포함한다.

가) 입양동기

입양 동기는 결혼 전 생각, 난임, 더 많은 자녀, 배우자가 원함, 주위의 자극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결혼하기 이전부터 입양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입양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것과 직접적으로는 오랜 기간에 걸친 난임 또는 더 많은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는 생각이 동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동기는 한쪽 배우자가 강렬하게 원할 때 촉발되고, 주위 사람들의 정보제공이나 권유 등에 의해 강화되기도 한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유자녀(개별) 집단은 결혼 전부터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고, 결혼 이후 더 많은 자녀를 원했거나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무자녀(개별) 집단은 난임과 만혼-유산 등으로 출산이 어려워지면서 입양을 대안으로 고려하였고, 입양 이후에 입양기관 등의 권유로 다른 자녀도 입양을 하게 되었다. 집단면접에서는 이밖에 배우자가 원해서, 아이가 예뻐서 입양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나) 입양 진행과정

입양 진행과정은 입양부모의 결정단계부터 법원 판결까지 공식적인 절차와 입양부모 입장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단계들을 포함한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입양 결정, 정보수집, 입양상담과 신청, 불안한 기다림, 위탁으로 보호, 법원 판결 등이다. 여기에서 입양의 공식적인 절차는 입양 신청과 상담, 가정방문, 가정법원 신청과 판결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이전에는 입양부모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공식적 절차에서 그러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입양부모 입장에서는 이 절차에 '불안한 기다림'이라는 심리적 단계가 있고, 입양아동이 결정된 이후 판결이 날 때까지 입양부모들에게 위탁부모의 지위를 부여하여 일시적으로 가정위탁을 수행하는 단계가 포함될 수 있다.

입양 진행과정에서는 집단별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개인적인 차이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어떤 입양부모는 온갖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입양에 성공하게 되지만 어떤 입양부모는 그렇지 않고, 여러 번 예비입양아동을 본 뒤에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보고 그 자리에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아기를 본 뒤에 기도를 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에 입양절차를 마치기 위해 서두른 경험을 한 사례도 있다.

2) 입양 준비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은 부모교육과 상담으로 구성되었다. 이 두 가지 세부과정은 입양 이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입양 진행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가) 부모교육

부모교육에 대한 경험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못 받은 경우도 있고,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도움이 안 된 것으로 보는 사례가 있으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다거나 만족한다는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의미단위 수준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모교육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하루 8시간 정도로 진행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이슈들과 발달단계별 고려사항을 전달하기 어려우며,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나) 상담

상담은 주로 입양기관 상담으로 한정되는데, 사례에 따라서는 한 기관에서만 상담을 한 경우와 여러 기관을 상담한 경우들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제도에서는 가정방문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례가 상담을 한 경험은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양육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 깊은 수준의 내용들을 다루는 것에 당황한 경험도 나타났다. 친생자녀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사이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입양 전 만남

입양 이전에 아기를 만나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하위영역은 그 경험과 입양 이전의 보호형태로 구분되었다.

가) 경험

입양 이전에 아기를 만난 경험은 다양하게 구분되었다. 못 만난 경우도 있고, 사진으로만 본 경우도 있으며, 한번 또는 자주 만난 경우도 있다. 첫 눈에 반해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바로 데려오거나 결정한 경우도 있고, 입양 이전에 위탁의 형태로 데려와서 양육을 시작한 경우도 있다. 집단별로 이러한 경험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처음 아기를 본 자리에서 자신이나 배우자의 외모를 닮았다고 느끼거나 '이 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험은 이후 양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나) 보호형태

현행 제도에서 입양 이전의 보호형태는 세 가지 경로로 나눠진다. 입양기관에서 바로 입양하는 경우와 가정위탁 상태에서 보호를 받다가 입양하는 경우, 생활시설에 있다가 입양하는 경우다. 이러한 유형은 친생부모와 입양아동의 특성, 상태, 입양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생활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뒤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시설생활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입양가정으로 오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사전 정보

입양 이전에 친생부모와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파악하였는지 질문하고 답변을 분석하였다.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의 종류는 대체로 일반화할 수 있는 수준인 반면에,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가) 친생부모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는 친생부모의 특성과 상황, 입양기관의 정책 등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무런 정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에, 직접 생모를 만났거나 매우 상세한 정보를 파악한 경우도 있었다. 그 사이에는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입양부모 자신이 거부한 경우, 친생부모의 나이와 학력, 직업, 출산과 입양 사연과 같

이 기본적인 정보만 얻은 경우, 여기에 몇 가지 정보를 더 듣게 된 경우 등이 있었다. 이 하위영역의 경우 분석된 내용에는 집단 간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친생부모나 입양기관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었다.

또한 친생부모와 입양아동, 입양부모가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개방입양에 대해서 물었을 때, 구체적인 경험은 드러나지 않았다. 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만 앞으로 친생부모와 접촉하여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입양아동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출생 이후 탯줄이나 입고 있던 배냇저고리와 같은 물건들과 시설 보육사나 위탁가정에서 기록한 일지, 앨범, 각종 기록물, 그리고 의료기록 등이다. 이러한 정보와 자료들은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이 집단이나 유형과 상관없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생 직후 입양되는 경우, 입양아동의 신체 정보나 병력, 유전 특성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입양부모들이 양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가정 변화

입양 이후 가정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분석하였다. 하위영역은 가족관계, 일상생활, 부모됨의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가) 가족관계

입양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가족은 다양한 하위체계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영향도 역동적이고 다양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가족관계의 변화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이가 중심이 되면서, 관계도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가족관계가 더 화목해졌다는 답변도 있었고, 조부모의 애정이 아동에게 집중되기도 했으며, 친척들도 양육과정에서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형제관계의 역동성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고 있다.

이 하위영역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친생자녀가 있는 경우 형제간 관계에 대한 진술이 많이 나타난 반면, 친생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아동에 초점을 두고 양육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진술하였다.

나) 생활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객관적으로 보면, 입양부모의 생활패턴이 바뀌었다. 주관적으로는 웃을 일이 많아졌다고 하였고,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경험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육은 고단한 것이고, 영유아기 아동을 기르다보면 집에 또는 생활공간에 갇혀 지내는 느낌에 답답해지기도 한다.

이 하위영역에서도 자연스럽게 집단 간 차이가 드러난다. 친생자녀가 없는 가정들에서는 '지경이 넓어졌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전에 자녀를 양육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거나 갇혀서 답답하다는 것도 한 아이가 가져온 큰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친생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변화를 크게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부모됨

부모로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탐색하였다. 이전보다 또는 친생자녀를 양육할 때보다 수월하다는 경우도 있었고 다르지 않다고 응답한 입양부모도 있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진술하였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많아졌다거나 삶이 풍성해졌다거나 부모로서 성장했다는 진술 등이 그것이다.

부모됨에서도 친생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친생자녀가 없는 경우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진다거나 양육하면서 피곤하지만 그것이 즐겁다거나 자신의 부모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등 전반적으로 부모로서 성장하는 경험들을 진술하였으나 친생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다양한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었다.

6) 공개 경험

공개입양과 입양사실을 다룬 경험에 대해 질문하고 그 답변을 분석하였다. 이 영역은 입양사실 다루기와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하위영역들로 구성하였다.

가) 입양사실 다루기

각 입양가정들이 입양사실을 다루는 방식에는 매우 폭넓은 다양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예 공개할 생각이 없는 가정도 있고, 매우 적극적으로 공개

하는 가정들도 있으며, 그 사이에서도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입양부모들이 대부분 공개입양가정이었기 때문에, 범주도 대부분 공개입양을 전제로 분석되었다. 다만 영유아기 입양가정이기 때문에 아직 아이가 어려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가정들이 많았고, 입양사실을 공개한 경우 어릴 때부터 조금씩, 자연스럽게 범위를 조절해 가면서 공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차이를 분명하게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유자녀 가정과 무자녀 가정의 경우 차이가 나타났다. 친생자녀가 없는 가정들은 아직 공개를 안했거나 친인척에만 공개를 한 반면에, 친생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다수가 이미 입양사실을 공개한 상태였다.

나) 공개 계획

앞으로 입양사실을 공개할 계획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은 사례 안에서도 다양한 답변이 나타났다. 이미 공개한 부모들은 나이에 따라 앞으로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였고, 친생자녀가 없는 한 가정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이슈는 공개입양에 대한 입양부모의 가치와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7) 양육 경험

입양아동을 양육한 경험은 양육경험의 의미, 친생자녀와 경험 차이, 애로사항, 양육정보, 도움 받은 경험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각 하위영역별도 다양한 범주로 채워졌다.

가) 양육경험의 의미

양육경험의 의미는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어려움이 없다는 경우도 있고, 친생자와 다르지 않다고도 하였으며, 몸이 힘들거나 양육의 고단함, 재정 부담을 진술한 사례도 있었다. 독특한 경험 중 하나는 입양부모들이 시설생활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입양아동만이 갖는 외로움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다. 이런 경우들은 입양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 간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친생자녀가 없는 부모들의 경우 예뻐졌다든가 극진하게 돌보고 있다든가 정신없이 키우고 있다는 등 아동에게

초점을 맞춘 진술을 한 반면에, 친생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다양한 경험의 차이를 진술하였다. 시설생활의 영향이나 입양아동의 고독과 같은 의미단위들은 집단면접에서 제기되었다.

나) 친생자녀와 경험 차이

친생자녀와 입양자녀 사이의 양육경험에 대한 차이는 입양부모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입양지원체계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차이라고 진술한 경우도 있고, 주관적으로 유전적 차이, 마음가짐, 입양 이슈, 주위의 시선, 시설생활의 영향 등을 경험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다) 애로사항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도 다양한 범주로 나타났다. 친생자녀가 없는 부모들의 경우 양육경험이 없어 신생아를 돌보는 것이 어려웠다거나 자녀 또래의 부모들과 어울리기 어렵다거나 잘 키워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모두 이전에 자녀를 양육한 적이 없으며, 자녀와 나이 차이가 많고, 입양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주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와는 달리 친생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앞으로 다루어야 할 입양 이슈가 염려된다거나 발달시기에 따른 입양아동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 입양 이슈와 관련된 어려움들을 진술하였다. 아동의 질병이나 문제행동, 입양모의 건강 이슈 등도 집단면접에서 제기되었다.

라) 양육정보

입양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방법과 경로, 경험 등을 질문하였고, 그 답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서 범주는 필요 없었다, 교육을 받았는데 도움이 안 되었다, 혼자 터득했다, 자조집단과 같은 사회집단이나 책, 각종 자료들로부터 얻었다, 친생자녀를 양육한 경험에서 나왔다 등으로 구분되었다.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친생자녀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더 다양한 경로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도움 받은 경험

양육과 관련하여 도움 받은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친생자녀가 있는 집단이나 없는 집단이나 친정엄마를 중심으로 한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생자녀와 배우자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고, 입양기관과 단체에서 수시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움이 안 된다는 진술도 있었다.

8) 입양자녀 적응과정

입양자녀가 가정에 적응하는 과정은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또래 관계, 문제행동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가) 부모자녀 관계

전반적으로 볼 때,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적응과정은 '몸은 힘들지만 관계형성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친생자녀 유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형제자매 관계

형제자매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보다는 역동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하위영역의 범주는 손위형제와 라이벌, 일반가정과 다르지 않음, 친생자녀들에게 긍정적 영향, 입양자녀를 예뻐함,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해줌 등이었다. 이 중에서 입양아동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드러나는 경험은 없지만, 오히려 이러한 차이를 느끼지 않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이 보이는 관심이 더 중요한 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 또래 관계

또래 관계 경험은 단순하게 나타났다.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낸다는 답변과 입양사실 공개와 관련된 경험이었다. 집단 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이는 아동의 연령과도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라) 문제행동

앞선 진술들을 고려할 때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문제행동도 다양하게 언급

되었다. 크게 구분하면 애도 반응과 섭식장애, 이상행동, 이상성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범주들이 성격장애로 진단을 받았다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입양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신경을 쓰게 되는 이슈들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집단 간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친생자녀가 없는 경우 밥을 잘 안 먹는다는 진술 밖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친생자녀가 있는 가정의 입양아동들은 애도, 울음, 손톱 뜯기, 식탐, 이상한 행동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9) 입양단체

각 입양가정과 부모들이 입양가족들의 모임이나 단체에 어느 정도 소속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임과 단체 내에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가) 유형/소속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한국입양홍보회나 입양기관의 자조모임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구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연구 참여자들이 활동하는 모임들은 그 안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입양홍보회 내에서도 지역모임이나 아동특성별 모임, 각종 활동에 따른 모임 등으로 구분되며, 입양기관들의 자조모임도 하위집단들이 있고, 각 참여자들의 상황에 따라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활동내용

소속만큼 활동 내용도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지역모임이나 소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일상의 이슈나 양육 이슈들을 논의하기도 하지만, 분기별로 만나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 공유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상담이나 부모교육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번역 등 전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친생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없는 부모들보다 활동의 범위나 내용 면에서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 욕구

입양 단체나 모임과 관련된 입양부모들의 욕구를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입양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과 입양아동 발달단계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입양 사후교육 등이 포함되었으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고려하면, 입양부모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입양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양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외에도 입양부모 자신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원한다는 것이다.

10) 공식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과 중앙입양원을 거쳐 입양기관과 단체를 통해 받는 지원을 포함한 공식 지원제도의 이용 경험을 분석하였다. 어떠한 지원을 받는지, 그러한 지원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앞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과 특별한 욕구들에 대해 질문하고 그 답변을 분석하였다.

가) 지원받는 내용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지원받는 내용들로는 양육수당과 의료급여가 집단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사례는 심리치료지원과 지자체의 추가지원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원 자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안 받았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공공기관과 입양기관, 단체 등을 통한 홍보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지원 경험

위에서 언급된 지원들을 받으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양부모들 사이에 상당한 경험과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지원형태인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지만, 책정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든가, 지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든가,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그 돈을 다른 데 지원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반응도 많이 있었다. 특히 양육수당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으로 인식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양육미혼모들을 지원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사례의 경우 주위에서 양육수당의 금액이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

다) 지원 욕구

앞으로 공공기관과 입양기관 등이 지원했으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정도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입양부모교육이나 입양아동 발달에 맞는 프로그램, 양육수당 확충, 심리치료지원 확대, 정보제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밖에는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일반가정에 비해 입양가정의 부모-자녀 간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은퇴 이후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 간 비교에서는 친생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더 다양한 대안과 욕구들을 제시하였다.

라) 특수 욕구

입양가족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 다른 욕구들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질문 영역의 의도와는 달리 앞서 제시된 욕구와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제외하면,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입양업무 교육, 의료급여 처리방식, 입양연구, 입양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더 범위를 넓힌 입양당사자들을 포괄하는 교육 등이 있다.

11) 사회적 인식: 편견

이 영역에서는 입양부모들이 경험한 사회적 인식, 그 중에서도 편견과 관련된 이슈들을 파악하였다. 범주에는 입양부모에 대한 인식, 입양아동에 대한 편견, 입양아동과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말, 행동, 소문과 수군거림, 지인들의 부정적 태도 등이 포함되었다. 이 하위영역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미단위들이 제시되었으며, 집단 간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일상생활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이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가족에 대해 편견을 드러내는 메시지들을 여전히 보내고 있으며, 그러한 메시지들이 입양가족에게 어느 정도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아동기(초등학생)

아동기 자녀를 둔 사례는 총 13사례이다. 아래에서는 분석결과에 따른 범주를 제시하면서 친생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분석결과와 친생자녀가 없는 가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1) 입양 절차

입양절차는 입양동기와 입양을 결정한 과정, 입양을 추진한 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입양동기는 영유아기와 마찬가지로 입양을 생각하게 된 배경과 계기, 직접적인 동기 등을 포함하며, 입양 결정과정은 입양부모가 입양을 하기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고, 입양 추진과정은 입양기관 신청 이후 법원 판결까지의 절차를 포함한다. 아동기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입양부모들은 앞서 제시된 영유아기나 뒤에 제시될 청소년기 입양자녀를 둔 입양부모들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입양동기

입양 동기는 결혼 전 생각, 가족의 권유, 양가 부모의 권유, 종교적 의무, 주위의 권유와 모델링, 더 많은 자녀를 원함, 불임/난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결혼하기 이전부터 입양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사례들이 있고, 불임/난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양가 부모,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입양을 생각하게 된 경우들도 있으며, 주위에 있는 입양가족들을 보면서 모델링하기도 하고, 유자녀 가정의 경우 더 많은 자녀를 원해서 다시 입양을 생각하게 되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유자녀 입양부모들은 결혼 전부터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고, 측은지심이나 친정아버지의 권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입양을 결정하였다. 또한 입양자녀를 양육하면서 더 많은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서 입양을 고려하였다. 이와는 달리 무자녀 입양부모들은 불임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권유로 입양을 고려하게 되었고, 특정한 시기에 그러한 생각을 촉진하는 메시지를 듣고 결심한 경우도 있으며, 더 많은 자녀들을 갖고 싶거나 기존의 입양자녀가 형제를 원해서 입양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나) 입양 결정과정

자녀를 갖기 위한 대안으로 입양을 생각했다고 하더라고 바로 입양을 결정하게 되지는 않는다.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입양 결정과정은 매우 복잡한 것으

로 나타났다. 먼저 부부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며, 한쪽 배우자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양가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반대할 경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종교를 가진 이들은 기도하며 준비하기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입양가족모임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계속하다가 교회 목사와 같이 중요한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결정하기도 한다.

다) 입양 추진과정

입양을 결정한 뒤에는 공식적인 입양절차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입양가족이 먼저 입양을 결정하고, 입양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신청하였으며, 부모교육을 받고, 선을 보거나 기다리고 실제로 입양을 하게 되었다. 아기를 선보거나 만났을 때 '내 아이라는 느낌'을 받은 입양부모도 있었다. 입양 신청 후 실제로 아이를 가정으로 데려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사례마다 차이가 있었다. 예외적으로 공식적인 입양절차를 몰라서 사적 입양을 하거나 임신한 상태에서 입양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2) 입양 준비

아동기 입양아동의 가정이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부모교육만 포함되었다. 대부분 입양기관의 정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은 일반적이었는데,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내지 말고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입양부모들의 경험담이 도움이 되었다는 경우도 있었다.

3) 입양 전 만남

입양 이전에 아기를 만나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하위영역은 그 경험과 입양 이전의 보호형태로 구분되었다.

가) 경험

입양 이전에 아기를 만난 경험은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생모와 연락하여 만나면서 아기를 같이 본 경우, 위탁가정에서 만난 경우, 입양기관에서 선을 본 경우였다.

나) 보호형태

입양 이전의 보호형태는 단순하게 구분되었다. 다수의 아동들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입양되었다. 한 사례의 경우에만 입양부모가 미혼모인 친생부모를 직접 만나 아기를 데리고 가정으로 왔다.

4) 사전 정보

입양 이전에 친생부모와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파악하였는지 질문하고 답변을 분석하였다. 아동기 입양아동의 부모들은 친생부모나 입양아동 모두에 대해 대체로 비슷한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 친생부모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는 아무런 정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에, 직접 생모를 만난 경우도 있고, 매우 상세한 정보를 파악한 경우도 있었다. 그 사이에는 친생부모의 임신과 출산, 입양 사연과 같이 기본적인 정보만 얻은 경우, 여기에서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듣게 된 경우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정보가 입양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편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입양부모도 있었다.

나) 입양아동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 유형은 단순한 형태로 나타났다. 정보가 없거나 빈약한 경우들과 기본 정보만 갖고 있는 경우, 출생 후 생활패턴이나 사진, 탯줄, 발도장 등 입양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들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들로 구분되었다.

5) 가정 변화

입양 이후 가정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분석하였다. 하위영역은 가족관계와 생활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가) 가족관계

입양은 아동기 입양아동의 부모들에게도 대체로 긍정적인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입양아동을 데리고 왔을 때 입양가정은 아이를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배우자가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애정을 쏟고 부부간 대화가 많아

지면서 부모가 젊어지는 느낌, 가족이 화목해지는 느낌도 경험하였다. 한때는 반대했던 양가 친척의 사랑을 받기도 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 생활

가족의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아기 때문에 잠이 부족해졌으며, 수유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어떤 입양아동들은 너무 오래, 자주 울어서 입양부모가 큰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한 아동은 입양가정에 오자마자 병을 앓기도 하였다. 병든 아이를 돌보며 치료하는 것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할 것이다.

6) 공개 경험

입양사실을 공개한 경험과 그 이후 입양사실을 다룬 경험에 대해 질문하고 그 답변을 분석하였다. 이 영역은 입양사실 공개와 입양이슈 다루기, 주위에 공개하기, 친생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공개 계획 등의 하위영역들로 구성되었다.

가) 입양사실 공개

입양가족들이 입양자녀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시기와 방법에도 다양성이 있다. 아직 어려서 모르고 있거나 공개할 생각이 없었거나 방법을 몰랐던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공개입양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경우도 있었다. 다수의 가정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동화책을 활용하거나 입양가족모임에 참여하거나 입양한 시설을 방문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입양아동은 동생의 입양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입양을 생각하게 되거나 형제 간 대화를 통해 입양사실에 대해 나누게 되기도 한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임신, 출산에 대해 배우고 입양부모에게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

나) 입양이슈 다루기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방법만큼이나 입양가정들이 입양이슈를 다루는 방식에도 폭넓은 다양성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였으나 불안정서, 상실과 애도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자라가면서 질문이 반

복되고 구체화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발달수준에 맞게 입양이슈들을 파악하고 이해해 가는 것으로 경험되었다. 일부 입양아동들은 엄마에게 딱 붙어 지내기도 하였고, 반대로 친생모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서 현실의 부모인 입양부모를 멀리하기도 하였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사용하는 입양부모들도 있었다. 한 가정은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입양아동이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아동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이 입양되었다고 말하여 부모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다) 주위에 공개하기

입양사실을 입양아동이나 입양부모, 입양가족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과 범위에도 다양성이 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교사에게 입양부모가 이야기하기도 한다. 입양부모들은 교사에게 입양사실을 이야기할지 말지를 자주 고민하게 된다. 입양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면서 긍정적인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볼 수 있지만, 편견이 생길까봐 걱정되고, 지금까지 주변의 시선과 반응에 힘들었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

라) 친생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친생자녀가 있는 입양가정의 입양부모들은 친생부모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생부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만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애도 반응을 볼 때도 있으며, 자녀가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뿌리 찾기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이슈를 정리하기도 한다.

한편, 친생부모와 입양아동, 입양부모가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개방입양과 관련해서는 친생부모를 만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해당되는 의미단위들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대신 나중에 언제가 다가올지 모르는 뿌리 찾기에 대비하여 아이와 친생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원하면 찾아주고 싶으며, 만나게 해 줄 수 있다고 말한 경우들이 있다. 또한 친생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마) 공개 계획

아직 입양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 뿌리 찾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아이가 성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7) 양육 경험

입양아동을 양육한 경험은 양육경험의 의미, 친생자녀와 경험 차이, 애로사항, 양육정보, 도움 받은 경험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각 하위영역별도 다양한 범주로 구성되었다.

가) 양육경험의 의미

양육경험의 의미는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양육이 쉬웠고, 편하게 양육했다는 입양부모들도 있었지만 심리적 어려움과 장애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경험한 입양부모들도 있었다. 편한 양육의 뒤편에는 배우자의 돌봄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심리적 문제를 경험했을 때는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공교육이 스트레스원으로 보이는 경우 홈스쿨링을 통해 교육하면서 부모자녀 관계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나) 친생자녀와 경험 차이

친생자녀와 입양자녀 사이의 양육경험에 대한 차이는 많은 입양부모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차이를 모르겠다는 경우도 있지만 차이를 알고 있고 다만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입양아동의 특정한 행동을 보면서 입양 때문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생각과 상황마저도 출산했더라면 안 해봤을 생각이기 때문에 중요한 차이로 인식하는 사례도 있었다. 친생자녀와 입양자녀의 차이를 기질이나 형제순위의 역동성으로 이해하면서 의미를 두지 않는 이도 있고, 자신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고 이해가 안 갈 경우가 많다고 한 입양부모도 있었다.

다) 애로사항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도 다양한 범주로 나타났다. 입양아동의 언어발달 지체와 신체발달 문제, 더 다루기 어려운 문제행동들, 사춘기 자녀 다루

기 등이 어려운 이슈들이며, 이 때문에 쉽게 소진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라) 양육정보

아동기 입양자녀를 둔 입양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방법은 매우 단순하게 나타났다. 낯선 시기와 이슈들에 당황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였고, 그 때문에 입양가정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기도 하였다.

마) 도움 받은 경험

양육과 관련하여 도움 받은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으며, 입양과 관련하여 입양자조모임 내에서 상담을 받거나 공감을 얻거나 지지를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있었다.

8) 입양자녀 적응과정

입양자녀가 가정에 적응하는 과정은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또래 관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가)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연속선처럼 나타났다. 즉 부모와 자녀가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으로 시작되었다가 절충을 통해 안정화되었으며, 그 결과로 애착이 형성되었다는 식이다. 이러한 공식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입양가정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형제자매 관계

입양아동들의 형제자매 관계는 극과 극 사이에서 다양성이 나타난다. 기질이 워낙 달라서 안 맞을 때도 있지만 티격태격하면서 친해지기도 한다.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입양자녀들 사이에서도 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친생자녀와 입양자녀의 터울이 클 경우 손위형제가 입양자녀를 예뻐해 주고 챙겨주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으며, 입양된 형제들이 있을 경우 함께 입양 이슈를 다루기도 한다.

다) 또래 관계

또래 관계도 기질에 따라, 학령이 길어지면서 다양성을 보인다. 워낙 적응력이 좋아서 친구들을 잘 사귀는 경우도 있지만, 공개 후 친구들의 반응에 놀라 위축되거나 집단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래 관계에는 교사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입양단체

가) 유형/소속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한국입양홍보회나 입양기관의 자조모임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는 입양부모도 있었으며, 교회 내의 입양가족모임에 참여하는 입양부모도 있었다.

나) 활동내용

참여 유형과 소속은 다양하지 않지만, 활동 내용은 다른 연령집단들만큼이나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지역모임이나 소모임에서 양육이나 (공개)입양과 관련된 이슈들을 논의하기도 하며, 일상생활에 대해 나누기도 하고, 교육을 받거나 캠프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다) 욕구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입양가족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모임에 대한 욕구는 드러나지 않았으며,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공개입양 이슈와 관련된 교육,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 등에 대한 욕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아동기 입양가정으로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성인입양인 사례를 접해 봤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0) 공식 지원

가) 지원받는 내용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지원받는 사항들로는 양육수당이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례도 많이 있었고, 일부 사례는 심리치료지원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입양 수수료를 안낸 것을 언급한 사례도 있었는

데, 이는 아동의 연령과 관련하여 이전 제도가 개정된 이후 입양을 하면서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된 기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지원 경험

위에서 언급된 지원들을 받으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집단의 입양부모들에 비해 상당히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양육수당 등의 지원을 고맙게 생각하고,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지만 '내 아이인데 왜 받아야 하지'라는 의문이 든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와 맞물려서 양육수당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와 편견을 경험한 진술도 있었다. 일부 사례의 경우 양육수당에 대해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사례의 경우 지원제도를 몰랐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의료급여의 경우 처리할 때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심리치료의 경우 지원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그나마 지방에는 심리치료기관이 마땅치 않다고 토로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만나게 되는 공무원의 시선과 태도를 불편하게 여긴 참여자도 있었다.

다) 지원 욕구

앞으로 공공기관과 입양기관 등이 지원했으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정도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스크리닝을 강화하거나 예비입양부모를 교육하자는 의견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밖에 입양기관의 전문적인 사후관리와 선배 입양부모가 후배 입양부모를 지원하는 입양부모 멘토링을 제안한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심리치료 지원,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입양절차 간소화 등이 추가로 제시되었다.

라) 특수 욕구

입양가족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 다른 욕구들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자녀, 무자녀 입양가정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입양사업은 입양기관에 맡기고 정부가 감독하길 바란다는 의견, 입양과 관련된 행정, 전달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여기에 다양한 입양가족들이 어울릴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추가되었다.

11) 사회적 인식: 편견

아동기 입양자녀의 부모들은 다양한 사회적 편견들을 경험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편견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아동기 입양자녀의 부모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들이다. 교사의 편견이 아동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 밖으로 나가면 양육수당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메시지들을 듣게 되고, 입양가정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도 더러 듣게 된다. 거기에는 입양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편견도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입양부모를 향한 지나친 칭찬(대단한 일, 천사, 훌륭한 일 등)도 불편함을 주며, 입양부모 자신이 입양자녀에게 갖고 있는 편견도 있다. 더 범위를 넓히면 뉴스와 드라마에 비치는 오해와 편견들도 당사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청소년기(중고등학생)

청소년기 자녀를 둔 사례는 총 8사례이다. 아래에서는 분석결과에 따른 범주들을 제시하면서 친생자녀가 있는 가정과 친생자녀가 없는 가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교하면서 기술하였다.

1) 입양 절차

입양절차는 입양동기와 입양을 진행한 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입양동기는 이전 연령집단들과 마찬가지로 입양을 결심하게 된 배경과 계기, 직접적인 동기 등을 포함하며, 입양 진행과정은 입양부모의 결정과 정보수집, 입양기관 신청 이후 법원 판결까지 절차를 포함한다. 청소년기 입양자녀를 두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 10여년 전, 즉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입양을 했다는 뜻이므로 현재의 법과 제도에 따른 절차와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경험과 의미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 입양동기

입양 동기는 결혼 전 생각, 난임(임신이 안됨), 선한 의지, 우연한 기회에 만남, 더 많은 자녀와 형제를 원함, 입양기관의 권유, 주위의 권유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결혼하기 이전부터 입양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사례들이 있

고, 결혼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며, 우연한 기회에 입양 현장이나 입양아동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또한 친생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더 많은 자녀들을 원하거나 친생자녀들이 형제를 원해서 입양을 생각하기도 했다. 친생자녀가 없는 가정들의 경우 결혼 이후의 난임 또는 불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동기는 주위 사람들의 정보제공이나 권유 등에 의해 강화되기도 하며, 이미 입양경험이 있는 가정들에게는 입양기관이 권유하기도 하였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유자녀(개별) 집단은 결혼 전부터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고, 결혼 이후 더 많은 자녀를 원했거나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무자녀(개별) 집단은 난임과 건강문제, 거듭된 인공수정과 시험관 실패 등으로 출산이 어려워지면서 입양을 대안으로 고려하였으며, 시부모 등의 권유로 입양동기가 강화되었다.

나) 입양 진행과정

비교적 오래 전에 입양을 한 청소년기 입양아동의 가정들은 영유아기나 아동기 입양아동의 가정들과 다소 다른 입양과정을 경험하였다. 가장 큰 차이는 가정법원 판결과정이 없다는 것이고, 입양 전 위탁을 경험한 사례도 거의 없었다.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입양가족이 먼저 입양을 결정하고, 신청하였으며, 아기를 만나고, 실제로 입양을 하게 되었다. 입양 신청 후 실제로 아이를 가정으로 데려오기까지 기간은 사례마다 차이를 보였다. 친생자녀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입양 준비

청소년기 입양아동의 가정이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부모교육만 포함되었다. 이전의 양육경험을 통해 준비되어 있었다는 답변도 있었고, 입양신청 후에 기다리면서 준비했다는 사례도 있었으며, 최근 입양기관의 정규교육을 받았거나 위탁보호 시 위탁부모 교육을 받은 경우, 입양 이후 기관 자체의 입양부모교육을 받은 경우 등이 있었다.

3) 입양 전 만남

입양 이전에 아기를 만나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하위영역은 그 경험과

입양 이전의 보호형태로 구분되었다.

가) 경험

입양 이전에 아기를 만난 경험은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아예 못 만난 경우도 있고, 한번만 본 경우 또는 입양 전 위탁보호를 한 경우도 있다.

나) 보호형태

입양 이전의 보호형태도 비교적 단순하게 구분되었다. 일시보호시설에 있다가 위탁가정으로 갔다가 입양된 경우와 시설에서 바로 입양된 경우다. 이 범주는 유자녀 가정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양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4) 사전 정보

입양 이전에 친생부모와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파악하였는지 질문하고 답변을 분석하였다.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는 매우 빈약한 반면에,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가) 친생부모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는 아무런 정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에, 직접 생모를 만났고, 매우 상세한 정보를 파악한 경우도 있었다. 그 사이에는 친생부모의 나이와 키, 출산과 입양 사연과 같이 기본적인 정보만 얻은 경우,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듣게 된 경우 등이 있었다.

나) 입양아동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는 매우 단순한 형태로 나타났다. 즉, 태명, 신체 정보, 의료기록 등이다. 이는 청소년기 입양아동을 둔 입양가정이 오래전에 입양을 할 때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였음을 말해주는 증거로 보인다.

5) 가정 변화

입양 이후 가정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분석하였다. 하위영역은 가족관계, 일상생활, 부모됨의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가) 가족관계

입양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쳤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들이 모두 입양자녀를 예뻐하였으며, 그 때문에 화목해지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한 것이다. 아이 위주로 가정이 돌아가는 것은 꼭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만큼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입양아동의 표정도 점점 좋아진 것으로 경험하였다.

나) 생활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진술한 사례수가 많지 않고 유자녀 가정에서만 해당 답변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이 좋아졌다거나 형제간에 우애가 좋아진 경험들이 나타났고, 이와 반면에 입양부모의 사이가 나빠지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친정엄마가 입양 때문이라고 구박한 경우도 있었다.

다) 부모됨

두 사례에 불과하지만 부모됨의 경험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한 유자녀 가정들의 경우 이미 자녀양육 경험이 있어 무난했다는 답과 자신이 있었고 어려운 점이 없었다는 답변을 했다. 이들 가정은 친생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입양가정을 양육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6) 공개 경험

입양사실을 공개한 경험과 그 이후 입양사실을 다룬 경험에 대해 질문하고 그 답변을 분석하였다. 이 영역은 입양사실 공개와 입양사실 다루기라는 하위영역들로 구성하였다.

가) 입양사실 공개

입양가족들이 입양아동과 주위 사람들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시기와 방법에도 다양성이 있다. 어떤 가정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어떤 가정은 4-6세 사이의 어떤 날, 어떤 가정은 입양가족모임을 기회로, 어떤 가정은 입양된 형제를 통해 아동에게 입양사실이 공개되었다. 이후 어떤 입양아동은 스스로 자신이 입양되었다고 말하고 다니기도 한다. 입양가족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입양가족임을 알리는 범위는 보통 학교와 교회 등 종교단체 수준이었다.

나) 입양사실 다루기

각 입양가정들이 입양사실을 다루는 방식에도 매우 폭넓은 다양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우는 아이를 달래주고, 뿌리 찾기에 동참하고, 입양자녀의 다양한 질문에 답하고, 입양한 시설을 방문하는 등의 대처방식이다. 초등학생 저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질문을 하다가 고학년이 되면서는 아예 말을 안 하고, 입양가족모임에도 가지 않으려고 한다. 교사에게 입양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지만 말하기로 했다면 아이들에게도 잘 말해달라고 부탁하게 된다. 반 친구가 입양사실을 공개하여 입양아동이 곤란에 처한 적도 있다.

7) 양육 경험

입양아동을 양육한 경험은 양육경험의 의미, 친생자녀와 경험 차이, 애로사항, 양육정보, 도움 받은 경험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각 하위영역별도 다양한 범주로 구성되었다.

가) 양육경험의 의미

양육경험의 의미는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기 때는 입양부모에게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도 했고, 그 뒤에는 예쁜 행동을 많이 했으며, 잘 자라오기도 했고, 꽤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기도 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신과 다름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제 미래를 걱정하게 된다. 예쁘게 잘 자라기만 하면 좋겠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든 지금은 입양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그리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 친생자녀와 경험 차이

이 하위영역에 포함된 범주는 까다로운 아이, 뱃속에서 다시 낳아달라고 함, 예측하기 어려움, 입양자녀에게 관대함 등이었다. 친생자녀를 양육했을 때와 비교할 때 그런 어려움과 차이,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뱃속에서 다시 낳아달라'는 진술과 그 의미일 것이다. 이는 입양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 애로사항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도 다양한 범주로 나타났다. 입양아동이 입양된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을 지켜보는 괴로움, ADHD와 그로 인해 사회성이 낮아지는 데 대한 고민 등이다.

라) 양육정보

청소년기 입양자녀를 둔 입양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방법은 의외로 매우 단순하게 나타났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습득해 놓았기 때문에,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양육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 없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배경이 무엇이든 입양부모들은 여전히 입양가족모임을 통해 양육정보를 얻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도움 받은 경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양부모들은, 친생자녀가 있는 집단이든 없는 집단이든, 친정엄마를 중심으로 한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양가족모임의 지지도 있었고, 종교단체로서 교회와 교인들의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입양모 자신이 혼자 양육해 왔으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례도 있었다.

8) 입양자녀 적응과정

입양자녀가 가정에 적응하는 과정은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또래 관계, 문제행동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가)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극과 극으로 나타났다. 즉 신생아 입양을 해서 잘 적응해왔다는 사례가 있는 반면에 애착문제로 어려움이 있었고, 입양부모가 이혼하면서 부모자녀 관계가 단절된 사례도 있었다. 사춘기를 호되게 겪으면서 부모자녀 관계가 틀어졌다가 이제야 나아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나) 형제자매 관계

청소년기 입양아동들의 형제자매 관계도 부모자녀 관계만큼이나 역동적이었다. 친생자녀들이 입양자녀를 어릴 때부터 적극적으로 돌봐주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으며 입양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형제들 사이에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었고, 부모가 이혼하면서 큰 형이 아빠 노릇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영유아기나 아동기에 비해 입양가족이 함께 살아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역동성도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래 관계

또래 관계도 학령이 길어지면서 다양성을 보인다. 입양아동이 스스로 입양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잘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입양사실을 빌미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도 있고, ADHD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다. 학교에 입양사실이 널리 알려져서 곤란해진 적도 있다.

라) 문제행동

이 하위영역은 진술한 사례가 두 사례밖에 없지만, 앞선 하위영역들에서 이미 제시된 것처럼, 극과 극의 경험이 나타났다. 한 사례는 훈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제가 없었다고 한 반면, 다른 사례는 다양한 문제행동들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그 양 극단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사례들이 이를 진술하지 않은 것은 문제행동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9) 개방입양

친생부모와 입양아동, 입양부모가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개방입양과 관련해서는 한 사례만 친생부모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입양아동이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진술한 경험도 나타났다. 한번 만난 것으로는 개방입양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기 입양가정 중에도 개방입양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0) 입양단체

가) 유형/소속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한국입양홍보회나 입양기관의 자조모임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다양성이 적었는데, 그것은 영유아기와 아동기를 지나면서 입양 이슈들이 정리되고 모임에 참여할 필요성도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활동내용

참여 유형과 소속은 다양하지 않지만, 활동 내용은 이전 연령집단들만큼이나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지역모임이나 소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양육과 입양과 관련된 이슈들을 논의하기도 하지만, 분기별로 만나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 공유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사례발표나 자녀들의 또래모임, 집단상담 치료모임 등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일기를 쓰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한국입양홍보회나 입양기관들이 주최하는 캠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다) 욕구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입양가족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부모들이나 입양아동들의 자조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있었다. 이는 이러한 모임들이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의도적이고 더 적극적인 이슈 공유와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입양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여도 필요할 것이다.

11) 공식 지원

가) 지원받는 내용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지원받는 사항들로는 양육수당이 집단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급여를 받는 사례도 있었고, 일부 사례는 심리치료 지원과 양육보조금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나) 지원 경험

위에서 언급된 지원들을 받으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양부모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지원형태인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없었지만 '내 자식 키우는 데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인식도 있었다. 그래도 주변의 입양가족들이 당당하게 받으라고 하여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의료급여의 경우 지원 자체는 만족하지만, 경우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을 들러서 가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리치료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이 끊길지도 몰라 염려된다는 진술도 있었다.

다) 지원 욕구

앞으로 공공기관과 입양기관 등이 지원했으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정도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18세까지 양육수당 지원, 치료비 지원, 심리사회치료 지원, 교육비 지원 확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청소년기 입양자녀의 부모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고등학교 의무교육이나 대학등록금 지원 등의 이슈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 특수 욕구

입양가족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 다른 욕구들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각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입양부모교육 심화, 장애아동 치료지원, 심리검사 추가지원 등 기존의 지원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영역을 제안하는 답변들이 나타났다. 또한 입양가족에 대한 추가지원보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가 주도의 입양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12) 사회적 인식: 편견

이전 연령집단들에 비해 청소년기 입양자녀의 부모들은 훨씬 다양한 사회적 편견들을 경험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편견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입양아동의 친구들이 말하는 '가짜 엄마'라는 편견,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고정관념, 그래서 입양부모가 친생자녀와 입양자녀를 다르게 대할 거라는 편견,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좋은 일 하셨어요'라는 듣기 거북한 메시지들, 친생자녀와 입양자녀 남매가 친하

게 지내는 것을 두고 오해하는 사람들, 입양아동들은 흔히 청소년기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편견들이 입양부모와 입양아동, 입양가정들을 힘들게 한다. 또한 교사들의 일반화된 편견, 무관심, 또는 지나친 관심도 입양아동과 입양부모를 불편하게 만들곤 한다.

라. 통합분석

여기에서는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입양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양부모들의 경험을 통합하여 비교하였다. 입양과정 경험과 양육경험, 양육지원 경험의 세 가지 영역과 세부적인 하위영역들로 구분하고, 공통점들을 간략하게 제시하였으며, 차이점들을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1) 입양과정 경험

입양과정 경험은 입양동기, 입양절차, 부모교육, 사전만남, 사전정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영역에서는 자녀 연령별 또는 친생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보다는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개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양동기는 난임, 입양에 대한 입양부모의 생각, 주위의 권유, 형제자매 만들기 또는 더 많은 자녀를 원함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은 친생자녀 유무에 따른 기본적인 동기의 차이이다. 친생자녀가 없는 입양부모들은 '난임'이 일차적인 동기고, 나머지 동기들은 이차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친생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결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입양에 대한 생각이 씨앗이 되었고, 결혼을 계획하면서 이 생각을 굳혔으며, 여기에 몇 가지 상황이나 조건이 영향을 미치면서 입양을 추진하게 되었다.

입양절차는 현재 아동의 학령과 상관없이 대부분이 신생아기에 입양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들 내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배우자와 입양여부를 결정하고, 입양기관에 신청을 하였으며, 기다리다가 연락을 받고 가서 선을 보았고, 마음을 결정한 뒤에 공식적인 입양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입양절차가 까다롭다고 느낀다는 것이고, 출산과는 달리 입양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저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이는 입양부모가 자녀양육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부모교육에 대한 경험도 대체로 비슷했다. 입양 전에 받는 8시간의 정규교육은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대체로 아쉬움을 남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이 실제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후 발달단계별로 겪게 될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담을 나누는 방식을 원하였다.

입양 이전에 입양아동을 만난 경험과 친생부모나 입양아동에 대해 갖고 있던 사전정보 수준을 탐색하였는데, 영유아기와 아동기 입양자녀를 둔 가정들이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청소년기 자녀를 둔 입양부모들은 친생부모와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입양한 시점이 꽤 오래되다 보니, 그 당시에 입양정책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지 못했던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양육 경험

양육경험의 하위영역은 가족변화, 공개경험, 입양이슈 다루기, 뿌리찾기, 가족 외 공개, 양육경험, 자녀의 적응과정, 자녀의 또래관계, 개방입양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영역에서 발견되는 가장 두드러진 점은 공개입양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들(특히 아동기 자녀를 둔 입양부모들)의 경험에서 차지하는 크기와 비율이다. 우선 입양이슈 다루기와 뿌리찾기, 가족 외 공개 등의 하위영역들은 영유아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동기에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가, 청소년기에 다시 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기에 제시된 개념들도 아동기에 시작된 양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공개입양 여부를 직접 묻고 그 답을 정리한 '공개경험' 하위영역의 경우에도 영유아기에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시작하였고, 아동기에 서서히 입양자녀에 대한 공개수준을 높였으며, 청소년기에는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가족 외 공개가 이슈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입양 이후 가족의 변화는 입양 직후의 변화를 묻는 것으로, 대부분 신생아 시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험의 시점도 영유아기에 머무른다. 이에 입양부모들의 양육경험은 아이 위주로 돌아감, 부모의 태도 변화, 가족이 행복해짐, 양육의 고단함 등 공통적인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영유아기 자녀를 둔 사례에서 긍정적인 경험이 더 풍부하게 기술되는 차이가 있었다.

양육경험의 의미와 자녀의 적응과정을 살펴보면, 입양아동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그 양상도 달라지고 있음을 보

여준다. 영유아기에는 몸이 힘든 문제와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정도가 중요했는데, 아동기에는 심리적 어려움과 장애가 나타나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며 아이와 기 싸움을 하고, 이때에야 애착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청소년기에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녀의 적응과정에 해당되는 개념들도 영유아기에는 매우 단순하였으나 아동기에는 차이 인정/부인 이슈에서부터 기질, 입양으로 인한 차이, 사춘기, 부모의 소진 등으로 복잡해졌고, 청소년기에는 그 심각성이 더 커지거나 해결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입양부모들의 경험세계에서는 자녀의 아동기가 양육의 어려움을 고조시키고 여기에 입양이슈를 결합하여 더 복잡한 관계의 양상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입양자녀의 또래관계도 영유아기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아동기부터 친구들의 반응과 교사의 영향, 아동의 변화, 따돌림 등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고, 청소년기에도 그 이슈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3) 양육지원 경험

양육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험은 입양단체, 공식지원, 지원욕구, 특수욕구, 사회적 인식 등의 하위영역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입양단체와 관련해서는 활동내용이 입양아동의 학령이 높아짐에 따라 풍부해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영유아기에는 정보공유와 같이 단순한 수준이었다가 아동기부터는 양육경험과 입양이슈를 다루고, 청소년기가 되면 상담치료나 캠프, 사례발표 등이 추가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입양기관 등을 통해 받는 공식지원은 그 유형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그것에 대한 경험의 의미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양육수당의 경우 영유아기 자녀의 부모들은 대체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아동기의 입양부모들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일반인들의 오해나 편견, 지원을 이용할 때의 불편함 등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입양부모들의 경험도 비슷하지만 양육수당이 중단되기 때문에 의료급여나 심리치료지원 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욕구는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특수욕구의 경우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것이 연령집단의 욕구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인식의 경우에도 입양아동과 부모, 입

양제도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자녀 연령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유아기에는 일반 사회구성원들의 편견 정도가 이슈가 되었으나 아동기부터는 학교 교사와 자녀의 친구들이 보이는 태도와 편견이 반영된 말과 행동이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1〉 입양자녀 연령별 통합분석 결과

구분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입양 과정 경험	입양동기	난임		
		입양에 대한 입양부모의 생각 주위의 메시지	더 많은 자녀 형제자매 만들기 주위의 권유 양가친척의 반대	결혼 이전의 생각 형제자매 만들기 주위의 권유 우연한 기회에 만남
	입양절차	기다리는 시간 첫 만남 입양 전 가정위탁 가정법원 판결 절차가 까다로움	입양기관 신청/교육 선 보기 기다림 내 아이라는 느낌 절차가 복잡함	배우자와 결정 입양신청 선 보기 위탁으로 보호 늦거나 빠르거나
	부모교육	도움은 되지만 부족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정규교육으로는 아쉬움 입양부모들의 경험담이 도움이 됨	정규교육 위탁부모교육 입양부모교육 기다리며 준비함
	사전만남	다양한 수준의 만남 입양기관/위탁/시설	선을 봄 위탁가정에서 만남	없음/한번 봄 위탁보호/시설
	사전정보	친생부모: 편견과 이해 사이 입양아동: 기억해야 할 기록	친생부모: 없음부터 상세한 정보까지 입양아동: 없음부터 생후 기록까지	친생부모: 없음부터 만남까지 입양아동: 기본정보, 신체정보, 의료기록
양육 경험	가족변화	아이 중심의 생활 더 행복해짐 돌보는 손 또는 라이벌 생활패턴의 변화 새로운 세계를 만남 답답함과 고단함 부모로서 성장함 부부관계가 좋아짐	아이 위주로 돌아감 부모의 변화 가족이 행복해짐 양가친척의 사랑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 수면부족과 수유, 울음으로 힘들었음	아이 위주로 돌아감 가족, 친척이 예뻐함 가정이 화목해짐 형제 우애가 좋아짐 입양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구박을 받음
	공개경험	어려서 미공개 조금씩 자연스럽게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 외부에는 조심스럽게	아직 모름 생각이 없었음 방법을 몰랐음 말귀 알아들을 때부터 조금씩 자연스럽게 동생을 통해 이해 어린이집에서 출산에 대해 배워오면서 이야기함	알아들을 때부터 입양가족모임에서 입양형제가 알려줌 아동 스스로 얘기하고 다님 교회와 학교에 공개

(표 Ⅴ-2-1 계속)

구분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입양이슈 다루기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불안, 상실, 애도 반복되고 구체화되는 질문들 발달수준에 맞는 나름의 이해 엄마에게 붙어 있기	사실을 말해줌 울어서 달래줌 입양한 시설 방문 충격 받음 크면서 얘기를 안 함 입양모임에 가지 않으려고 함
	뿌리 찾기		친생모에 대한 환상 생모로부터 거절당함 입양기관을 찾아감 뿌리찾기의 선을 그어둠 친생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얘기하지 않음
	가족 외 공개	친인척에만 공개 어린이집 등에 자연스럽게 알려짐	자연스럽게 알려짐 선별적 공개 아동을 통해 알려짐 교사에게 이야기하기 편견에 대한 걱정 주변의 시선과 반응에 힘들었음	교사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함 친구가 입양사실을 공개하여 곤란해진 적이 있음
	양육경험	몸이 힘듦 정신없이 키움 친생자녀와 다름 양육경험이 없음 입양이슈 대비하기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방법은 혼자 터득함 다양한 도움을 받음	양육이 쉬웠음 배우자가 돌봐줌 심리적 어려움과 장애 치료를 받으러 다님 홈스쿨링 기 싸움 애착 형성 절충과 안정	어렵지 않았음 자신이 있었음 잘 자라고 있음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음 문제를 경험함 성장하면서 다름을 경험함 미래를 걱정함 입양자녀에게 관대함 다양한 도움을 받음
	자녀의 적응과정	처음부터 친생자녀 같았음 형제는 형제 친구들과 잘 어울림 다양한 문제행동	차이를 모르겠음 차이를 인정함 기질과 상황의 영향 입양 때문인가? 출산자녀였다면 안 해봤을 생각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 이른 사춘기 쉽게 소진됨 형제간 사랑과 전쟁	까다로운 아이 뱃속에서 다시 낳아달라고 함 예측하기 어려움 입양사실을 알고 괴로워함 사회성이 낮아져서 힘듦 사춘기에 심각하다가 나아짐 형제관계의 다양성 다양한 문제행동

(표 Ⅴ-2-1 계속)

구분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의 또래관계		다양한 친구를 사귐/따돌림을 받음 공개 후 반응에 놀람 입양아동의 변화 교사의 영향	스스로 입양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림 집단따돌림을 경험함 입양사실이 소문 남
	개방입양	아직은 없지만 가능성은 있음	없음 아이가 원하면 찾아주고 싶음	만난 적이 있음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함
양육 지원 경험	입양단체	없음/자조모임 참여 모임/정보/교육/놀이 입양아동 발달단계별 부모교육/입양부모 대상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음/자조모임 모임/양육경험과 입양이슈 다루기/교육/캠프 입양부모교육/공개입양 이슈 교육/정보공유/성인입양인 사례	한국입양홍보회/입양기관 자조모임 모임활동/정보/상담치료/캠프/사례발표/입양이슈 논의/일기쓰기 입양아동 자조모임/입양부모모임 활성화/입양기관 사후관리
	공식지원	양육수당/의료급여/심리치료/지자체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이해 주위 사람들의 오해	양육수당/의료급여/심리치료 유용하게 사용/안받아도 상관없음/필요성에 대한 이해 일반인의 오해 몰랐음/불편함/부족함 지방 심리치료기관의 부족 공무원의 태도	양육수당/의료급여/심리치료지원/양육보조금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료급여 이용시 불편함/심리치료 지원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
	지원욕구	입양부모교육 입양아동 발달에 맞는 프로그램 양육수당 확충 심리치료지원 확대 정보제공 교육비 지원 확대	예비입양부모 스크리닝 강화 교육/사후관리/멘토링 심리치료 확충 교육비 지원 입양절차 간소화	18세까지 양육수당 치료비 지원 심리사회치료 지원 교육비 지원 확대
	특수욕구	공무원 교육 의료급여 처리방식 입양기관의 개입 입양부모 상담 입양당사자 포괄교육	입양특례법 개정 입양기관에 맡기길 바람 입양 전달체계 재구성	각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미혼모 지원 입양부모교육 심화 심리검사 추가지원
	사회적 인식	여전히 남아 있는 편견들	입양아동과 부모, 제도에 대한 사회의 편견	입양아동과 부모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심층면담 결과임.

3. 입양자녀 특성별 분석

발달단계 이외에 입양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연장아동과 장애아동을 별도의 집단으로 묶고, 이들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입양자녀의 특성에 따른 집단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연장아동

여기에서 말하는 연장아동은 출생 이후 1년이 지나 입양된 아동을 말하는데, 입양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되어 1세 이후 입양가정들(2사례)과 3세 이후 입양가정들(3사례)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하에서는 두 집단을 통합한 결과를 중심으로 영역과 하위영역별로 범주들을 제시하고 기술하였다. 또한 집단 간 비교가 필요할 경우 1세 이후 입양가정들과 3세 이후 입양가정들을 각각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면서 기술하였다.

1) 입양 과정

입양과정은 입양동기와 내부 장애물, 외부 장애물, 공식 입양절차, 딸을 입양한 이유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로 범주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입양동기

연장아동을 입양한 부모들이 입양을 진행하게 된 동기들은 매우 다양하다. 결혼 전부터 생각해 왔거나 만혼 또는 유산, 난임 등으로 출생자녀를 갖기 어렵게 된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 이후에는 배우자의 주도로 또는 양가 부모, 친척의 권유로, 애들이 없어서 자신이 평범하지 않게 느껴질 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주위에서 입양가족을 보면서, 우연한 기회에 입양기관이나 시설에서 아이를 보게 된 뒤에, 대중매체에서 입양 이야기를 보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동기들은 앞서 살펴본 연령별 집단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들 입양부모가 '연장아동'을 입양한 동기는 무엇일까? 이 연구에 참여한 입양부모들의 동기는, 첫째, 입양을 못 가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연장아

동들을 살펴보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고 예뻐 보여서, 둘째, 신생아를 키울 자신은 없고 오히려 이미 나이 든 아동을 키우는 것이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서, 셋째, 이미 아동기에 접어든 기존 자녀와 형제 사이 터울을 맞추기 위해서, 넷째, 입양기관이나 시설 종사자들의 권유 등이었다.

나) 장애물

입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심하는 데까지 이르렀더라도 실제 입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생긴다. 이를 입양부모 내부의 장애물과 외부 장애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내부 장애물에는 친생부모의 부정적인 특성이 입양자녀에게 유전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입양자녀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지 모를 어려움에 대한 걱정, 입양부모들 자신이 겪게 될 미래의 어려움에 대한 예견, 부모로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아이를 편하게 키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등이 있었다.

또한 입양부모 외부의 장애물들은 다음과 같다. 입양모의 입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장애물은 친정이나 시댁 부모들이었다. 배우자, 주로 남편의 반대를 경험한 경우도 있고, 이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입양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고, 입양과정에서 법적, 행정적, 실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도 입양을 계속 추진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장아동의 경우 친생부모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동을 돌보지는 않으면서도 동의서를 써주지 않아 하릴없이 시간만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 딸을 입양한 이유

연구참여자들 중 3세 이상의 연장아동을 입양한 부모들은 딸을 입양했는데, 그 이유로 남자아이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과 친생자녀의 성과 나이를 고려하여 더 나이 많은 여아를 입양했다는 점을 들었다. 친생자녀가 있는 경우 입양자녀의 성과 나이 등을 고려하게 됨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2) 입양 과정에 대한 경험

입양 과정에 대한 경험은 입양절차에 대한 경험과 부모교육 경험을 토대로 한 욕구로 구성되었다. 각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입양절차 경험

입양절차를 진행하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 묻고 그 답변을 구분하였다. 이 하위영역은 3세 이상 연장아동의 입양부모들만 답변하였는데, 입양기관 실무자들의 불친절한 태도, 막막한 기다림, 입양부모를 선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강화되어야 함, 법적 절차에서 입양부모를 심판하는 분위기, 입양절차가 길어져서 아이와 관계형성이 어려움, 친생부모 정보가 서류에 표시됨 등이 언급되었다. 앞의 네 가지 범주는 입양절차에서 불편했던 점들을 토로한 것이고, 아이와 관계형성이 어렵다는 점은 부모로서 자녀를 데려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였으며, 마지막 범주는 비밀보장 이슈와 관련된 것이다.

나) 부모교육 욕구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욕구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하위영역도 입양부모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받은 부모교육에서 부족하였거나 더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반영한 것이다. 입양부모들은 입양사실 공개방법과 입양이슈 대처방법, 의사소통 방법, 연장아 입양사례,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3) 사전 정보

입양 이전에 친생부모와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파악하였는지 질문하고 답변을 분석하였다. 연장아동들은 이미 아동복지체계에서 1년 이상 생활하였기 때문에 친생부모와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많은 편이었다.

가) 친생부모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는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기본 정보는 알고 있었다. 또한 더 구체적인 정보와 사연을 알게 된 경우도 있고, 방문하여 직접 만난 경우도 있었다.

나) 입양아동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기본 정보는 습득하였으며, 출생 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진료기록 등을 통한 건강

정보, 사진 등을 제공 받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시설의 정책과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입양가족의 적응

입양가족의 적응은 양육경험, 양육의 어려움, 친생자녀, 입양아동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하위영역별로 범주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양육경험

연장아동을 입양한 부모들의 양육경험은 매우 다양한 범주들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없이 바빠짐, 내 성향이 바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짐, 아이들마다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됨, 힘이 솟음, 모임에 자주 참석하게 됨, 양육에 대한 자신감, 애착관계가 형성됨 등이었다. 이러한 범주들에서 드러나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연장아동들을 양육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게 되며, 삶에 역동성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세 이상 아동집단보다 3세 이상 아동집단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양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입양아동의 특성도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입양부모들도 더 역동적인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된다.

나) 양육의 어려움

연장아동을 입양한 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의 어려움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아이에게 자아가 많이 생긴다, 아이의 에너지가 넘친다는 경험은 아이를 다루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훈육방법을 모르겠음과 남편과 양육방식이 다름은 입양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을 찾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이런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입양부모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입양부모들은 사춘기 입양 이슈를 걱정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친척들이 아이를 차별하는 이슈와 법원 개명신청이 거듭되면서 경험한 어려움도 언급되었다. 입양자녀가 친생자녀보다 나이가 많은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례도 있었다. 부모가 안볼 때 입양자녀가 친생자녀인 동생을 때리고 괴롭힌 적이 있다는 것이다.

다) 친생자녀의 적응

친생자녀의 적응에 대한 이슈로는 입양형제에 대한 애정과 부담이라는 양가감정과 나중에 결혼하면 입양하겠다고 말한다는 진술이 있었다. 연장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손위형제들이 입양아동을 예뻐하고 잘 돌봐주는 경우엔 긍정적인 반면에, 미워하게 되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라) 입양아동의 적응

입양아동의 적응에는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친척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거나 입양 전에 지내던 시설보다 아파트를 좋아하고 있다거나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부모의 개념을 잡아가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들은 동시에 이전에는 부모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고,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친척들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기에 시설생활의 영향으로 눈치를 본다거나 냉장고 문을 자주 열어본다거나 하는 버릇과 어린이집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식탐, 축농증, 퇴행 행동 등을 보이는 것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측면들이다. 앞서 제시된 연령별 집단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아동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슈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5) 공개 경험과 사회적 편견

입양사실을 공개한 경험과 그 이후 입양사실을 다룬 경험에 대해 질문하고 그 답변을 분석하였다. 이 영역은 입양사실 공개와 친생부모, 편견 등의 하위영역들로 구성되었다.

가) 입양사실 공개

흔히 연장아동을 입양한 경우, 아동이 이미 입양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다. 그러나 연장아동을 입양한 부모들도 유사한 공개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아기 때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입양동화를 들려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남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자라가면서 입양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기도 하고, 부부의 불임 이슈 때문에 공개를 망설이게 되기도

한다. 지역의 분위기가 비공개로 흐르게 되면 개별 입양부모들도 조심스러워 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연구에 참여한 연장아동의 부모들은 입양사실을 자녀에게 공개하였으며, 어린이집과 교회에도 그 사실을 공개하였다.

나) 친생부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장아동을 입양한 부모들은 친생부모에 대해 더 많은 정보들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아이의 생육사와 입양된 사연들을 듣게 된다. 입양자녀들은 친생부모 파일을 보면서 대화할 정도가 되었고, 친생부모를 원망하기도 하며, 대중매체를 통해 아이가 생모를 더 이해하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친생부모가 만나겠다고 하면 만나자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한 입양부모는 친생부모의 사연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정보의 일부를 숨겼다고 하였다.

다) 편견

연장아동의 입양부모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험한 편견도 더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신생아 입양부모들의 경험과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칭찬을 받는 것과 완전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로 말하는 것은 다른 입장처럼 보이지만 결국 입양가족을 다르게 본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다. 친생부모에 대한 편견, 입양부모에 대한 불편한 시선, 입양부모 자신의 편견, 입양가족 지원에 대한 오해, 혈연 중심 사고, 불필요한 질문들도 앞서 언급된 것들이다.

6) 사회적 지원

이 영역은 연장아동을 입양한 부모들이 받은 사회적 지원의 유형과 그 지원에 대한 경험, 앞으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욕구 등으로 구분하였다. 하위영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원유형

연장아동 입양부모들이 경험한 사회적 지원도 신생아 입양, 연령별 아동집단의 것과 다르지 않다. 양육수당, 의료급여, 심리치료지원, 사후관리, 지자체 교육비 지원 등이다. 다만 이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원래는 연장아동들이 심

리사회적으로 더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 예측하고 심리치료지원을 더 강력하게 요구한 것인데, 이제는 신생아기 입양아동들에게까지도 그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나) 지원경험

지원경험 자체도 다른 집단들과 다르지는 않다. 사회적 지원이 도움이 되며,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이 시설아동 지원과 달라서 좋다든가,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악용될 수 있어서 반대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 지원욕구

연장아동 입양부모들이 바라는 향후 지원에 대한 욕구는 부모교육, 지역별 캠프, 아동 자조모임 지원, 어린이집 순위 상향조정 등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다른 집단들과 차별화되는 이슈는 나타나지 않았다.

7) 입양 관련 모임

연장아동을 입양한 부모들이 어떤 입양 관련 단체나 모임에 소속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모임 유형은 다른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입양홍보회 지역모임, 입양기관 자조모임, 아동 또래모임, SNS와 온라인 카페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입양 관련 단체와 모임에서 입양부모들이 하는 활동은 자조모임 참여, 홈페이지 일기쓰기, 지역대표, 캠프 참여 등이었다.

8) 사회적 인식과 변화 기대

연장아동의 입양부모들이 경험한 사회적 인식과 변화에 대한 기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입양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길 바라며, 끼리끼리 문화가 없어지길 바라고, 입양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메시지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연장입양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지원이 더 강화되고, 연장아동을 위한 지원은 신청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라며, 입양특례법이 개선되고, 입양아동의 개명 절차가 간소화되기를 바란다. 실천적으로는 입양부모 교육과 멘토링, 교육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대한 욕구가 제시되었다.

나. 장애아동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부모 2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다른 집단들에 비해 사례 수가 적기 때문에 경험의 다양성을 반영하기는 어렵고, 2명 중 1명은 다른 연령집단에 속한 입양부모와 같이 면접을 진행하여 상대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양과 질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장애아동 양육경험에 대한 분석은 혼자서 개별면접을 한 사례에 초점을 두고, 다른 한 사례의 경험을 덧붙이거나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경험의 다양성보다는 깊은 이해를 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1) 입양 과정

장애아동을 입양한 과정은 입양동기, 장애물, 입양 이전, 입양 결정과정, 도움받은 경험, 공식 입양절차 등의 하위영역들로 구성되었다. 하위영역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입양동기

입양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입양하게 된 동기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 다른 사례는 연애할 때부터 입양을 계획했고,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하면서 소명을 갖게 되었는데, 이후에 잊고 살다가 한참 후에야 신과 맺은 약속을 기억해서 입양을 진행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동기로 손위형제들이 동생을 원하여 입양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나) 장애물

입양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 장애물들이 있다. 내적으로는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입양부모의 두려움이 있었고, 외적으로는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였으며, 입양아동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색안경을 끼고 볼까봐 두려웠다.

다) 입양 이전

입양 이전에 아동이 어떤 상태였는지 물어보았다. 한 사례의 답변만 들었는데,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고 하였다.

라) 입양결정과정

입양을 결정하게 된 과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교회 선배 가정이 입양을 해서 지켜 볼 수 있었고, 기왕 하는 거 일반 사회에 공개하기로 하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그러다보니 더 용기가 생겼다. 남자아이가 입양이 잘 안된다고 하여 남자아기를 입양하였다. 다른 사례는 남편의 딸에 대한 로망 때문에 딸을 입양했다고 하였다. 둘째를 입양할 때는 시어머니의 독촉을 받았고, 일부러 장애아동 입양을 신청했다. 입양기관 쪽에서는 계속 장애아동 입양을 할 의지가 있는지 시험하기도 하였다.

마) 도움 받은 경험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예뻐해 주고, 사랑해 준다. 그것만으로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바) 공식 입양절차

중심 사례의 경우 방송 때문에 한 달 만에 입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입양기관은 입양부모가 공식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입양기관에서는 혈액형과 성별만 맞춰주었고, 그 외에는 일반적인 입양절차를 진행하였다.

2) 정보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는 기본 정보와 술, 담배 등 생활습관에 대한 정보를 받았는데, 양육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는 아동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등 시설과 위탁가정에서 기록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다. 그런데 기록 정보들은 받았지만 사진은 빠져 있었다.

3) 입양 이후 생활경험

입양 이후 생활경험은 초기 적응, 가족과 형제자매의 적응, 양육경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초기 적응

연구 참여자의 자녀인 장애아동은 처음 열흘 정도 위탁모를 찾으며 입양모를 밀어냈다고 하였다. 열흘 정도 지나서야 교감이 생겼고, 이후에도 1년간은 거의 일을 못하고 아이를 돌봐야 했다고 한다. 아이를 다섯 살까지 업고 다녔으며, 지금도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이 모든 의미단위들은 장애아동이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정을 요구해 온 증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가족

가족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 아이가 심하게 울어서 함께 지내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따로 재우다보니 기존의 가족관계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아이에게 가족들의 손이 많이 갔다.

다) 형제

그럼에도 손위형제들은 장애를 가진 입양아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예뻐했다. 아이 때문에 형제들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하였다. 지금은 입양자녀들이 슬퍼할 때 손위형제들이 다독여주기도 한다.

라) 양육 경험

사춘기에 접어든 지금, 친생자녀인지 입양자녀인지, 또는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사춘기 특유의 행동들을 보이는데, 그것이 양육을 어렵게 만들고 양육경험을 복잡하게 한다.

4) 아동의 장애와 관련된 경험

입양아동의 장애와 관련된 입양부모의 경험을 하위영역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 영역은 하위영역들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처럼 차례로 기술하였다.

입양아동은 지적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공식적인 장애등급을 받지는 않았다. 남편이 장애라고 못 박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입양 전에는 알지 못했고 키우면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고 하였다. 또는 아이가 늦된 것 같아서 살짝 불안하긴 했지만 확인하지 않았는데, 유치원에 보내면서 교사를 통해 발달이 늦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장애아동을 양육한 경험으로는 내 밑바닥을 봄, 역량이 부족함,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 내 에너지와 공부, 아이에 대한 이해, 사회적 지원 등이 필요함, 아이가 예민하고 심하게 울었음, 치료놀이를 시작함, 자책을 많이 함, 알고는 있었지만 장애를 못 박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장애아동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달라짐, 아이가 부모를 성장시킴, 파양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음, 입양기관에서도 취소할지 물어봄 등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다시 정리하면 이 입양부모들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였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양육과정에서 시각이 달라지고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 어려움이 컸지만 파양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오히려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취소할지 물어보았다.

차별경험과 관련하여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사에게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 학교에서는 교사들 사이에 '떨어지는 아이'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치료 경험으로는 특수반, 놀이치료, 인지치료, 장애어린이집 등이 있었다. 3학년 때부터 특수반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고, 다른 입양부모의 권유로 놀이치료를 받았으며, 인지치료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사자가 힘들었다고 말한 경험도 있고, 1년 동안 치료를 받은 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실망한 경험도 있다.

장애와 관련된 어려움으로는 정보 부족, 치료시설 부족, 경제적 부담 등을 들 수 있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하고, 그러한 지원을 실행하는 치료시설도 부족하며, 치료비를 대다 보니 경제적 부담도 커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장애와 관련하여 도움 받는 경험으로는 다른 엄마들로부터 정보를 듣게 됨, 특수학교 교사들의 헌신,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음 등이 있었다. 즉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다른 엄마들로부터 정보를 듣고, 특수학교 교사들의 헌신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를 가진 입양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개입은 경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장애와 관련되어 치료 지원을 받은 경험으로는 정부에 연락해서 치료지원을 요청함, 한국입양홍보회를 통해 심리치료를 알게 됨, 너무 지원에 의지하나라는 생각이 듦 등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범주의 경우, 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직접 연락해서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입양홍보회를 통해 심리치료를 알고 이용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다보니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여하튼 이러한 치료개입을 통해 아동에게는 많은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경험되고 있다.

장애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홈스쿨링과 대안학교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각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특수학교를 다니거나 유치원을 유급해서 유치원을 오랫동안 다니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공개입양과 사회적 편견

이 연구에 참여한 장애아동의 입양부모도 공개입양을 실천했다. 이 영역은 입양 공개, 생모에 대한 생각, 편견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가) 입양 공개

연구 참여자는 입양아동에게 어릴 때부터 입양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구체적으로 해 줄 말을 연습해 왔다. 입양가족모임에 참여하면서 직접 얘기하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충격을 덜 받고, 입양사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말을 했다.

또한 시골에 살다 보니까 비밀이 없다. 그래서 입양사실도 주위에 알려졌다. 아동은 잘 모르고 넘어갔다.

나) 생모 생각

생모에 대해 궁금하지 않은지 아동에게 물어보았는데, 만나기 싫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생모에게 뇌성마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작은 아이가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큰 아이의 생모는 안 만나겠다는 편지가 있어서 뿌리찾기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편견

주위에서 입양사실을 알게 되면 편견이 담긴 다양한 말을 듣게 되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 선행을 위해 입양을 했다는 오해, 장애가 있으니까 포기하라는 식의 반응,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선, 대단하다 또는 훌륭하다는 말, 아이들에

게 던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말, 입양자녀라서 부모가 치료를 잘 안 해준다고 보는 시선, 아동의 몸에 나타난 증상을 학대로 오해하고 부모를 의심하는 일, 언론의 과장 보도 등이다. 단 두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관련해서는 이전의 다른 집단들에서 나타난 것들보다 더 다양한 의미단위들이 나타났다.

6) 사회적 지원

장애아동의 입양가족이 받고 있는 사회적 지원으로는 양육수당, 의료급여,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등이 나타났다. 제도적으로 규정된 공식적인 지원들이다.

이러한 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미단위들이 제시되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고, 입양아동에 대한 사회의 책임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양육수당의 경우 적금으로 모아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여유있게 아이를 돌볼 수 있다고도 하였다. 지원이 없으면 피폐해 질 수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지원이 넉넉하거나 풍성하다는 것은 아니다. 지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장애아동과 관련해서는 치료시설과 특수교사가 늘 부족하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

7) 입양 관련 모임

장애아동 입양가족이 참여하는 입양 관련 모임으로는 입양아동합창단과 입양기관 자조모임이 있었다. 자조모임에서는 교육과 모임참여, 캠프, 지역모임 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장애아동 관련 카페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부모모임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모임들을 통해 아이들이 입양가족모임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도 한다.

8) 사회에 대한 기대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입양부모들이 사회에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는 않지만 사회적 배려와 관심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입양에 대한 편견은 사라지길 바란다. 최근에는 입양 관련 사건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입양에 대한 편견이 강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장애인이든 아니든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입양부모의 입장에서 입양아동 양육경험을 탐색하였다.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입양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연장아동과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입양부모들과 개별면접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각 집단 내에서 사례별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집단과 연장아동, 장애아동 집단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자녀의 연령에 따라 구분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집단들의 양육경험은 입양과정 경험과 양육경험, 양육지원경험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각 영역 내에서 연령집단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양육경험 중 공개입양으로 인한 '입양 이슈 다루기'였다. 즉 영유아기에는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방법에만 초점을 두게 되지만, 아동기에는 입양자녀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고, 상실과 애도를 다루며, 뿌리찾기를 지원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침묵 상태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서 선행연구 고찰 부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을 보여준다. 먼저 입양아동의 발달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특히 인지발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입양 이슈가 구체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은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있는 입양아동들에게 특별한 입양 관련 이슈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입양청소년들이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발달과업에 당면하면서 갖게 되리라고 예측한 복잡한 내면화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입양가족은 입양에 대해 생각하는 시점부터 입양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 시점까지 다양한 공간과 시간에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들을 직면한다. 이러한 편견들은 공개입양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큰 차이가 없이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으며, 그것이 입양가족들을 향해 표출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특히 입양가족을 향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는 해외 연구보다 국내 연구에서 더 자주 언급되어 왔다. 입양 이전에 입양부모 스스로 갖고 있던 편견에서부터 시작하여 입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입양 이후에도 친인척과 지인들로부터 듣게 되는 다양한 메시지들은 2000년 전후부터 이루어진, 공개입양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그러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여기에 입양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덧붙여지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게 되었다.

셋째, 입양부모의 양육경험은 입양동기에서 입양결정까지 이어지는 1단계, 공식적인 입양절차로 구성되는 2단계, 법원 판결 이후 입양가족으로 적응해 가면서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인 3단계, 이와 병행되는 과정으로서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입양기관/단체들의 사후관리서비스를 경험하는 4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각 단계와 이슈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입양동기에서 입양결정까지 진행되는 과정이며 여기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매우 다양하다. 이 단계에서는 친생자녀가 있는 가정과 친생자녀가 없는 가정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큰 차이는 '난임'이다. 친생자녀가 없는 가정의 대부분은 자녀를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입양을 하게 되었다. 친생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결혼 이전의 입양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동기가 되며, 더 많은 자녀와 형제를 원하거나 더 행복해지기 위해, 또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입양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공식적인 입양절차인데,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있으나 이는 현행 입양특례법 개정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또한 동일한 입양절차를 거쳤어도 그것에 대한 입양부모들의 경험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입양절차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과 법원에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 법원 판결이 좋은 입양부모를 가려내는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의문 등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입양부모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언급하였으며, 가정법원의 판결 대기기간을 단축하거나, 입양절차에 필요한 서류수나 제출방식을 간소화하거나, 법원 판결 이후 지자체 신고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의 이슈들을 언급하였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입양절차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입양기관에 다시 일임하자는 제안들도 있었다.

3단계는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되는 경험들로 구성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시기와 방법,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입양 이슈 다루기가 연령집단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그밖에도 아동의 발달단계와 연령에 따라 양육의 어려움과 부담감, 친생자녀와 차이 인정/거부, 형제관계, 친구관계, 가족 외 공개, 문제행동 등이 역동적인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4단계는 입양가족에 대한 공식적 지원과 사후관리로 구성되며, 입양가정들은 여러 사후 서비스와 입양가정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가정들도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지원에 대한 입양부모들의 입장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양육수당이나 의료급여 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입양부모들도 있지만, 왜 이런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입양부모들도 많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그 수준과 범위,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제와 입양가족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후관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에 그러한 제도를 경험한 입양가족들의 인식을 파악한 초기 연구로서, 그 자체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행정절차 수준이었던 입양과정이 법적인 절차로 복잡해지면서 경험하게 된 것과 양육수당, 의료급여, 심리치료지원, 사후관리서비스 등 입양 관련 급여와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연구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다를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 연구결과 중에서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되기 이전에 아동이 생활하게 되는 보호형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입양 이전 아동에 대한 보호형태는 크게 생활시설과 가정위탁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에도 나타났고,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생활시설의 영향이 입양 이후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입양절차에 따라 입양부모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위탁가정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시설에서도 안정적이고 양질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으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단체생활에 익숙해지고, 그에 맞는 생활패턴을 갖게 되어 입양 이후 한동안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더라도 예비입양부모와 접촉빈도와 시간을 늘여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들을 입양하는 부모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입양부모교육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입양부모들에 대해서는 정규교육에 추가하여 연장아동과 장애아동 등을 양육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입양여부가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입양기관들이 예비입양부모를 위탁가정으로 지정하여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간이 불안정성을 줄 뿐만 아니라 만약의 사고에 충분히 대비하기가 어렵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제한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탁보호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거나 입양가족에 준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양육경험에서 드러난 입양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입양부모들은 언어발달과 신체발달, 문제행동, 사춘기의 반항 등 입양아동들이 드러내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양상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것이든 각각의 발달지체와 문제행동들은 입양부모를 곤란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공개입양 가족들의 경우 여기에 입양이슈들이 결합되어 더욱 복잡한 관계의 양상을 만들어간다는 점이다. 대체로 영유아기에는 입양이슈들도 드러나지 않고 양육도 대체로 수월하다고 느껴지지만, 아동기에 접어들면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입양이슈들도 빠르게 진전된다. 이 시기를 잘 지나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다시 안정 국면으로 돌아서기도 하지만, 사춘기의 정체성 이슈와 반항행동이 심화되면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입양부모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들을 정리하여 예비입양부모 정규교육과정과 입양부모 재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즉, 미리 알고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모들도 원하고 있음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리치료지원을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입양아동들의 또래관계에 대한 이슈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개입양 아동들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들이 있다. 처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개했을 때 또래들의 반응은 '놀라움' 정도의 수준이라서 미리 준비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경우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기에는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아동의 행동패턴이나 신체심리사회적인 특성이 결합될 경우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양부모가 대비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또래 아동들과 그 부모, 학교의 교직원들에게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들을 위해서 반편견 입양교육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입양부모들에게는 학교 교사들에게 미리 입양사실을 알릴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정답은 없겠지만,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입양사실이 드러날 때가 있으므로, 그럴 때 교사와 또래 아동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대처해야 할지 미리 알아두고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으로서 연장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어떤 아동이 '연장아동'이 되었다는 것은 원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양육을 받지 못했거나 위탁가정이나 생활시설에서 꽤 긴 시간 동안 양육을 받아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어떤 경우가 되었든 주된 보호제공자와 형성해야 하는 '애착관계'를 갖지 못하여, 입양가정 내에서 입양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도 입양현장에서는 연장아동들이 신생아 때 입양된 아동들에 비해 발달수준이 낮고 문제행동들을 더 많이 보이며, 입양가정에 적응하는 것도 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양상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연장입양아동과 그 입양가정을 위해서는 더 체계적인 예방과 포괄적인 개입,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연장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는 입양 이전에 관계형성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더 자주 생물심리사회적 발달수준을 측정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고, 심리치료를 넘어서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개입과 입양부모와 형제, 가족 단위의 교육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입양가족의 적응을 위해 지원되는 물질 자원과 비물질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양육수당과 의료급여와 같은 지원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사

회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고 있는 입양부모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며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받는 이유나 기준을 모르겠고,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양육수당의 금액이나 그 의미를 오해하고 입양부모에 대한 잘못된 인식(돈을 받기 위해 입양을 한다 혹은 서두른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입양을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시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어떤 이들은 입양을 아동복지서비스로 이해하고 입양부모들이 국가를 대신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이들에게 입양아동은 입양 후에도 사회적 보호 대상자이다. 이와는 달리 어떤 이들은 입양부모들이 자발적인 동기로 자녀를 원해서 입양을 한 것이고, 법적, 제도적으로 하나의 가정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출산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과 동일하게 여겨야 하고, 그렇다면 별도의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일 것이다.

면담 시 입양부모들이 위의 두 관점 중 하나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가정처럼, 어떤 측면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소수집단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입양부모들은 후자의 입장에서 입양아동의 연령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특히 청소년 입양아동의 부모들은 고등학교 의무교육 수준의 지원이나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입양부모들이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자녀를 입양하므로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연결되는 것이었다.

또한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입양부모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 하나였다. 특히 연장아동을 입양한 부모들과 아동기에 접어든 입양아동들의 부모 중 상당수가 이 서비스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심리치료가 시간제한적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과 지불 비용이 제한됨에 따라 서비스의 질도 제한될 수 있고, 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치료기관이 적은데 그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심리치료지원이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과 통합되어 있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문제다. 따라서 입양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지원비를 위탁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분리하여 지원금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 1인당 매달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현실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해 가야 할 것이다.

연장입양아동들의 경우에는 입양 직후부터 이러한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할 수 있지만, 신생아 입양의 경우에는 대체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양육의 어려움이 고조되고 입양 이슈까지 결합되는 유아기부터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일부 가정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원하지만, 일부 가정은 양육태도의 변화나 가족관계의 변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치료보다는 예방 차원의 접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입양아동과 가족이 경험할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역시 부모교육이다. 현재 부모교육은 입양기관이 예비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8시간 의무교육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수시 교육, 관련 단체나 자조모임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들로 나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교육의 유익을 느끼며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많은 입양부모들이 예비입양부모의 8시간 교육으로는 부족함을 느꼈고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을 원했다.

뿐만 아니라 입양부모 및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의 유익과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특히 입양부모 멘토링의 경우 새로 입양한 부모들에게는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고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멘토링은 입양아동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서비스다.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발달단계에 맞춰 입양 이슈들을 다루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입양아동들이 서로 교류하며 마음을 나누고 심리사회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에서 공개입양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42]도 일반 사회구성원들의 입양에 대한 편견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가장 일반적인 인식과 편견으로는 입양아동들이 언젠가 입양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두려움, 입양부모들이 친생자녀와 입양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 입양사실을 알게 되면 입양아동들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질 것이고,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주위에 입양사실을 알리면 놀림의 대상이 되어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들은 소수에게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입양가정에서 자녀가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주변의 시선일 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편견이 해소되기만 해도 현재 어려움을

42) 입양분야에서는 공개입양을 통한 입양문화 개선을 모토로 내건 한국입양홍보회의 활동 시점을 공개입양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겪는 입양가정의 상당수는 더 잘 적응하고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공개입양과 관련된 이슈들은 지금보다 더 체계적,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공개입양에 대한 개입은 입양가족을 향해야 한다. 공개입양의 이슈들은 만 5세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직전부터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사후관리 또는 사례관리를 통해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에도 공개입양으로 인한 뿌리찾기 이슈가 지속되고 가족 외 공개 여부가 늘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입양부모 대상 교육이나 사후관리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개입양과 관련하여 발달단계별로 입양 이슈들을 다룰 수 있도록 입양아동과 가족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자녀가 어릴 때는 입양부모의 준비가 필요하고, 연령이 증가하면서는 입양아동의 준비와 대처가 더 필요하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입양아동의 친생부모 찾기에 대한 입양기관의 준비도 필요하다. 친생부모와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중 일부는 정보를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일부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다수의 입양부모들은 친생부모와 입양아동을 이해하고 입양이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입양기관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편견이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친생부모와 출생 이후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모으고, 정리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입양부모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공개입양의 이슈를 밖으로 돌리게 되면,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라는 큰 벽에 부딪히게 된다. 공개입양의 활성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한국입양홍보회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입양기관의 홍보노력,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입양가족들이 일반 사회구성원들의 편견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욱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캠페인과 미디어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미시적이고, 더 적극적인 개입전략으로서 반편견입양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편견입양교육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직원들과 공무원, 영리조직의 회사원,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아직 입양자녀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예정인 입양부모들의 경험도 다루어졌다. 입양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개인적인 자유의 영역이므로 이러한 의사와 의견도 마땅히 존중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견들이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입양사실을 공개하기로 하고 실행하고 있는 입양부모들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현재 공개입양을 지지하는 것은 한국입양홍보회를 포함하여 공개입양을 주장하고 경험한 입양부모들이 치열한 논의과정을 포함한 집단사고를 거쳐 공론화했음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험하고 논의하고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이러한 의견을 가진 입양부모들은 대부분 비밀입양을 하고 있을 텐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공개적인 논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장은 비밀입양 가정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Ⅵ.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가정에서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입양 전에는 입양대상아동으로서 어떻게 보호받고 있으며 제도 및 절차상 아동의 발달을 돕거나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입양 후에는 입양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양육경험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고려하여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양 전 아동의 보호, 입양가정 지원, 그리고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 등의 측면에서 입양아동 양육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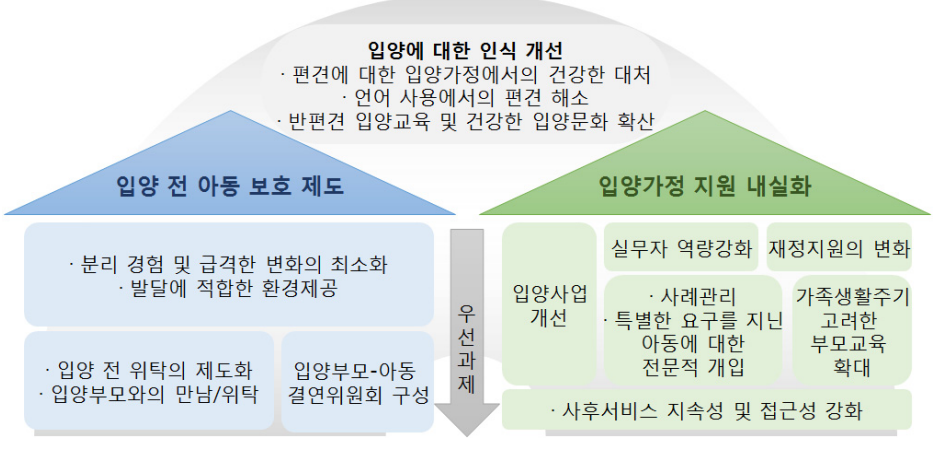

〔그림 Ⅵ-1-1〕 입양아동 양육 지원 방안

1. 입양 전 아동 보호 제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입양특례법의 시행은 아동의 행복과 이익을 중심으로 입양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의 양육임을 전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법률 제11007호) 개정이유). 다만 입양숙려제도 및 가정법원 허가제 등의

절차 도입으로 점차 신생아기 입양 비율은 낮아졌으며, 이러한 입양아동의 입양 월령 증가는 입양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Ⅱ-1-7 참조).

따라서 현재 마련된 입양제도 하에서 사회적 보호 대상인 입양대상아동이 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기 전 몇 개월 혹은 몇 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특히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입양 전 보호 형태가 마련되고 강화되어야 하겠다.

가. 분리 경험 및 급격한 변화의 최소화

입양아동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 생부모와의 강제 분리를 경험하였으며, 그 후에도 입양이 되기까지 주양육자와의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양육자와의 분리 즉, '애착 이전'을 경험한다. 입양아동에게 있어 양육자가 바뀌거나 입양부모를 만나는 사건은 주양육자 및 환경의 급격한 변화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로 입양아동에게 트라우마(trauma)가 발생하여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애정시험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한다.[43)]

현재 대부분의 입양대상아동은 입양기관의 일시보호시설에서 지내거나 위탁모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입양아동들은 입양 전에 최소 1곳에서 최대 6곳까지의 보호형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 경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입양대상아동이 되어 입양이 의뢰된 시점부터 입양되기 전까지 보호 형태가 변동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위탁모 및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즉, 담당 위탁모 혹은 보육사가 정해지면 그가 아동이 입양부모를 만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0~1세에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의 경우(연장입양아동), 자주 위탁모가 바뀌거나 시설을 옮겨 다니는 경험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념하여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발달에 적합한 환경 제공

입양과 관련된 제도나 시설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43) 2016년 11월 2일에 실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됨.

있는 바람직한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함이다. 또한 입양은 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방법 중 원가정 보호 다음으로 최적의 형태라고 할 만큼 아동에게는 가정에서의 보호가 긍정적이라는 이념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입양 이전에도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환경은 무엇이며,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는 늘 고민되어야 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1) 연령별 발달 돕는 프로그램 제공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입양대상아동은 대부분 신생아이었으므로 입양대상아동 보호는 단순 보호 위주의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었고, 위탁모 가정에서도, 시설에서도 특별한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하지만 아동의 입양 연령이 늦춰지는 현 상황에서 입양 전 보호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본 연구에서 일정 월령이 지난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 음악, 책 읽기, 감각 자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는 있는 시설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양육시설별로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한다.

아동이 어떠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질적으로 보장된 수준의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월령이 증가할 때 해당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극을 받고 과업을 수행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입양기관이나 시설 간의 정보 교환과 중앙입양원의 프로그램 개발 사업으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제공되기를 제안한다.

2) 입양대상아동 발달을 고려한 보호시설에서의 양육의 질 향상

현재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르면,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보육사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0~2세까지 아동 2명당 1명, 3~6세까지 아동 5명당 1명, 그리고 7세 이상은 아동 7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시보호시설에 있는 입양대상아동의 대다수는 0세 혹은 1세 전후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보육사와 아동의 비율이 1:2 이하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시보호시설의 보육사들이 근속년수가 길다하여도 매일 24시간 동안 쉼 없이 돌봄을 지속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개월 수 증가에 따라 보육사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동 중심 체계로 보육사를 배정한다면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될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일시보호시설도 다른 사회복지법인의 시설과 동일한 평가 틀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향후 평가를 지속한다면 입양아동 보호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항목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하겠다.

다. 입양 전 위탁의 제도화

「아동복지법」 상의 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제3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Ⅲ장에서도 제시하였듯이 현재는 입양 전 가정위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즉, 입양 전 위탁은 이러한 「아동복지법」 상의 가정위탁과 구분되기에 법적규정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위탁모의 관리나 입양 전 위탁의 실시는 입양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보호환경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입양 전 위탁 실태 파악 후 이를 제도화하여 위탁모 선정 기준 및 윤리강령 마련, 교육이나 슈퍼비전 실시 등의 위탁모(가정) 관리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아동발달 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까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어야 하겠다. 이것은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사업의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라. 입양 전 입양부모와의 만남 및 위탁

앞서 다항에서의 입양 전 위탁은 예비입양부모가 아닌 입양기관의 봉사자들에 의한 위탁을 말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 입양제도 하에서는 법원 허가 이전인 입양절차 진행 중에 예비입양부모가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2012년 이후 입양부모에 의한 입양 전 위탁 기간이 2011년 이전보다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의 애착 형성 및 안정된 보호를 위해서는 입양 전 예비입양가정으로의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만약 시설에 있던 아동이라면 시설보다는 1:1 혹은 다수로부터의 양육이 가능한 가정보호가 더 바람직하며, 좀 더 이른 나이에 주양육자를 만난다면 분리 경험으로부터의 상처를 줄일 수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미리 입양자녀 양육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양 전 예비입양가정 위탁을 확대한다면, 위탁 이전부터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부모됨의 준비과정을 강화하여야 하고, 위탁 기간 동안의 관리·감독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예비입양부모가 위탁을 원한다면 (위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결연 이전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위탁기간 동안은 입양기관[44]과 예비입양부모가 공동 책임을 가지고 아동을 보호하며, 입양기관이 주기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아동의 발달 사항 및 가정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입양부모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입양휴가제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해당 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위탁 기간 중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과 함께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가정위탁 상태에서는 이것이 어렵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입양여부를 결정한 이후 판결이 날 때까지 아동을 위탁하는 기간을 육아휴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부는 2016년 10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전종선, 2016.10.20.). 위탁 기간을 부모-자녀가 되는 준비기간으로 본다면 임신 기간과 유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며, 위탁은 직접 아동을 돌보는 기간이므로 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직접 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0세의 경우 낯가림이 발생하기 이전에 위탁을 통해 예비입양부모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연장아인 경우에는 위탁이나 입양으로 인한 이동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일 수 있다. 따라서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담당자가 전문가로서 판단하여 결연 이후 충분한 만남 혹은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연장아가 낯선 환경으로의 이동으로 혼란을 느끼고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부모-아동 결연 이후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아동이 가정을 방문하는 등의 형태로 적응 시간을 보낸 후에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입양실무 규정에 포함되기를 제안한다.

---

44) Ⅲ장에서 논의한 개정 법률안에 따라 '입양결연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입양결연위원회에게도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마. 입양부모-아동 결연위원회

현재 입양기관에서 입양부모와 아동간의 매칭 즉, 결연을 담당하고 있다. 결연은 입양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맺어주는 중요한 과정으로 담당자의 전문가로서의 견해와 더불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친생부모, 입양대상아동, 입양부모 삼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상담과 관찰 등을 통해 해당 아동의 개별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입양기관의 실무자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발의되었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467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권익을 고려하여 아동과 양부모가 결연될 수 있도록 입양결연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1조). 앞으로 입양결연위원회가 발족된다면 입양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위원회의 실제 운영 주체, 구성원의 자격, 위원회 소집 방법 등에 따라 입양결연 과정은 원활히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입양대상아동이 언제 얼마나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으며, 2015년 한 해 총 1,057명(국내 683명, 국외 374명)이 입양되었는데(보건복지부, 2016a) 이 정도 규모라면 결연위원회의 업무량은 결코 적지 않다. 또한 입양 업무뿐만 아니라 입양아동과 관련된 여러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보도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위원회 결성의 이유가 아동 중심의 입양을 실천하기 위함임을 생각한다면, 입양대상아동에 대해서 누가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그 아동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한편 입양부모-아동 결연을 위해 친생부모를 상담하고 아동을 관찰하는 입양기관 실무자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모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입양실무매뉴얼(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6)을 통해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입양아동 배경보고서 등의 서식이 배포되어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친생부모의 상황에 따라, 혹은 실무자에 따라 수집·기록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된 서식을 사용하여 양질의 그리고 많은 정보를 문서화하는 작업이 좀 더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결연 때뿐만 아니라 입양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입양사실을 자녀에게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리고 향후 입양아동이 성장하여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2. 입양가정 지원 제도

요보호아동이었던 아동이 입양을 통해 가정 보호가 이루어졌다면 그 아동은 그리고 그 가정은 여전히 사회적 보호 대상인지, 아니면 비입양가정과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로 말할 수 없다. 우리사회의 인식에도, 입양부모의 생각과 태도에도, 그리고 제도에서도 혼재되어 있다. 하지만 입양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이미 자녀양육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양육수당, 무상보육·교육 등). 따라서 단순히 요보호아동이었던 아동을 자녀로 기르고 있다는 이유로(입양여부에 의해) 어느 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의 필요성에서 밝혔듯이 입양가정 혹은 아동이 겪는 상대적인 어려움이나 고유한 이슈에 의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입양가정 지원 정책에는 국내입양 활성화라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그 예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최근 양육수당은 매년 그 대상 연령이 1년씩 확대되어 왔다('12년 만12세 미만 → '16년 만16세 미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5.8). 그러므로 앞으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가정을 격려하는 차원의 지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구분 혹은 연계되어 입양가정 지원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원 정책의 테두리와 입양가정에서의 요구,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먼저 입양사업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아동 및 가정지원 서비스들이 입양가정만을 위한 제도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입양가정 지원이 좋은 사례가 되어서 비입양가정에 까지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 입양사업의 개선

1) 입양수수료에서 입양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입양기관에서는 입양사업에 대한 다른 비용 지원 없이 아동 1명이 입양될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로 27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45] 이는 원래 입양부모가 아동

이 입양되기 이전의 보호 비용에 대해 지불하던 비용을 지금은 정부가 부모를 대신하여 입양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비용이다. 하지만 이 수수료 제도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지만, 일부 부모들은 아동을 사고파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였고, 일반인들은 입양기관 혹은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도 한다.

또한 해당 입양수수료는 입양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로부터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경을 하지 않는 이상 다음 연도까지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양수수료는 실제 입양사업의 운영비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입양사업의 질이나 인력의 처우에 있어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제도상으로 입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이므로 타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지원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입양은 국가 책임의 사회적 보호 대상을 가정으로 보호 조치하는 방법이며, 「입양특례법」에는 입양기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만약 향후 입양대상아동의 수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입양대상아동이 소수라도 존재한다면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 지속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수수료 지원 방식은 운영비 지원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안한 입양 전 아동 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입양 후 입양가정 지원 업무를 위해서도, 그리고 입양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단순한 알선 수수료 형태가 아닌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제도 개선은 입양기관과 실무자들에게도 입양사업에 대한 권한과 동시에 강한 책임감을 갖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2) 입양서비스 체계의 일원화

2016년도 현재 4대 입양기관이라고 부르는 입양전문기관들과 이들 중 3개 기관의 지역사무소(지부), 그리고 시도에서 허가를 받은 입양지정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입양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입양기관에서 맡고 있는 입양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그리고 입양대상아동의 감소 현황을 고려할 때 기관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한 재정립을 논의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입양부모들도 이미 오랜 실무경험을 가진 입양기관과 실무자들을 신뢰하고 있으면

45) 보건복지부 허가 기관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은 100만원 임(표 Ⅲ-1-5 참조).

서도 좀 더 체계적인 서비스를 원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체계처럼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서비스체계를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즉, 광역자치단체별로 또는 인구규모에 따라 지역별로 몇 개의 정해진 입양기관이 입양사업의 총괄을 담당하고 입양기관 간에 서로 통합·연계하는 방식이다. 혹은 입양기관에서 입양 알선뿐만 아니라 입양대상아동의 보호., 입양아동 심리치료지원, 발달단계별 부모교육, 전문상담, 지역별 캠프, 행사 등의 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을 모두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분담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나. 재정적 지원의 장기적인 방향

현재는 모든 입양가정들은 동일하게 양육수당과 의료급여의 형태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이러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입양부모의 견해나 만족도는 서로 다르며, 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의료급여에 대한 만족이 좀 더 높지만 각각에 대한 개선 요구 역시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은 이러한 지원을 입양가정에 대한 격려와 관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직은 국내입양가정이 소수이며 입양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국내입양의 활성화나 국내입양가정을 지지하는 목적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이 계속 유지될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동 및 가구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축하금 형태의 재정 지원으로의 변화를 제안한다.

육아지원제도가 잘 마련되었다고 평가받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육아지원에 있어 가구 소득이나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 정책을 발견할 수 있다. 입양가정 중에서도 입양 당시에는 소득 수준이 낮지 않았다 해도 그 형편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입양아동은 성장하면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신체·심리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입양가정의 경우 부모-자녀 간의 연령차가 큰 편이어서 자녀가 청소년이나 대학생이 되면 부모는 직업에서 은퇴할 나이가 되므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또한 장애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다른 지원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듯 개별 아동과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편적 지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지원이 정말 필요한 대상이 수혜를 입을 수 있으며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이것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 격려' 차원에서 '입양아동(가정) 양육 지원'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한편으로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입양 축하금을 모든 입양아동에게 지원하거나, 양육수당을 아동의 학교 입학 시 축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한다면 지원의 근거뿐만 아니라 입양가정을 격려하는 목적이 분명해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체계가 비입양가정과 함께 설계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보내는 엄마상자는 입양가정에도 동일하게 지급되며(나유리·Lamblin, 2014: 278), 프랑스는 출산수당과 더불어 입양수당 제도가 있다(이혜원, 2013: 93).

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모교육 구성 및 확대

현재 예비입양부모를 대상으로 8시간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간과 내용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실제 양육에 있어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을 기대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전문가들도 부모들이 입양아동에 대한 특성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고 입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부모교육 시기에 있어서는 입양 이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입양 이후에도 부모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첫째, 입양 전에는 현재의 8시간 교육에 입양대상아동이나 예비입양부모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내용을 추가로 교육받도록 하는 예비입양부모교육 강화방안을 제안한다. 추가 교육의 내용은 연장아(입양대상아동의 연령대), 장애아, 난임·불임 가정, 친생자녀 유무 등으로 구분하며, 8시간 의무교육이 결연 이전에 실시된다면, 결연 이후 법원 허가까지의 기간을 활용하여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입양부모교육을 통해 입양이 입양부모 자신과 아동에게 함축하는 의미를 통찰하는 기회를 가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변미희 외, 2015a) 최소 두 차례에 걸친 교육은 입양부모에게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가 교육을 위해 변미희 외(2015a)에서 개발한 입양부모교육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시간과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 교육 실시 방법 다양화 등 부모교육에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둘째, 입양 후 부모교육 역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부모들은 입양 후 실제 양육을 하면서 부모교육이나 상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현재 국내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기간은 1년이지만, 그 이후 자녀가 유아기, 아동기를 거치면서 입양공개, 친생부모 정보 등 입양가정만의 이슈를 다루게 되는 등 입양부모로서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아진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에서 영아기에는 입양사실 공개 시기 및 방법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으나, 이후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자녀학습 및 학교생활지도 방법, 입양관련 이슈나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만약 입양 후 부모교육을 입양 전처럼 의무화한다면, 입양아동의 특성이나 공개와 같은 공통 주제에 입양아동 및 부모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내용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은 입양 전에는 기본 교육, 입양 후에는 개별 가정 특성에 맞는 선택 교육을 참여하는 방안도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입양가정 아버지들의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긴 편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처럼 입양가정에서 아버지들의 자녀양육 참여율이나 영향력을 고려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나 아버지로서의 부모 역할을 다룬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교육의 효과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라.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지속성 및 접근성 강화

입양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후서비스 사업이 중앙입양원을 통한 공모로 진행되거나 입양기관 및 관련 단체들에서 자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공모사업의 경우 1년 단위로 수행되고 있어서 프로그램이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기에 프로그램에 대한 단기적 홍보만 있어왔고, 입양부모가 해당 입양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의 회원이거나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지 잘 모르거나 지방의 경우 원거리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용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정기적으로 개설되고 각 지역에서도 접할 수 있는 등의 지속성 및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 즉,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의 연간 일정을 제공하는 사이트나 SNS가 활성화되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다양화 및 주기적·지속적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지역사회자원 이용

입양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육아종합지원센터 혹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1차적으로는 현재 사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들의 인력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시군구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후서비스프로그램 수행기관이나 단체에서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이와 더불어 3대 입양기관의 지역사무소(지부)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가능하다면 입양홍보회와 같은 자조모임 단체의 지역 사무실이 마련되어 활용되어도 좋겠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입양여부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인지 및 활용 정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들은 입양기관의 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수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입양이슈 외의 다른 정보나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접근성 차원에서 이 장소를 활용하다보면 이들 센터의 다른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 또한 높아질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2차적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혹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보급하는 것이다. 입양가정은 그들만의 독특한 고민과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일반가정에서 궁금해 하는 정보 또한 필요로 하고, 일반가정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들을 동일하게 경험한다. 따라서 센터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에 입양 이슈를 접목하여 입양가정에 정보나 상담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위한 주요 정보들을 담은 안내서를 보급하기를 제안한다. 이 안내서에는 입양공개 시기 및 방법, 입양아동의 특성 등을 비롯하여 입양전문기관과의 연계정보 등이 담길 수 있다.

또한 입양가정이 육아종합지원센터 혹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발히 이용하게 된다면, 입양가정이 특별하다는 인식에서 보편적인 지원 대상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입양가정 대상 사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입양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기를 제안한다. 전문가들은 공개입양이 시작된 지 15년 남짓 된 지금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게 일어나는 시기라고 말한다.[46] 또한 정보의 홍수라고 말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거주 지역이나 가정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 고민하는 입양가정이 있다. 따라서 중앙입양원은 전문가들을 통해 입양부모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및 활동을 담은 대표적인 프로그램 패키지를 개발·구성하여 장기적으로 각 지역에서 순회방식으로 여러 차례 실시한다면 많은 입양가정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입양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아버지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입양형제자매를 둔 비입양형제자매를 위한 상담 혹은 프로그램 등 그 대상과 내용을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입양가정을 위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

3)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오프라인 교육과 더불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보나 강의를 제공한다면 거주 지역이나 입양공개여부에 상관없이 접근이 가능하므로 유용할 것이다. 또한 내용은 생애주기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때에 해당 내용을 얻을 수 있어야 의무교육이 아니어도 부모들이 관심도가 높아지고 실제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동 연령별로 필요한 내용으로는 유아기에는 공개입양을 시작할 나이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 보육·교육기관에서 입양이슈 다루기, 아동기 초기에는 친생부모에 대한 호기심, 학교에서 입양이슈 다루는 것에 대한 준비가 포함될 수 있다. 중학생이 될 때에는 사춘기 행동에 대한 대처, 그리고 청소년기 말부터는 법적으로 보장된 친생부모 찾기를 위한 준비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다.

Ⅲ장에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주제의 부모교육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보았다. 우리나라에는 중앙입양원이 설립되어 있으므로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 내용 개발과 보급, 각 기관이나 단체에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서 온라인으

46) 2016년 11월 4일 간담회에서 논의됨.

로 부모에게 제공하는 등의 일이 향후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전문적 개입

1) 연장입양아동

모든 입양 아동은 상실을 경험하면서 입양된다는 것을 입양부모 및 사회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연장입양아동은 분리 경험 횟수가 많거나, 생부모와 살다가 신생아 때가 아닌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입양이 의뢰되는 등 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요인을 가지고 입양이 된다. 정서·사회성 발달에 있어 문제를 갖기도 한다. 또한 입양 이전의 생활양식이나 태도로 입양부모가 알지 못하거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기도 하여 입양부모 또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이유로 연장입양아동은 입양 전의 경험만큼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연장입양아동의 적응을 위해 입양 후 초기 개입이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부모교육 내용의 차별화 및 추가교육을 통해 연장입양아동의 부모에게 연장입양아동의 특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양 초기 2~3년 간 입양기관 실무자가 직접 혹은 상담 전문가와 연계하여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특히 연장아를 양육하는 경우 두드러졌다. 따라서 현재 마련되어 있는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한다면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실제 치료가 필요한 아동 및 연장입양아동이 우선 적용되는 방안을 제안한다. 심리치료는 시간제한적 서비스가 아니므로 V장의 소결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지원 정도를 동일한 횟수나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각 아동의 필요한 치료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한편 입양특례법 이후 다수의 아이들이 1세 전후에 입양되므로 연장아동의 기준은 1세가 아닌 전문가 간의 합의를 통해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한 연령으로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0세, 1~2세, 3세 이상 등의 연령대로 구분하여 입양아동의 필요에 접근하는 것도 아동의 연령에 따른 개인차를 반영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장애아동

본 연구에서 면담을 통해 입양장애아동과 그들의 가정은 입양에 대한 시선과 장애에 대한 시선으로 인해 두 가지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고 있으며, 장애와 관련하여 정보 부족, 치료시설 부족,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애입양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위해서는 입양아동 지원의 관점에서 현재처럼 비장애입양아동과는 구별된 양육보조금 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장애아동 지원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장애유아에 대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은 호주나 미국 등에서 매우 강조되어 장애영유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중심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최석범, 2016.11.16). 장애영유아의 발달특성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치료와 교육, 가족지원 등 여러 전문영역의 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하며, 가족중심의 조기개입서비스는 일상 활동을 통해 장애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최석범, 2016.11.16).

바. 중재가 필요한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대부분의 일반가정이 그러하듯 대부분의 입양가정 또한 가정 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평소 친밀하고 유연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지지원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수이더라도 일부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가정이 있으며, 특히 입양이라는 이유로 가족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증대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재가 필요한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는 필요하다.

지금까지 입양기관에서는 입양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관리를 해온 측면도 있다. 하지만 외부의 중재가 필요한 입양가정이라면, 현재의 비공식적인 관리가 아닌 공식적인 사례관리 통로를 통해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체코의 경우 입양결연기관이 지속적으로 입양 후 적응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실시한다고 한다.[47] 따라서 전문가의 개입과 중재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입양가정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며, 사례관

47) 2016년 11월, 전문가 검토 의견에 따름.

리를 맡을 수 있는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물론 오랜 경력을 가진 입양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의 체계가 아닌 입양기관의 역할과 지원방식을 개선한 뒤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변미희 외(2014)에서는 입양가족 사례관리 거점기관을 통한 지원체계 대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아동의 발달 지원을 위해 주요 발달지표들을 발달단계별로 측정하여 위험군을 발견하고, 사례관리 체계를 통해 모니터링하면서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시기는 입양확정을 위한 법원 판결 직후, 언어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만3세, 심리적 뿌리 찾기가 시작되는 만5세, 학령기 초기인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그 이후 사춘기가 시작될 즈음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언어, 인지, 정서·사회성 발달의 지체나 행동문제, 그리고 입양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발견되면,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사회적 치료와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나 상담, 가족치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례관리가 필요할 만큼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라면 파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낳은 자녀와 부모-자녀관계를 끊는 것이 힘들 듯 입양자녀와의 관계 또한 쉽게 끊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따라서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파양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찾도록 하고,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08년 시행된 이혼숙려제도의 경우 자녀 연령이나 유무에 따라 1~3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 이와 유사하게 법원에 파양을 신청한 경우 숙려기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법원에서 전문 상담인과 연결하여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사. 실무자의 입양실무역량 강화

1) 사후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 강화

입양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입양에 대한 이해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 양육이나 발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담 실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현장에서 직접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자신 이외에도 사후서비스를 담당할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공개입양 1세대 입양자녀들이 현

재 청소년기가 되었으므로 입양가정의 사후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지속될 것이고 점차 증가할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에게 달렸다는 말을 하듯이 입양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전문가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한다. 아직은 입양 관련 전문가가 소수에 불과하므로 전문가 양성 혹은 현재의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는 시급하다. 하지만 전문가 양성 체계 마련과 동시에 서비스 체계가 확립되어서(앞에서 제안한대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실시 등) 전문가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중앙입양원에서 전국 보급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와 더불어 전문가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실무자의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기를 뿐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의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다.

또한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에서 시기적절한 입양가정 이슈들이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고 입양전문가로서의 윤리 측면이 강화된다면, 현재의 교육제도를 활용한 실무자들의 입양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2) 관련 영역 실무자들의 입양실무역량 강화

본 연구의 조사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입양업무를 처음 접하였거나 입양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입양절차 진행 시 혼란이 생기기도 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자녀를 위한 교육, 상담 혹은 심리치료 기관을 찾아가도 입양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만나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입양가정에서 입양절차 진행을 위해, 자녀양육을 위해 혹은 심리치료 지원과 같은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관련기관 즉, 행정기관, 교육기관, 보건기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종사하는 관련 영역의 전문가들이 입양가정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짧은 교육이나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실제 입양사업이나 사후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 입양업무를 맡게 된 공무원 또는 입양가정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실무자들까지 입양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3.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에서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 입양을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양육에 있어서도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입양에 대한 편견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친생부모, 입양아동 그리고 입양부모에 대한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친생부모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 입양대상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부)에게서 태어났으므로 미혼모(부)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그대로 입양가정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입양 초기나 입양아동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때 나타난다. 둘째, 입양아동에 대한 편견은 '사춘기가 되면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입양사실을 알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크고 나면 친생부모를 찾아갈 것이다', '키워준 부모에게 잘 해야 한다' 등이 있다. 셋째, 입양부모에 대한 편견은 '훌륭한/대단한/특별한 사람이다', '좋은 일을 한다', '낳은 자식처럼 키우지 못할 것이다' 등이다. 특히 입양부모에 대한 편견은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으로 연결되고 위의 두 편견보다는 지속되면서 이중 잣대를 갖기 때문에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진다.

입양에 대한 이미지 개선은 단기간에 불가능하다. 때문에 단기적이고 작은 부분들의 개선만을 추진하게 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동시에 노력한다면 변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5~20년 전만 해도 대부분 비밀입양이었지만 공개입양에 대한 홍보와 교육으로 지금은 공개입양 가정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제도의 변화, 교육, 미디어 등을 통해 점차 인식은 변화한다. 따라서 입양아동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든지 편견으로 인한 오해나 불이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지원제도나 육아정책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다면 단기·장기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가. 편견에 대한 입양가정에서의 건강한 대처

입양가정에 대한 여러 편견이 있지만 만약 입양가정이 건강하게 기능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편견의 내용이 실제 사실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외부의 시선을 바꾸기 이전에 입양가정이 먼저 건강하게 기능한다면 편견을 극복하는 방안이 되며, 입양가정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어느 사회든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일반가정과 구분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입양가정들이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중요하겠다.

우리사회가 만든 입양에 대한 이미지는 사회(타인)뿐만 아니라 입양부모 스스로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입양부모 자신의 편견을 없애는 과정이 가정 내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입양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입양에 대한 무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많은 입양부모들은 입양을 하면 자녀를 갖게 되므로 행복한 시간들만 이어질 것이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녀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비입양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자녀에 대한 기대는 양육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상담은 꼭 필요하며 지금보다 접근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입양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갖도록 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대화기술 등의 능력, 놀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을 때 대처방법을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것은 부모교육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교육 자료에 구체적인 상호작용 기술이나 사회관계에서의 대처 방안이 담겨야 한다. 현재는 자조모임을 통해 이러한 정보가 공유되고 서로를 지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조모임도 현재처럼 유지되면서 예비입양부모교육이나 입양 후 공식적인 통로(예: 앞에서 제안한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공식 사이트)를 통해 다루어져서 자조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입양가정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 언어 사용에서의 편견 해소

언어에는 사고가 담겨 있다. 또한 언어 사용으로 인해 사고의 내용과 범위가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몇 년 전만 하여도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기르고 있을 때 '편부모'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한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아동보호시설에 대해 '고아원'보다는 '보육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예는 단순히 용어의 변화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입양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몇 가지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아동을 낳아준 사람을 '친생부모', 입양아동

을 현재 기르고 있는 사람을 '양친'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도 친생부모와 입양부모라고 한다. 하지만 동법에 의해 입양을 하게 되면 친권은 입양부모가 갖게 되므로, 낳아준 이는 '생부모'로 부르기를 제안한다.

또한 아동의 입장에서 누구를 부모로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문서상에서 특별히 입양여부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만 '입양부모', '생부모' 및 '입양자녀'라고 칭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현재의 부모에게 그냥 '부모' 그리고 '자녀'라고 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둘째, 예비입양부모가 아동을 처음 만날 때를 '선본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물론 지금까지 써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 없이 사용할 수 있겠으나 해당 단어의 의미를 사전[48]에서 찾아보면 "1. 인물의 좋고 나쁨, 마땅함과 마땅하지 않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나서 살펴보다. 주로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쓰는 말이나, 며느리·사위·일꾼 따위를 가려 뽑을 때에도 쓴다. 2. 물건의 좋고 나쁨을 가려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입양부모들은 대부분 입양기관에서 처음 정해준 아동을 자녀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선본다'의 단어에는 자녀를 고르기 위해 만나서 살펴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입양에서 아동중심이 아닌 성인 중심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말의 사용은 지양되어야 하겠다.

셋째, 입양아동이 생부모나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자 할 때,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대해 '뿌리 찾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전[48]에 따르면 뿌리는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는 근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인다. 하지만 입양아동들에게 현재 자신의 가족들에게서는 뿌리가 없으며 자신의 근본은 찾아야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어른들이 의도하지 않게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칫 입양아동들에게 더욱 혼란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보다 적절한 언어의 사용에 대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넷째, 입양이라는 단어에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사회의 잘못된 시선까지 모두 담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입양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입양가정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의미에서 입양을 대신할 이름을 공모할 것을 제안한다. 입양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와 중앙입양원이 함께 공모전을 개최하여 전 국민에게 입양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

4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다. 반편견 입양교육 및 건강한 입양문화 확산

그동안 남녀평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할 때면 교육 현장에서 내용과 자료들이 변화되어 왔으며, 미디어에서의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입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 대중매체에서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학교 교육의 측면에서 입양홍보회에서 개발한 반편견 입양교육 자료(한국입양홍보회·보건복지부, n.d.)를 활용하되 구체적인 입양에 대한 편견이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특강이나 방과후 과정의 형태로 실시되거나, 교과서 등의 일반 교육 자료에서 입양가정도 출산한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처럼 평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입양아동이 학교생활에서 담임교사나 또래가 가진 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사 교육(연수)이나 위에서 언급한 학생 대상 교육 내용 및 자료의 보급을 통해 학교에서 먼저 입양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

입양 관련 선행연구자들은 그동안 입양 관련 연구과제 수행 시 전국 작가협회에 협조를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입양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라마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이야기한다.[49] 사회 인식 형성에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즉, 대중매체에서 입양을 자극적인 소재로만 사용하거나 입양가정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다루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5월 입양의 날이 되면 기자들이 앞 다투어 입양에 관한 기사를 발표하지만 입양의 날이 지나면 관련 기사들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학대 등 사건이 발생하면 자극적인 용어로 입양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아닌, 일부 기관의 주장이 아닌, 정부와 함께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단체 등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지속적인 홍보에 힘쓴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통해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므로 자조모임뿐만 아니라 중앙입양원과 같은 공식기관에서 SNS를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그 예로 중앙입양원이 주최한 2016 입양문화 홍보콘텐츠 공모전(중앙입양원, 2016.10.7.)이 일회성 혹은 단순 입양홍보에만 그치지 않고 정기적

---

49) 2016년 11월, 전문가 검토 의견에 따름.

으로 실시되며, 많은 국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홍보를 확대하고, 입양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다.

다만, 대중매체나 SNS를 통해 자칫 입양이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일로만 부각되거나 반대로 어두운 사건의 발생지로만 부각되어 전파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강은숙(2000).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담당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제 2 주제, 입양후 입양가정에 대한 서비스: 실제 입양 사례 <사례발표>. 한국아동복지학회 워크숍 자료집, 39-41.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2012. 9).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권미경·최효미·최지은·김건희(2015).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Ⅰ): 장애 영유아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권지성·변미희·안재진·최운선(2008). 입양아동이 경험한 입양됨의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23, 71-102.

권지성·정익중·민성혜·신혜원(2012). 연장입양아동이 경험한 입양됨의 의미. 사회복지연구, 43(3), 39-66.

권지성·안재진·최운선(2013).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입양가정 내 형제관계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서울: 중앙입양원.

김가득·유정숙(2010). 장애아동 입양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1), 83-107.

김상용(200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선방향. 가족법연구, 23(2), 217-256.

김상용(2012. 7. 23). 개정 「입양특례법」의 특징.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serial=2099에서 2016년 5월 23일 인출.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16. 10).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김유경·변미희·임성은(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임성은(2011). 해외입양 줄이기 종합대책 연구. 서울: 중앙입양원.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

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김진선(2007). 입양장애아동 가정의 사회적지지 욕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나유리·Lamblin, M. (2014). 핀란드 슬로우 라이프. 서울: 미래의 창.

나채준(2013). 영국의 입양 법제 및 시사점. 입양 관련 외국 입법례 및 법제화 검토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노충래(2011). 헤이그 입양협약 가입 관련 아동복지의 과제. 보건복지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전문가 토론회 발표자료, 2011년 11월 18일.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독일 통계청 보도자료(2013.7.26). Zahl der Adop-tio-nen im Jahr 2012 wie-der rück-läu-fig.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13/07/PD13_250_225.html에서 2016년 6월 16일 인출.

박광동(2013). 입양 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박미정(2009). 공개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입양모의 양육행동과 입양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미정(2014). 국내입양 현황과 개선방안. 월간 복지동향, 192, 22-27.

박미정·이미선·고혜연·유선정(2011). 입양사후서비스 체계화 방안 연구. 서울: 중앙입양원.

박영수·김향은·정애리(2014). 위기입양인을 위한 정신심리치료 접근방안. 서울: 중앙입양원.

박현정·김순규(2012). 장애아동 가정보호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6, 7-27.

배태순(2013). 입양 성공의 요건. 창원: 경남대학교출판부.

법원행정처(2013). 사법연감(2012. 1 ~ 2012. 12).

법원행정처(2014). 사법연감(2013. 1 ~ 2013. 12).

법원행정처(2015). 사법연감(2014. 1 ~ 2014. 12).

법원행정처(2016). 사법연감(2015. 1 ~ 2015. 12).

변미희·권지성·안재진·최운선(2006). 입양아동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2006년 1차년도 결과보고서. 한국입양홍보회.

변미희·안재진·강지현(2015a).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 개발 연구. 서울: 중앙입양원.

변미희·안재진·권지성·최운선(2014).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발달지체 및 임상범주 입양아동에 대한 사례연구. 서울: 중앙입양원.

변미희·안재진·신혜령(2015b). 변화하는 입양환경에서 입양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홀트아동복지회·한국아동복지학회.

변미희·최운선·안재진·권지성(2012).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2012년 4차 양적 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중앙입양원.

보건복지부(2008~2016a). 2007~2015 각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SEARCHKEY=TITLE&SEARCHVALUE=입양현황&page=1에서 2016년 3월 9일 인출, 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list.jsp?bcode=06_1에서 2016년 5월 30일 인출.

보건복지부(2016b). 2016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Ⅰ].

보건복지부(2016c).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연도별).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에서 2016년 5월 30일 인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11. 18).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전문가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3. 9). 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5. 24).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5. 8).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5. 7). 국외입양인(12명)의 친생부모 상봉에 기여한 김길자 수녀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5. 19). 원치 않는 개인정보 노출 막아주는 새로운

신분증명서 도입, 인우보증제 폐지로 허위 출생신고 방지 및 불법 입양 근절.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2016). 2016 입양실무매뉴얼.

석광현(2011).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과 개정 입양특례법, 보건복지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전문가 토론회 발표자료. 2011년 11월 18일.

석광현·이병화(2010).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연구. 법무부.

손제민(2016. 9. 7).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출신 1만8000명, 시민권 없어 추방 대상.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072154005&code=970100에서 2016년 11월 22일 인출.

신동현(2015). 독일에서의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법제. 비교사법 22(4), 1865-1890.

신혜원·정익중·민성혜·권지성(2011). 연장입양아 가족의 부모-자녀 애착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2), 85-95.

안재진 역(2004). 입양 아동의 적응. Brodzinsky, D. M., Smith, D. W., & Brodzinsky, A. B. 1998. Children's adjustment to adoption. 서울: 홀트아동복지회.

안재진·권지성·변미희·최운선(2009). 국내 입양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개입양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9, 187-219.

안재진·권지성·변미희·최운선(2015).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2015년 5차 양적 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중앙입양원.

안재진·변미희·권지성·최운선(2015). 입양모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이 양육역량을 매개로 입양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3), 19-34.

안재진·최운선·김세원·장지연(2013). 국내입양 사후관리 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 서울: 중앙입양원.

이삼식·박종서·이소영·오미애·최효진·송미영(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로·이미선 역(2007). 입양의 생애주기. Rosenberg, E. B. 1992. The adoption

life cycle: Th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rough the years. 서울: 신정.

이은정(2014). 국내 아동입양 현황과 정책과제. 경남발전, 132, 11-22.

이정림·김길숙·송신영·이예진·김진미·김소아·김신경(2015). 한국아동패널 2015.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이현주(2014). 영유아의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 영유아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 자료집(2014. 5. 29). 보건복지부·국회의원 민현주.

이혜원(2013).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임형택(2013). 독일의 입양법제 최근 동향. (최신)외국법제정보 2013-8, 29-42. 한국법제연구원.

장병주(2013). 개정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정민법과 입양특례법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41, 501-532.

장복희(2010).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과 주요국 입양법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3, 373-401.

전종선(2016.10.20.). 임신 중 육아휴직·난임 치료 위한 휴가, 내년 7월부터 사용 가능. 서울경제.

정맹진(2002). 국내 입양 후 만족도와 입양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익중·권지성·민성혜·신혜원(2010). 연장입양 가족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9, 55-84.

정옥분·정순화(2016). 부모교육(제2판). 서울: 학지사.

정옥분·정순화·손화의·김경은(2016). 아동권리와 복지. 서울: 학지사.

최석범(2016. 11. 16). 장애유아 가족중심 조기개입체계 제도화 필요.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6&NewsCode=0026201611161344078609 65에서 2016년 11월 17일 인출.

최운선·안재진·변미희·권지성(2008). 국내 입양아동의 입양됨에 대한 인식 연구. 18(4), 169-182.

최윤경·배윤진·송신영·임준범·이예진·김소아·김신경(2014). 한국아동패널 201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통계청(2016. 5).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 내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3에서 2016년 5월 30일 인출.

통계청(2015. 5). 국내 입양아 수 및 입양비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8에서 2016년 2월 26일 인출.

통계청(2006, 2008, 2010, 2012, 2014). 보건·사회·복지-사회-사회조사-가족.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jsClick에서 2016년 3월 9일 인출.

한국입양홍보회·보건복지부(n.d.). 반편견 입양교육 가이드북.

△△입양기관(영아보호시설)(n.d.). 내부자료.

Baker, M., Biringen, Z., Meyer Parsons, B., & Schneider, A. (2015). Emotional attachment and emotional availability tele intervention for adoptive familie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6*(2), 179-192.

Barth, R. P., & Berry, M. (1988). *Adoption and disruption*. New York: Aldine de Gruyter.

Benson, P. L., Sharma, A. R., & Roehlkepartain, E. C. (1994). *Growing up adopted: A poortrait of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Minneapolis, MN: Search Institute.

Berry, M., & Barth, R. P. (1989).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adopted when older.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 221-238.

Brodzinsky, D. M., & Brodzinsky, A. B. (1991). The impact of family structure on the adjustment of adopted children. *Child Welfare, 711*, 69-76.

Brodzinsky, D. M., Hitt, J. C., & Smith, D. W. (1993). Impact of parental separation and divorce on adopted and nonadopt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rthopsychiatry, 63*, 451-461.

Brodzinsky, D. M., & Pinderhughes, E. E. (2002).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in adoptive familie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pp. 279-31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Brodzinsky, D. M., Schechter, D. E., Braff, A.. M., & Singer, L. M. (1984). Psychology and acdemic adjustment in adopt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582-590.

Brodzinsky, D. M., Schechter, M. D., & Henig, R. M. (1992). *Being adopted: The lifelong search for self*. New York: Doubleday.

Castle, J. (2000). Infant adoption in England: A longitudinal account of social and cognitive progress. *Adoption & Fostering, 24*(3), 26-35.

Grotevant, H. D., Dunbar, N., Kohler, J. K., & Esau, A. M. L. (2000). Adoptive Identity: How Contexts Within and Beyond the Family Shape Developmental Pathways. *Family Relations, 49*(4), 379-387.

Groze, V. (1996). *Successful adoptive families: a longitudinal of special needs children*. Westport, CT: Praeger.

Jones, A. (1997). Issues relevant to therapy with adoptee. *Psychotherapy, 341,* 64-68.

Juffer, F., Bakermans Kranenburg, M. J., & IJzendoorn, M. H. (2005). The importance of parenting in the development of disorganized attachment: Evidence from a preventive intervention study in adoptive famil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3), 263-274.

Juffer, F., & van IJzendoorn, M. H. (2007). Adoptees do not lack self-esteem: A meta-analysis of studies on self-esteem of transracial, international, and domestic adoptees. *Psychological bulletin, 133*(6), 1067-1083.

Kadushin, A. (1980). *Child welfare service*. New York: MacMillan.

Khomami, N. (2015. 8. 7). Leading adoption and fostering charity BAAF closes, citing economic problems.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5/aug/07/leading-adoption-fostering-charity-baaf-closes-economic-problems에서 2016년 11월 3일 인출.

Kramer, L., & Houston, D. (1998). Supporting families as they adopt children with special needs. *Family Relations*, 423-432.

Levy, T. M., & Orlans, M. (2000). Attachment disorder as an antecedent to violence and antisocial patterns in children. In T. Levy Ed., *Handbook of attachment interventions*. London: Academic Press.

Luckock, B., & Hart, A. (2005). Adoptive family life and adoption support: policy ambivalence and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services. *Child & Family Social Work, 10*(2), 125-134.

McDonald, T. P., Propp, J. R., & Murphy, K. C. (2001). The postadoption experience: Child, parent, and family predictors of family adjustment to adoption. *Child Welfare, 80*(1), 71-94.

Rosenthal, J. A. (1993). Outcomes of adoption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he Future of Children, 3*, 77-88.

Rycus, J. S., Freundlich, M., Hughes, R. C., Keefer, B., & Oakes, E. J. (2006). Confronting barriers to adoption success. *Family Court Review, 44*(2), 210-230.

Smith, D. W., & Brodzinsky, D. M. (2002). Coping with birthparent loss in adopte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2*, 213-223.

Stams, G. J. J., Juffer, F., & van IJzendoorn, M. H. (2002). Maternal sensitivity, infant attachment, and temperament in early childhood predict adjustment in middle childhood: the case of adopted children and their biologically unrelate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8*(5), 806.

Stein, L. M., & Hoopes, J. L. (1985). *Identity formation in the adopted adolescent*. New York: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Tommie, J., & Pauline, H. (2001).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Boston: Allyn and Bacon.

Van den Dries, L., Juffer, F., van IJzendoorn, M. H., & Bakermans-Kranenburg, M. J. (2009). Fostering security? A

meta-analysis of attachment in adopted childre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3), 410-421.

Zill, N. (1985). *Behavior and learning problems among adopted children: Findings from a US national survey of child health*. Child Trends, Inc., Washington, DC.

[법령, 법률안 및 법령정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고아입양특례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령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이상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n.d.).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법률 제9832호) 제정·개정이유. http://law.go.kr/lsRvsRsnListP.do?lsiSeqs=183519%2c170962%2c167951%2c165481%2c160963%2c149548%2c142363%2c136690%2c104824%2c104819%2c97968%2c79836%2c79004&chrClsCd=010102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n.d.). 고아입양특례법(법률 제731호) 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664&lsId=&efYd=19610930&c

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n.d.). 민법(법률 제11300호) 개정이유. http://www.law.go.kr/lsRvsRsnListP.do?lsiSeqs=188377%2c188036%2c178964%2c167985%2c167952%2c165484%2c160862%2c138748%2c122983%2c113180%2c110914%2c93194%2c81988%2c79107%2c72266%2c67271%2c67272%2c58429%2c60400%2c60398%2c58442%2c58430%2c58433%2c58436%2c58437%2c58432%2c58435%2c58434%2c58431&chrClsCd=010102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n.d.). 입양특례법(법률 제2977호, 법률 제11007호, 법률 제13322호) 제정·개정이유. http://law.go.kr/lsRvsRsnListP.do?lsiSeqs=170971%2c115749%2c98617%2c85184%2c79034%2c67762%2c59430%2c3663%2c3662%2c3552%2c3551%2c3550%2c3549%2c3548%2c3547&chrClsCd=010102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n.d.). 입양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45호) 개정이유. http://law.go.kr/lsRvsRsnListP.do?lsiSeqs=177594%2c165842%2c127551%2c118232%2c103283%2c85445%2c82447%2c71539%2c61458%2c24927%2c24926%2c24925%2c24924%2c24923%2c24922%2c24921&chrClsCd=010102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김승희의원 대표발의(2015).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466호.

김승희의원 대표발의(2015).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467호.

독일법령정보 사이트 http://www.gesetze-im-internet.de

영국 가족법 정보 사이트 http://www.familylawweek.co.uk

영국법령정보센터 http://legislation.gov.uk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n.d.).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 http://oneclick.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25&onhunqueSeq=2881에서 2016년 7월 1일 인출.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건강한 입양가정 지원센터(2016. 9. 5). 찾아가는 입양부모학교. http://cafe.naver.com/guncen.cafe?iframe_url=%2FCafeApplyCheck.nhn%3Fclubid%3D28021795%26email%3D%26alreadyMemberPopup%3Dfalse에서 2016년 10월 28일 인출.

미국 부모교육 사이트 http://www.adoptionlearningpartners.org

성가정입양원(2016. 8. 17). 제86회 입양 전 부모교육 안내. http://www.holyfcac.or.kr/ 공지사항 218번에서 2016년 8월 31일 인출.

중앙입양원(2016. 5. 30). 연구용역 수행자 모집공고. 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view.jsp?no=230&listSize=10&pageNo=1&bcode=07_1에서 2016년 6월 10일 인출.

중앙입양원(2016. 10. 7). 2016 입양문화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공고. 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view.jsp?no=239&listSize=10&pageNo=1&bcode=07_1에서 2016년 11월 10일 인출.

중앙입양원(n.d.a). 사후관리사업 운영현황. https://www.kadoption.or.kr/after/after_mean_3.jsp에서 2016년 6월 16일 인출.

중앙입양원(n.d.b). 설립목적 및 연혁. https://www.kadoption.or.kr/intro/history.jsp에서 2016년 6월 16일 인출.

중앙입양원(n.d.c).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https://www.kadoption.or.kr/system/system_guide.jsp에서 2016년 6월 16일 인출.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2016. 5. 13). 2016년 문지방 상담사 양성 워크숍 안내. http://www.kccaf1.org/index.php?document_srl=19639에서 2016년 11월 2일 인출.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2016. 5. 14).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문지방상담 신청 안내. http://www.kccaf1.org/index.php?document_srl=19660에서 2016년 11

월 2일 인출.

Wikipedia(n.d.). British Association for Adoption and Fostering. https://en.wikipedia.org/wiki/British_Association_for_Adoption_and_Fostering에서 2016년 11월 3일 인출.

Wikiwand(n.d.). Adoptionen in Deutschland von 1991 bis 2010. http://www.wikiwand.com/de/Adoption_(Deutschland)에서 2016년 7월 1일 인출.

Abstract

Individualized Child Care Support Plans (Ⅱ) Current Status of the Supporting Programs for Adopted Children and Plans for Further Improvements

Yun-Jin Bae Ahreum Kim Shinyeong Song Ji-Sung K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present conditions and systems of adoption, to identify improvements of supporting policy based on the experiences in adoptive families and to suggest solutions to reduce factors to impede development and adjustment of adopted children. That is,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how the children were cared for before adoption, to determine the factors to help or impede development of adopted children, and to suggest programs to support adoptive families after adoption based on their parenting experiences. This study was aimed at helping adopted children grow healthy to the ultimate.

For this purpose the study was done as follows:

First, we described the current adoption conditions including the rate of domestic and overseas adoption, the number of adopted children by analyzing related data from the KOSI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doption agencies, etc. and reviewing related literatures on adoption.

Second, we examined the laws and systems of adoption including qualifications and procedures for adoption and supporting systems for adoptive families, and investigated their changes. In addition, we reviewed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international(Germany, USA, and UK) adoption systems to understand the trend of adoption.

Third, we determined the actual conditions of adopted child-rearing and supporting needs by survey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perience in adoption process, experience of adopted child rearing, demand of supporting

policy for adoptive family, and awareness of adoption on 272 parents in adoptive families.

Fourth, we collected 39 adoptive family cases based on the age of adopted children(infancy, early childhood, childhood, adolescence), with or without biological children, disabled children and older adopted children, and examined the difficulties and demands for caring adopted children. In addition we investigated chid care system before adoption, adoptive parents-children matching, and service for adoptive families through interviewing practitioners of adoption agencies.

Finally, we suggested substantial plans to care pre-adoption children and to support parenting in adoptive families and to reduce prejudice against adopt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is study as follows.

Child caring system before adoption: Minimization of separation experience and sudden change in environment, providing environment supporting for development, giving foster care prior to adoption, meeting adoptive parents before adoption, preparing regulations of foster care, forming alliance between adoptive parents and children; Enhancing supporting systems for adoptive families: improving adoption services(changing from supporting adoption fee to supporting operating expenses of adoption service, unification of adoptive service systems), improving financial supporting system from long-term perspective, activating substantial parenting education program, enhancing continuity and accessibility of the program(Using community resources such as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and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developing and distributing programs, and giving information via internet), professional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case management of families requiring mediation, training adoption specialists; Enhancing public awareness of adoption: overcoming the discrimination and bias against adoptive family, eliminating biased terms of adoption, anti-bias education for adoption and creating healthy adoption culture.

부록

부록 1.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표

부록 2. 입양부모 대상 심층면담 분석결과표

부록 3.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질문지

부록 4. 입양부모 대상 심층면담 질문

부록 1.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표

〈부표 Ⅳ-3-1〉 양육 시 어려움_입양자녀가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93.4	5.9	0.7	100.0(272)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92.3	6.6	1.1	100.0(91)	na
유아기	98.5	1.5	0.0	100.0(68)	
아동기	93.3	5.6	1.1	100.0(89)	
청소년기	83.3	16.7	0.0	100.0(24)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95.0	4.6	0.4	100.0(240)	na
12개월 이상	81.3	15.6	3.1	100.0(32)	
친생자녀 유무					
있음	92.9	6.3	0.8	100.0(126)	na
없음	93.8	5.5	0.7	100.0(14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92.7	7.3	0.0	100.0(55)	na
301~500만원	92.7	6.5	0.8	100.0(123)	
501~700만원	91.9	6.5	1.6	100.0(62)	
701만원 이상	100.0	0.0	0.0	100.0(3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97.4	2.6	0.0	100.0(116)	na
휴직 중	81.3	18.8	0.0	100.0(16)	
미취업	91.2	7.3	1.5	100.0(137)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3-2〉 양육 시 어려움_가족들이 입양자녀와 가까워지지 못함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94.9	4.8	0.4	100.0(272)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93.4	6.6	0.0	100.0(91)	na
유아기	98.5	1.5	0.0	100.0(68)	
아동기	94.4	4.5	1.1	100.0(89)	
청소년기	91.7	8.3	0.0	100.0(24)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96.3	3.8	0.0	100.0(240)	na
12개월 이상	84.4	12.5	3.1	100.0(32)	
친생자녀 유무					
있음	92.9	6.3	0.8	100.0(126)	na
없음	96.6	3.4	0.0	100.0(14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92.7	7.3	0.0	100.0(55)	na
301~500만원	94.3	4.9	0.8	100.0(123)	
501~700만원	95.2	4.8	0.0	100.0(62)	
701만원 이상	100.0	0.0	0.0	100.0(3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99.1	0.9	0.0	100.0(116)	na
휴직 중	93.8	6.3	0.0	100.0(16)	
미취업	91.2	8.0	0.7	100.0(137)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3-3〉 양육 시 어려움_부모-자녀 간 애착관계 형성이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91.5	7.4	0.7	0.4	100.0(272)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93.4	5.5	1.1	0.0	100.0(91)	na
유아기	94.1	5.9	0.0	0.0	100.0(68)	
아동기	92.1	5.6	1.1	1.1	100.0(89)	
청소년기	75.0	25.0	0.0	0.0	100.0(24)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94.6	5.4	0.0	0.0	100.0(240)	na
12개월 이상	68.8	21.9	6.3	3.1	100.0(32)	
친생자녀 유무						
있음	87.3	11.1	0.8	0.8	100.0(126)	na
없음	95.2	4.1	0.7	0.0	100.0(14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94.5	3.6	1.8	0.0	100.0(55)	na
301~500만원	92.7	6.5	0.0	0.8	100.0(123)	
501~700만원	87.1	11.3	1.6	0.0	100.0(62)	
701만원 이상	90.6	9.4	0.0	0.0	100.0(3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94.8	5.2	0.0	0.0	100.0(116)	na
휴직 중	87.5	12.5	0.0	0.0	100.0(16)	
미취업	89.1	8.8	1.5	0.7	100.0(137)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3-4〉 양육 시 어려움_친생자녀와 입양자녀를 (역)차별하게 됨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86.5	11.9	1.6	100.0(126)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81.0	19.0	0.0	100.0(21)	
유아기	91.2	5.9	2.9	100.0(34)	na
아동기	87.9	10.3	1.7	100.0(58)	
청소년기	76.9	23.1	0.0	100.0(13)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89.1	9.1	1.8	100.0(110)	na
12개월 이상	68.8	31.2	0.0	100.0(1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90.5	4.8	4.8	100.0(21)	
301~500만원	84.4	14.1	1.6	100.0(64)	na
501~700만원	86.2	13.8	0.0	100.0(29)	
701만원 이상	91.7	8.3	0.0	100.0(1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84.2	12.3	3.5	100.0(57)	
휴직 중	60.0	40.0	0.0	100.0(5)	na
미취업	90.3	9.7	0.0	100.0(62)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친생자녀가 없는 146사례(해당 없음)는 제외함.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3-5〉 양육 시 어려움_자녀에게 입양사실 공개 시기, 방법에 대해 고민함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54.8	19.1	13.2	12.9	100.0(272)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27.5	23.1	26.4	23.1	100.0(91)	
유아기	52.9	22.1	11.8	13.2	100.0(68)	62.02(9)
아동기	79.8	11.2	4.5	4.5	100.0(89)	***
청소년기	70.8	25.0	0.0	4.2	100.0(24)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54.6	19.6	12.9	12.9	100.0(240)	na
12개월 이상	56.3	15.6	15.6	12.5	100.0(32)	
친생자녀 유무						
있음	63.5	19.0	10.3	7.1	100.0(126)	10.74(3)
없음	47.3	19.2	15.8	17.8	100.0(146)	*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9.1	29.1	14.5	7.3	100.0(55)	
301~500만원	58.5	14.6	12.2	14.6	100.0(123)	10.26(9)
501~700만원	51.6	24.2	11.3	12.9	100.0(62)	
701만원 이상	56.3	9.4	18.8	15.6	100.0(3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62.9	15.5	9.5	12.1	100.0(116)	
휴직 중	12.5	18.8	43.8	25.0	100.0(16)	na
미취업	51.8	22.6	13.1	12.4	100.0(137)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Ⅳ-3-6〉 양육 시 어려움_자녀가 입양사실로 삐뚤어질까봐 두려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39.0	34.2	18.8	8.1	100.0(272)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25.3	36.3	23.1	15.4	100.0(91)	
유아기	26.5	44.1	22.1	7.4	100.0(68)	36.05(9)
아동기	56.2	25.8	15.7	2.2	100.0(89)	***
청소년기	62.5	29.2	4.2	4.2	100.0(24)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38.3	34.2	19.2	8.3	100.0(240)	.55(3)
12개월 이상	43.8	34.4	15.6	6.3	100.0(32)	
친생자녀 유무						
있음	43.7	34.1	19.0	3.2	100.0(126)	8.34(3)*
없음	34.9	34.2	18.5	12.3	100.0(14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3.6	36.4	12.7	7.3	100.0(55)	
301~500만원	39.8	33.3	18.7	8.1	100.0(123)	3.93(9)
501~700만원	37.1	33.9	19.4	9.7	100.0(62)	
701만원 이상	31.3	34.4	28.1	6.3	100.0(3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40.5	34.5	18.1	6.9	100.0(116)	
휴직 중	12.5	37.5	37.5	12.5	100.0(16)	6.74(6)
미취업	40.1	34.3	17.5	8.0	100.0(137)	

주: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부표 Ⅳ-3-7〉 양육 시 어려움_자녀가 크면서 친생부모를 찾을까봐 두려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64.7	24.3	7.7	3.3	100.0(272)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58.2	24.2	11.0	6.6	100.0(91)	na
유아기	54.4	33.8	8.8	2.9	100.0(68)	
아동기	73.0	21.3	4.5	1.1	100.0(89)	
청소년기	87.5	8.3	4.2	0.0	100.0(24)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64.6	24.6	7.9	2.9	100.0(240)	na
12개월 이상	65.6	21.9	6.3	6.3	100.0(32)	
친생자녀 유무						
있음	71.4	23.0	4.8	0.8	100.0(126)	na
없음	58.9	25.3	10.3	5.5	100.0(14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0.0	30.9	7.3	1.8	100.0(55)	na
301~500만원	70.7	21.1	4.9	3.3	100.0(123)	
501~700만원	64.5	21.0	8.1	6.5	100.0(62)	
701만원 이상	50.0	31.3	18.8	0.0	100.0(3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66.4	21.6	8.6	3.4	100.0(116)	na
휴직 중	43.8	37.5	12.5	6.3	100.0(16)	
미취업	65.7	25.5	6.6	2.2	100.0(137)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3-8〉 양육 시 어려움_주변에서 입양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69.9	20.6	6.6	2.9	100.0(272)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67.0	15.4	11.0	6.6	100.0(91)	na
유아기	63.2	32.4	4.4	0.0	100.0(68)	
아동기	76.4	18.0	3.4	2.2	100.0(89)	
청소년기	75.0	16.7	8.3	0.0	100.0(24)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69.6	20.4	7.1	2.9	100.0(240)	na
12개월 이상	71.9	21.9	3.1	3.1	100.0(32)	
친생자녀 유무						
있음	79.4	15.9	3.2	1.6	100.0(126)	na
없음	61.6	24.7	9.6	4.1	100.0(14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7.3	25.5	5.5	1.8	100.0(55)	na
301~500만원	69.1	19.5	7.3	4.1	100.0(123)	
501~700만원	74.2	19.4	4.8	1.6	100.0(62)	
701만원 이상	68.8	18.8	9.4	3.1	100.0(3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71.6	19.8	6.0	2.6	100.0(116)	na
휴직 중	62.5	18.8	18.8	0.0	100.0(16)	
미취업	68.6	21.9	5.8	3.6	100.0(137)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부표 Ⅳ-3-9〉 양육 시 어려움_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34.9	32.7	23.5	8.8	100.0(272)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37.4	18.7	29.7	14.3	100.0(91)	
유아기	22.1	44.1	23.5	10.3	100.0(68)	26.56(9)
아동기	38.2	41.6	16.9	3.4	100.0(89)	**
청소년기	50.0	20.8	25.0	4.2	100.0(24)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33.8	32.9	23.8	9.6	100.0(240)	2.21(3)
12개월 이상	43.8	31.3	21.9	3.1	100.0(32)	
친생자녀 유무						
있음	42.9	34.1	18.3	4.8	100.0(126)	11.53(3)
없음	28.1	31.5	28.1	12.3	100.0(146)	**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8.2	32.7	23.6	5.5	100.0(55)	
301~500만원	32.5	39.8	18.7	8.9	100.0(123)	10.57(9)
501~700만원	38.7	19.4	32.3	9.7	100.0(62)	
701만원 이상	31.3	31.3	25.0	12.5	100.0(3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38.8	28.4	22.4	10.3	100.0(116)	
휴직 중	25.0	37.5	37.5	0.0	100.0(16)	5.81(6)
미취업	32.1	36.5	23.4	8.0	100.0(137)	

주: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부표 Ⅳ-3-10〉 양육 시 어려움_일반적인 자녀들의 문제임에도 입양 때문인 것 같아 걱정함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53.3	29.8	13.2	3.7	100.0(272)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50.5	29.7	13.2	6.6	100.0(91)	na
유아기	55.9	27.9	11.8	4.4	100.0(68)	
아동기	52.8	33.7	13.5	0.0	100.0(89)	
청소년기	58.3	20.8	16.7	4.2	100.0(24)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56.3	27.1	12.9	3.8	100.0(240)	na
12개월 이상	31.3	50.0	15.6	3.1	100.0(32)	
친생자녀 유무						
있음	54.8	33.3	11.1	0.8	100.0(126)	7.20(3)
없음	52.1	26.7	15.1	6.2	100.0(14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2.7	29.1	18.2	0.0	100.0(55)	na
301~500만원	55.3	31.7	9.8	3.3	100.0(123)	
501~700만원	53.2	21.0	19.4	6.5	100.0(62)	
701만원 이상	46.9	40.6	6.3	6.3	100.0(3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53.4	25.9	15.5	5.2	100.0(116)	na
휴직 중	50.0	43.8	6.3	0.0	100.0(16)	
미취업	53.3	32.1	12.4	2.2	100.0(137)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3-11〉 양육 시 어려움_주변사람들과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63.2	25.0	9.2	2.6	100.0(272)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64.8	20.9	9.9	4.4	100.0(91)	na
유아기	63.2	27.9	5.9	2.9	100.0(68)	
아동기	60.7	27.0	11.2	1.1	100.0(89)	
청소년기	66.7	25.0	8.3	0.0	100.0(24)	
입양 시 월령						
12개월 미만	65.4	24.6	7.9	2.1	100.0(240)	na
12개월 이상	46.9	28.1	18.8	6.3	100.0(32)	
친생자녀 유무						
있음	63.5	23.8	11.1	1.6	100.0(126)	na
없음	63.0	26.0	7.5	3.4	100.0(14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5.5	27.3	7.3	0.0	100.0(55)	na
301~500만원	63.4	25.2	8.9	2.4	100.0(123)	
501~700만원	64.5	17.7	11.3	6.5	100.0(62)	
701만원 이상	56.3	34.4	9.4	0.0	100.0(3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62.9	23.3	9.5	4.3	100.0(116)	na
휴직 중	56.3	31.3	12.5	0.0	100.0(16)	
미취업	64.2	26.3	8.8	0.7	100.0(137)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4-1〉 적정한 예비부모교육 시간

단위: %(명)

구분	8시간 이하	9~16 시간	17~24 시간	25시간 이상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t*/*F*
전체	45.8	23.7	15.3	10.2	5.1	100.0(59)	14.98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37.5	25.0	18.8	12.5	6.2	100.0(16)	16.87	.58
2012년도 이후	48.8	23.3	14.0	9.3	4.7	100.0(43)	14.29	
친생자녀 유무								
있음	22.7	45.5	18.2	9.1	4.5	100.0(22)	14.22	1.00
없음	59.5	10.8	13.5	10.8	5.4	100.0(37)	15.06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37.5	29.2	12.5	12.5	8.3	100.0(24)	16.68	
휴직 중	75.0	0.0	25.0	0.0	0.0	100.0(4)	9.25	.43
미취업	48.3	24.1	17.2	10.3	0.0	100.0(29)	14.79	

주: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4-2〉 직장 내 입양휴가제 유무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chi^2(df)$
전체	43.0	57.0	100.0(114)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30.0	70.0	100.0(60)	8.71(1)**
2012년도 이후	57.4	42.6	100.0(5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6.7	53.3	100.0(15)	
301~500만원	45.1	54.9	100.0(51)	2.04(3)
501~700만원	46.7	53.3	100.0(30)	
701만원 이상	27.8	72.2	100.0(18)	

주: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부표 Ⅳ-4-3〉 입양부모/가정 자조모임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2.2	7.0	34.6	56.1	100.0(228)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0.0	4.1	40.5	55.4	100.0(74)	na
유아기	1.8	15.8	31.6	50.9	100.0(57)	
아동기	3.8	3.8	32.1	60.3	100.0(78)	
청소년기	5.3	5.3	31.6	57.9	100.0(19)	
친생자녀 유무						
있음	2.8	6.5	36.4	54.2	100.0(107)	na
없음	1.7	7.4	33.1	57.9	100.0(121)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5.7	8.6	37.1	48.6	100.0(35)	na
없음	1.6	6.7	34.2	57.5	100.0(193)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0	12.2	48.8	39.0	100.0(41)	na
301~500만원	3.9	3.9	32.4	59.8	100.0(102)	
501~700만원	1.8	5.4	30.4	62.5	100.0(56)	
701만원 이상	0.0	13.8	31.0	55.2	100.0(29)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2.1	6.2	29.9	61.9	100.0(97)	na
휴직 중	6.7	6.7	53.3	33.3	100.0(15)	
미취업	1.8	7.9	36.8	53.5	100.0(114)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4-4〉 입양부모교육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1.4	6.4	52.9	39.3	100.0(140)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0.0	9.1	48.5	42.4	100.0(33)	na
유아기	2.8	5.6	36.1	55.6	100.0(36)	
아동기	0.0	5.7	64.2	30.2	100.0(53)	
청소년기	5.6	5.6	61.1	27.8	100.0(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0.0	6.0	62.7	31.3	100.0(67)	na
없음	2.7	6.8	43.8	46.6	100.0(73)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4.8	4.8	66.7	23.8	100.0(21)	na
없음	.8	6.7	50.4	42.0	100.0(11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0	0.0	59.1	40.9	100.0(22)	na
301~500만원	1.6	7.8	51.6	39.1	100.0(64)	
501~700만원	2.7	10.8	48.6	37.8	100.0(37)	
701만원 이상	0.0	0.0	58.8	41.2	100.0(17)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1.6	4.8	44.4	49.2	100.0(63)	na
휴직 중	0.0	25.0	75.0	0.0	100.0(4)	
미취업	1.4	7.0	60.6	31.0	100.0(71)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4-5〉 입양부모 상담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4.3	10.6	55.3	29.8	100.0(47)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0.0	0.0	100.0	0.0	100.0(1)	
유아기	0.0	15.4	46.2	38.5	100.0(13)	na
아동기	4.3	4.3	65.2	26.1	100.0(23)	
청소년기	10.0	20.0	40.0	30.0	100.0(10)	
친생자녀 유무						
있음	0.0	19.2	57.7	23.1	100.0(26)	na
없음	9.5	0.0	52.4	38.1	100.0(21)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12.5	25.0	50.0	12.5	100.0(8)	na
없음	2.6	7.7	56.4	33.3	100.0(3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0	0.0	50.0	50.0	100.0(6)	
301~500만원	8.7	13.0	52.2	26.1	100.0(23)	na
501~700만원	0.0	9.1	72.7	18.2	100.0(11)	
701만원 이상	0.0	14.3	42.9	42.9	100.0(7)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5.9	0.0	64.7	29.4	100.0(17)	
휴직 중	0.0	100.0	0.0	0.0	100.0(1)	na
미취업	3.4	13.8	51.7	31.0	100.0(29)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4-6〉 입양아동 상담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6.3	9.4	50.0	34.4	100.0(32)	
첫 입양자녀 연령						
유아기	0.0	0.0	33.3	66.7	100.0(6)	
아동기	5.6	5.6	66.7	22.2	100.0(18)	na
청소년기	12.5	25.0	25.0	37.5	100.0(8)	
친생자녀 유무						
있음	5.9	11.8	58.8	23.5	100.0(17)	na
없음	6.7	6.7	40.0	46.7	100.0(15)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16.7	33.3	16.7	33.3	100.0(6)	na
없음	3.8	3.8	57.7	34.6	100.0(2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0	0.0	50.0	50.0	100.0(2)	
301~500만원	5.9	5.9	52.9	35.3	100.0(17)	na
501~700만원	11.1	11.1	55.6	22.2	100.0(9)	
701만원 이상	0.0	25.0	25.0	50.0	100.0(4)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0.0	6.7	53.3	40.0	100.0(15)	na
미취업	11.8	11.8	47.1	29.4	100.0(17)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4-7〉 입양아동 적응/발달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4.3	17.4	56.5	21.7	100.0(23)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0.0	0.0	0.0	100.0	100.0(1)	na
유아기	0.0	25.0	25.0	50.0	100.0(4)	
아동기	7.7	7.7	69.2	15.4	100.0(13)	
청소년기	0.0	40.0	60.0	0.0	100.0(5)	
친생자녀 유무						
있음	8.3	16.7	50.0	25.0	100.0(12)	na
없음	0.0	18.2	63.6	18.2	100.0(11)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0.0	25.0	50.0	25.0	100.0(4)	na
없음	5.3	15.8	57.9	21.1	100.0(1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0	0.0	66.7	33.3	100.0(3)	na
301~500만원	0.0	0.0	60.0	40.0	100.0(5)	
501~700만원	10.0	20.0	60.0	10.0	100.0(10)	
701만원 이상	0.0	40.0	40.0	20.0	100.0(5)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0.0	20.0	60.0	20.0	100.0(10)	na
미취업	7.7	15.4	53.8	23.1	100.0(13)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4-8〉 입양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9.1	31.8	36.4	22.7	100.0(22)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0.0	0.0	0.0	100.0	100.0(1)	na
유아기	0.0	25.0	25.0	50.0	100.0(4)	
아동기	16.7	33.3	41.7	8.3	100.0(12)	
청소년기	0.0	40.0	40.0	20.0	100.0(5)	
친생자녀 유무						
있음	0.0	44.4	44.4	11.1	100.0(9)	na
없음	15.4	23.1	30.8	30.8	100.0(13)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0.0	40.0	20.0	40.0	100.0(5)	na
없음	11.8	29.4	41.2	17.6	100.0(1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0	33.3	66.7	0.0	100.0(3)	na
301~500만원	12.5	50.0	12.5	25.0	100.0(8)	
501~700만원	0.0	25.0	62.5	12.5	100.0(8)	
701만원 이상	33.3	0.0	0.0	66.7	100.0(3)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7.7	23.1	30.8	38.5	100.0(13)	na
미취업	11.1	44.4	44.4	0.0	100.0(9)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4-9〉 캠프 등 입양가정 대상 행사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4.5	5.1	39.5	51.0	100.0(157)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0.0	3.7	37.0	59.3	100.0(27)	na
유아기	2.7	5.4	32.4	59.5	100.0(37)	
아동기	4.1	5.4	41.9	48.6	100.0(74)	
청소년기	15.8	5.3	47.4	31.6	100.0(19)	
친생자녀 유무						
있음	2.5	6.3	36.7	54.4	100.0(79)	na
없음	6.4	3.8	42.3	47.4	100.0(78)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15.4	7.7	38.5	38.5	100.0(26)	na
없음	2.3	4.6	39.7	53.4	100.0(131)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5.0	0.0	45.0	40.0	100.0(20)	na
301~500만원	5.7	4.3	37.1	52.9	100.0(70)	
501~700만원	0.0	8.5	36.2	55.3	100.0(47)	
701만원 이상	0.0	5.0	50.0	45.0	100.0(20)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2.7	5.4	35.1	56.8	100.0(74)	na
휴직 중	33.3	0.0	33.3	33.3	100.0(6)	
미취업	4.0	5.3	45.3	45.3	100.0(75)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4-10〉 합창단 등 입양아동 모임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7.1	7.1	40.5	45.2	100.0(42)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0.0	0.0	100.0	0.0	100.0(1)	na
유아기	0.0	20.0	40.0	40.0	100.0(5)	
아동기	6.9	3.4	34.5	55.2	100.0(29)	
청소년기	14.3	14.3	57.1	14.3	100.0(7)	
친생자녀 유무						
있음	4.3	4.3	52.2	39.1	100.0(23)	na
없음	10.5	10.5	26.3	52.6	100.0(19)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16.7	16.7	16.7	50.0	100.0(6)	na
없음	5.6	5.6	44.4	44.4	100.0(3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0	16.7	33.3	50.0	100.0(6)	na
301~500만원	10.7	3.6	39.3	46.4	100.0(28)	
501~700만원	0.0	0.0	40.0	60.0	100.0(5)	
701만원 이상	0.0	33.3	66.7	0.0	100.0(3)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0.0	5.6	27.8	66.7	100.0(18)	na
미취업	9.1	9.1	54.5	27.3	100.0(22)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4-11〉 입양부모/아동 심리치료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11.5	17.3	32.7	38.5	100.0(52)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0.0	100.0	0.0	0.0	100.0(1)	na
유아기	16.7	0.0	0.0	83.3	100.0(36)	
아동기	8.1	18.9	37.8	35.1	100.0(37)	
청소년기	25.0	12.5	37.5	25.0	100.0(8)	
친생자녀 유무						
있음	12.0	24.0	20.0	44.0	100.0(25)	na
없음	11.1	11.1	44.4	33.3	100.0(27)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30.0	10.0	20.0	40.0	100.0(10)	na
없음	7.1	19.0	35.7	38.1	100.0(4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0	0.0	60.0	40.0	100.0(5)	na
301~500만원	10.0	23.3	23.3	43.3	100.0(30)	
501~700만원	22.2	11.1	44.4	22.2	100.0(9)	
701만원 이상	12.5	12.5	37.5	37.5	100.0(8)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3.7	18.5	25.9	51.9	100.0(27)	na
미취업	20.0	16.0	40.0	24.0	100.0(25)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4-12〉 활성화되길 바라는 입양 관련 모임 및 프로그램(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기타	계 (수)
전체	31.6	10.7	10.7	10.3	9.6	8.5	7.4	6.6	2.2	2.2	0.4	100.0(272)
첫 입양자녀 연령												
영아기	27.5	14.3	7.7	11.0	14.3	11.0	4.4	4.4	0.0	5.5	0.0	100.0(91)
유아기	38.2	13.2	7.4	10.3	7.4	7.4	4.4	7.4	1.5	1.5	1.5	100.0(68)
아동기	32.6	6.7	13.5	9.0	6.7	7.9	12.4	6.7	4.5	0.0	0.0	100.0(89)
청소년기	25.0	4.2	20.8	12.5	8.3	4.2	8.3	12.5	4.2	0.0	0.0	100.0(24)
친생자녀 유무												
있음	30.2	12.7	9.5	11.9	8.7	8.7	7.9	5.6	4.0	0.8	0.0	100.0(126)
없음	32.9	8.9	11.6	8.9	10.3	8.2	6.8	7.5	0.7	3.4	0.7	100.0(146)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28.6	4.8	21.4	9.5	4.8	9.5	9.5	7.1	2.4	2.4	0.0	100.0(42)
없음	32.2	11.7	8.7	10.4	10.4	8.3	7.0	6.5	2.2	2.2	0.4	100.0(23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8.2	16.4	12.7	18.2	9.1	12.7	3.6	5.5	0.0	1.8	1.8	100.0(55)
301~500만원	34.1	9.8	9.8	10.6	9.8	4.1	8.9	5.7	4.1	3.3	0.0	100.0(123)
501~700만원	41.9	6.5	11.3	6.5	6.5	11.3	6.5	8.1	0.0	1.6	0.0	100.0(62)
701만원 이상	25.0	12.5	9.4	3.1	15.6	12.5	9.4	9.4	3.1	0.0	0.0	100.0(32)
모 취업 여부												
취업 중	32.8	8.6	12.9	12.9	8.6	6.9	6.0	6.9	1.7	2.6	0.0	100.0(116)
휴직 중	31.3	12.5	18.8	0.0	18.8	6.3	0.0	12.5	0.0	0.0	0.0	100.0(16)
미취업	30.7	12.4	8.0	9.5	9.5	10.2	8.8	5.8	2.2	2.2	0.7	100.0(137)

주: 1) 모든 분석에서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하여 해당 칸을 생략함.
2) 모 취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3) ① 입양부모/가정자조모임 ② 입양부모 상담프로그램 ③ 캠프 등 입양가정 대상행사 ④ 입양부모교육 ⑤ 입양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⑥ 입양아동 적응/발달지원프로그램 ⑦ 입양부모/아동 심리치료프로그램 ⑧ 입양아동 상담프로그램 ⑨ 합창단 등 입양아동 모임 ⑩ 없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5-1〉 친생부모는 자녀를 입양 보낸 후 자녀성장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28.7	27.6	24.6	19.1	100.0(272)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22.1	30.5	24.0	23.4	100.0(154)	9.93(3)*
2012년도 이후	37.3	23.7	25.4	13.6	100.0(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19.0	27.0	27.8	26.2	100.0(126)	14.70(3)**
없음	37.0	28.1	21.9	13.0	100.0(146)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40.5	19.0	26.2	14.3	100.0(42)	4.38(3)
없음	26.5	29.1	24.3	20.0	100.0(23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9.1	36.4	27.3	7.3	100.0(55)	
301~500만원	22.8	24.4	27.6	25.2	100.0(123)	18.43(9)*
501~700만원	32.3	22.6	22.6	22.6	100.0(62)	
701만원 이상	43.8	34.4	12.5	9.4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부표 Ⅳ-5-2〉 입양아동은 자신을 낳아준 친생부모에 대해 알아야 한다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7.7	25.4	32.0	34.9	100.0(272)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6.5	20.8	35.1	37.7	100.0(154)	5.45(3)
2012년도 이후	9.3	31.4	28.0	31.4	100.0(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4.8	19.0	33.3	42.9	100.0(126)	10.72(3)*
없음	10.3	30.8	30.8	28.1	100.0(146)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9.5	21.4	38.1	31.0	100.0(42)	1.32(3)
없음	7.4	26.1	30.9	35.7	100.0(23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2.7	34.5	30.9	21.8	100.0(55)	
301~500만원	7.3	16.3	34.1	42.3	100.0(123)	22.65(9)**
501~700만원	6.5	24.2	37.1	32.3	100.0(62)	
701만원 이상	3.1	46.9	15.6	34.4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부표 Ⅳ-5-3〉 입양아동은 성인이 된 후 원한다면 친생부모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3.3	8.1	35.3	53.3	100.0(272)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3.2	5.8	31.2	59.7	100.0(154)	6.68(3)
2012년도 이후	3.4	11.0	40.7	44.9	100.0(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1.6	5.6	31.0	61.9	100.0(126)	na
없음	4.8	10.3	39.0	45.9	100.0(146)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0.0	9.5	38.1	52.4	100.0(42)	na
없음	3.9	7.8	34.8	53.5	100.0(23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6	9.1	40.0	47.3	100.0(55)	
301~500만원	4.9	4.1	35.8	55.3	100.0(123)	na
501~700만원	1.6	11.3	29.0	58.1	100.0(62)	
701만원 이상	0.0	15.6	37.5	46.9	100.0(32)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5-4〉 친생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는 개방입양은 바람직하다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29.4	33.5	22.4	14.7	100.0(272)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22.7	34.4	24.0	18.8	100.0(154)	10.00(3)*
2012년도 이후	38.1	32.2	20.3	9.3	100.0(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23.8	28.6	26.2	21.4	100.0(126)	12.88(3)**
없음	34.2	37.7	19.2	8.9	100.0(146)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31.0	28.6	28.6	11.9	100.0(42)	1.50(3)
없음	29.1	34.3	21.3	15.2	100.0(23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0.9	41.8	18.2	9.1	100.0(55)	
301~500만원	28.5	25.2	26.8	19.5	100.0(123)	10.87(9)
501~700만원	30.6	37.1	19.4	12.9	100.0(62)	
701만원 이상	28.1	43.8	18.8	9.4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부표 Ⅳ-5-5〉 아동이 어느 나라에서든 가정에서 양육받기 위해서 해외입양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16.2	28.4	32.5	22.9	100.0(271)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20.9	30.1	23.5	25.5	100.0(153)	14.78(3)**
2012년도 이후	10.2	26.3	44.1	19.5	100.0(118)	
친생자녀 유무						
있음	14.3	27.8	27.8	30.2	100.0(126)	7.64(3)
없음	17.9	29.0	36.6	16.6	100.0(145)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14.3	33.3	23.8	28.6	100.0(42)	2.39(3)
없음	16.6	27.5	34.1	21.8	100.0(22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8.2	36.4	29.1	16.4	100.0(55)	
301~500만원	14.8	26.2	36.9	22.1	100.0(123)	11.36(9)
501~700만원	19.4	24.2	22.6	33.9	100.0(62)	
701만원 이상	12.5	31.3	40.6	15.6	100.0(32)	

주: 무응답 1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는 271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부표 Ⅳ-5-6〉 어떤 이유에서든 해외입양은 금지되어야 한다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chi^2(df)$
전체	50.9	29.7	9.3	10.0	100.0(269)	
입양시기						
2011년도 이전	50.0	27.0	8.6	14.5	100.0(152)	8.02(3)*
2012년도 이후	52.1	33.3	10.3	4.3	100.0(117)	
친생자녀 유무						
있음	55.2	24.0	10.4	10.4	100.0(125)	3.76(3)
없음	47.2	34.7	8.3	9.7	100.0(144)	
연장아 입양 여부						
있음	59.5	28.6	4.8	7.1	100.0(42)	na
없음	49.3	30.0	10.1	10.6	100.0(22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0.0	29.1	21.8	9.1	100.0(55)	
301~500만원	51.2	32.2	5.8	10.7	100.0(121)	19.74(9)*
501~700만원	59.7	27.4	1.6	11.3	100.0(62)	
701만원 이상	51.6	25.8	16.1	6.5	100.0(31)	

주: 1)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무응답 3사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례 수는 269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부록 2. 입양부모 대상 심층면담 분석결과표

〈부표 Ⅴ-2-1〉 영유아기 입양가정의 양육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개별	무자녀 개별	집단
입양 절차	입양동기	결혼 전 생각 난임 더 많은 자녀 배우자가 원함 주위의 자극	결혼 전부터 입양을 생각함 더 많은 자녀를 원함 입양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주위의 자극을 받고 결심함	난임 만혼-유산 입양기관 직원의 권유로 추가 입양	난임 배우자가 원함 아이가 예뻐서
	진행과정	입양 결정 정보수집 입양상담과 신청 불안한 기다림 위탁으로 보호 법원 판결	입양을 결심함 입양 신청 입양기관 상담 온갖 우여곡절과 기다림/입양을 서두름 선보기 가정위탁 입양확정 판결을 받음	웹사이트로 알아봄 입양기관 방문시 아이를 보고 바로 결정함 법원판결 받음	2-3년간 기도 다큐멘터리 시청, 기도 후 확신, 설득 신청-상담-위탁-판결 법 시행 이전으로 서두름
입양 준비	부모교육	교육을 못 받음 기억이 안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음 만족함	교육을 받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음(요식행위/도움이 되지 않음/내 스타일과 다름/입양장려 수준/보완이 필요함) 편견을 깸 내용에 만족함	정규교육 받음 기억이 안남 실제적인 교육 필요	
	상담	입양기관 상담 여러 기관 상담 상담의 깊이와 넓이	여러 기관에서 상담함 상담내용의 범위가 넓고 깊어서 당황함	3회 만남/상담 입양아동 뇌 이상으로 상담	
입양 전 만남	경험	못 만남 사진으로 봄 한번 만남	못 만남 한번 봄 시설에 자주 가서 만남	입양 전 위탁가정으로 데려옴	시설에 가서 봄 사진을 찍어서 봄 위탁가정에 있을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개별	무자녀 개별	집단
		자주 만남	경이로운 만남		때 봄
		첫 눈에 반함			
		위탁으로 데려옴			
	보호형태	입양기관-입양	입양기관	시설-위탁	
		가정위탁-입양	가정위탁	시설-입양	
		생활시설-입양	생활시설		
사전 정보	친생부모	전혀 모름	전혀 모름	산모수첩. 생모 체중	생모의 출신지역 정보
		내가 받지 않음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내가 받지 않음	상세하고 광범위한 정보	직접 만남
		기본 정보	배냇저고리 한 벌		입양기관이 만남 요청 거절
		더 많은 정보	친생부모 나이, 임신, 출산, 입양 사연		
		상세한 정보	더 많은 정보		
		생모를 만남	개방입양 원함		
	입양아동	출생 후 물건	기본 정보만 받음	생체 정보	
		생육사 정보	생육사 정보(일지, 의료기록, 앨범)	의료	
		의료기록	출생 이후 생체 기록물	기본정보	
	친생부모와 관계	없음	없음	없음	
		가능성 있음	가능성 있음		
가정 변화	가족관계	아이가 중심이 됨	형제관계 다툼	육아에 힘듦	자녀가 많아짐
		더 화목해짐	손위형제 퇴행/성격이 원만해짐	아이중심 생활	딸 바보
		조부모의 애정	조부모의 애정	양가 친척들도 좋아졌음	경쟁
		친척들도 나아짐	기쁘고 좋음		
		형제관계 역동성			
	생활	생활패턴이 바뀜	약간 불편함	갇혀서 답답함	
		웃을 일이 많아짐	자녀수 증가로 인해 힘듦	완전히 바뀜	
		새로운 세계를 만남	웃을 일이 많아짐	지경이 넓어짐	
		양육의 고단함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개별	무자녀 개별	집단
		갇혀서 답답함			
	부모됨	다르지 않음 더 수월함 부부 대화가 많아짐 삶이 풍성해짐 부모로서 성장함	다르지 않음 더 수월함 부모로서 성장 부모가 됨	채워짐 피곤함을 즐김 행복해짐 부모를 이해함	신의 뜻에 순종/ 기도하며 준비 부부사이 의논
공개 경험	입양사실 다루기	공개할 생각 없음 어려서 미공개 아이가 알고 있지만 회피함 어릴 때부터 조금씩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줌 친인척에만 공개 어린이집에 얘기함 자연스럽게 알려짐 입양기관 방문	아직 어려서 말 하지 않음 2-3세부터 조금 씩 이야기해줌 4-5세 구체적으로 공개 둘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얘기함	친인척에만 공개 어려서 미공개	자녀 모두 공개 어려서 알아듣지 못함 아이는 알고 있지만 회피함 어린이집에 부탁함 외부에 공개할 생각은 없음 손위형제가 밖에 이야기함 자연스럽게 알려짐 애도 반응. 집착. 입양기관 방문
	계획	공개하지 않을 것임 5-6세경 공개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 성인이 되면 뿌리찾기	5-6세경 공개할 계획임	공개하지 않을 것임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가 되면 알려줄 계획임	성인이 되면 만나달라고 요청함 없음
양육 경험	양육경험	어려움이 없음 친생자와 다르지 않음 몸이 힘듦	친생자 양육과 다르지 않음 어려움이 없음 몸이 힘듦 재정 부담 양육하기 어려움 잘 양육하고 있	예뻐짐 극진하게 돌봄 정신없이 키움	개성 존중 시설생활의 영향을 느낌 입양아만의 절대 고독 객관적이고 건강하게 키울 수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개별	무자녀 개별	집단
		양육의 고단함 시설생활의 영향 입양아동만이 갖는 외로움 재정 부담 다양한 양육방식	음		있음 예측불가능, 불필요한 기대를 안 함
	친생자녀와 경험 차이	차이 없음 유전적 차이 시설생활의 영향 마음가짐 입양 이슈 주위의 시선 지원을 받는다는 것	입양지원체계의 관리를 받음 유전적 차이 마음가짐이 다름 두려움과 입양 이슈 특별한 기분들 시설생활의 영향 주위의 시선	차이 없음	
	애로사항	입양절차가 까다로움 양육경험이 없이 돌보기 어려움 자녀 또래 부모들과 어울리기 어려움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발달단계에 따른 입양이슈 준비 질병과 문제행동들 잘 적응함	입양절차가 까다로움 입양이슈(애도)가 염려됨 발달시기 따른 입양아동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양육경험이 없이 신생아를 돌보는 것이 어려웠음 자녀 또래의 부모들과 어울리기 어려움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이 큼	잘 적응함 예뻐졌다는 말을 들음 이식증, 애정결핍 대상포진(입양모)
	양육정보	필요 없었음 교육이 도움이 안 됨 혼자 터득 사회집단 책과 자료 친생자녀 양육경험	친생자녀 양육경험 필요 없었음 혼자 터득 캠프 책과 사람	교육을 받았으나 도움이 안됨	
	도움	양가 부모	양가 부모님	도움이 안 됨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개별	무자녀 개별	집단
	받은 경험	입양기관과 단체	입양기관과 단체 친생자녀와 배우자	친정엄마 도움	
		친생자녀와 배우자			
		도움이 안 됨			
입양 자녀 적응 과정	부모자녀	순적응	순적응 몸이 힘듦 처음부터 친생자녀 같았음	무리 없이 애착 형성 육체적 힘듦	
		친생자녀와 다르지 않음			
		몸이 힘듦			
	형제자매	손위형제와 라이벌	손위형제 퇴행/질투 일반가정과 다르지 않음(티격태격) 친생자녀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침 친생자녀들이 원했음 형제자매들이 아기를 예뻐함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해줌	큰 문제없음	
		일반가정과 다르지 않음			
		친생자녀들에게 긍정적 영향			
		입양자녀를 예뻐함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해줌			
	또래	잘 어울려 지냄	잘 지냄 / 친구들에게 공개	잘 어울림	
		친구들에게 입양사실 공개			
	문제행동	애도 반응	애도 울음 손톱 뜯기 식탐 이상 성격	밥을 잘 안 먹음	
		섭식장애			
		이상행동			
		이상성격			
입양 단체	유형 /소속	참여하지 않음	없음 한국입양홍보회 입양기관 입양가족모임 기타 입양가족모임 스터디, 카페 등	없음 지역모임	입양가족모임
		입양기관 자조모임			
		한국입양홍보회			
		기타 입양가족모임			
		스터디, 카페 등			
	활동내용	자연스러운 논의	자연스러운 논의 입양아동 상담 번역, 캠프 모임, 놀이 정보공유	없음 분기별 만남	모임참여, 번역 부모교육
		분기별 만남, 놀이			
		정보 공유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개별	무자녀 개별	집단
		상담, 부모교육			
		번역 등 전문활동			
	욕구	없음	번역 등 활동 입양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입양아동 발달에 대한 모임 활성화 발달에 따른 정보제공	없음 입양 사후교육	입양아동 중심의 부모교육 실제적 교육
		입양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입양아동 발달단계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입양 사후교육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공식 지원	지원받는 내용	모름	모름 안받음 양육수당, 의료급여 지자체 지원 치료지원	양육수당 사후관리는 못 받음	양육수당 의료급여
		안받음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심리치료 지원			
		지자체 추가지원			
	지원 경험	양육수당 책정기준이 이해되지 않음	양육수당에 대한 오해 정책 우선순위 조정 책정기준이 이해 안됨 지원을 왜 하는지 이해 안됨 사회적 지지 차원에서 좋음	관심이 없음	많이 주면 좋음 양육미혼모 지원이 바람직
		왜 지원하는지 이해되지 않음			
		정책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함			
		관심이 없음			
		양육수당에 대한 주변의 오해			
		사회적 지지라는 차원에서 필요함			
		많이 주면 더 좋음			
	지원 욕구	입양부모교육	입양부모교육 입양인 발달주기에 맞는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	없음 교육비 지원 확대	
		입양아동 발달에 맞는 프로그램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개별	무자녀 개별	집단
		양육수당 확충	양육수당 증액-연장 심리치료지원서비스 확대 정보제공		
		심리치료지원 확대			
		정보제공			
		교육비 지원 확대			
	특수 욕구	공무원 교육	공무원 교육 의료급여 처리 지지집단 입양연구 입양기관의 중개역할 입양가정 조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입양부모교육 입양가족과 부모를 위한 상담지원	없음 대학등록금	생모 정보 입양당사자 포괄하는 교육
		의료급여 처리방식			
		입양연구			
		입양기관의 개입			
		실제 도움이 되는 입양부모교육			
		입양가족과 부모를 위한 상담			
		대학등록금			
		입양당사자들을 포괄하는 교육			
사회적 인식	편견	입양부모에 대한 인식	양육수당에 대한 오해 입양에 대한 균형 잡힌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입양부모가 아닌 입양아동의 입장 고려 입양아동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소문과 수군거림 부정적 메시지	편하게 받아들여 주면 좋겠음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으면 좋겠음 입양아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으면 좋겠음	외모에 대해 함부로 얘기함 부정적인 옛말 존경, 선한 일이라는 말 조부모의 핀잔 친생부모 관련 공개는 아이가 결정해야 할 일 입양아동-부모가 안 맞을 것이라는 편견 내 자식처럼...
		입양아동에 대한 편견			
		입양아동과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말, 행동			
		소문과 수군거림			
		지인들의 부정적 태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심층면담 결과임.

〈부표 Ⅴ-2-2〉 아동기 입양가정의 양육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입양 절차	입양동기	결혼 전부터 생각함	결혼 전부터 생각 측은지심 친정아버지 권유 종교적 의무 더 많은 자녀·형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주위의 입양가정	불임 주위 입양가정 입양 조카 권유 배우자 권유 시부모 권유 교회에서 입양관련 설교와 간증 형제가 필요함 손위형제가 원함 형제 만들기 입양사실 공개 수월
		가족의 권유		
		양가 부모의 권유		
		종교적 의무		
		주위의 권유와 모델링		
		더 많은 자녀를 원함		
		불임/난임		
	결정과정	부부 합의	양가 부모의 반대 설득 또는 밀어 붙임 입양 상담 기도하며 준비 배우자의 주도	기도로 준비하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결정 위탁가정에 갔다가 불쌍한 마음이 듦 입양 위해 건강검진을 받다가 병 발견 입양가족모임에 참여하면서 준비함 양가 반대에도 내 자식 내가 키울 거라는 결심 남편과 의논하고 부모님께 통보
		배우자의 주도		
		양가 친척의 반대		
		반대를 극복하기		
		기도하며 준비함		
		입양가족모임에 참여하며 준비함		
		측은지심		
		목사님 말씀 듣고 결정		
	추진과정	가족의 결정	가족의 결정 입양상담과 신청 부모교육 기다림 입양기관의 연락/요청 선 보기 내 아이라는 느낌 사적 입양 미혼모와 직접 연락하여 입양함 임신 중 입양 진행. 쌍둥이처럼 양육 경찰신고-시설-위탁-입양	입양 신청 기다림 기다리는 시간은 천차만별 아동의 건강문제 조건을 맞춤 위탁으로 데려옴 절차가 복잡함
		상담과 신청		
		부모교육		
		기다림		
		선 보기		
		내 아이라는 느낌		
		사적 입양		
		임신 중 입양진행		
		갑자기 빠르게 진행됨		
입양	부모교육	정규 교육	도움이 많이 됨	정규교육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준비		일반적인 내용 도움이 많이 됨 아쉬움 발달단계에 따른 사후교육이 필요함 입양부모들의 경험담이 도움이 됨	한번 교육으로는 아쉬움 발달단계에 따른 사후 교육도 필요함 입양가족단체의 교육 입양부모들의 경험담이 도움이 됨	일반적 내용
입양 전 만남	경험	생모와 만남 위탁가정에서 만남 선을 봄	생모와 연락함	위탁가정에서 만남 선을 봄 안아 봄
	보호형태	사적 입양 가정위탁	사적 입양 위탁가정	가정위탁
사전 정보	친생부모	정보 없음 기본 정보 임신, 출산, 입양 사연 상세한 정보	정보가 없음 기본 정보 임신과 출산, 입양하게 된 사연 매우 구체적인 정보 미래에 만날 생각이 있는지 여부	기본 정보 가족 배경 임신, 출산, 입양 사연 신경 쓰지 않음
	입양아동	정보 없음 기본 정보 출생 후 정보	빈약한 정보 기본 정보	정보 없음(기아) 생후 패턴 사진, 탯줄, 발 도장
가정 변화	가족관계	아이 위주로 돌아감 배우자의 변화 부모가 젊어짐 가족이 화목해짐 양가 친척의 사랑을 받음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	입양 전에는 불안했으나 집에서 보니 편안하고 행복함 처음 느끼는 행복 가족이 더 화목해짐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 영향 배우자의 변화 부모가 젊어짐	아이 위주로 돌아감 남편이 아이 중심으로 바뀜 가족 간 유대가 끈끈해짐 양가에서 아이들을 사랑해줌
	생활	잠이 부족해짐 수유 울음과 혼란 집에 와서 앓음	잠이 부족해짐 수유 울음과 혼란	입양가정에 와서 앓음
공개 경험	입양사실 공개하기	아직 모르고 있음 생각이 없었음 방법을 몰랐음 처음부터 공개입양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이야기함	생각이 없었음 방법을 몰랐음 처음부터 공개입양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이야기함. 동화책을 읽으면서 전	애초에 공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함 아이가 먼저 물어봄 입양 동화 읽어주기 입양가족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동화책 활용 입양가족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입양한 시설 방문 동생 입양을 지켜봄, 형제 간 대화 임신, 출산에 대해 배우면서 먼저 물어봄	해줌 입양가족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함 입양한 시설을 찾아감 동생을 보면서 공개함	인식을 심어줌 어린이집에서 출산에 대해 배워오면서 이야기하게 됨 형제들을 통해 입양사실을 접함 입양캠프에 가서 이야기하게 됨 아직 모르고 있음
	입양이슈 다루기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불안 정서 상실과 애도 반복되고 점점 구체화되는 질문들 발달수준에 맞는 이해 엄마에게 붙어있기 친생모에 대한 환상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양되었다고 말함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물어보게 함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불안 정서 상실과 애도 반응 주위에도 입양인이 많다는 걸 알게 함 반복되고 구체화되는 질문과 답변들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는 나름의 이해 엄마에게 붙어있기 가족의 성장을 경험함	아이가 교사에게 물어봄(교사도 알고 있어서 사실대로 얘기함) 친생모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음 친생모는 다르게 양육할 거라고 말함 자라면서 입양 사실을 숨김 아이의 성향에 따라 공개 여부와 시기를 정해야 함 눈만 뜨면 입양에 대해 말하고 질문함(물어볼 때마다 반응해줌) 입양기관을 찾아가서 물어보게 함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입양되었다고 말함
	주위에 공개하기	자연스럽게 알게 됨 물어보면 대답함 선별적으로 공개함 자녀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함 교사에게 이야기함 다양한 영향 편견이 생길까봐 걱정됨 주변의 시선과 반응에 힘들었음	주변의 시선과 반응에 힘들었음 자연스럽게 알게 됨 물어보면 대답함 선별적으로 공개함 자녀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함 교사에게 이야기함 다양한 영향 편견이 생길까봐 걱정됨	
	친생부모에 대해	뿌리찾기의 선을 그어둠	뿌리찾기의 선을 그어둠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이야기 하기	만날 의향이 있음	성인이 되면 만날 의향이 있음 생모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함 물어볼 것이 있음 캠프에 다녀와서 생각하게 됨 애도 반응 친생부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함 자녀가 가끔 물어봄 친생모를 존중하고 감사함	
		애도 반응		
		친생부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함		
		자녀가 물어봄		
	계획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공개할 것임	뿌리찾기에 대한 고민	성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말하고 싶음
	친생부모와 관계	없음	없음	없음 아이가 원하면 찾아주고 싶음 아이에게도 만나게 해 줄 수 있다고 말함 친생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함
		아이가 원하면 찾아주고 싶음		
		친생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함		
양육 경험	양육경험	양육이 쉬웠음	지적장애 검진-심리치료와 언어치료-선택에 대한 후회-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함-다양한 활동-예체능 재능 발견-홈스쿨링-중학교 진학 혼자 양육-양육이 쉬웠음-자상한 남편이 돌봐줌-육아 스트레스가 적음-분유를 먹이는 것이 마음아픔-부모자녀 관계에 집중함-홈스쿨링	사춘기가 되면서 교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함 심리 상담을 받으러 다님 정서불안을 보임 편하게 양육함 훈육할 때 항상 아이가 편지를 씀
		편하게 양육함		
		배우자가 돌봐 줌		
		심리적 어려움과 장애		
		치료 받으러 다님		
		홈스쿨링		
	친생 자녀와 경험 차이	차이를 모르겠음	입양자녀의 다름을 인정함 차이를 모르겠음 다르지만 그건 기질과 형제순위의 영향	사춘기 문제가 입양 때문인지 혼란스럽고 불안함 출산자녀였으면 안 해봤을 생각 나를 닮은 구석이 하나
		다름을 인정함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기질과 상황의 영향		도 없고 이해가 안 갈 경우가 많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
		입양 때문인가?		
		출산했더라면 안 해봤을 생각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		
	애로사항	언어발달 지체	언어발달 지체 생모의 태내 환경 때문에 뼈가 휨. 재활과 교정을 해야 함	사춘기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음 더 산만해짐 쉽게 소진됨
		신체발달 문제		
		더 다루기 어려움		
		사춘기		
		쉽게 소진됨		
	양육정보	당황함	낯선 시기와 이슈들에 당황함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함	입양가정 사이트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함		
		입양가족모임 사이트		
	도움 받은 경험	상담	상담 공감 지지	친정엄마 도움
		공감		
		지지		
		친정엄마 도움		
입양 자녀 적응 과정	부모자녀	기 싸움	기 싸움 가식적으로 보임 절충과 안정	애착이 형성됨
		절충과 안정		
		애착이 형성됨		
	형제자매	기질이 다름	티격태격 예뻐해 주고 잘 챙겨줌 사랑하면서도 경쟁 함께 입양 이슈를 다룸	기질이 다름 동생의 입양사실을 모름
		라이벌		
		티격태격함		
		예뻐하고 챙겨줌		
		함께 입양 이슈를 다룸		
	또래	적응력이 좋음	홈스쿨링을 해서 학교 친구는 없지만 다양한 친구를 사귀고 있음 성격이 좋아 친구가 많음 입양사실 공개 후 아이들 반응에 충격을 받음.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 반편견입양교육 진행	기질 때문에 걱정됨 유치원에 가서 부드러워지고 자신감도 얻음 교사의 영향 적응력이 좋음 집단 따돌림을 받음(우울, 자존감 하락, 대인기피증)
		친구가 많음		
		다양한 친구를 사귐		
		교사의 영향		
		입양아동의 변화		
		공개 후 반응에 놀람		
		집단 따돌림을 받음		
입양 단체	유형 /소속	참여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음 한국입양홍보회 입양기관 자조모임 교회 내 입양가족모임	한국입양홍보회 지역모임 입양기관 자조모임
		한국입양홍보회		
		입양기관 자조모임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기타 입양가족모임		
	활동내용	모임 활동	교회모임: 기도, 일상 대화 모인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됨 공개입양 이슈 다루기	모임 활동 교육 양육경험 공유 캠프 공개입양을 꺼려함
		양육경험 공유		
		교육		
		공개입양 이슈 다루기		
		생활 나눔		
		캠프		
	욕구	입양부모교육	부모교육 공개입양 이슈 다루기 교육 정보공유 모임 동질감	입양부모 자신의 심리적 건강이 필요함 건강하게 자란 성인입양인 사례 공개입양 이슈(주위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기)에 대한 교육
		공개입양 이슈 관련 교육		
		정보공유 모임		
		다양한 성인입양인 사례 접하기		
공식 지원	지원받는 내용	양육수당	양육수당 의료급여 입양수수료 안냄 심리치료지원	양육수당 의료급여 심리치료지원
		의료급여		
		입양수수료 지원		
		심리치료지원		
	지원 경험	고맙게 생각함	안받아도 상관 없음 비밀입양 가정의 공개 문제 잠재적 범죄자 취급 미래가 걱정임 병원에서 물어봄 심리치료지원 제도에 대해 몰랐음 심리치료의 질적 차이 양육수당으로 인한 입양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 양육수당의 금액에 대한 오해 입양아동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않아 도움 받을 곳을 찾아다님 이전에는 자비로 심리치료를 받음 양육수당에 감사하며 잘 쓰고 있음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하지 않음	양육수당 신청할 때 공무원의 시선이 불편했음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임 주는 거라 받지만 내 아이인데 왜 받지라는 생각이 듦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아둠 유용하게 잘 쓰고 있음 의료급여는 선결제 후 처리 입양아동 심리치료의 선택권이 다양하지 않음 치료가 될지 안 될지 막연함 심리치료지원이 예산 문제로 중간에 끊김
		유용하게 잘 쓰고 있음		
		안 받아도 상관 없음		
		내 아이인데 왜 받아야 하지라는 의문		
		양육수당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와 편견		
		지원제도를 몰랐음		
		의료급여 처리시 불편함		
		심리치료지원이 충분하지 않음		
		지방에는 심리치료기관이 마땅치 않음		
		공무원의 시선과 태도		
	지원 욕구	예비입양부모 스크리닝 강화	스크리닝 강화(약물검사와 함께 심리적 강	장기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함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예비입양부모 교육 전문적인 사후관리 입양부모 멘토링 장기적, 집중적인 심리치료 지원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입양절차 간소화	화가 필요함) 전문적인 사후관리 입양아동의 애도기간에 상담비용 지원 입양기관의 장기적인 사후관리 예비입양가정 대상 부모교육 멘토링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입양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포기하는 가정들이 있음 의료급여 1차 기관 의뢰서 생략바람
	특수 욕구	입양특례법 개정 입양기관에 맡기고 정부가 감독하길 바람 입양 전달체계 재구성 다양한 입양가족들이 어울릴 수 있는 모임	입양특례법 개정에 의한 제도의 개선 입양기관에 맡기는 것이 나음 입양 전달체계의 재구성	입양특례법 개정이 필요함 입양기관에 맡기고 정부가 감독하길 바람 다양한 입양가족들이 어울릴 수 있는 모임 ADHD에 대한 지원
사회적 인식	편견	교사들의 편견이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 양육수당에 대한 오해와 편견 입양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친척 체계의 편견 입양부모를 향한 지나친 칭찬 입양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편견 입양부모 자신의 편견 지인들의 호기심 뉴스와 드라마에 비치는 오해와 편견들	교사들의 편견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줌. 교사교육이 필요함 연예인 입양부부의 TV 출연 이후 긍정적 분위기가 느껴짐 입양가족을 향한 불필요한 질문들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역할 친척 체계 내에서는 극복하기가 힘듦 혈육에 대한 생각 칭찬도 병 친한 친구들도 궁금해함 드라마 효과	교사들이 색안경을 끼고 봄 양육수당과 관련된 편견(돈 때문에 아이를 키운다) 사회적 편견이 제일 무서움 난임 부부들에 대한 교육 입양부모를 대단하다며 칭찬하는 말들 입양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편견 입양부모 자신이 입양아동에 대해 갖는 편견(입양해서 그런가?) 뉴스나 드라마를 통해 전달되는 잘못된 정보와 인식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심층면담 결과임.

〈부표 Ⅴ-2-3〉 청소년기 입양가정의 양육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입양 절차	입양동기	결혼 이전의 생각 난임 (임신 안됨) 선한 의지 우연한 기회에 만남 더 많은 자녀·형제 입양기관 권유 주위의 권유	젊은 시절 봉사경험 위탁가정 광고 사회에 좋은 일을 찾으며 고민하다가 인연이 됨 친생자녀가 조름 형제자매 만들어주기 입양기관 권유 봉사활동에 가서 만남	몸이 약함 불임 난임 진단 인공수정, 시험관 실패 시부모님이 입양 권유
	진행과정	가족이 결정 입양 신청 아기를 만남 위탁으로 보호 늦거나 빠르거나	시부모님 사망 직후 신청 위탁하다가 입양을 결정함 배우자가 동의하여 가족이 함께 결정함 입양이 안되는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입양을 결정함 첫 눈에 반함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기 위해 입양함	입양기관에서 아기를 봤는데 안 예뻤음. 소장의 말에 마음이 아파 데리고 옴 교회 방송에서 입양 이야기를 들음. 입양기관에 가서 상담 시부모님 권유 후 바로 입양결정 빨리 진행됨 개인 사정으로 1주 미뤄짐
입양 준비	부모교육	이전 양육경험 기다리며 준비함 8시간 정규교육 위탁부모 교육 입양부모교육	8시간 정규교육 위탁모 교육 입양부모교육	조카 양육경험 일주일 미루고 기다리며 준비함
입양 전 만남	경험	본 적 없음 한번 봄 위탁보호	입양 전에 본 적 없음 위탁하다가 입양	없음 한번 봄
	보호형태	시설-위탁-입양 시설-입양	일시보호시설-위탁모-입양 시설-입양	
사전 정보	친생부모	전혀 없음 기본 정보와 사연 구체적인 정보 친생부모를 만남	전혀 없음 기본 정보와 사연 구체적인 정보 친생모의 편지 친생부모를 만남	기본 정보 입양하게 된 사연 정보를 받지 못함
	입양아동	기본 정보 신체 정보 의료기록	태명 신체 정보 의료기록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가정 변화	가족관계	아기 표정이 좋아짐	아기 표정이 좋아짐 아이 위주로 가정이 돌아감 친생자녀들이 입양자녀를 예뻐함 친정엄마가 반대했는데, 지금은 예뻐함 친정부모에게 장한 일 했다고 칭찬받음	모두 예뻐함 화목해짐
		아이 위주로 가정이 돌아감		
		입양자녀를 예뻐함		
		화목해짐		
		칭찬 받음		
	생활	매우 좋음	매우 좋음 형제끼리 우애가 좋아 더 좋음 외할머니가 구박함. 이혼 후 입양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고 언짢아함	
		우애가 좋아짐		
		외할머니가 구박함		
	부모됨	양육경험이 있어 어렵지 않았음	자녀양육 경험이 있어 무난했음 자신이 있었고 어려운 점은 없었음	
		자신 있었음		
공개 경험	입양사실 공개	알아들을 때부터	아동이 5-6세 때 입양에 대해 설명해줌 입양모임을 다니면서 알게 됨. 입양 형제가 이야기해줌 입양아동에 의한 공개	4세. 입양가족모임 가서 알려줌 어릴 때부터 이야기 해줌 스스로 입양사실얘기하고 다님 3학년 때 울음 아동과 교회에 공개
		4-6세 때 이야기함		
		입양가족모임에서		
		입양형제가 알려줌		
		입양아동 스스로 얘기하고 다님		
		교회와 학교에 공개		
	입양사실 다루기	사실을 말해줌	5세. 엄마 뱃속에서 나왔나 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얘기해줌. 울어서 달래줌. 초등 3학년때 뿌리찾기. 이후 질문이 없음. 6세 때 가슴으로 낳았다고 알려줌. 입양시설 방문함 '왜 하필 나였냐'는 물음에 충격 받음 입양사실을 얘기해 준 후로 스스로 얘기하고 다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말을 안함. 초등 4학년 때 고아라고 소문이 나서 많이 울었음.	학교에서 잘 넘어감 교사에게 입양사실을 잘 말해달라고 부탁함 친구가 공개하여 곤란한 적이 있음
		울어서 달래줌		
		뿌리 찾기		
		질문에 답함		
		입양한 시설 방문		
		충격 받음		
		크면서 얘기를 안함		
		입양모임에 가지 않으려고 함		
		교사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함		
		친구가 입양사실을 공개하여 곤란해진 적이 있음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사춘기 이후 얘기하지 않음 입양모임에 가지 않으려고 함	
양육 경험	양육경험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음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음. 36개월까지 애착형성을 위해 노력함 ADHD과 신체적 증상들 때문에 치료함. 발달수준 때문에 미래에 대해 걱정됨 입양부가 다 양육함(예뻤음) 사랑을 받으려고 예쁜 행동을 함 성장하면서 다르게 생겼음을 실감함. 사람은 원래 다름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짐.	순하게 잘 자라고 있음 5학년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음. 학교에 불려 다님.
		잘 자라고 있음		
		예쁜 행동을 함		
		문제를 경험함		
		성장하면서 다름을 경험함		
		미래를 걱정함		
	친생자녀와 경험 차이	까다로운 아이	까다로운 아이 뱃속에서 다시 낳아달라고 함 친생자와 달리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함 친생자는 엄하게 키웠는데 입양아는 전혀 그렇지 못했음	
		뱃속에서 다시 낳아달라고 함		
		예측하기 어려움		
		입양자녀에게 관대함		
	애로사항	입양사실을 알고 괴로워함	입양사실을 알고 2년 동안 괴로워함. 그걸 보는 것이 매우 괴로웠음 ADHD 때문에 사회성이 낮아져서 힘듦	
		자녀가 괴로워하는 걸 보는 것이 괴로움		
		사회성이 낮아져서 힘듦		
	양육정보	입양가족모임을 통해 얻음	입양가족모임 친척과 같은 기능	
	도움 받은 경험	혼자 양육	입양모가 혼자 양육 친정엄마의 양육 도움 입양가족모임의 정서, 정보 지지	입양부모모임의 도움을 받음 시부모님 도움 교회에서 도움 정서적 지지 교인들과 목사의 정서적 지지
		양가 부모님의 도움		
		입양가족모임의 지지		
		교회와 교인들의 지지		
입양	부모자녀	36개월까지 부모와	36개월까지 부모에게서 떨	신생아입양이라 잘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자녀 적응 과정		떨어지지 않음	어지지 않음. 5세에 독립 이혼 후 아빠를 그리워함	적응함 사춘기에 심각했는데, 나아짐
		신생아입양이라 잘 적응함		
		사춘기에 심각하다가 나아짐		
	형제자매	친생자녀들이 돌봐줌	친생자녀들이 입양자녀를 잘 돌봐줌 첫째인 친생자와 셋째인 입양자녀가 성격이 똑같아서 둘째가 소외됨 입양에 대한 의식이 없이 자연스러움 부모 이혼 후 큰 형이 아빠 노릇	
		형제들 사이의 삼각관계		
		자연스러운 관계		
		손위형제가 아빠 노릇		
	또래	친구들에게 입양사실 공개	스스로 입양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림 5학년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음 ADHD로 또래관계 어려움 입양사실이 소문 남	
		따돌림을 당함		
		ADHD로 또래관계 어려움		
		입양사실이 소문 남		
	문제행동	문제 없음	훈육을 안할 정도로 문제 없음 ADHD, 도덕성, 말을 막함	
		다양한 문제행동		
개방 입양	친생부모와 관계	만난 적이 있음	친생부모를 만난 적이 있음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함 더 이상 궁금해 하지 않음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함		
입양 단체	유형/소속	한국입양홍보회	한국입양홍보회 입양기관 자조모임	입양기관 지부 모임 한국입양홍보회 입양소모임
		입양기관 자조모임		
		입양 소모임		
	활동내용	모임 활동	부모모임 자녀 또래모임 집단상담치료모임 캠프 사례발표, 친목도모	정보 공유 입양모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함 입양이슈 논의 교육 일기마을 글쓰기
		정보 공유		
		상담과 치료		
		캠프		
		사례발표		
		입양이슈 논의		
		일기쓰기		
	욕구	입양아동 자조모임	입양아동 자조모임 캠프 활성화 입양부모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모임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불만 입양부모 모임이 활발해지면 좋겠음
		입양부모모임 활성화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입양기관 사후관리		
공식 지원	지원받는 내용	양육수당	양육수당 의료급여 양육보조금 심리치료지원	양육수당
		의료급여		
		양육보조금		
		심리치료지원		
	지원 경험	양육수당: 내 자식 키우는 데 돈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	지자체 담당자가 바뀌면 지원이 가끔 끊김 치료가 끊길지 몰라 염려됨 의료급여는 1종이라 1차 기관을 들렀다가 가야하는데 급해서 못 갈 때는 차라리 의료급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내 자식 키우는데 돈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었지만 입양가족들이 당당하게 받으라고 함
		의료급여: 1차 기관을 들어야 해서 불편함		
		심리치료지원이 끊길지 몰라 염려됨		
	지원 욕구	18세까지 양육수당	부모 연령을 고려한 교육비 지원 18세까지 양육수당 지급 경제적 지원(치료비) ADHD,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교육지원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지원 사교육비 지원 대학 교육비 지원
		치료비 지원		
		심리사회치료 지원		
		교육비 지원 확대		
	특수 욕구	각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각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무료 쿠폰 미혼모 자산 지원 입양부모교육시 공개방법과 이슈 논의 ADHD나 틱 장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지원바람 심리검사 추가 지원 입양부모 교육 활성화 국가 주도의 입양사업 활성화	
		미혼모 지원		
		입양부모교육 심화		
		장애아동 치료지원		
		심리검사 추가지원		
		국가 주도의 입양사업 활성화		
사회적 인식	편견	가짜 엄마라는 편견	가짜 엄마랑 산다는 편견 입양아라고 하면 나쁘게 보는 편견 입양아와 친생자가 이성일 경우 친한 것을 오해함 친생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입양아도 똑같은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들은 그렇게 안보는 것 같음 사춘기 입양아동 파양 전화상담	동네 어르신이 아이에게 어디 고아원에서 왔냐고 물어봐서 충격 받고 이사함 초등학교 학생기록부에 입양사실 기록. 교사가 더 문제 있게 본 것 같음 입양이 됐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
		입양아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편견		
		남매관계에 대한 오해		
		친생자녀와 입양자녀를 다르게 대할 거라는 편견		
		친구들의 편견이 담긴 이야기		
		교사가 입양되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영역	하위영역	범주	유자녀	무자녀
		연락함	친구들의 편견이 담긴 이야기 학교 교사가 아이가 입양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 전화함 학교 교사가 미워하고 때린 적이 있어 찾아감 바람을 피워 낳아온 자식이 입양아보다 낫겠다는 말 입양아이기 때문에 사춘기를 현란하게 보낸다는 생각 입양아는 태교를 잘 못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	는 것 같음. 시누이가 공개하지 말라고 함 좋은 일 했다는 얘기를 들음 입양아는 문제아일 거라는 생각 좋은 일 한다는 생각 입양모는 친생모와 다른 것이라는 편견
		학교 교사의 부정적 태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편견		
		입양아동은 태교를 잘 못 받았을 것이라는 편견		
		입양모는 친생모와 다르다는 편견		
		편견을 말로 표현함		
		학생부에 입양 사실을 기록함		
		좋은 일 하셨다는 말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심층면담 결과임.

〈부표 Ⅴ-3-1〉 연장아동 입양가정의 양육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영역	하위영역	범주	1세 이상	3세 이상
입양 과정	입양동기	결혼 전부터 생각함	만혼/유산 난임 인공수정/시험관 대중매체에서 입양가족 얘기를 들음 입양기관 방문 선배 입양가족 이야기를 들음 공부하면서 준비 첫 입양자녀에게 편을 만들어주고 싶었음 남자아이들이 입양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양가에서 권유 애들이 없어서 평범하지 않게 느껴짐 입양가족이 좋아 보임	결혼 전, 어린 시절부터 입양을 생각함 남편이 입양을 집요하게 얘기함 남편의 선배를 통해 입양을 접함 친정 식구들이 지지해 줌 아이가 유독 남편을 매우 잘 따름 아이가 시설에 돌아가기 싫어함 외국에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보며 입양을 생각함 15년간 불임,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됨 남편이 흔들렸지만 강력하게 밀어붙임
		만혼/유산		
		난임		
		배우자의 주도		
		양가 부모, 친척의 권유		
		주위의 입양가족을 봄		
		대중매체에서 입양 이야기를 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입양기관, 시설에서 아이를 만남		
		애들이 없어서 평범하지 않게 느껴짐		

영역	하위영역	범주	1세 이상	3세 이상
	내부 장애물	유전에 대한 두려움 아이가 경험할 어려움을 생각함 미래의 어려움을 예견함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함 아이를 편하게 키우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함	유전병이 있지 않을까 무서웠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무서웠음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아이가 학교 가기 시작하면 아이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함 법적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서 아이를 편하게 키우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함
	외부 장애물	양가 부모 반대 배우자의 반대와 갈등 입양절차가 너무 오래 걸림 입양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음 친생부모가 동의서를 써주지 않음	친정 부모 반대 남편의 반대와 갈등 공공기관에서 처리가 잘 안됨	양가 부모님의 상황 또는 반대 입양절차가 너무 오래 걸림 입양 과정에서 법률과 행정, 실무 수준에서 고충이 있었음 친생부모가 동의서를 써 주지 않아 1년이 됨
	공식입양 절차	상담 부모교육 기관방문 심리검사와 건강검진 선 보기 가정위탁 보호 기다림 법원 판결 사후관리 특이사례: 아이를 직접 발견하고 경찰서에 신고한 뒤 출생신고도 해주고, 시설에 방문하여 보다가 입양함	상담 2회 부모교육 8시간 기관을 방문하여 아이와 놀아줌 심리검사와 건강검진 선 보기 바로 집으로 데려옴 기다림 서류로 공식 입양신청	입양특례법 개정 전에 입양. 아이를 직접 발견하고 경찰서에 신고한 뒤 출생신고도 하고 입양함 입양기관 신청 후 주 1회씩 만나 적응하고 입양함 입양기관 신청 신청 후 4개월이 지나 아이를 만남 8시간 부모교육 / 부모교육 없이 인터뷰와 가정조사를 받음. 가정위탁으로 보호 법원 판결 서류접수하고 2개월 후 데려왔으며, 7개월만에 판결. 사후관리-가정방문
	딸을	남자아이는 감당이		남자아이는 감당이 안

영역	하위영역	범주	1세 이상	3세 이상
	입양한 이유	안 됨		됨
		친생자녀의 성과 나이를 고려하여 더 나이 많은 여아를 입양함		친생자녀와 동성을 입양하기로 했는데 상황 등을 고려해 친생남아와 2살 터울의 여아를 입양함 친자보호를 위해 터울이 적은 여아를 입양함
입양 과정에 대한 경험	입양절차 경험	입양기관 실무자들의 불친절한 태도		입양기관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
		막막한 기다림		막막한 기다림
		입양부모를 선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강화되어야 함		각종 검사들이 치밀하지 못함 인격은 훌륭하지만 다른 사정으로 입양을 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음
		법적 절차에서 입양부모를 심판하는 분위기		면접검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입양절차가 길어져서 아이와 관계형성이 어려움		조사관과 상담기관 평가자가 같이 조율하여 협의가 되면 좋겠음 입양절차가 길어져서 관계 형성이 어려워짐
		친생부모 정보가 서류에 표시됨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가 서류에 표시됨
	부모교육 욕구	입양사실 공개방법		입양사실 공개방법
		입양이슈 대처방법		입양이슈 대처방법
		의사소통 방법		아이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연장아 입양사례		연장아 부모 사례가 없어서 아쉬웠음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사전 정보	친생부모	정보가 없음	입양기관에서 전화로 설명하고 괜찮은지 물어봄 방문하여 만남	정보가 없어 안타까움
		기본 정보		기본 정보
		구체적인 정보와 사연		구체적인 정보와 사연
		방문하여 만남		
	입양아동	정보가 부족함	기본 정보 출생 후 생활에 대한 기록	정보가 부족함
		기본 정보		기본 정보
		출생 후 생활, 건강기		건강검사 CD, 사진

영역	하위영역	범주	1세 이상	3세 이상
		록, 사진 등	사진-USB	
입양 가족의 적응	양육경험	정신없이 바빠짐	정신없이 바빠짐 모임에 더 자주 나가게 됨 아이들이 없었으면 외로웠을 것임 아이들마다 서로 다른 경험	아이를 키우면서 적극적으로 바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짐 용기가 생김 에너지가 솟음 아이를 위해 모임에 자주 참석하게 됨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더 예뻐 보임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있음 남편이 매주 아이들과 놀아줌 남매간에 소중함을 알도록 교육함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있음
		내 성향이 바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짐		
		아이들마다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됨		
		힘이 솟음		
		모임에 자주 참석하게 됨		
		양육에 대한 자신감		
		애착관계가 형성됨		
	양육의 어려움	자아가 많이 생김	자아가 많이 생김 아이의 에너지가 넘침 장거리로 모임을 다님 훈육 방법을 모르겠음 남편과 양육방식이 다름 사춘기 때 입양으로 인한 여파가 있지 않을까 걱정	시댁 조카들이 아이만 빼고 놀면 마음이 불편함 아이가 원해서 개명 신청했지만 기각됨 친정어머니가 입양자녀와 친생자녀를 차별함 법원 개명신청을 통해 입양자녀의 이름을 4번 바꿈 입양자녀가 친생자녀보다 나이가 많은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됨(부모가 안볼 때 동생을 때리고 괴롭힘)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기소유예를 받음
		아이의 에너지가 넘침		
		훈육방법을 모르겠음		
		남편과 양육방식이 다름		
		사춘기 입양 이슈를 걱정함		
		친척체계에서 아이에 대한 차별		
		법원 개명신청이 어려움		
		입양자녀가 친생자녀보다 나이가 많을 때 위험요소		
		아동학대로 신고 됨		
	친생자녀	입양형제에 대한 애정과 부담	동생들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어짐 결혼해서 입양하겠다고 함	누나가 입양자녀를 예뻐하고 돌봐줌 동생에 대한 애증을 보임
		결혼해서 입양하겠다고 함		
	입양아동	친척들의 사랑을 받음		시누이가 잘 키워주고, 그 딸들이 입양자녀를 예뻐함
		어린이집 적응에 어		

영역	하위영역	범주	1세 이상	3세 이상
		려움 시설보다 아파트를 좋아함 시설생활의 영향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함 부모의 개념을 잡아감 식탐, 축농증, 퇴행행동		어린이집을 처음 갔을 때 적응을 못하다가 옮기고 나서 적응함 시설이 아닌 아파트에 사는 것을 좋아함 냉장고 문을 여는 버릇 아이가 섬세하고 영리하여 눈치를 볼 줄 앎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함 식탐이 강함, 입양 후 줄어들고 있음 ADHD 성향을 가지고 있음 부모의 개념을 바로 잡기 시작함 애정결핍이 있음 만성축농증 6살 때 이불에 소변을 봄
공개 경험	입양사실 공개	아기 때부터 이야기함 입양동화를 들려줌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당당하게 이야기하도록 함 대답을 회피함 부부의 불임 이슈 지역 특성: 비공개 어린이집과 교회에 공개함	숨길 성격이 아님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말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어려서 아직 얘기를 못함 입양 동화책 읽어주기 남들이 부부 중 불임의 원인을 찾으려 할까 봐 걱정됨	아기 때부터 이야기함 입양동화를 들려줌 아이는 대답을 회피하려 함 연장아이므로 입양에 대해 잘 얘기함 지역 특성상 비공개가 많음 아파트 주민들이 알게 됨 어린이집과 교회에 입양사실을 말함
	친생부모	기본 정보와 사연 일부 정보를 숨김 아이들이 친생부모 파일을 보면서 대화함 친생부모가 만나겠다고 하면 만나자고 이야기함 친생부모를 원망함 대중매체를 통해 아	친생부모 기본 정보와 사연, 아이의 생육사 정보를 갖고 있음 친생부모 파일을 아이들이 펼쳐보고 대화함 친생부모가 만난다고 하면 만나자고 이야기함 친생부모에게 원망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음	친생부모를 찾을 가능성을 생각하여 이름을 개명하지 않으려 함 아이에게 친생부모 정보의 일부를 숨김 베이비박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아이가 생모에 대해 더 이해함

영역	하위영역	범주	1세 이상	3세 이상
		이가 생모를 더 이해함		
	편견	지나친 칭찬 완전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친생부모에 대한 편견 입양부모에 대한 불편한 시선 입양부모 자신의 편견 어린이집에서 차별을 경험함 입양가족 지원에 대한 오해 혈연 중심 사고 불필요한 질문들	주변 사람들한테 동화되지 못함 지나친 칭찬 완전한 가족이라고 인식해주지 않음 친생부모의 행실이 안 좋을 것이라는 시선 주변 입양가족이 어린이집에서 차별을 느낌 굳이 공개할 필요성을 못 느낌	지역의 입양부모들로부터 기피대상이 됨 아동학대를 할 거라는 편견이 있음 얼마나 잘 키우나 보자라는 식의 태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할머니냐고 물어봄 불필요한 질문들을 함 동창 모임에서 모두 탈퇴함 시댁에 혈연 중심의 생각이 있음 입양부모 자신이 갖고 있는 시설아동에 대한 편견 초등학교 입학하고 입양사실을 말 안하는 것이 유리함 입양수수료 등에 대한 편견 한 불임가정이 우리를 보고 입양을 했으나 두 가정은 편견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함
사회적 지원	지원유형	양육수당 의료급여 심리치료지원 사후관리 지자체 교육비 지원	양육수당 지자체 교육비 지원 심리치료, 놀이치료 지원 사후관리	양육수당 의료급여 부모교육 심리치료지원
	지원경험	도움이 됨 시설아동 지원과 달라서 좋음 악용될 수 있음 지원은 바람직함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시설아동과 입양아동의 양육비 지원이 달라서 좋게 생각함 입양아동 수당지원은 악용될 수 있으므로 반대함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자녀 한명을 더 키우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영역	하위영역	범주	1세 이상	3세 이상
				감
	지원욕구	부모교육	사춘기 대처방법 교육 지역별 캠프 다양한 연령의 아동이 함께 하는 모임 분기별 교육과 사례발표 어린이집 순위 또래모임 지원	
		지역별 캠프		
		아동 자조모임 지원		
		어린이집 순위 상향		
입양 관련 모임	모임 유형	한국입양홍보회 지역모임	입양 후 모임이나 교육은 친목 차원 입양모임은 주로 학령기 이전 아이들 위주로 모임 SNS와 카페 참여 입양기관 자조모임 또래모임	한국입양홍보회 지역모임 입양기관 자조모임 자조모임 온라인 카페
		입양기관 자조모임		
		아동 또래모임		
		SNS와 온라인 카페		
	활동	자조모임 참여		자조모임 참여 홈페이지 일기쓰기 지역대표 캠프 참여
		홈페이지 일기쓰기		
		지역대표		
		캠프 참여		
사회적 인식과 변화 기대		입양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길 바람	끼리끼리 문화가 없어질 것임 입양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길 바람	언론의 편견이 담긴 메시지에 가슴이 아픔 불임 입양부모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연장아를 위한 심리치료지원 강화 연장아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은 신청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리되면 좋겠음 입양특례법 개선 연장아를 위한 배려가 필요함 입양체계 개선 입양아동의 개명 절차 간소화 입양부모만 따로 교육받을 필요가 있음 입양부모 멘토링 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끼리끼리 문화가 없어지길 바람		
		입양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메시지에 가슴이 아픔		
		연장입양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지원 강화		
		연장아동을 위한 지원은 신청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리되길 바람		
		입양특례법 개선		
		입양아동의 개명 절차 간소화		
		입양부모 교육과 멘토링		
		교육서비스 바우처 지원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심층면담 결과임.

〈부표 Ⅴ-3-2〉 장애아동 입양가정 개별면담 분석결과

영역	하위영역	범주	의미단위
입양 과정	입양 동기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자녀가 생기지 않음 연애할 때부터 입양을 계획함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하면서 소명을 갖게 됨 일에 쫓겨 살다가 신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바로 진행함 손위형제들이 동생을 원하여 입양을 진행함	입양에 대해 열린 마음. 교회에 온 시설아동들을 보게 됨. 시설아동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결혼 후 입양을 하려니까 많은 편견들이 있음. 시설아동들은 입양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됨. 자녀가 생기지 않은 것이 결정적. 입양에 대해 열려 있었어도 자녀 양육 때문에 힘들었다고 입양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임. 결혼하고 입양하는 것이 당연한 코스. 쉬울 거라고 생각했음. 시설아동들의 결핍을 바라봄. / 연애할 때부터 계획함.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늦어짐. 큰 누나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남(큰딸과 막내아들은 17세 차이).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하면서 소명을 갖게 됨. 농사를 짓고 경제력을 따지게 되고 애들을 키우고 일에 쫓기다 보니까 미뤄짐. 어느 순간 신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바로 진행함. 첫 입양자녀가 장애가 있어서(아파서) 둘까지만 입양하려 했는데, 다시 강하게 동생을 원함. 칼싸움을 같이 할 수 있는 남동생. 막내는 빨리 진행됨.
	장애물	시어머니 눈치 보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아이를 색안경을 끼고 볼까봐 두려움	결혼하고 12년 지나 입양. 시어머니가 입양에 대해 한번도 흔쾌히 답하지 않음.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눈치가 보임.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시는 사고로 주춤함. 눈치보는 것이 제일 힘들었음. 남들은 다 잘 낳은 애기 왜 너는 못 낳아(시어머니가 동생에게 얘기하여 속마음을 알게 됨). 교회에서 먼저 입양한 사람들이 선배가 되고 본보기가 됨. 어머니가 나을 기미가 안보여서 밀어붙임. 남편과는 이견이 없었음. 남편은 더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 걸을 아쉬워함. 봉사 정신에 대한 부담감.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가보지 않은 길. 사람들이 아이한테 색안경을 끼고 편견을 가질까봐 두려움. 아이를 대신해서 막아줄 수 있을까. 시댁에서 아이를 자식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내가 마음이 상할 텐데...
	입양 이전	위탁가정 보호	위탁가정에서 보호 받음.
	입양 결정 과정	교회 선배 가정이 입양을 함 일반 사회에 공개	교회 선배 가정이 연장아 입양을 함. 일반 사회에 입양을 공개하기로 하고 방송국에 사연을 보냄. TV 프로그램을 통해 더 단단해짐. TV에 나와 알려진 인

		하기로 하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함 남자아이가 입양이 안된다고 하여 남자아기를 입양함 남편의 딸에 대한 로망 둘째는 시어머니의 독촉을 받음 장애아 입양을 신청함	물이 되었기 때문에 용기를 냄. 두려움과 선입견에 대해 용감하게 헤쳐 나가고 맞닥뜨려야겠다고 생각함. 앞에서 까놓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염려되는 말도 앞에서 함. 남편이 자신의 형제들을 보면서 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됨. 딸에 대한 로망. 둘째 입양. 시어머니가 빨리 입양하라고 함. 둘째는 요구조건을 내걸었음. 입양 이후에 신세계를 만나게 됨. 입양기관에 장애아 입양을 신청함. 입양기관에서는 장애아동 입양의 다양한 어려움을 제시하며 시간을 끌면서 의지가 있는지 계속 찔러봄. 처음 보았을 때 어색하고 예쁘지 않음. 남편이 하자고 해서 입양하기로 함. 신청 후 6개월 만에 입양하고 방송을 찍음. / 남자아이가 입양이 잘 안된다고 하여 기회의 차원에서 남자아기를 입양함. 첫째가 아들이라 남자아이를 입양함. 결혼 전부터 세 아이를 입양하기로 계획함.
	도움받은 경험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해줌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예뻐해 주고, 사랑해줌.
	공식 입양 절차	공식 입양절차를 밟음	방송 때문에 한 달 만에 입양을 하게 됨. 입양기관에서는 공식 절차를 밟도록 함. 혈액형과 성별만 맞춰줌.
정보	친생부모	기본 정보 생활습관 도움이 안 됨	친생부모의 술, 담배 여부. 기본 정보는 다 알려줌. 친생부모의 정보는 양육에 도움이 안 됨. 신경을 안 씀.
	입양아동	아동의 선호, 습관 생활기록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등 구체적인 기록, 아이가 듣던 음악. 기록 정보는 받았지만 사진은 없었음.
입양 이후 생활 경험	초기 적응	처음 열흘 정도 위탁모를 찾으며 입양모를 밀어냄 1년 간 일을 못하고 업고 다님	처음 집으로 와서 열흘 정도 위탁모를 찾으면서 입양모를 밀어냄. 열흘 정도 지나서 아기와 교감이 생김. 1년 간 거의 일을 못함. 다섯 살까지 업고 다님. 지금도 스킨십을 좋아함.
	가족	아이가 심하게 울어서 따로 재움 손이 많이 감	예민한 아이라 업고 지냄. 아이만 따로 잠. 한번 울면 길게 울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음. 진땀을 뺐음. 손이 많이 감.
	형제자매	손위형제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예뻐함 아이 때문에 관계가 더 좋아짐	오래전부터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쭉쭉 빨면서 예뻐했음. 동생이 아픈 걸 보고 컸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한다는 모성애가 생긴 것 같음. 아이 때문에 관계가 더 좋아짐. 입양자녀들이 슬퍼할 때 누나들이 다독여줌.

		입양자녀들이 슬퍼할 때 누나들이 다독여줌	
	양육 경험	사춘기는 사춘기	사춘기에는 친생자녀든 입양자녀든 문제가 안 됨.
아동의 장애와 관련된 경험	장애 유형과 등급	지적 장애 3급. 등급을 받지는 않음	첫째 딸이 지적 장애 3급. 장애등급을 받지는 않음. 남편이 장애라고 못 박는 걸 싫어함. 등급을 받아서 애를 가두지 말자고 함. /중복장애. 시각장애와 지적 장애, 뇌병변. 백일이 되어 경기를 일으켜서 알게 됨. 큰 병원들을 전전함. 2년 정도 뒤에 섬유종 확진. 지방병원에서 오진을 받고 치료를 받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머리와 척추 등에 종양이 있어서 위험한 상황임. 종양이 시신경을 막아서 시력이 안 나옴. 크면서 시력이 나오고 있음. 아직 기저귀를 차고, 언어발달도 늦음.
	장애 아동 입양 이유	키우면서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됨	지적 장애인지 알 수 없었음. 처음에는 모르고 키우면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됨. / 아이가 늦다는 것을 알게 됨. 살짝 불안했음. 호기심이 없었음. 재우기도 힘들었음. 유치원 보내면서 교사를 통해 늦는 것을 알게 됨.
	장애 아동 양육 경험	내 밑바닥을 봄 역량이 부족함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 내 에너지, 공부, 아이에 대한 이해, 사회적 지원 등이 필요함 아이가 예민하고 심하게 울었음. 치료놀이를 시작함 자책을 많이 함 알고는 있었지만 장애를 못 박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장애아동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달라짐 아이가 부모를 성	장애를 발견했을 때 막막했음. 장애 아이를 길러보는 것도 처음이고 전혀 예상도 못함. 앞이 캄캄함. 검색을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도 많이 함. 아이를 양육하면서 내 밑바닥을 봄. 나에 대한 신뢰가 없음. 역량이 부족함. 장애 아이를 키우기에 나는 깜냥이 안 되는 사람. 장애아를 키운다는 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 보이는 것과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많이 다름. 내 에너지, 공부, 아이에 대한 이해, 사회적 지원 등이 필요함. 내 자원으로는 엄청난 한계를 느낌. /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 엄청 예민했음. 너무 많이 울었음. 밤새도록 울었음. 응급실도 몇 번 갔음. 용변을 보지 못해(한 달에 두 번) 괴로워하고 힘들어함. 치료놀이를 시작함. 치료놀이하면서 배변활동이 좋아짐. 치료놀이에서 불안 때문이라고 해석함. 자책을 많이 함. 종단연구를 통해 뒤처지는 것을 발견함. 늦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몰랐음. 알고는 있었지만 장애를 못 박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 막연한 긍정적 기대를 갖고 있었음. 동생을 또 입양하겠다고 덤빈 것은 무모함. 둘째는 아토피가 심해서 힘듦. 발달영역별로 발달수준이 다름. 학교로 들어가고 정든 교사와 헤어지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임. 자신이 장애아동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짐. 동생들도 장애를 가진 형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장시킴 파양은 전혀 생각 해보지 않음 입양기관에서 취소할지 물어봄	쓰지 않음. 아이가 부모를 성장시킴. 아이가 아파서 병원 다니면서도 애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음. 입양기관에서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함.
	차별 경험	교사가 차별 발언을 함	1학년 교사에게 수모를 당함. 교사가 아이한테 멍청하다고 함. 학교에서 교사들 사이에 떨어지는 아이로 알려짐.
	치료 경험	특수반 놀이치료 인지치료 장애 어린이집	3학년 때부터 특수반에 들어감. 다른 입양부모의 권유로 놀이치료를 받았는데 검사자가 힘들었다고 함. 일주일에 인지치료와 놀이치료 세 번을 받음. 지능 62. 1년 치료를 받은 후에도 늘지 않고 지능이 똑같이 나옴. / 장애 어린이집을 1년 다님.
	도움 받은 경험	다른 엄마들로부터 정보를 듣게 됨 특수학교 교사들의 헌신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음	장애아동 어린이집에 들여보내고, 거기 엄마들과 얘기하면서 정보를 듣게 되면서 알아가게 됨. 특수학교 교사들의 헌신, 예뻐해 줌. 도움을 많이 받음. 지금도 연락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음. 정부는 가만히 있고 부모들이 알아서 찾아냄. 체계적으로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음. 길라잡이가 없음.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음. 입양과 장애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함.
	장애와 관련된 어려움	정보 부족 치료 시설 부족 경제적 부담	장애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치료시설도 부족함. 바우처가 되면 괜찮지만, 귀찮아서 안하는 데가 많음(감사를 받아야 함). 경제적으로 위축됨.
	치료 지원	정부에 연락해서 치료지원을 요청함 한국입양홍보회를 통해 심리치료지원을 알게 됨 너무 지원에 의지하나라는 생각이 듦	보건복지부에 연락해서 장애등록 없이 치료지원을 요청함. 한국입양홍보회를 통해 심리치료지원을 알게 됨. 놀이치료가 종료되지 않음. 내가 힘들어서 치료를 끊음. 일주일 간 다양한 치료를 받음. 20만원 이외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함. 언어치료가 너무 늦어졌다고 함. 너무 지원에 의지하나라는 생각이 듦.
	교육을 위한 대안	홈스쿨링은 자신이 없음 대안학교는 돈이 많이 들어감	홈스쿨링은 할 자신이 없었음. 중학교는 대안학교를 생각함. 심리치료하는 교수들이 대안학교를 보내라고 조언함. 대안학교도 요구하는 것이 많고 돈이 많이 들어감. 학교가 제일 어려움.
	아동의 변화	많이 좋아짐	경계성 장애. 잘 모름. 많이 좋아짐. 아이가 잘 하고 있음.
	학교	특수학교 유급 유치원 생활을 오	특수학교(시각장애 전문학교)에 다님. 원래 3학년인데 지금은 1학년임. 유치원 생활을 오래 함.

		래 함	
공개 입양과 사회적 편견	입양 공개	어릴 때부터 이야기함 해줄 말을 연습함 충격을 덜 받음 입양사실을 받아들임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함 시골이라 비밀이 없음 아이는 잘 모르고 넘어감 비장애자녀가 애도 반응을 보임	아이가 알아듣지 못했을 때부터 이야기함. 배로 낳지 않았지만 가족이야. 엄마인 나를 연습시킴. 처음에 말할 때는 눈물도 남. 입양가족모임에 참여하면서 직접 얘기하게 됨. 입양을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됨. 입양된 것을 자랑함. 모임 안에서 스스로 알아감. 가족사진을 보면서 엄마 아빠를 안 닮았다고 함.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함(4세). / 애기 말 떨어지면서부터 상황을 다 얘기해줌. 충격을 덜 받음. 시골이라 비밀이 없음. 사례 아동은 잘 모르고 넘어감. 비장애자녀가 종종 애도 반응을 보이며, 누나들이 다독여줌.
	생모 생각	생모에 대해 물어봄 만나기 싫다고 함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함	궁금하지 않은지 물어봄. 큰 아이는 생부모 만나기 싫다고 얘기함. 작은 아이는 엄마가 뇌성마비라서 충격을 받겠다고 생각함. 큰 아이의 생모는 안 만나겠다는 편지가 있음.
	편견	선행을 위해 입양했다는 오해 장애가 있으니까 포기하라는 식의 반응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선 대단하다 훌륭하다는 말 아이들한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말함 입양자녀라 치료를 안 해준다고 보는 시선 증상을 학대로 오해하고 부모를 의심함 언론의 과장 보도	암묵적으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견. 선행을 위해 동정에 의해 입양했다는 오해. 사람들의 동정. 불쌍하게 봄. 부모를 잘 만났다. 힘들겠다. 이래도 계속 키울거야? 데려다주지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선. 대단하다 훌륭하다는 말이 듣기 싫음. 등 한번 두드려주는 것이 나음. 입양에 대한 편견에 군살이 배김. 장애로 인해 생긴 커다란 벽. 믿을 수 있는 사회가 없음. /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입양을 문제로 삼음. 진짜 생활 속에서는 문제가 안됨. 시골에서는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커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말함. 입양자녀라 치료를 안 해주나라고 보는 사람들의 시선. 병 때문에 몸에 멍처럼 점이 많은데, 학대로 오해할 수 있음. 일일이 붙잡고 설명할 수도 없음. '재도 혼내요?'라고 물어봄. 주위 사람들보다 방송의 몫이 더 큼. 기자가 사실을 과장해서 기사를 작성함.
사회적	받고	양육수당	양육수당 15만원씩. 의료급여.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지원	있는 지원 형태	의료급여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치료 지원. / 장애아동 양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일년에 두 번.
	지원 받은 경험	절대적으로 필요함 입양아동에 대한 사회의 책임 표현 양육수당은 적금으로 모아둠 더 여유 있게 아이를 돌볼 수 있음 지원이 없으면 피폐해 질 수 있음 넉넉하거나 풍성하지는 않음 지원이 제한적임 치료시설과 특수교사가 부족함	사회적 지지나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사회가 입양아동에게 보이는 관심이라고 얘기함. 사회에서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지원하는 것. 양육수당으로는 대부분의 입양부모가 적금을 들고 있음. 부모의 퇴직 이후가 문제임. 지원을 통해 더 여유 있게 아이를 대하고 돌볼 수 있음. 지원금이 없으면 쪼들려서 피폐해 질 수 있음. 가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위로가 됨. 그 돈이 있어서 아이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음.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입양가정 여부와 상관없음. 지원수준을 넘어서는 필요가 있음. 넉넉하거나 풍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음. / 지원이 제한적임. 치료시설과 특수교사가 많아져야 함. 특수교사들의 근로여건이 좋지 않아서 1년을 못 버팀.
입양 관련 모임		입양아동합창단 장애부모 모임은 없음 아이들이 입양가족모임을 편하게 생각함 아이들끼리 공감대 형성 정서적인 지원을 받음 다양한 활동참여	입양아동합창단 활동. 장애부모 모임은 따로 없음. ADHD는 장애가 아님. 장애도 유형마다 다름. 학교에서는 또래들에게 위축됨. 합창단을 통해 자신감이 늘었음. 아이들이 입양모임을 편하게 생각함. 아이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됨. 부모들도 매주 보면서 친해짐. 정서적인 지원을 얻음. 힘을 얻어감.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 좋음. / 입양기관 자조모임. 교육, 모임 참여, 캠프. 10년 정도 지역모임 참여. 장애아동 관련 카페 활동.
사회에 대한 기대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는 않음 사회적 배려와 관심은 필요함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함 입양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길 바람	입양가정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는 않음. 사회적 배려와 관심은 필요함. 다양한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음.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느낌. 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불안함이 있음. 입양에 대한 선입견이 좋아지길 바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회가 되길 바람. / 입양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 편견이 생길까봐 우려됨. 입양부모들이 같이 걱정하고 있음. 입양특례법 개정이 필요함.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사회 입양관련 사건에 의한 편견이 걱정됨 입양특례법 개정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입양부모 대상 심층면담 결과임.

부록 3.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질문지

Ⅰ. 일반적 특성

■ 본 설문에 응답하시는 분은 입양자녀와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부 ▫모

■ 부모님과 가정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짐없이 작성해주세요.

	부	모
1. 출생년도	_____년	_____년
2. 결혼상태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 (①~④에 응답한 경우) 결혼 년도는? _____년	
3. 교육수준	① 고졸이하 ② 대졸(전문대 포함) ③ 대학원 이상	① 고졸이하 ② 대졸(전문대 포함) ③ 대학원 이상
4. 취업상태	① 취업 중 ② 휴직 중 ③ 미취업(주부포함)	① 취업 중 ② 휴직 중 ③ 미취업(주부포함)
5. 종교유무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6. 월 평균 가구소득(세전)	① 100만원 이하 ② 101~200만원 ③ 201~300만원 ④ 301~400만원 ⑤ 401~500만원 ⑥ 501~600만원 ⑦ 601~700만원 ⑧ 701만원 이상	
7. 가구원 수 및 가족 유형	현재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 _____명	
	① (한)조부모+부모+자녀 ② 부모+자녀 ③ (한)조부모+한부모+자녀 ④ 한부모+자녀 ⑤기타:	

8.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짐없이 작성해주세요.

■ 총 자녀 수: _____명 (자녀 수 만큼 아래 칸 생성)

형제순위	입양여부	성별	출생년도	건강이상 여부 (장애 포함)	현재 다니는 학교/기관
첫째	▫친생자녀 ▫입양자녀	▫남 ▫여	_____년	▫건강이상 있음 ▫건강이상 없음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홈스쿨링 ▫안 다님 ▫기타:

(표 계속)

(입양자녀인 경우 생성)					
입양년도	입양 시 월령	입양을 신청한 곳	입양신청부터 결연'까지 대기기간	결연부터 집에 데려오기까지 기간	결연부터 집에 데려오기 전까지 만남
_____년	_____년 ____개월	① 입양기관 ② 양육시설 ③ 기타:	약 _____개월	약 _____개월	① 가정위탁: __개월 ② 가정위탁 외 __회

(표 계속)

(입양자녀인 경우 생성)
1) 자녀를 입양하여 집에 데려오기 전까지 아동이 경험한 보호형태를 모두 선택하세요. 2) 보호형태를 순서대로 기입하세요.
㉠ 친생부모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양육시설 ㉣ 가정위탁 ㉤ 입양 전 위탁(우리가정) ㉥ 입양 전 위탁(다른 위탁모) ㉦ 다른 입양가정 ㉧ 기타: _____ ㉨ 잘 모름
(선택한 응답 수만큼 칸 생성)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ㅁ순서 잘 모름

※ 참고: 용어의 의미 (해당 문항 응답 시 아래에 제시)

용어	의미
• 결연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매칭 즉, 예비입양부모에게 한 아이를 자녀로 결정하는 것
㉡ 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예: 보육원 등) / 공동생활가정도 ㉢에 포함하여 응답
㉣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 ㉥ 입양 전 위탁	입양절차 진행 중에 입양기관에서 위탁모를 통해 입양 전 가정위탁의 형태로 아동을 보호하며, 법원에 국내입양 허가를 신청한 후에는 예비입양부모와의 조기 애착형성을 위하여 예비입양부모가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음.
㉦ 다른 입양가정	자녀가 파양을 경험한 경우 해당함.

9. 향후 자녀를 더 입양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③ 잘 모르겠음

↳ 몇 명을 추가로 더 입양할 계획하십니까? _____명

9-1. (①에 응답한 경우) 추가 입양을 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를 더 갖고 싶어서 ② 주변 입양가정 사례를 보고
③ 가치관(요보호아동에게 가정 제공, 좋은 일을 하고자 함, 종교적 가치 따름 등)
④ 지인·친인척의 권유 ⑤ 기타:

10. 향후 자녀를 더 출산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③ 잘 모르겠음

↳ 몇 명을 추가로 더 출산할 계획하십니까? _____명

Ⅱ. 입양결정 및 절차

※ 질문에 응답하실 때 입양자녀 1명만을 생각하며 응답해주세요.
만약 입양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처음 입양한 자녀를 생각하며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1. 자녀의 입양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2순위까지 응답

1 순위:	2 순위:

① 난임·불임으로 자녀가 없어서 ② 자녀를 더 갖고 싶어서
③ 가치관(요보호아동에게 가정 제공, 좋은 일을 하고자 함, 종교적 가치 따름 등)
④ 주변 입양가정 사례를 보고 ⑤ 지인·친인척의 권유
⑥ 봉사(위탁모, 시설 등) 중 아동과 정이 들어서 ⑦ 기타:

2. 입양을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부부간 의견 불일치 ② 가족(부모님)의 반대 ③ 사회적 편견 우려 ④ 경제적 이유
⑤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⑥ 친생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
⑦ 입양자녀 출생배경이나 친생부모와의 관계 우려 ⑧ 기타: ⑨ 전혀 없었음

3. 입양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서류준비 등 입양절차의 까다로움 ② 원하는 조건의 아동을 기다리는 시간
③ 부모교육 등에 시간을 낼 여건이 안 됨 ④ 주변에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구하기 어려움
⑤ 입양부모 자격에 대한 까다로움 ⑥ 기타: ⑦ 전혀 없었음

4. 입양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 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누구/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① 입양기관 담당자 ② 주변 입양가정(자조모임)
③ 입양관련 단체·센터 ④ 기타:

5. 입양할 때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 수 있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응답

① 기본인적사항(생일, 이름 등) ② 발달진단결과(장애여부 등)
③ 신체적 특징 ④ 식습관, 수면 등 생활습관
⑤ 행동특성(좋아하는 놀이 등) ⑥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⑦ 발견 장소 및 입양 이전의 과정(생활) ⑧ 기타:

6. 입양할 당시 자녀의 발달 정도는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에 비해 어떠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문항	느린 편임	보통	빠른 편임	모르겠음
1) 신체발달 및 성장	①	②	③	④
2) 언어발달	①	②	③	④
3) 인지발달(지각, 기억, 학습, 지능발달 등)	①	②	③	④
4) 사회·정서발달(애착, 정서표현·조절, 대인관계 등)	①	②	③	④

Ⅲ. 입양자녀 양육

※ 질문에 응답하실 때 입양자녀 1명만을 생각하며 응답해주세요.
만약 입양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처음 입양한 자녀를 생각하며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사실 공개

1. 자녀의 입양사실을 누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응답

① 입양자녀 본인 ② 자녀의 형제자매 ③ 자녀의 조부모 ④ 가까운 친인척
⑤ 가까운 지인 ⑥ 자녀의 선생님 ⑦ 자녀의 친구들
⑧ 대중(미디어·책·인터넷(입양부모모임제외)을 통해) ⑨ 기타: ⑩ 없음

(1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1-1~1-4번

1-1. 언제부터 자녀에게 입양사실을 알려주었습니까?

① 입양 시 부터 자연스럽게 알려주었음 ② _____세부터 알려주었음

1-2. 자녀가 자신의 입양사실을 접한 후 보였던 변화는 무엇입니까?

① 현재의 가족과 더 친밀해짐 ② 가족구성원과의 불화, 문제행동 등 부적응
③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④ 기타:

1-3. (1-2번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자녀가 입양사실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가족들과 갈등을 겪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응답

① 영아기(36개월 미만) ② 유아기(36개월~취학 전) ③ 초등 저학년 시기
④ 초등 고학년 시기 ⑤ 중학생 시기 ⑥ 고등학생 시기

1-4. 자녀가 친생부모에 대해 관심을 보인 시기는 언제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응답

① 영아기(36개월 미만) ② 유아기(36개월~취학 전) ③ 초등 저학년 시기
④ 초등 고학년 시기 ⑤ 중학생 시기 ⑥ 고등학생 시기

(1번에서 ①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1-1~1-2번

1-1. 언제 자녀에게 입양사실을 알려주기 원하십니까?

① _____세부터 ② 가능한 한 미루길 원함 ③ 알려주지 않으려 함

1-2. 자녀에게 아직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이가 아직 어려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림 ② 언제 알려주어야 하는지 몰라서 미룸
③ 입양사실로 자녀가 상처받거나 삐뚤어질까봐 ④ 부모와 멀어질 것 같아서
⑤ 가능한 한 비밀을 유지하고 싶음 ⑥ 기타:

입양자녀 발달 및 적응

2. 자녀와 애착이 완전히 형성되었다고 느끼기까지 걸린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_____년 _____개월 ② 아직 형성 중

3. 자녀가 우리 가정에 잘 적응하였다고 느끼기까지 걸린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_____년 _____개월 ② 아직 적응 중

4.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자녀의 평소 모습(행복도)은 어떠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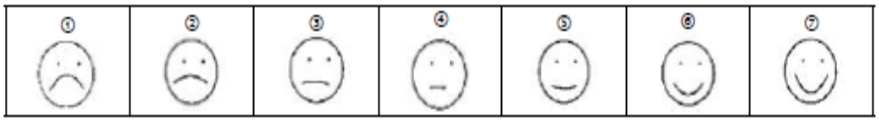

5. 입양 후부터 지금까지 자녀가 다음의 행동을 보이거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응답

① 불안 ② 우울 ③ 위축 ④ 주의집중문제 ⑤ 공격행동
⑥ 수면문제 ⑦ 또래로부터 따돌림 ⑧ 기타: ⑨ **전혀 없음**

양육특성

6. 자녀가 주중 평일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이었습니까? ※ 평범한 하루를 기준으로 작성. 아이가 잠자는 시간은 제외함.

아버지	최근 평일(하루)	_____시간	▫ 해당없음
	지난 주말(하루)	_____시간	
어머니	최근 평일(하루)	_____시간	▫ 해당없음
	지난 주말(하루)	_____시간	

7.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 자녀에 대한 평소 자신의 행동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와 이야기하고 놀아주는 등의 시간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의 행동이나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가르쳤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해당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	-	매우 부담스러움
1) 신체적 부담(육체적 피로, 휴식시간 없음 등)	①	②	③	④
2) 정서적 부담(자녀와 입양/친생부모에 대해 다루는 것,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속상함,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등)	①	②	③	④
3) 사회적 고립(입양가정만의 고민, 친척·이웃과의 소통기회 부족 등)	①	②	③	④
4) 경제적 부담(교육비, 치료비 등)	①	②	③	④
5) 가족관계의 어려움(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자녀와 다른 형제자매와의 갈등 등)	①	②	③	④

9. 다음은 입양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해당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떠하셨는지 (혹은 현재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9-1. 이 중에서 경험했던(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한 가지를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9-1
1) 입양자녀가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①	②	③	④	
2) 가족들이 입양자녀와 가까워지지 못함	①	②	③	④	
3) 부모-자녀 간 애착관계 형성이 어려움	①	②	③	④	
4) 친생자녀와 입양자녀를 (역)차별하게 됨	①	②	③	④	
5) 자녀에게 언제, 어떻게 입양사실을 이야기할지에 대한 고민	①	②	③	④	
6) 자녀가 입양사실로 삐뚤어질까봐 두려움	①	②	③	④	
7) 자녀가 크면서 친생부모를 찾을까봐 두려움	①	②	③	④	
8) 주변에서 입양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움	①	②	③	④	
9) 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	①	②	③	④	
10) 일반적인 자녀들의 문제임에도 입양 때문인 것 같아 걱정함	①	②	③	④	
11) 주변사람들과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9-2. 위의 어려움(①~⑪번) 이외에 경험하는(경험했던)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0. 자녀를 입양하여 기르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입니까?

10. 해당 자녀를 양육하면서 육아관련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로 누구/어디의 도움을 받습니까?

① 집안어른(시부모, 친정부모), 형제자매 ② 친구, 동료
③ 육아관련 사이트, 관련 서적 ④ 육아관련 전문가(의사, 상담사 등)
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⑥ 입양기관 및 관련 단체·센터
⑦ 주변 입양가정(자조모임) ⑧ 기타:

11. 현재 해당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① 연령별 아동발달 특징 ② 연령별 자녀양육 방법
③ 자녀 학습·학교생활 지도 방법 ④ 입양아동의 특성
⑤ 입양사실 공개 시기 및 방법 ⑥ 입양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⑦ 입양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 ⑧ 입양관련 이슈 및 정책 등에 관한 정보
⑨ 주변에 입양사실 알리는 등 이웃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정보 ⑩ 기타:

Ⅳ. 입양가정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 입양자녀를 생각하면서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입양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1. 입양 전 부모교육에 참여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참여한 경우 ①에 응답

① 예 (총 ____회) ② 아니요

1-1. (①에 응답한 경우) 어떤 유형의 부모교육이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응답

① 입양기관에서의 의무 8시간 교육(2012년 8월 이후) ② 입양기관에서의 자체적인 교육
③ 입양 관련 단체·센터에서의 교육 ④ 기타:

1-2. (①에 응답한 경우) 부모교육은 실제 자녀양육 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됨 ② 대체로 도움이 안됨 ③ 대체로 도움됨 ④ 매우 도움됨

1-1-1. (1-1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예비부모교육 참여 시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교육장소가 멀리 있음(물리적 접근성) ② 시간을 내기 힘듦(평일교육 등으로)
③ 교육 일정이 없거나 신청자가 많아서 대기함 ④ 기타: ⑤ 없음

1-1-2. (1-1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예비부모교육 8시간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짧다 ② 길다 ③ 적정하다
↳적정시간은? _____시간 ↳적정시간은? _____시간

2. 입양 전이나 후(1년 이내)에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양 전> 1순위: _____ 2순위: _____	<입양 후>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연령별 아동발달 특징 ② 연령별 자녀양육 방법
③ 자녀 학습·학교생활 지도 방법 ④ 입양아동의 특성
⑤ 입양사실 공개 시기 및 방법 ⑥ 입양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⑦ 입양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 ⑧ 입양관련 이슈 및 정책 등에 관한 정보
⑨ 주변에 입양사실 알리는 등 이웃과의 관계 ⑩ 기타:

3.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입양휴가제(2010 년부터 20 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3-1. 부모님 직장에 입양휴가제도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3-1-1. (①에 응답한 경우) 부모님께서는 입양휴가를 사용하셨습니까?

① 예 (▫본인 ▫배우자) (총 _____회, _____일 동안) ② 아니요
③ 입양휴가제 이전에 입양하였음(2006 년 이전)

3-1-2. (3-1-1 번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입양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필요 없어서/원하지 않아서 ② 입양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③ 원하였으나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④ 기타:

4. 입양자녀로 인해 부모님께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적이 (혹은 현재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① 예 (▫본인 ▫배우자) ② 아니요 ③ 해당 없음
↳ 휴직기간은 총 몇 회, 몇 개월입니까? 총 _____회, _____개월

4-1. (②에 응답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필요 없어서/원하지 않아서 ② 입양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③ 원하였으나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④ 기타:

5. 다음의 입양가정 지원 제도에 대한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1) 알고 있습니까?	2)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3) 지원에 대한 만족정도				4) 제도의 필요성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매우 불필요	-	-	매우 필요
입양 수수료	① 예 ☞ 3), 4)번 ② 아니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양육수당	① 예 ☞ 2)번 ② 아니요	① 예 ☞ 3), 4)번 ② 아니요 ☞ 2-1), 4)번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2-1) 이유는? ①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② 입양사실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③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④ 서비스 도입 이전 입양 ⑤ 기타:								
입양아동 의료급여	① 예 ☞ 2)번 ② 아니요	① 예 ☞ 3), 4)번 ② 아니요 ☞ 2-1), 4)번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2-1) 이유는? ①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② 입양사실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③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④ 서비스 도입 이전 입양 ⑤ 기타:								
입양아동 심리치료지원	① 예 ☞ 2)번 ② 아니요	① 예 ☞ 3), 4)번 ② 아니요 ☞ 2-1), 4)번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 알고 있습니까?	2)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3) 지원에 대한 만족정도				4) 제도의 필요성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매우 불필요	-	-	매우 필요
		↳ 2-1) 이유는? ①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② 입양사실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③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④ 서비스 도입 이전 입양 ⑤ 기타:								
입양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① 예 ☞ 2)번 ② 아니요	① 예 ☞ 3), 4)번 ② 아니요 ☞ 2-1), 4)번 ▫ 해당 없음 ☞ 4)번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2-1) 이유는? ①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② 입양사실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③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④ 서비스 도입 이전 입양 ⑤ 기타:								
입양장애아동 의료비	① 예 ☞ 2)번 ② 아니요	① 예 ☞ 3), 4)번 ② 아니요 ☞ 2-1), 4)번 ▫ 해당 없음 ☞ 4)번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2-1) 이유는? ①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② 입양사실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③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④ 서비스 도입 이전 입양 ⑤ 기타: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① 예 ☞ 2)번 ② 아니요	① 예 ☞ 3), 4)번 ② 아니요 ☞ 2-1), 4)번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2-1) 이유는? ① 입양사실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② 서비스 도입 이전 입양 ③ 기타:								

※ 참고: 입양가정 지원 내용 (해당 문항 응답 시 아래에 제시)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액
입양 수수료		입양부모(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가정) ※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이 시·군·구청에 청구하여 받는 비용임.	270만원
양육수당		만16세 전까지	월 15만원/월
입양아동 의료급여		만18세 전까지	의료급여 1종
입양아동 심리치료지원		만18세 전까지	월 20만원 한도/월
입양장애아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만18세전까지)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장애 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월 627천원/인
		2.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월 551천원/인

동		3.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의료비	만18세전까지	연간 260만원 한도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입양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 및 상담 제공	

6. 입양 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 모임이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 모두 응답

① 입양부모/가정 자조모임(인터넷사이트 포함) ② 입양부모교육
③ 입양부모 상담프로그램 ④ 입양아동 상담프로그램
⑤ 입양아동 적응/발달 지원 프로그램 ⑥ 입양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⑦ 캠프 등 입양가정 대상 행사 ⑧ 합창단 등 입양아동 모임
⑨ 입양부모/아동 심리치료프로그램 ⑩ 기타: ⑪ 없음

6-1. (6번에서 선택한 사항만 생성) 모임/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항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입양부모/가정 자조모임(인터넷사이트 포함)	①	②	③	④
입양부모교육	①	②	③	④
입양부모 상담프로그램	①	②	③	④
입양아동 상담프로그램	①	②	③	④
입양아동 적응/발달 지원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입양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캠프 등 입양가정 대상 행사	①	②	③	④
합창단 등 입양아동 모임	①	②	③	④
입양부모/아동 심리치료프로그램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6-2. 위의 모임이나 프로그램 중 좀 더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6-3. 이 외에도 필요한 모임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V. 입양에 대한 인식

※ 질문에 응답하실 때 입양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에 기초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양부모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① 부모의 연령 ② 부모의 경제수준 ③ 부모의 건강 ④ 부모의 학력
⑤ 부모의 결혼상태 ⑥ 부모의 가정환경 ⑦ 부모의 가치관
⑧ 부모의 자녀 유무(수) ⑨ 부모의 친인척 관계 ⑩ 기타:

2. 자녀의 입양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공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부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음 ② 친인척들까지만 알고 공개하지 않음
③ 친인척 및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공개함 ④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함
⑤ 기타:

3. 자녀에게 입양사실을 언제 알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생아 혹은 영아기에 입양하였다고 가정)

① 신생아기·영아기 ② 유아기(만3세 이상)
③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④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⑤ 중학생 시기 ⑥ 고등학생 시기
⑦ 청년기(결혼 전) ⑧ 결혼 후

4. 다음의 문항을 읽고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1) 친생부모는 자녀를 입양 보낸 후 자녀성장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2) 입양아동은 자신을 낳아준 친생부모에 대해 알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입양아동은 성인이 된 후 원한다면 친생부모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친생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는 개방입양은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5) 아동이 어느 나라에서든 가정에서 양육 받기 위해서 해외입양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6) 어떤 이유에서든 해외입양은 금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입양아동 지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① 입양아동은 일반아동(비입양아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아야 한다.
② 입양아동은 요보호아동으로서 (일반아동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③ 잘 모르겠음

6.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① 입양에 대한 필요성과 긍정적 인식을 위한 홍보 강화
②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로의 조치 활성화 ③ 위탁가정에서의 입양 활성화
④ 입양기관의 확대 및 지원 강화 ⑤ 입양기관 담당자 및 지자체의 전문성 강화
⑥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⑦ 기타:

6-1. 이 외에도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건의하기 원하는 제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 입양부모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입양부모 대상 심층면담

Ⅰ. 자녀입양의 결정과 절차 진행

1. 입양동기 및 결정 과정은 어떠하셨습니까?

2. 입양을 준비하면서 부모교육이나 상담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2-1. 예비입양부모들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3. 결연(매칭) 후 아동과 만나거나 가정위탁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4. 친생부모 및 입양아동에 대해 어떤 정보들을 제공받으셨습니까?

Ⅱ. 입양 후 자녀양육

1. 입양 후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2. 입양사실 공개 경험은 어떠하십니까?
 2-1. **(입양사실을 자녀에게 알려준 경우)** 입양자녀와 입양사실을 어떻게 다루어오셨습니까?
 (자녀가 어리거나, 입양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경우) 앞으로 언제 어떻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3. 입양자녀를 포함한 자녀 양육경험은 어떠하십니까?
 3-1. 입양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3-2. 자녀 연령별로 알고 싶었던 양육정보(현재 알기 원하는 정보)는 어떤 것입니까?
 3-3.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은 어떠하십니까?

4. 입양자녀의 적응과정은 어떠하였습니까?

5. **(개방입양인 경우 추가질문)**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Ⅲ. 입양가정 양육 지원

1. 입양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모임/단체에 가입하셨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면,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2. 입양아동/가정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계십니까?
 2-1. 지원을 받는 것에(또는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양육수당 비용/연령(15만원, 만16세까지)의 적정성, 사후관리 기간(1년)의 적정성, 일반아동과 비

교하여 적정한 지원 수준 등)

2-2. **(입양자녀가 연장아/장애아인 경우 추가질문)** 연장아/장애아인 경우 더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3. 입양에 대한 주변의 오해나 사회적 편견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 일반적 특성

	부	모
1. 출생년도	_____년	_____년
2. 결혼상태	① 배우자 있음 ② 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등) ③ 미혼	
3. 교육수준	① 고졸이하 ② 대졸(전문대 포함) ③ 대학원 이상	① 고졸이하 ② 대졸(전문대 포함) ③ 대학원 이상
4. 취업상태	① 취업 중 ② 휴직 중 ③ 미취업(주부포함)	① 취업 중 ② 휴직 중 ③ 미취업(주부포함)
5. 종교유무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6. 월 평균 가구소득(세전)	① 100만원 이하 ② 101~200만원 ③ 201~300만원 ④ 301~400만원 ⑤ 401~500만원 ⑥ 501~600만원 ⑦ 601~700만원 ⑧ 701만원 이상	
7. 자녀 수	총 _____명 (입양자녀 _____명, 친생자녀 _____명)	

■ 입양자녀 특성

형제순위	성별	출생년도	입양년도	현재 다니는 학교/기관
	▫남 ▫여	_____년	_____년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홈스쿨링 ▫기타:
	▫남 ▫여	_____년	_____년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홈스쿨링 ▫기타:
	▫남 ▫여	_____년	_____년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홈스쿨링 ▫기타:

연구보고 2016-31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Ⅱ)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현대아트컴 02) 2278-448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02-2 93330